

발 간 등 록 번 호

11-1140100-000169-14

2018 범정부 반부패 백서

청렴한국
실현을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

청렴한 대한민국



관계부처 합동

| 발간사 |

정부 출범 후 지난 1년여의 시간은, 부정부패 없는 청렴 사회에 대한 국민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도 뜨거웠던 시기로 기억될 것입니다. 헌정사상 유례없던 일련의 사건을 경험하면서, 국민들은 국정 농단과 권력형 비리를 초래한 부정부패의 근본적인 해결을 요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성별과 연령, 지역 등을 막론하고, 국민 누구나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회로의 변화를 요구한 것입니다.

국민 눈높이는 이미 과거와 다릅니다. 과거에는 크게 문제되지 않았던 기존의 관행이라고 할지라도 높아진 국민 눈높이에서는 부패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이른바 ‘갑질’ 관행 등은 하나의 예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부패신고 사건 분석결과, 국민들은 부정청탁과 뇌물 등 기존의 전형적인 부패행위 뿐만 아니라, 공직자의 소극적 업무처리, 근무태만 등도 ‘넓은 의미의 부패’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청렴에 대한 국민의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간절한 반부패 열망과 높아진 눈높이에 대응하여, 정부의 반부패 대책 역시 변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과 제도, 정책 수립 및 집행 절차, 조직 내 외부 문화와 행정 관행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부패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부적절한 관행과 제도에 대한 근본적 성찰과 혁신이 필요합니다. 대통령께서도 지난 4월 18일 제2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새로운 정책과 제도, 인식과 행동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사회 각 분야에 뿌리내리는 것이 적폐청산이고 반부패 개혁”이라고 강조하신 바 있습니다. 이처럼 기존의 관행 등에 대한 깊은 성찰과 혁신은 청렴한국 건설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범정부 반부패 백서는 우리사회의 청렴수준을 조망하는 것을 시작으로 하여, 총괄적 차원에서 정부의 청렴정책을 개관한 후, 각 부처의 자율적 개선 사례 등을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기존의 불합리한 행정 관행이나 보완이 필요한 법 제도, 부패방지를 위한 다양한 정책사례, 기관별 각종 TF 운영 사례 등을 폭넓게 수록함으로써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기관 내부 혁신부터 대국민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미시적인 절차의 개선부터 거시적인 법·제도 개선에 이르기까지, 풍부한 사례를 발굴하여 공유하고자 하였습니다.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백서에 수록된 자율적 혁신 사례가 공직자와 공직사회에 깊은 울림이 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반부패 개혁이 지속되기를 기대합니다.

2018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박 은 정

| 차례 |

제1편 | 우리사회의 청렴수준과 국민 눈높이 • 01

제1장 대내적 평가 • 02

제2장 대외적 평가 • 06

제2편 | 청렴한국 실현을 위한 반부패 정책 • 09

제1장 반부패 개혁 기반 마련 • 10

제2장 민관협력 반부패 거버넌스 확립 및 국제협력 • 19

제3장 청렴한 공직사회를 위한 행위기준 정비 • 25

제4장 각급기관의 청렴도 향상 지원 • 35

제5장 실효성 있는 부패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 • 42

제6장 체계적인 부패·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 47

제7장 청렴문화 확산 및 청렴교육 강화 • 58

제3편 | 기관별 부패방지 노력 • 67

제1장 참여와 소통에 기반한 투명성 강화 • 69

1. 국민신뢰 제고를 위한 조직쇄신방안 시행 : 공정거래위원회 • 70

2. 법무부 탈검찰화로 법무행정 전문성 및 지속성 강화 : 법무부 • 76

3. 투명성·청렴성 제고를 위한 개방형 국방운영 : 국방부 • 80

4. 조직문화 및 제도개선 위원회 구성 및 운영 : 보건복지부 • 85

5. 국가기록관리체계 혁신 추진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 89

6. 여객선 국민안전감독관 제도 운영 : 해양수산부 • 95

7. 제안서 평가시스템 수요기관 개방 : 조달청 • 100

8. 국민 눈높이에서 관세행정 혁신방향 설계 : 관세청 • 104

9. 방위사업 혁신TF 운영(방위사업 혁신종합 계획 수립) : 방위사업청 • 109

10. 새일센터 온라인 서비스 플랫폼 구축 : 여성가족부 • 113

11. 지식재산권 출원환경 국민디자인단 운영 : 특허청 • 117

12. 농촌진흥청 소관 위원회의 심의·심사 등 투명성 제고 : 농촌진흥청 • 122

제2장 공정성과 신뢰성 향상 • 125

1. 청구인과의 사적접촉 방지를 위한 비상임심판관 운영체계 개선 : 국무조정실 조세심판원 • 126
2. 문화분야 공정성 확립 : 문화체육관광부 • 129
3. 군의문사 진상규명과 문제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 국방부 • 133
4. 다들 것만 다루는 합리적 상소문화 구현 : 법무부 • 141
5. 민간 보조사업자 청렴이행서약서 제도 : 여성가족부 • 144
6. 먹거리 불안 해소를 위한 친환경 인증제도 개선 : 농림축산식품부 • 147
7. 체육분야 공정성 확립 : 문화체육관광부 • 149
8. 불합리한 차별법령 정비 : 법제처 • 143
9. 역외탈세로 인한 국부유출 방지 : 국세청 • 157
10. 의약품 재평가 심사기준 합리화 : 식품의약품안전처 • 161
11. 중소기업 기술탈취 등 부정경쟁행위 근절 : 특허청 • 165
12. 임금유용 차단을 위한 노무비 대금지급시스템 개선 : 조달청 • 168
13. 병적 별도관리제도 도입을 통한 공정한 병역문화 조성 : 병무청 • 171
14. 부패예방 병무감사시스템 구축·운영 : 병무청 • 176
15. 국외위조부품 도입 방지를 위한 국외업체 검증 강화 : 방위사업청 • 181
16. 청렴서약 위반 시 입찰참가 제한 확대 : 방위사업청 • 184
17. 방위사업 원가부정행위 '징벌적 가산금 2배'로 강화 : 방위사업청 • 187
18. 군수품무역대리업 중개수수료 신고제 : 방위사업청 • 190
19. 보훈단체 수익사업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 국가보훈처 • 193
20. 기상장비 도입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 기상청 • 197
21. 문화재 행정 부패 취약분야 집중관리 : 문화재청 • 201
22. 방송통신 조사·심결 업무의 공정성·투명성 강화 : 방송통신위원회 • 204
23. 풍속업소 단속업무의 국민신뢰 제고 : 경찰청 • 208

제3편

제3장 국민생활 속 불합리한 제도 개선 • 213

1. 산재 신청의 걸림들로 작용하던 불합리한 사업주 날인제 폐지 : 고용노동부 • 214
2. 건설공사 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전격 도입 : 국토교통부 • 218
3. 도로 인프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파트너십 구축 : 국토교통부 • 222
4.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 법무부 • 226
5.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방문예약 신청경로 개선 : 법무부 • 229
6.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여권 발급 : 외교부 • 232
7. 불공정한 어선거래문화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개선 : 해양수산부 • 236
8. 축산물 유통증명 서류 일원화로 국민편익 향상 : 농림축산식품부 • 242
9. 교원 명예퇴직수당 환수제도 개선 : 교육부 • 249
10. 연구자 중심의 'R&D 프로세스 혁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52
11. 공공SW사업 발주제도 혁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57
12. 대국민 육군 인사행정서비스 모바일 어플 더 캠프(The Camp) 개발 : 국방부 • 261
13. 「경미범죄심사위원회」 확대 운영으로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 방지 : 경찰청 • 265
14. 수사민원 상담센터의 본격적인 시행으로 민원만족도 향상 : 경찰청 • 269
15. 해외직구 반품할 때 관세환급, 포기하지 마세요~ : 관세청 • 272
16. 생계 곤란 국가유공자 채무부담 완화 : 국가보훈처 • 276
17. 매장문화재로 인한 국민불편 개선 추진 : 문화재청 • 279
18. 자가치료용 마약류 수입 제한 규제 개선 : 식품의약품안전처 • 285

제4장 조직내부 혁신과 청렴문화 확산 • 287

1. 중소벤처기업부 행정혁신 : 중소벤처기업부 • 288
2. 민간분야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협약 체결 : 중소벤처기업부 • 291
3.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교육부 행동강령 개정 : 교육부 • 297
4. 현장근무 직원의 감사 제안을 통한 찾아가는 청렴감사 : 법무부 • 301
5. 부패행위자 청렴교육 의무이수제 도입 : 법무부 • 306
6. 찾아가는 맞춤형 청렴교육 실시 : 법무부 • 309
7.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청렴한 고용노동행정 실현 : 고용노동부 • 314

8.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마련 : 법제처 • 320
9. 복무규정 강화 및 국민참여 제도개선 : 국세청 • 325
10. 부정부패 신고 활성화를 위한 자체 신고체계 개편 : 관세청 • 329
11. 조직 내 부당지시 근절 대책 추진 : 기상청 • 334
12. 청렴 집중 강조의 달 운영(청렴이 June 선물의 달) : 국무조정실 • 338
13. 불필요한 행정낭비 방지를 위한 업무 프로세스 혁신 : 방송통신위원회 • 342
14. 사례금 없는 외부강의(재능기부) : 식품의약품안전처 • 347
15. 인허가 심사업무 부패방지를 위한 심사관 교육실시 : 식품의약품안전처 • 349
16. 원자력안전위원회 특별사법경찰 출범 : 원자력안전위원회 • 351
17. 반부패·권익행정 혁신추진단 구성·운영 : 국민권익위원회 • 353

색인 | 기관명(가나다순) • 355

제 1 편

우리사회의 청렴수준과 국민 눈높이

제1장 대내적 평가

제2장 대외적 평가

제 1 장 대내적 평가

| 제 1 절 | 2018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매년 공공기관의 행정서비스를 경험한 국민과 공공기관의 내부직원, 전문가·업무관계자 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와 공공기관의 부패사건 현황 등을 종합하여 공공기관 청렴도 수준을 측정하여 발표¹⁾하고 있다.

지난 12월 5일 발표한 612개 공공기관의 청렴도 측정 결과를 보면 종합청렴도 평균 점수는 10점 만점에 8.12점으로 전년 대비 0.18점 상승하였다. 2016년까지는 소폭 등락을 반복하였으나 2016년 이후 2년 연속 평균점수가 상승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내부직원이 평가한 내부청렴도 보다 외부인이 평가한 영역인 정책고객평가와 외부청렴도 점수 상승폭이 더 크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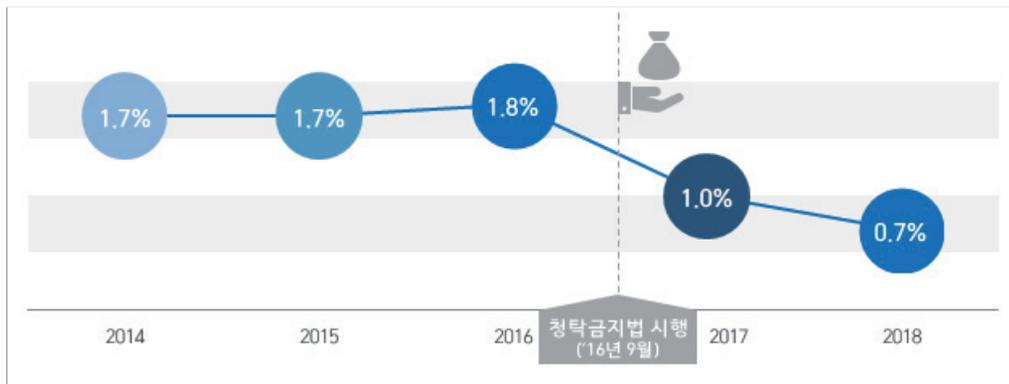
[최근 5년간 종합청렴도 점수 추이(2014년 ~2018년)]



또한, 설문 응답자들의 부패경험률도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추세다. 외부평가 설문에 응답한 국민 중 0.7%가 공공기관 행정서비스를 받으면서 금품·향응·편의 관련 부패를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작년에 비해 0.3%p 낮아진 것이다. 특히, 설문 개선을 통해 부패경험에 대한 측정범위를 확대하였는데도 부패경험률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나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실질적인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 2018년은 중앙·지방 행정기관 및 교육청(교육지원청 포함), 공직유관단체 612개 기관(8~11월 중 총 236,767명 대상 설문조사 실시)과 국공립대학 및 공공의료기관 93개 기관(9~11월 중 총 23,624명 대상 설문조사 실시)을 포함하여 총 705개 공공기관의 종합청렴도를 측정하여 발표

[최근 5년간 금품·향응·편의 부패경험률 추이(2014년~201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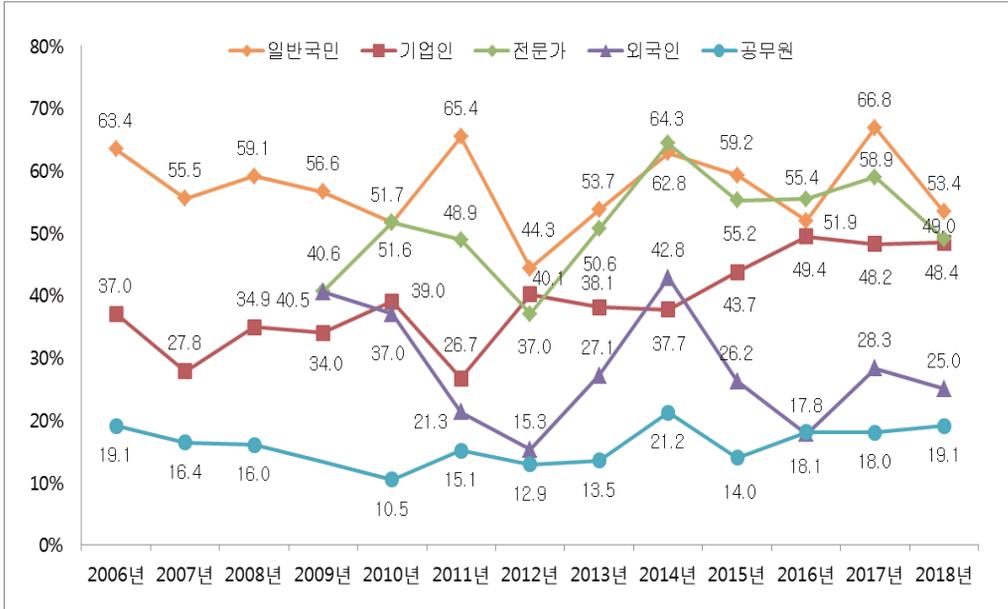
※ '18년은 금품 경험률 0.24%, 향응 경험률 0.27%, 편의 제공률 0.16%의 합

| 제 2 절 | 2018년도 부패인식도 조사

국민권익위는 공직사회 및 우리사회 전반의 부패수준과 경험, 부패발생 원인과 정부정책의 성과 등에 대한 국민 인식을 매년 조사하여 발표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에도 일반국민 1,400명과 공무원 1,400명, 기업인 700명 등 총 4,5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 결과는 지난 12월 10일 발표하였다.

먼저 우리사회 전반에 대한 부패인식은 전반적으로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사회가 부패하다는 일반국민 응답은 '17년 66.8%에서 '18년 53.4%로 13.4%p 감소한 것이다. 다만, 동일한 질문에 대하여 공무원은 19.1%만이 부패하다고 답하고 있어, 일반 국민과 공무원간의 인식 격차가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사회 부패인식 추이]



한편, 공직사회의 부패수준도 지난해 대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국민의 경우 전년도 52%에서 40.9%로 11.1%p 개선된 것이다. 다만, 공직사회가 부패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일반 국민은 40.9%인 반면 공무원은 7.7% 수준으로 큰 인식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부패인식도 조사결과 우리사회와 공직사회에 대한 부패 인식은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국민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도달하기 위해서는 더욱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 2018년도 부패인식도 조사 세부내용 〉

국민권익위는 매년 일반 국민, 기업인,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사회전반과 공직에 대한 부패인식을 조사하여 발표하고 있다.

올해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 사회전반과 공직에 대한 전반적인 부패인식이 전년에 비해 긍정적으로 변화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회전반과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부패인식은 전년대비 각각 13.4%p, 11.1%p 개선된 53.4%, 40.9%로 나타났다.

또한, 현 정부에서 시행한 반부패 정책을 국민의 79.4%가 인지하고 있었으며, 그 중 ‘반부패 정책의 효과로 사회전반이 이전 정부보다 청렴해졌다’고 응답한 국민이 47.7%로, ‘그렇지 않다’(25.5%)에 크게 앞섰다.

그러나 공직사회를 바라보는 공무원과 국민들의 인식 차는 여전했다. 공무원의 65.2%가 ‘공직사회가 청렴하다’고 응답한 반면, 일반국민이 공직사회에 대하여 ‘청렴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13.6%에 불과했다. 또한 공무원이 가장 청렴하다고 인식하는 사회분야는 ‘행정기관’이었으며, 다른 조사대상에 비하여 그 비율이 월등히 높았다. 국민과 공직 내부의 인식 차이가 얼마나 큰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부패 경험 응답과 인식과의 괴리도 컸다. 공직자에게 금품·향응 제공 등 부패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0.5%인데 반해 공직사회가 부패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40.9%로, 국민들은 본인들의 부패경험 여부와 관계없이 공직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패척결을 위한 최우선 해결과제로 ‘부패행위 적발·처벌 강화’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부패원인 제공자로 '06년 부패인식도 조사 이래 지속적으로 1순위는 ‘정치인’, 2순위는 ‘고위공직자’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긍정적인 점은 향후 부패가 줄어들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이 높았다는 것이다. 일반국민의 52.1%는 ‘앞으로 우리사회 부패가 현재보다 줄어들 것’이라고 응답해 ‘현재보다 부패가 늘어날 것’이라고 부정적으로 전망하는 국민(9.6%)보다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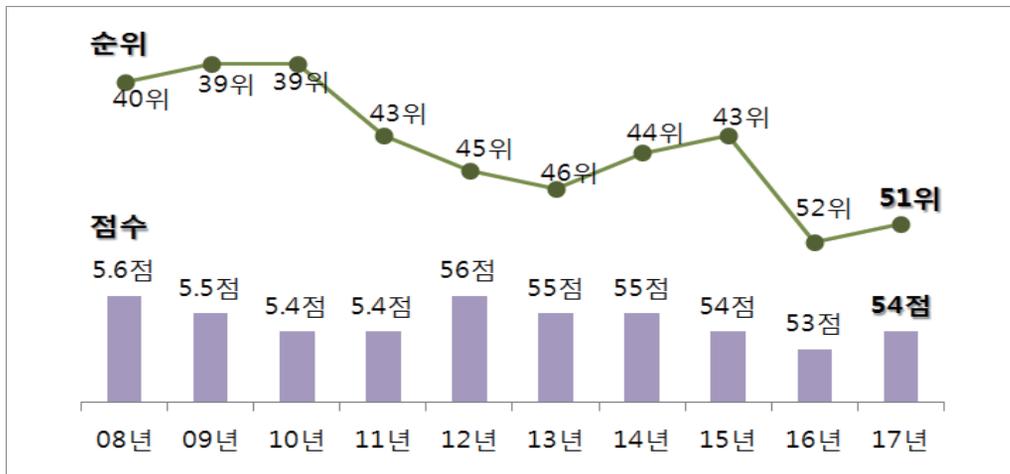
제 2 장 대외적 평가

| 제 1 절 | 2017년도 부패인식지수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는 매년 부패인식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를 발표하고 있다. 부패인식지수는 공공·정치 부문에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부패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기업인과 애널리스트 등의 평가결과를 집계하여 산출되며, 현재까지 국가간 청렴수준을 비교하는 대표적인 지표로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올해 2월에는 2017년도 부패인식지수가 발표되었다. 한국의 2017년도 부패인식지수는 100점 만점에 54점으로서 전체 측정대상 180개국 중에서 51위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전년대비 1점, 순위는 1단계 상승한 결과이다. 다만 51위는 우리나라의 국력이나 경제수준 등에 비하여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범정부적 차원의 강력하고 지속적인 반부패 정책의 추진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우리나라의 CPI 점수 현황]



※ 2018년도 CPI는 '19년 초 발표 예정

| 제 2 절 | 세계부패바로미터(GCB)

국제투명성기구(TI)에서 발표하는 세계부패바로미터(GCB, Global Corruption Barometer)는 전 세계 111개국(17년 기준)의 자국민들을 대상으로 국가별 ①최근 부패 수준 상승 여부, ②정부의 반부패 노력에 대한 평가, ③지난 1년간 부패경험(뇌물 제공 경험), ④부패에 대한 행동양식 등을 조사한다. 조사는 간헐적으로 이루어져 최근에는 3~4년에 한 번씩 결과가 발표되고 있다.

'17년 조사(15.7월~17.1월)는 우리나라 16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고 그 결과 우리나라의 부패수준이 상승했다는 응답이 50%였으며, 정부의 반부패 노력이 효과적이지 않다는 응답이 76%이다. 한편 지난 1년간 뇌물을 제공한 경험은 3%로 독일·호주와 유사한 수준이었으며 부패척결을 위해 힘을 모을 수 있다는 응답이 66%로 나타났다.

| 제 3 절 | 공공청렴성지수(IPI)

독일 베를린 소재 유럽 반부패·국가역량연구센터(ERCAS, European Research Centre for Anti-Corruption and State-Building)에서 2015년부터 격년으로 발표하는 공공청렴성지수(IPI, Index of Public Integrity)는 총 109개국을 대상으로 ①사법부 독립성, ②행정적 부담, ③거래 개방성, ④예산 투명성, ⑤전자적 시민권, ⑥언론의 자유를 측정하고 이를 종합하여 점수와 순위를 도출한다.

'17년 조사 결과 한국은 8.09점(10점 만점), 23위(전체 109개국)를 차지하였다.

[우리나라의 IPI 점수 현황(2017)]

순위	IPI 총점	사법부 독립성	행정적 부담	거래 개방성	예산 투명성	전자적 시민권	언론의 자유
23위	8.09	5.44	9.61	8.97	8.93	8.28	7.30

제 2 편

청렴한국 실현을 위한 반부패 정책

제1장 반부패 개혁 기반 마련

제2장 민관협력 반부패 거버넌스 확립 및 국제협력

제3장 청렴한 공직사회를 위한 행위기준 정비

제4장 각급기관의 청렴도 향상 지원

제5장 실효성 있는 부패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

제6장 체계적인 부패·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제7장 청렴문화 확산 및 청렴교육 강화

제 1 장 반부패 개혁 기반 마련

| 제 1 절 | 반부패정책협의회 운영

1. 추진 배경

반부패 정책은 개별 공공기관이 아닌 범정부 차원에서 기획되고 운영되어야 효과성이 나타날 수 있는 분야이다. 국민권익위는 국가적 차원의 반부패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구체화한 대책을 논의하는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반부패 정책 추진을 위하여 '반부패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를 출범하였다.

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근거는 '반부패정책협의회규정(대통령훈령 제369호)'이며 동 규정에 따라 협의회는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다. 협의회는 우리나라의 반부패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하여 정책적 사항을 논의하는 구심점으로서 의미가 크다.

2. 구성 및 기능

협의회의 의장은 대통령이 되고, 위원은 국민권익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국무조정실장,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인사혁신처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관세청장, 경찰청장,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으로 한다. 그밖에 협의회의 상정안건 관계기관장이 참석하며 감사원장과 국가정보원장이 배석하도록 하였다.

협의회는 국가차원의 부패방지대책 수립 및 추진, 부패 관련 현안에 대한 정부대책, 부패방지대책 추진상황 점검 및 이행관리, 부패관련 실태조사·정보공유 등 효율적인 부패 방지대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의한다.



제2차 반부패정책협의회 ('18.4.18)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 ('18.11.20)

3.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

정부출범 후 첫 개최된 제1차 협의회('17.9.26)에서는 정부의 반부패정책 추진 전략과 함께 중대 부패범죄 처벌강화 및 토착비리 근절(법무부), 민생 관련 불공정행위 근절(공정위), 방위사업 비리 척결방안(국방부) 등 주요 반부패 대책을 논의하였다.

한편, 청렴사회민관협의회 민간위원이 함께 참여하였던 제2차 협의회('18.4.18)에서는 함께 하는 청렴, 깨끗한 공직사회, 투명한 경영환경, 실천하는 청렴 등 4대 전략 50개 과제로 구성된 중장기 반부패 로드맵인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을 발표하였다.

제3차 협의회('18.11.20)에서는 국민 생활 속 불공정 관행과 부조리 등 이른바 ‘생활적폐’ 개선을 주제로 하여, 보조금 부정수급 및 ‘사무장병원’ 문제, 채용비리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였다. 또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성과를 내야 한다는 데에 공감하고, 이를 위한 후속조치로 ‘생활적폐 대책 협의회('18.12.10)’가 출범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반부패정책협의회는 범정부 차원의 반부패 정책을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장으로서 더욱 발전되어야 한다. 국민권익위는 국민 관점에서 개선이 필요한 다양한 반부패 영역과 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협의회에 의제화함으로써 실질적인 논의가 진척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반부패정책협의회 주요 내용]

구 분	주요 내용
제1차 (‘17.9.26.)	• 반부패정책 추진전략, 중대부패범죄 처벌강화 및 토착비리 근절방안, 민생관련 불공정행위 근절 대책, 방위사업 비리 척결방안 등
제2차 (‘18.4.18.)	•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 안전분야 부패방지방안, 공공분야 갑질근절 방안, 기술유출 방지 및 해외범죄수익 환수, 역외탈세 차단 등
제3차 (‘18.11.20.)	• 생활적폐 과제(학사비리 근절, 유치원 공공성 강화,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보조금 부정수급, 지역 토착비리 개선 등) 및 청탁금지법 중점 운영방향

| 제 2 절 |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 수립

1. 추진 배경

부패는 어느 특정한 기관이나 특정한 분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법·제도와 관행, 내·외부 문화 등에 따라 다양한 양태로 발생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국가 청렴도 제고를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반부패 문제를 총괄·관리할 필요성이 크다. 다시 말해 다양한 영역의 반부패 과제를 총괄·집약하고 이를 로드맵 형태로 구체화함으로써, 실질적인 개선을 이루어나가는 전략적 접근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중장기 반부패 로드맵 수립에 박차를 가하였다. 로드맵은 각급 기관에서 취합된 반부패 과제를 기본으로 하여, 국민생각함 및 청렴사회민관협의회, 2030세대 간담회 등 국민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조율 등을 거쳐 점차 구체화되었다. 그렇게 완성된 결과물이 제2차 반부패정책협의회(18.4.18)에서 발표된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이하 5개년 계획)’이다.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 발표 (18.4.18)]



2. 주요 내용

5개년 계획은 ‘국민과 함께하는 청렴한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하에 2022년까지 세계 20위권의 청렴국가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함께하는 청렴, 깨끗한 공직사회, 투명한 경영환경, 실천하는 청렴 등 4대 전략 50개 과제가 마련되었다.

‘함께하는 청렴’은 범정부 차원에서 국민과 함께 부패에 대응하는 전략으로서, 국가청렴정책의 견고한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다. 대통령 주재 반부패정책협의회 운영과 함께 청렴사회민관협의회 등 반부패 민관협력 거버넌스 등의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깨끗한 공직사회’는 공공분야의 부패 유발요인부터 착실히 정비하여 공직 청렴성을 향상하는 부문으로, 공공재정 누수방지, 청탁금지법 및 행동강령 등 강화된 공직윤리 과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도록 민간부문 청렴도 개선을 지원하는 내용은 ‘투명한 경영환경’ 부문에 제시되어 있다. 그간 반부패 정책이 공공분야 중심이었다면, 향후에는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민간부문 부패 역시 개선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 하에 기업 회계 투명성 강화 및 건축분야, 보건의료분야 등 분야별 개선이 추진된다.

마지막 ‘실천하는 청렴’ 전략에서는 부패행위에 대한 엄정한 제재와 함께 공익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 우리사회의 청렴문화 확산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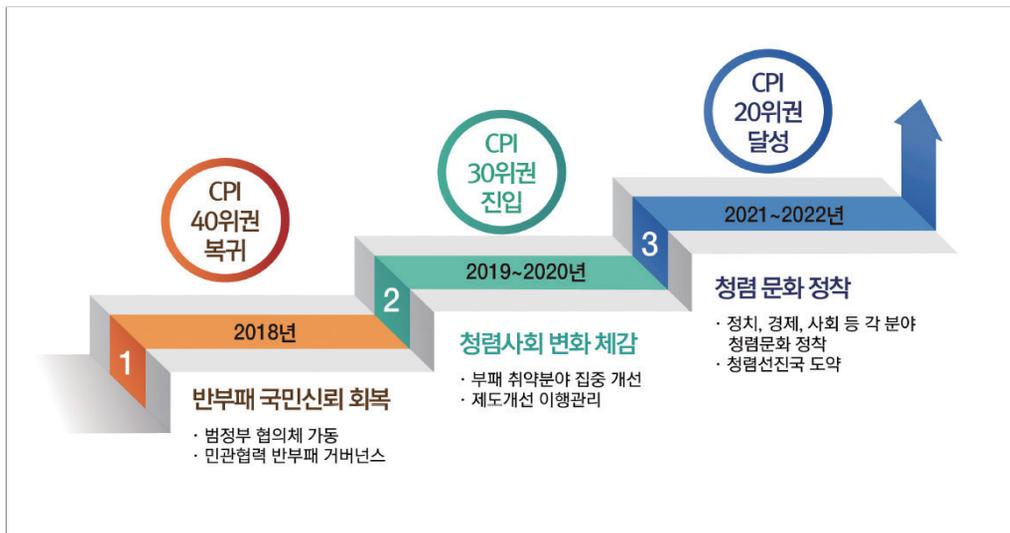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 주요내용]

4대 전략	주요 내용
함께하는 청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관협력 반부패 거버넌스 확립 • 반부패정책협의회 등 범정부 차원의 반부패 정책 추진
깨끗한 공직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재정 누수방지 제도정비 • 청탁금지법 등 강화된 행위기준 정착 • 공직자의 사적 이해충돌 방지 체계 확립 • 공공분야 갑질 근절 • 공직자 재산등록 실효성 제고 등
투명한 경영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회계 투명성 강화 • 재건축·재개발 분야 비리 예방, 보건·의료분야 부패개선 등
실천하는 청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패·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보호 강화 • 참여와 협력에 기반한 안전분야 부패방지 • 반부패·청렴 사회협약 확산 • 공직자 및 미래세대 청렴교육 강화

3. 향후 계획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5개년 계획은 국가청렴도 제고를 위해 관계기관과 유기적 협업 하에 수립된 중장기 로드맵이라는 데에 의의가 있다.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 부패에 이르기까지 영역이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반부패 기반 조성부터 청렴문화 확산까지 다양한 과제가 망라되어 있다. 국민권익위는 관계기관과 함께 이행실적과 점검 등도 협력하여 나갈 계획이다.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 단계별 기대효과]



| 제 3 절 |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 출범

1. 추진 배경

공공기관에서의 채용비리는 취업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는 2030세대에게 깊은 불신과 좌절감을 주고 사회 불평등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크다. 지난해 강원랜드 등 일부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채용비리는 우리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으며,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 및 비리 연루자 제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었다.

이에 정부는 철저하고 신속한 진상규명과 비리 연루자에 대한 엄정한 대응으로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발본색원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고, 전 공공기관에 대한 특별점검을 시작으로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종합 대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2. 추진 경과

1) 정부합동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정부는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를 위해 국민권익위,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이 협업하여 1,19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17년 10월부터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정부는 특별점검을 통해 전체 1,190개 기관 중 946개 기관에서 총 4,788건의 채용비리를 적발하였으며, 82건을 수사의뢰하고 255건에 대해서는 징계처분을 요구하였다. 피해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구제를 추진한 결과 2018년 10월까지 총 240명을 채용완료 하였고, 25명에게 다시 시험기회를 부여하는 등 피해자 구제를 계속 진행 중에 있다.

특별점검 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상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추진했다. 먼저 채용비리 연루자에 대한 업무배제와 퇴출 및 명단 공개, 부정합격자에 대한 합격 취소 근거를 관련 법령에 신설하였다. 그리고 채용비리와 관련된 징계 시효를 기존의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채용비리에 가담한 공직자들에게 보다 엄격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채용과정에 감사관실 등 내부 통제부서를 참여하도록 하고, 채용 관련 서류를 영구보존하게 하는 등 채용과정과 절차상 공정성이 보다 확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기획재정부는 제도개선 내용을 반영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2018년 9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중으로 현재 법률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국민권익위는 기타 공직유관단체에 대하여 제도 개선 내용을 반영하여 올해 12월까지 사규 등을 개정하도록 2018년 6월 권고하였다.

아울러 이러한 정책들이 제대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의 도입·운영 성과를 부패 방지 시책평가와 정부혁신평가 등에 반영하여 각급 기관의 자율적 노력을 유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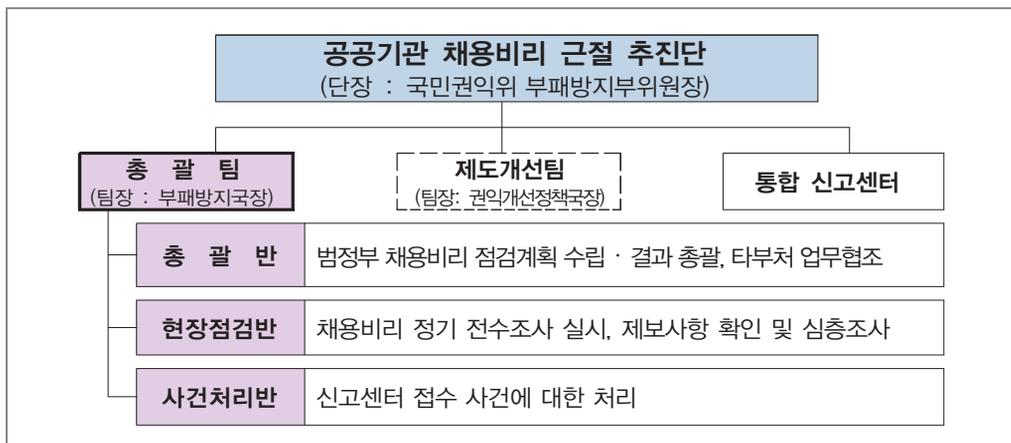
2)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 출범

정부는 특별점검 이후 채용비리와 같은 구조적 비리는 일회적인 대응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으며, 지속적인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였다.

이에 정부는 대통령 주재 제1차 ‘정부혁신전략회의’(3.19.)와 제2차 ‘반부패정책협의회’(4.18.)에서 공공기관 채용현장을 지속 관리·혁신할 수 있는 전담체계 구축을 결정하였다. 이후 9월 12일 국무총리훈령을 제정·공포하여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11월 2일 반부패 총괄기관인 국민권익위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이하 추진단)을 출범시키게 되었다.

추진단은 국민권익위 부패방지부위원장을 단장으로 총괄팀, 제도개선팀, 통합신고센터 등 2개 팀 1센터 3개 반으로 이루어져 있다. 총괄팀은 3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신고사건 확인 등 전체 총괄업무를 담당한다. 제도개선팀은 상설조직이 아닌 관계부처 감사담당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로서, 공정한 채용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그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통합신고센터는 채용비리 신고의 접수·상담을 담당한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 구성 체계]



3) 공공기관 채용비리 정기 전수조사 실시

추진단은 앞으로 매년 전 공공기관의 채용전반에 대한 강도 높은 정기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는 추진단 출범과 거의 동시인 지난 11월 6일부터 1,453개 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정기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특별점검 이후 신규채용과 최근 5년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그 조사 대상으로, 조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2단계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먼저 1단계 전수조사는 조사대상 기관의 감독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주관이 되어 신규채용과 전환과정에서의 규정과 기준·절차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2단계 심층조사에서는 1차 조사에서 심각한 비위가 발견되어 추가 조사가 필요한 기관, 채용비리 신고가 빈발하는 기관, 대규모 채용이나 전환이 있었던 기관 등을 대상으로 국민권익위,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및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보다 세밀한 조사를 진행한다.

정기 전수조사와 함께 같은 기간 채용비리 특별 집중신고기간도 운영하고 있다. 신고대상은 ▲ 인사정탁 ▲ 시험점수 및 면접결과 조작 ▲ 승진·채용 관련 부당지시 및 향응·금품수수 ▲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과정 특혜 등 인사·채용과정 전반에 걸친 부패 및 부정청탁 행위이다.

추진단은 접수된 신고에 대해 신속한 사실 확인을 거쳐 감사원·대검찰청·경찰청에 감사·수사를 의뢰하고 있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부처에 송부해 관련 내용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계부처와 공조해 신고를 처리하고 있다.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채용비리의 특성상 신고내용은 비리 빈발 분야와 비리 수법 등 파악, 2차 심층조사 대상기관 선정 등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내부신고가 중요한 만큼 신고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호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신고접수 단계부터 조사과정에 이르기까지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 불이익 처분의 금지 및 신분보호, 책임감면 등이 이루어진다.

조사결과 적발된 채용비리에 대해서는 인사권자에게 징계·문책·채용취소 등 엄정한 조치를 요청하고 비리 개연성이 농후한 경우에는 검·경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아울러 피해자의 범위를 확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재시험 기회 부여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채용비리 피해자를 구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점검 결과 드러난 정규직 전환을 포함한 채용과정에서 공정성을 저해하는 제도적 미비점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3. 향후 계획

추진단은 현재 진행 중인 정기 전수조사를 내년 1월까지 마무리하고 2월 중 조사결과 및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전수조사 결과 채용비리 취약 기관에 대해서는 관리·감독 부처와 함께 채용 제도·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 특별조사를 실시하고, 정기 전수조사 외에도 국회 및 언론 제기 의혹, 신고사건 접수 추이 등을 분석하여 취약분야를 중심으로 수시점검을 실시하는 등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제 2 장 민관협력 반부패 거버넌스 확립 및 국제협력

| 제 1 절 | 민관협력 반부패 거버넌스 확립

1. 추진 배경

정부는 그 간 청탁금지법 시행 등 정부 주도의 반부패전략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에 대한 국제사회의 부패인식지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고, 기업 등 민간영역의 부패 심화로 국가경쟁력 제고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극복하기 위해 사회 각 분야 및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수평적 반부패 민관협의를체를 구축하는 내용을 포함한 ‘시민과 정부가 함께하는 민관협력형 부패방지체계 확립’을 국정과제로 채택하였다.

이를 위해 2018년에는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을 제정하여 민관협의회 운영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시민사회, 경제단체, 지역활동가, 공공기관, 전문가 등과 20여 차례의 간담회·토론회를 실시하고 ‘반부패 민관협의체 구축·운영 등 민관협력형 부패방지체계 연구’(한국형사정책연구원) 용역을 통해 도출된 결과물 등을 토대로 ‘국민과 함께하는 청렴사회 만들기 기본계획’을 마련하였다.



반부패 시민단체 대표 간담회 ('17.7.21.)

국회 토론회 ('17.8.31.)



대구지역 활동가 간담회 ('17.11.28.)

공공기관 간담회 ('17.11.30.)

2. 추진 경과 및 성과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는 반부패정책 제안·점검·평가, 사회각계 및 국민의견 수렴, 청렴사회협약 체결 및 범국민 청렴실천운동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경제, 직능, 시민사회, 언론, 학계, 공공, 공익대표 등 사회를 대표하는 각 부문의 30인으로 구성되었으며, 국민권익위 위원장과 호선으로 선출된 민간의장의 공동의장제로 운영한다.

또한, 민관협의회 아래 실무협의회, 6개의 전문분과위원회(총괄, 정치·행정, 경제, 교육, 지역, 공정·신뢰)를 구성하였으며, 민관협의회는 반기별, 실무협의회는 분기별, 전문분과위원회는 격월을 주기로 회의를 개최하고, 필요시 공동의장의 동의하에 수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는 2018년 두 차례의 정기회의와 세 차례의 수시회의를 개최하였으며, 2018년 3월 6일 첫 회의에서는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에 반영할 정책과제를 논의하였고, 2018년 11월 2일 제5차 회의에서는 '공익법인 등 투명성 제고를 위한 외부감사인 선임제도 개선', '특수활동비 편성 및 집행관리 정책·제도개선', '법조계 전관예우 근절'의 세 가지 정책제안을 발표하였다.



제1차 청렴사회 민관실무협의회 ('18.2.28.)



제1차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18.3.6.)



제3차 총괄분과위원회 회의 ('18.7.24.)



제5차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18.11.2.)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운영 경과]

차수	날짜	주요 활동
제1차	'18.3.6.	협의회 민간의장 선출, 운영세칙 제정
제2차	'18.4.10.	청렴사회를 위한 부패인식지수(CPI) 제고 대책 보고, 반부패 총괄기구로서 국민권익위 기능 강화에 관한 토론
제3차	'18.6.29.	청렴사회 구현을 위한 제언 주제 토론, 운영세칙 개정
제4차	'18.10.5.	법조계 전관예우 근절 방안 주제 토론
제5차	'18.11.2.	공익법인 외부감사인 선임, 특수활동비, 법조계 전관예우 근절 관련 정책제안 안건 심의(보도자료 배포)

3.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정책제안

공익법인 등 투명성 제고를 위한 외부감사인 선임제도 개선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는 공익법인, 사립대학, 공동주택 회계감사의 투명성과 객관성, 공정성을 강화하여 감사 품질을 제고하고 회계부정·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외부감사인 선임제도를 개선할 것을 제안한다.

1. 회계감사를 받는 대상이 외부감사인을 직접 선임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감독기관 또는 제3의 기관이 일정 자격기준을 갖춘 외부감사인 풀(pool)을 구성하여 무작위 배정 등 객관적인 방식으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는 감사인 지정제를 시행한다.
2. 부정·비리를 예방하기 위하여 감사결과에 비영리법인 등의 특성을 고려한 재무제표 외의 추가적인 확인 사항을 함께 기재한다.
3. 회계감사가 적절하게 수행되었는지 확인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4. 위 방안은 현재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받고 있는 총자산가액 100억원 이상의 공익법인, 사립대학을 설치한 학교법인,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에 우선 적용하되, 추후 다른 분야로 확대할 것을 검토한다.

2018년 11월 2일

특수활동비 편성 및 집행관리 정책·제도개선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는 정부와 국회의 부당한 특수활동비 편성·집행 관행을 중단하여 재정 낭비와 부패를 근절하고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1. 정부는 특수활동비의 개념인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에서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을 삭제하는 등 특수활동비의 적용 범위를 명확하게 한정한다.
2. 정부와 국회는 업무 특성 상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특수활동비 예산편성 요구를 중단하거나 그 규모를 감축하고, 기획재정부 등은 외부 전문가의 참여 하에 특수활동비 예산편성에 대한 객관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각 기관이 제출한 예산편성 요구안을 엄격하게 심사한다.
3. 특수활동비가 편성된 국회와 정부기관에서는 특수활동비를 정기적으로 선지급하는 관행을 중단하고, 필요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실제 특수활동 수행자에게 지급한다.
4. 정부는 특수활동비 집행 결과보고서 등을 국회에 제출하고, 정부와 국회는 수사·정보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수활동비 집행에 관한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한다.
5. 감사원 등은 특수활동비 부당 사용 여부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집행내용확인서 생략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을 개정한다.

2018년 11월 2일

법조계 전관예우 근절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사법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법조공직자 출신 변호사가 수사 및 재판에서 정당한 근거 없이 유리한 처분을 받는 소위 ‘전관예우’ 관행을 ‘전관특혜’ 또는 ‘전관비리’로 규정하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1. 대법관, 헌법재판관 등 고위 법조공직자는 퇴직일로부터 최소한 일정기간 변호사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고, 등록 제한기간 동안 법조연구·교육 등 공익적 활동을 하도록 권장한다.
2. 공직에서 퇴임하여 개업한 변호사가 퇴임 전 소속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하는 기간(현행 1년)을 연장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을 도입한다.
3. 법관이 퇴직 후에도 경륜을 활용하여 재판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시니어법관 제도를 도입한다.
4.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자료 등의 공개 및 심사절차의 강화 등 전관예우 의혹에 대한 감독기능을 더욱 강화한다.

2018년 11월 2일

한편, 중앙단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출범과 더불어 지역사회 청렴문화 확산과 반부패 정책에 대한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 지역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표준조례안을 마련하여 배포하고 17개 광역시·도 청렴윤리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2018년 10월 말 기준 15개 광역시·도가 지역 청렴사회민관협의회 구성·운영 조례를 제정·공포하고, 15개 지역이 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발족하는 등 지역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민·관 협력 기반을 마련하였다.

[지역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현황]

조례	자치단체명	조례 공포일	협의회 구성일	비고
1	서울특별시	-	2018.11.28.(구)	'19년 예정
2	부산광역시	2018.09.19.	2018.10.25.(출)	
3	대구광역시	2018.07.02.	2018.10.29.(구)	
4	인천광역시	2018.10.08.	2018.10.23.(출)	
5	대전광역시	2018.10.05.	2018.10.30.(구)	
6	광주광역시	2018.10.15.	2018.10.30.(구)	
7	울산광역시	2018.07.26.	2018.10.19.(구)	
8	세종특별자치시	2018.08.10.	2018.10.31.(출)	
9	강원도	-	-	'19년 예정
10	경기도	2018.10.01.	2018.11.26.(구)	
11	충청남도	2018.10.30.	-	
12	충청북도	2018.08.03.	2018.09.12.(출)	
13	경상남도	2018.10.11.	2018.11.12.(구)	
14	경상북도	2018.10.01.	2018.10.28.(구)	
15	전라남도	2018.06.28.	2018.10.29.(출)	
16	전라북도	2018.08.10.	2018.09.19.(출)	
17	제주특별자치도	2018.10.11.	2018.10.22.(구)	

※ 범례 : (구)=구성일, (출)=출범일

| 제 2 절 | 반부패 국제협력 강화

한국은 2020년 제19차 국제반부패회의(IACC, International Anti-Corruption Conference)를 개최할 예정이다. IACC 위원회는 10월 25일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제18차 IACC 폐막식에서 한국을 차기 개최국으로 공식 선언했다.

IACC는 세계 반부패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와 주최국 정부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격년 회의로 명실상부한 최대규모의 국제 반부패 연대의장이다. 동 회의에는 140여개국 각료급 대표와 시민사회, 국제기구, 언론인 등 반부패 전문가 2천여명이 참석한다.

최대 규모의 행사답게 5개의 전체세션과 50여개의 워크숍이 병행 운영되며, 부대행사로 국제반부패영화제, 청렴콘서트도 열린다. 특히 2030세대의 참여를 위해 세계 각국의 청년기자단을 선정해 이들이 현장취재와 인터뷰, SNS 홍보를 담당하게 된다.

국민권익위는 새 정부 출범 이후 2018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IACC 회의 유치에 위해 노력해왔다. IACC 위원회가 한국을 선정한 이유에 대해 '대한민국이 청렴사회를 향한 시민사회의 역량을 결집해 평화적이고 민주적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민·관 협력형 반부패 거버넌스를 실현해 가고 있는 점'에 주목했다고 밝힌 바 있다.

2020년 6월 서울에서 열리게 될 제 19차 IACC는 대한민국의 반부패 경험과 교훈을 전 세계와 공유함으로써 국제사회와의 반부패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국내 공공부문·시민사회·기업의 청렴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 3 장 청렴한 공직사회를 위한 행위기준 정비

| 제 1 절 | 청탁금지법 시행성과와 발전방안

1. 추진 개요

청렴사회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바탕으로 제정·시행된(2016년 9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은 관행으로 용인되어 왔던 청탁이나 접대행위에 대한 국민의 의식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또한, 2018년 9월에 실시한 청탁금지법 인식도 조사 결과에서도 국민 89.9%, 공무원 95.6%, 공직유관단체 97%, 교육계 90.7% 등이 법 시행에 찬성한다고 응답하여 청탁금지법에 대한 사회 전반의 높은 지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지지를 바탕으로 청탁금지법이 안정적으로 정착함으로써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2. 추진 경과 및 성과

1) 시행령 개정 및 확산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사회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변화와 반부패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전문연구기관·관계부처 등의 의견과 연구결과를 분석하여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 농축수산물에 대해 보완 대책을 마련하여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개정·시행(2018년 1월 17일)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선물의 경우 이전 상한액인 5만원을 유지하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 농축수산물은 예외적으로 10만원까지 인정하고, 경조사비의 경우 5만원으로 하향 조정하되 화환·조화는 10만원까지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현금과 유사하고 사용내역 추적이 어려워 부패에 취약한 유가증권을 선물에서 제외하였다. 그 외에 입법취지와 현실여건에 맞도록 외부 강의등과 관련된 기준을 간소화하였으며, 청탁금지법 준수서약서 제출부담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시행령 개정 이후 국민권익위는 변경된 내용에 대한 혼선을 방지하고 조속한 정착을 도모하

고자 TV자막·전광판, 라디오 광고, 포스터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개정 사항을 집중적으로 안내하고, 개정 매뉴얼·해설서 게시, 협조 공문 등을 통해 자율적 교육·홍보를 촉진하여 각급 기관의 청렴 의지를 확보하였다.

2) 부패유발적 관행 및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국민권익위는 법 위반 행위에 엄정하게 대처하기 위해 제도를 보완하고, 부적절한 관행이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 청탁금지법의 취지가 구현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국민 청원 등 피감기관 예산으로 해외출장 지원을 받는 관행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함에 따라 공공기관의 해외출장 지원 실태를 점검하고 제도보완 대책을 마련하였다. 국민권익위 총괄 하에 범정부점검단(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을 구성하여 점검을 추진하였으며, 청탁금지법, 공무원 행동강령을 모두 적용받는 1,483개 기관을 대상으로 2018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실시하였다.

점검 내용은 2016년 9월 28일부터 2018년 4월 30일까지 각급 기관에서 수행한 해외출장 중 다른 기관 공직자에게 예산으로 지원한 해외출장과 공직자가 민간기관·단체 등으로부터 지원 받은 해외출장의 부당지원 소지 여부였다. 점검 결과 공식적 행사(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 또는 법령·기준에 따른 지원이나 국익목적 등 사회상규(같은조제3항제8호)에 따른 지원으로 보기 어려운 사례들은 22개 기관 51건으로 파악되었다. 국민권익위는 점검 결과와 함께 부적절한 해외출장 관행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7월 26일 브리핑을 통해 국민께 소상히 보고하였으며, 8월28일 국무회의 보고로 종합대책 이행을 위한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하였다.

3) 공공기관의 청탁금지법 운영 실태조사 실시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2016년 9월 28일)부터 2018년 6월말까지 각급 공공기관 제도운영 현황과 법 시행성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위반신고 접수·처리 현황 및 교육현황 등을 조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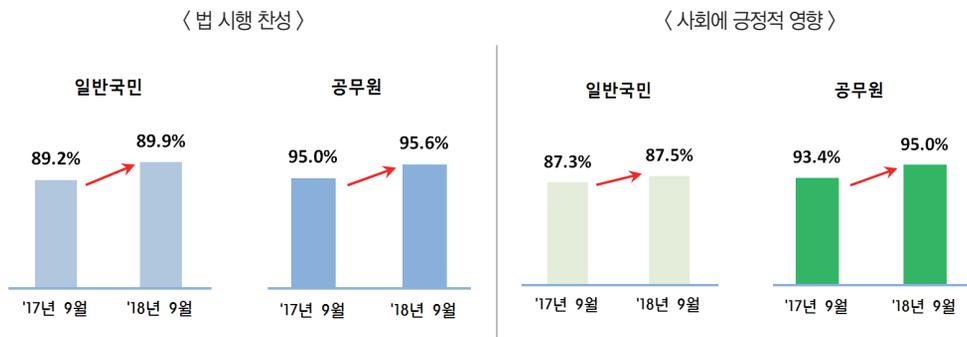
조사 결과, 위반신고 총 접수 건수는 11,805건이며, 부정청탁이 2,490건(21.1%), 금품등 수수가 1,512건(12.8%), 외부강의등이 7,803건(66.1%)으로 나타났다. 이 중 과태료,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은 것은 167건으로 나타났다.

4) 청탁금지법 시행 효과 분석을 위한 인식도 조사 실시

한국리서치 2018년 9월에 발표한 청탁금지법 인식도 조사(일반국민 1,000명, 공무원 503명,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303명, 초중고 및 대학교원 408명, 언론사 임직원 200명, 영향업종 602명 등 총 3,016명 대상 조사)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시행에 대한 주요 주체들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사 결과 국민(89.9%), 공무원(95.6%)의 대다수가 법 시행에 찬성하고,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으며, 그 비율도 '17년 대비 증가하여 청탁금지법에 대한 높은 지지를 확인하였다.

[인식도 조사 결과('18.9월, 한국리서치)]



또한, 법 시행으로 접대 문화 등 사회적 관행의 변화도 관찰되었다. 모든 집단에서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상대방의 더치페이 제안을 이해하게 되었다고 응답하였으며, 다수 응답자가 더치페이를 하는 것이 편해졌고, 스스로 더치페이를 하고 싶어졌다고 하였다.

[체감변화 긍정 응답 비율(%)]

조사 항목	일반 국민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교원	언론인
더치페이 하는 것이 편해졌다	69.2	77.7	76.9	67.4	49.0
스스로 더치페이를 하고 싶어졌다	69.4	82.1	80.2	73.0	55.0
상대방의 더치페이 제안을 이해하게 되었다	83.2	90.1	89.1	83.6	72.5

5) 각급 기관의 법 집행력 확보를 위한 교육·홍보 활성화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법 적용대상자가 법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법 취지에 부합하는 제도 운영이 가능하도록 각급 기관별 상담·신고 처리를 담당하는 청탁방지담당관을 중심으로 워크숍과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이전 워크숍에서 제기된 건의사항과 공공기관 청탁금지법 운영 실태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9월에는 전 기관 대상 권역별 워크숍(4개 도시 6회)을, 11월과 12월에는 기관 유형별 간담회(교육 분야)·워크숍(언론사, 지방의회)을 개최하였다.

전 기관 대상 워크숍은 청탁금지법 주요 내용, 사례 해설 및 질의응답과 함께 공무원 행동강령·신고자 보호 유의사항까지 종합적인 교육이 이루어졌다. 기관 유형별 워크숍은 청탁금지법 주요 내용, 사례 해설, 제도운영 유의사항 및 질의응답으로 구성하여 집중교육이 이루어졌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그간 축적된 1만8천여건의 청탁금지법 해석요청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국민들의 해석요청이 집중된 분야에 대해 해석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시행령 개정과 청탁금지법 해석자문단 회의 등을 통해 새로이 정립된 내용을 반영한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사례집’을 발간하였다.

주요 질의사례 앞부분에 관련 법령 및 주요내용을 먼저 설명하여 따로 법령집이나 해설집을 찾아보지 않아도 기본적인 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해설질의건은 청탁금지법을 이해하는데 기본이 될 만한 사례와 다수의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빈발사례를 선별·계재함으로써 청탁금지법을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길잡이가 되도록 하였다.

6) 청탁금지법 해석체계 개편을 통한 해석율 제고

청탁금지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법에 대한 유권해석 질의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청탁금지법에 대한 유권해석 질의가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한 '16년 8월부터 '18년 12월까지 국민권익위에 접수된 질의는 총 1만9천여건에 달하였다.

국민권익위는 국민들의 해석요청에 명확한 답변을 제공하기 위하여 법학, 경제학, 교육, 언론, 시민단체 등 전문가로 구성된 청탁금지법 해석자문단을 위촉, 총 8회의 회의를 개최하여 이해관계가 첨예하거나 해석이 분분한 사안, 새로운 쟁점이 부각되는 분야 155건에 대해 자문을 실시하였다.

또한, 각급기관의 유권해석 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청탁방지담당관으로 질의창구를 일원화하고, 국민권익위 내부의 유권해석 프로세스를 개선함으로써 청탁금지법 유권해석율을 획기적으로 제고('17년 12월 69.9% → '18년 12월 94.9%)하였다.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답변 현황 (2018년 12월 19일 기준)]

구 분	소 계	공문서면질의 (질의건수)	홈페이지 (접수건수)	국민·청렴신문고 (접수건수)
질의	19,713	6,121	8,192	5,400
답변	18,698	5,388	8,088	5,222
비율(%)	94.9%	88.0%	98.7%	96.7%

* 공문서면질의의 경우 접수건별 질의서에 포함된 질문 개수를 모두 합산한 수치

* 위원회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신고상담의 경우 접수건수(등록건수)를 기준으로 집계

3. 향후 계획

청탁금지법은 시행 2년이 지난 지금도 사회 곳곳에서 이슈가 되고 있으며, 각계의 긍정적 관심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에 대한 국민, 법 적용집단 등의 높은 호응과 지지를 볼 때 청탁금지법은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며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겠으나, 국민권익위는 일부 분야에 잔존한 편법행위의 해소와 각급 기관의 책임 있는 제도 운영을 담보할 수 있는 보완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해 나갈 것이다.

먼저, 반부패·청렴이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될 수 있게 낯은 관행의 근절을 위한 국민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홍보를 지속할 계획이다. 또한, 부정청탁이나 금품등 수수가 일어날 수 있는 취약분야를 모니터링하고 법령이나 기준을 정비함으로써 예방 중심의 제도 보완을 추진할 것이다. 국민들이 할 수 있는 것과 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기준을 제시하는 한편, 일상 생활 속에서 새롭게 제기되는 쟁점사항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이 국민생활 속 규범으로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 제 2 절 | 공무원 행동강령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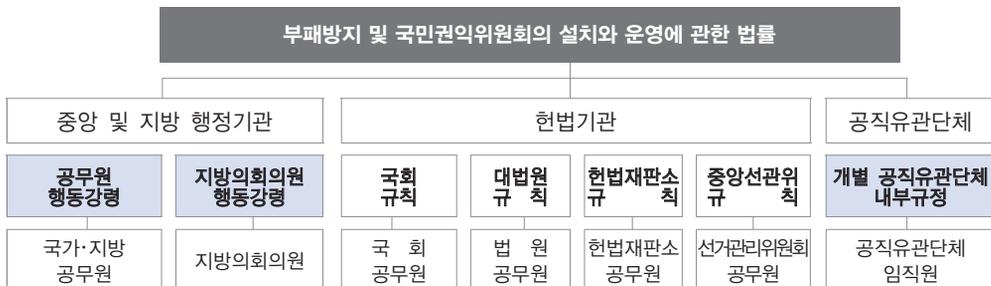
1. 추진 개요

행동강령은 공정한 공무수행과 부패행위의 예방을 위해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행위기준을 의미하는 것으로, 조직의 내부 구성원들이 기본적으로 지향해야 하는 가치를 담은 윤리강령과 구성원들이 따라야 할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하는 실천강령의 성격을 모두 포괄하고 있다.

공직자 행동강령의 근거 법령인 「부패방지권의위법」 제8조는 공직자가 준수하여야 할 행동강령을 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내부규정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모든 공공기관에 대해 행동강령의 제정·시행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동 규정은 공직자 행동강령에 정할 사항으로 ①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②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이권개입·알선·청탁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③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직자가 지켜야 할 사항, ④ 부패방지와 공직자의 직무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부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이 2003년 5월 19일부터 시행되었으며,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 역시 규칙으로 행동강령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이후 시행·운영 과정에서 꾸준히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며 발전해왔는데, 2005년 12월 9일 「공무원 행동강령」의 1차 개정을 시작으로 그간 7차례의 개정과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체계]



2. 추진 경과 및 성과

1) 이해충돌방지 및 민간부문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제도 도입

국민권익위는 공무원의 이해충돌 방지,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 등 「청탁금지법」으로 규율되지 않는 부패통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직자의 사익추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하였으며, 2018년 4월 17일 시행되었다.

그간 공직사회는 공직자 행위기준 강화에도 불구하고 「청탁금지법」 등으로 규율되지 않는 부패유발요인 개선을 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였고, 당초 「청탁금지법안」에 포함되었으나 법제화되지 못한 이해충돌방지제도의 필요성·시급성 등으로 법률 제정의 전 단계로서 공무원 행동강령에 도입할 목적으로 개정하게 된 것이다. 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무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사적 이해관계가 개입될 소지가 높은 유형을 구체화하고 이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하였다. 직무관련자 또는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공무원의 직무 재배정 등의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공무원은 회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신고·신청을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의 직무 참여의 일시중지,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직무 재배정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신고·신청·조치 현황을 기록·관리하도록 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절차를 마련하였다.

또한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 자치단체장 등 고위공직자가 임용 또는 임기개시 전 3년간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도록 하여 소속 기관의 장이 이를 보관·관리하도록 하였으며, 금지되는 공무원의 직무관련 영리 행위 등을 구체화하고 공무원의 직무수행과정에서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인사 및 조달행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공무원의 가족이 자신의 소속기관에 채용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퇴직자를 로비 수단으로 활용하는 등의 부패 통로 차단을 위하여 직무관련자인 소속 기관의 퇴직자와 골프, 여행, 사형성 오락을 같이 하는 등 사적으로 접촉하는 경우 신고의무를 부과하였다.

공무원의 알선·청탁 등 금지 상대방을 민간 분야까지 확대하고 민간에 개입할 소지가 높은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공무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의 노동력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규율하고, 공무원이 직무관련자 등과 금전 차용, 부동산 등의 거래를 하는 경우 신고하게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2) 공공부문의 갑질행위 금지규정 마련

공공분야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관행인 이른바 ‘갑질’을 바로 잡기 위하여 단계별로 종합대책을 마련·시행하고 향후 민간영역으로 확산하는 내용의 범정부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이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됨에 따라 동 대책에 포함된 과제이행의 일환으로 ‘갑질’에 대한 개념 및 구체적인 행동규범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8년 12월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하였다. 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공영역에서의 ‘갑질’의 개념을 우월적 지위·권한을 남용한 부당행위로 정의하고, 공무원이 지위나 직책을 이용하거나 그 지위나 직책에서 유래된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과 관련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나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조직·인사·예산 등 운영과 관련하여 그 기관에 소속된 기관이나 산하기관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는 행위
-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 없는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요구를 하는 행위
- 인가·허가·등록 등 업무 담당자가 부당하게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처리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 그 밖에 소속된 기관이나 산하기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의 정당한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요구하는 행위

갑질행위 금지규정의 신설로 갑질행위를 한 공무원을 신고한 피해자, 신고자 및 협조자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신분보장, 비밀보장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3) 공공기관의 부당한 해외출장지원 금지규정 마련

공공기관의 해외출장 지원 실태 점검결과 피감독기관이 모호한 기준으로 감사·감독기관의 공직자를 지원하거나 공식행사로 인정하기 어려운 해외출장에 예산을 부당하게 지원하는 등의 부적절한 관행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감사·감독기관에 대한 피감독기

관의 부당한 지원이나 과잉의전 행위 등을 금지하고, 부당한 지원요구를 받은 피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절차와 기준을 구체적으로 공무원 행동강령에 반영하여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개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감사·감독기관의 부당한 지원요구에 대한 피감독기관의 거부 조치 및 과잉의전 제공 금지 규정을 신설하였다.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목적·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해외출장 예산의 지원요구를 받은 피감독기관 소속 공직자는 이를 거부하도록 하였다. 또한, 감독기관이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나 의전을 피감기관에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러한 요구에 대하여 피감기관은 거부하도록 하였으며, 감독기관으로부터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 소속 공직자가 그 요구를 거부했음에도 같은 요구를 반복하여 받은 경우에는 피감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알리고, 행동강령책임관은 위반사실을 확인하여 피감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피감독기관의 장은 그 사실을 해당 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해당 요구를 한 소속 공무원에 대해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였다.

[공직자 행동강령 개정경과]

- 일부개정안 마련 및 개정안 보고(9.6)
- 개정안 분과위 및 전원위 상정(9.17)
- 관계기관 의견조회 및 입법예고(~10.31)
- 규제심사등 각종 입법 영향 평가 및 법제처 심사(~11.30)
-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상정('18.12월)
- 개정「공무원 행동강령」 공포 및 시행('18.12월)

3. 향후 계획

국민권익위는 공직자 행동강령 제도를 총괄하고 각급 기관의 행동강령 운영을 지원하는 정책기능을 수행하는 한편,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처리, 각급 기관의 행동강령 운영 및 이행실태를 점검하는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통하여 우리 공직사회가 청렴하고 투명하게 운영되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있다.

2019년에는 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의 새로운 제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에 대한 전방위적 지원활동을 전개해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관별 행동강령 제·개정에 대한 지원 및 심사를 강화하고, 개정 사항에 대한 교육·홍보도 다각도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해충돌방지제도, 갑질근절 규정 및 부당한 해외출장 지원금지 등 개정 규정

의 시행 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운영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향후 이해충돌방지 제도의 입법화 작업시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설된 행동기준의 위반 신고사건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신속하게 조사·처리하고, 언론보도, 청렴도 측정결과, 부패신고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행 점검 대상기관을 선정하고 각급기관별 행동강령 운영·이행실태를 점검함으로써 공직자 행동강령이 모든 공공기관에서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제 4 장 각급기관의 청렴도 향상 지원

| 제 1 절 |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1. 제도 개요

국민권익위는 공공부문의 반부패 정책방향이 주로 적발·처벌 등 사후적 대책에 집중되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2002년부터 매년 공공기관의 청렴수준을 과학적으로 진단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이 자율적으로 청렴수준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부문의 청렴수준에 대해 국민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게 하여 부패척결과 청렴도 개선에 대한 공감대 형성의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청렴도는 공공기관의 행정서비스를 경험한 국민(외부청렴도), 기관 내부 직원(내부청렴도), 전문가·업무관계자(정책고객평가) 등이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와 기관에서 실제 발생한 부패사건을 점수화한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을 적용하여 '종합청렴도'로 산정하고 있다. 공공기관 중에서도 일반 공공기관과 수행기능의 차이가 큰 공공의료기관, 국공립 대학교, 지방의회 등은 별도의 모형을 적용하여 측정하고 있다. 기관별 등급(1~5등급)과 점수(10점 만점)를 산정하며, 1등급일수록, 10점에 가까울수록 높은 청렴수준을 나타낸다.

2. 추진 사항

2018년에는 중앙·지방 행정기관, 교육청(교육지원청 포함), 공직유관단체, 국공립 대학교 및 공공의료기관 등 총 705개 공공기관의 청렴도를 측정하였다. 702개 기관을 측정한 작년에 비해 3개 기관이 늘어났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새만금개발청, 10개의 교육대학교와 채용비리 등 부패사건이 발생한 38개의 공공기관을 새롭게 측정하였다. 작년에 47개소를 측정한 지방의회의 경우 지난 6월 지방선거로 구성이 변경되는 점을 감안하여 올해는 측정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지난 12월 5일 측정결과를 발표한 612개 공공기관의 청렴도는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행정서비스를 경험한 국민 등 총 23만 7천여명의 설문조사 결과와 지난 1년간의 부패사건 현황 등을 모두 반영하여 산출하였다.

올해는 청탁금지법의 시행으로 응답부담이 높아진 부패경험 문항의 설문을 개선²⁾하고, 부패와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측정항목을 조정·간소화 하는 등 응답자의 응답부담을 완화하고 측정의 타당성을 제고하였다. 또한 공공기관의 외부 면접위원을 설문대상자로 추가하여 조사하고, 갑질 관행 관련 내용을 설문 문항에 반영하여 채용비리, 갑질 관행 등 부패 관련 환경 변화를 반영하였다.

[청렴지도 예시]



※ 지역 클릭시 기관별 청렴도 등급 공개

또한, 기관별 점수가 발표되어 순위 위주의 보도를 양산하고, 기관간 지나친 경쟁으로 우수 사례 공유가 저해되는 등 그동안 지적된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기관유형별 등급만 발표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였다. 기관별 점수와 세부 분석자료는 해당 공공기관에 별도로 제공하여 기관별로 자율적인 청렴정책 수립의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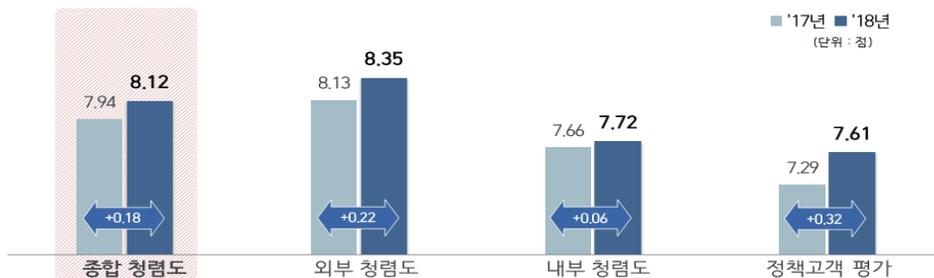
이 밖에도 청렴도 우수·향상기관의 사례(10개 기관)를 홍보하고, 그 중 2개 기관은 국민권익위의 ‘반부패 주간 기념식’에서 기관 담당자가 직접 발표하도록 하는 등 우수 사례 확산을 위한 홍보도 확대했다. 작년과 올해 청렴도 측정결과를 반영한 청렴지도도 제작하여 국민권익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였다.

2) (외부청렴도) 기존의 “본인이 금품을 제공한 경험”을 묻던 방식에서 “해당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본인 또는 동료가 금품 등을 요구받거나 제공한 경험”으로 확대
 (내부청렴도) “금품 등을 제공한 경험”을 묻던 방식에서 “요구받거나 제공한 경험”으로 확대

3. 2018년 측정 결과

지난 12월 5일 발표한 612개 공공기관의 종합청렴도 평균점수는 전년 대비 0.18점 상승한 8.12점으로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정책고객평가 영역의 점수가 모두 상승하였고, 특히 공공기관의 외부인이 평가하는 외부청렴도와 정책고객평가 점수가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종합청렴도와 각 영역별 점수 비교 (2017년~2018년)]



설문 응답자들의 부패경험률도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추세다. 작년에 비해 외부평가 설문에 응답한 국민은 0.7%, 정책고객평가에 응답한 전문가·업무관계자 등은 2.1%가 부패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이는 작년에 비해 각각 0.3%p, 0.7%p 낮아진 수치다. 내부직원의 예산집행, 업무지시와 관련한 부패경험률도 전년대비 각각 3.4%p, 3.0%p 감소하였고, 인사업무 관련 부패경험률은 작년과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부패경험률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추세임에도 공공서비스를 경험한 국민(전년 대비 -0.05점)과 내부직원(전년대비 -0.11점)은 '부정청탁에 따라 업무처리를 하는 정도'가 높아졌다고 응답했고, 전문가 등 정책고객(전년대비 +0.28점)은 개선됐다고 응답했다. 실제 부패경험이 줄어들어도 외부 국민과 내부직원의 부정청탁 인식이 악화된 것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로 부정청탁에 대한 높아진 눈높이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기관 유형별로는 작년과 유사한 수준을 보이는 광역자치단체를 제외한 모든 유형의 종합청렴도 평균 점수가 상승하였고, 특히 중앙행정기관이 평균 0.47점 상승하여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다.

| 제 2 절 | 부패방지 시책평가

1. 제도 개요

국민권익위는 공공기관의 자발적인 반부패 노력을 평가·지원함으로써 공공부문 청렴수준 제고라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2002년부터 매년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실시해 오고 있다(「부패방지권익위법」 제27조의 2에 근거).

각급 공공기관이 제출한 추진 실적에 대해 외부·내부전문가단의 서면 평가, 현지점검을 통한 실적 확인을 거쳐 점수를 산출하고, 그 결과에 대해 유형별로 등급을 산정하여 발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2018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상기관은 270개로, 청렴도 2년 연속 2등급 이상인 기관을 제외하고 2017년 청렴도 4, 5등급 기관을 신규로 포함하여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 간 연계를 강화하였다.

2. 추진 사항

1) 평가체계

2018년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청렴 정책의 진행 절차에 상응하여 평가부문을 계획, 실행, 성과·확산의 3단계로 구성하고, 부패사건 외부적발과 부패방지제도 운영 불이행을 감점으로 포함시켜 운영하였다.

상세 단위 과제로는 ①계획 부분에는 반부패 추진 계획 수립·이행, ②실행 부분에는 ①청렴생태계 조성, ②부패위험 제거 개선, ③청렴문화 정착, ④성과·확산 부분에는 ①청렴개선 효과, ②반부패 수범사례 개발·확산이 있으며, 평가의 연속성 및 각급 기관의 지속적인 노력 유도를 위해 2017년 평가 체계를 유지하였다.

2) 운영 성과

2018년 부패방지 시책평가의 결과와 분석 자료는 2019년 2월에 발표될 예정이다.

다만, 새 정부 출범 이후 각급 공공기관들은 청렴한 대한민국 실현을 위해 국민권익위 시책평가를 활용하여 적극적인 반부패 노력을 추진하였다.

기관 업무 중 부패취약분야를 자율적으로 발굴하고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부패발생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였고, 조직 내 반부패 분위기 확산과 부패 발생 방지를 위해 내부 자체 감사 및 점검 노력을 강화하였으며, 부정청탁 신고체계를 구축하는 등 공직 사회 전반에 청렴 문화 형성의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ICT를 이용한 부패방지 등 타 기관에 통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례를 발굴하고,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도입을 통해 청렴정책 추진에 국민이 소통하고 참여하는 통로를 마련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

3. 향후 계획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상기관들은 평가 결과 공개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시책평가 결과를 해당기관의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게재(「부패방지권익위법」 제27조의3, 동법 시행령 제29조의2)하여야 한다.

국민권익위는 각급 기관별 공개 실적을 점검하는 한편, 평가 우수기관·담당자에 대한 정부 포상 추천, 반부패 해외교육훈련 참가 등의 인센티브도 전년에 이어 제공할 예정이다.

2019년에는 청렴도 하위 기관을 시책평가 대상에 우선적으로 추가해 기관 청렴도 개선을 위한 특단의 노력을 유도하고, 대형 부패사건 발생 기관을 평가대상에 신규로 포함하여 부패방지 필요성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예정이다.

평가과제와 관련하여서는 반부패 국정과제, 청렴도 진단결과 분석을 통해 도출된 각 기관별 부패취약분야 개선 의무화, 공직자 행동강령 제도화 등 주요 과제를 시책평가 과제로 이행하고, 2018년 평가 시 달성도가 낮았던 과제는 2019년에도 지속적으로 평가하여 각급 기관의 적극적 이행을 독려할 예정이다. 또한 사실상 이행이 완료된 과제는 제외하고 유사 성격의 지표는 통합하여 각 기관의 실질적 노력을 유도하고 평가부담을 줄여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국민권익위는 부패방지 시책평가가 평가 대상기관들의 청렴도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평가 대상기관이 참여하는 모형·지표개선 심의회, 간담회, 워크숍 등을 통해 반부패 추진과정에서의 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반영하여 지속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제 3 절 | 부패취약기관에 대한 청렴컨설팅 지원

1. 제도 개요

각급 기관에서는 자체적으로 반부패·청렴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등 자율적인 반부패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반부패·청렴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기관의 업무 특성과 문제점을 제3자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각급 기관의 고유한 업무 특성과 환경 변화를 고려할 때 기관별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통해 청렴도를 견인할 필요성이 있다.

청렴도가 낮은 기관은 부패문제와 연관된 구성원의 느슨한 행태와 조직의 낡은 문화에 대해 스스로 관대한 경향이 있다. 또한 청렴업무를 사업부서와 무관한 감사부서 업무의 일부로만 여기고, 부패취약 분야에 대한 관심이 적은 측면이 있다. 이와 같은 근원적인 문제에 대해 국민권익위가 객관적으로 청렴도 저조원인을 진단해서 구성원들에게 환기할 경우 개선효과는 배가 될 것으로 판단되었다.

청렴컨설팅은 제7차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06.3.17) 시 보고된 각급기관에 대한 컨설팅 기능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2006년부터 추진되었고,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2017년까지 기관별로 ‘청렴컨설팅’을 제공하였으나, '18년에는 매년 증가하는 컨설팅 수요(2015년 57개 → 2017년 66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역별 청렴도 우수기관의 노하우를 전수하기 위해 다수기관이 참여할 수 있는 ‘그룹 컨설팅’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그룹 컨설팅은 권역내에서 청렴도가 높은 기관을 ‘멘토기관’으로, 청렴도가 낮은 기관을 ‘멘티기관’으로 컨설팅 그룹을 구성한 후, 그룹 단위의 공동 컨설팅을 통해 기관간 청렴도 향상 노하우 공유와 우수 부패방지시책에 대한 상호 학습 등의 형태로 운영되었다. 2018년에는 총 10개 그룹(멘토기관 10개, 멘티기관 21개)에 대해 컨설팅을 실시하였다.

2. 추진 사항

국민권익위와 멘토기관은 멘티기관의 청렴도 저조 원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멘티기관의 업무, 제도, 반부패 추진체계, 내부통제 시스템, 구성원의 행태 등을 분석하는 반부패 역량진단을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청렴도 측정·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기관 내부 규정 및 통제시스템, 부패공직자 발생 현황, 외부기관 감사 결과, 언론보도 자료 등을 활용하였다. 또한, 전 직원이 참여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국민권익위, 멘토기관, 멘티기관, 청렴컨설팅 자문

위원이 참여하는 회의를 통해 그간 멘티기관이 추진해온 부패방지 시책의 내용과 실효성을 검토하여 청렴도가 오르지 않는 원인을 집중 분석하였다.

반부패 역량 진단결과에 따라 부패 취약분야와 청렴도 저조의 원인이 도출되면 그에 따른 기관별 맞춤형 조치 방안을 마련하였다. 특히 멘티기관에서는 그룹별 청렴컨설팅 회의를 통해 전수받은 멘토기관의 우수 반부패 시책을 기관 사정에 맞게 변형하여 적용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반부패 시책을 수립하여 실천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전체 멘토, 멘티기관이 참여하는 공동컨설팅을 추진하여 그룹 간 우수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였다.

3. 컨설팅 결과

2018년 청렴컨설팅을 지원받은 다수 기관의 청렴수준이 제고되었다. 컨설팅 개선안에 따라 자율실천계획을 수립·시행한 21개 기관의 평균 청렴도 향상율은 5.7%로, 전체기관의 청렴도 향상율 2.3%보다 3.4%p가 높았다. 21개 기관 중 13개 기관은 전년대비 종합청렴도 등급이 향상되었다. 특히 컨설팅 결과에 대해 적극 수긍하고 기관장 이하 간부 및 직원들이 함께 역량을 결집하여 행동과 실천에 옮긴 기관의 청렴도 상승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제 5 장 실효성 있는 부패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

| 제 1 절 | 부패영향평가 제도 운영

1. 제도 개요

부패영향평가는 법령 등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하고 그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 법령 소관기관에 권고하여 부패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제도이다. 크게 중앙행정기관에서 의뢰한 법령 등에 대해 국민권익위에서 직접 입법단계에서부터 부패유발요인을 사전 차단하는 제·개정 법령 평가와 현재의 법령상에 내재해 있는 부패유발요인을 분석·검토하여 이를 개선하는 현행 법령 평가, 각 기관 자율적으로 부패유발요인을 사전에 차단·정비하는 자치법규 평가, 공직유관단체 내부규정 평가로 나눌 수 있다. 2005년 12월 29일 부패방지법 개정을 통하여 도입된 후 2006년 4월 1일 부터 본격 시행되었으며, 공직유관단체의 경우 2007년 12월 28일 부터 도입·시행하고 있다.

2. 추진 경과 및 성과

1) 제·개정 법령 부패영향평가 ('18.11.30.기준)

2018년 총 1,541개의 제·개정 법령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그 중 126개의 법령에 내재하는 241건의 부패유발요인을 발굴, 소관기관에 개선을 권고하였다. 2018년도에는 평가법령수가 1,541건으로, 2017년 대비 평가법령수와 개선법령수는 각각 101건(7.0%), 16건(14.5%) 증가(평가법령수 대비 개선법령 비율은 8.2%로 2017년 대비 0.6%p 상승)한 반면, 개선권고 건수는 154건이 줄어들었고, 평균 처리기간은 13.7일로 전년대비 1.7일 감소하였다.

[제·개정 법령안 평가 현황 (2018년)]

총 평가 법령	원안 동의	개선 권고
1,541개 법령 (100%)	1,415개 법령 (91.8%)	126개 법령 (8.2%), 개선권고 241건

2) 현행 법령 부패영향평가

(1)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 제고

2018년도에는 지자체의 민간위탁사업 운영과 관련해 발생하는 각종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였다. 지자체는 매년 5조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민간위탁사업을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근거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관련 기준 및 절차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수탁기관 선정과정에 이해관계인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부패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민간위탁사업이 추진되는 각 단계별로, 민간위탁 준비단계에서는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민간위탁사업의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하고, 진행단계에서는 수탁기관 선정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등을 마련하여 선정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며, 사후관리단계에서는 성과평가 실시 등을 통해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하는 등 지자체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전국 243개 지자체에 ‘민간위탁 기본조례’ 개선안으로 수탁기관 선정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마련, 사후 성과평가 실시 등 8개의 개선방안을 권고하였다.

(2) 송·변전 설비·공항·수도권 매립지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운영의 투명성 제고 방안

2017년도에는 공직유관단체 사규 점검 과정에서 관련 법령의 부패유발요인을 발굴·개선하는 상향식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였다. 전력사업, 폐기물 매립지 사업 등 주변지역 주민 지원사업이 공적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공직유관단체·지자체가 시행하고 있음에도, 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투명성 확보장치가 미비하여 각종 부패·예산낭비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회계 투명성, 사업 관리·감독, 사업선정의 객관성 등을 담보하는 규정을 개정·신설하는 등 주민지원사업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관계부처에 사업비 별도계정 관리를 통한 이자수의 누락 방지 등 10가지 개선방안을 권고하고, 15개의 관련 공공기관에 권고안을 통보하였다.

(3) 공직유관단체 사규 부패영향평가

국민 실생활 및 기업경영에 직결되는 사규 등의 부패취약요인을 발굴·개선하여 공공분야의 청렴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수행하는 5개 공직유관단체와 2016년 구축한 업무협력체계의 지속적 유지를 통해 해당 기관의 사규에 대한 부패유발요인의 예방조치를 선제적으로 추진하였다. 그 결과 5개 기관 사규에 대해 해외사업, 중소기업 지원, 주민지원사업, 소상공인 대출 등 국민실생활과 밀접하고 국가재정 누수 우려가 있는 분야에 대한 총 83건의 개선안을 마련하여 각 기관에 개선권고 하였고, 권고한 개선안 중 73건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여(10건은 추진 중) 부패영향평가 사각지대에 있는 공직유관단체 사규의 부패유발요인 제거에 기여하였다.

또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공단·공단의 사규를 직권으로 부패영향평가를 할 수 있도록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어, 향후 공공분야 전반의 부패취약요인을 선제적으로 발굴·개선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개정안 국회제출 '18.1.4, 정무위 법안소위 심의완료 3.28, 법사위 계류중 12월 현재).

3) 부패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및 자율적 평가역량 강화 지원

부패영향평가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제·개정법령 개선권고 대상기관에 대해 이행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였다. 2018년도 상반기에는 2017년도 점검결과 미이행 권고사항에 대해 중점점검을 실시하여 88.1%의 이행률을 보였고, 이행률 저조기관에 대한 현장점검, 시책평가와 연계한 기관별 개선권고 이행실적 평가 등을 통해 미이행 권고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이행 확인·독려함으로써 부패영향평가의 실효성을 강화하였다. 한편, 2018년도에는 21개 기관(지자체 14, 공직유관단체 7) 106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부패영향평가 컨설팅'을 실시하여 기관별 자율적 평가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 제 2 절 | 부패 제도개선

1. 추진 배경

국민권익위는 공공기관의 부패 유발요인을 발굴하고,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수립·권고함으로써 범정부적 반부패 개혁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17년 말부터 불거진 채용비리 사태, 어금니 아빠 사건으로 촉발된 국고보조금 누수 등 정부 신뢰성 저해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공기업, 예산낭비, 민간부패 등 부패 취약 분야 집중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2. 추진 경과 및 성과

'18년 부패 제도개선은 6대 분야(공기업 등의 투명성 제고, 예산낭비 방지, 지방부패 근절, 민간부패 개선, 채용비리 근절, 공직사회 청렴성 제고)에 걸쳐 총 25건의 과제를 소관기관에 권고하였다.

공기업 등의 투명성 제고의 경우 공공기관 채용비리 점검 결과와 불합리한 의사결정 및 징계 관련 규정 등을 분석하여, 기타 공직유관단체 채용절차의 공정성 강화, 공직유관단체의 임대 수익사업 운영체계 투명성 제고 등의 개선과제를 권고하였다. 예산낭비 방지와 관련하여서는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사례 등을 분석하여 정책연구 용역, 공공구매, 보조금 지급 등과 관련한 과제를 수립·권고하였다.

또한 지방부패 근절을 위해 감사원 감사 결과 및 언론보도 등을 분석하여 관리·감독 사각지대였던 지방의회에 대한 정기 재무감사 실시 등을 권고하였다. 다음으로 민간부패 개선을 위해 검찰 수사 결과 등을 분석하여 의료분야 리베이트 관행 개선 등을 권고하였다. 더불어 학생보호인력 선정의 공정성 제고 등 채용비리 근절방안 및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징계부가금의 합리적 개선 등 공직사회 청렴성 제고 분야의 제도개선을 추진하였다.

[6대 분야 부패 제도개선 권고과제]

분야	권고과제(25건)	권고일
공기업 등의 투명성 제고	기타 공직유관단체 채용절차의 공정성 강화	6.25
	공항 귀빈실 사용의 특혜 방지 방안	12.3
	공직유관단체의 임대수익사업 운영체계 투명성 제고	2.5
	성범죄 경력자의 공공기관 채용·근무제한 강화	11.5
	공공기관 심의위원회 의사결정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12.17
	공공기관 임직원의 불합리한 수당지급 관행 개선	12.17
예산낭비 방지	공공기관 지정주유소 운영 실효성 제고	5.14
	공공부문 정책연구 투명성 제고	10.8
	슬레이트 처리 자원사업의 투명성 제고	11.5
	국·공립병원 장례식장 시설 사용료 감면의 투명성·공공성 제고	12.17
	체육종목단체 운영 관리의 투명성 제고	12.17
지방부패 근절	지방의회 예산집행의 사후관리 강화	3.26
	지자체 행정협의회 부담금 관리 투명성 제고	8.20
	지방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의 투명성 제고	5.28
민간부패 개선	공공조달 과정의 뇌물 제공업체 제재 실효성 제고	2.5
	건축물 공사감리 절차의 시스템화를 통한 투명성 제고	8.20
	의료분야 리베이트 관행 개선	2.26
	장애인거주시설 등의 촉탁의사 관리 투명성 제고	6.25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실효성 제고	11.5
	국가전문·민간 자격증 대여·알선행위 제재 강화	12.17
	약학대 현장실무 실습과정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	4.9
채용비리 근절	공직자의 취업청탁 방지를 위한 청렴계약서 개선	1.8
	학생보호인력 선정의 공정성 제고	5.14
공직사회 청렴성 제고	중앙부처·자치단체 공무직 근로자 청렴의무 강화	8.6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징계부가금의 합리적 개선	12.17

제 6 장 체계적인 부패·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 제 1 절 | 부패신고 사실확인 기능 보완

1. 추진 배경

「부패방지권익위법」상 국민권익위는 부패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신고사항의 진위여부 확인 등을 위해 신고자에게 자료제출 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법 제59조), ‘부패행위 신고 접수 등’ 국민권익위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 공직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을 요구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법 제29조) 진술청취 등 대상에 피신고자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였다.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9조(의견청취 등) ①위원회는 제2조제5호부터 제14호에 따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구 및 실태조사
2.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 공직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신고자의 일방적인 진술만으로는 신고내용의 실제적 사실관계 확인이 제한됨에 따라 부패신고에 대한 내실있는 사건 처리가 제약된다. 부패행위는 특성상 대부분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부패행위로 인한 사회적 비용 발생 등을 신속하게 차단할 필요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부패신고의 접수·처리 과정에서 최소한의 사실확인 기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실제, 신고자의 일방적인 진술에 따라 사건을 처리할 경우 입증자료 등 보완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 조사기관의 처리기간이 지연되고 혐의 적발률이 저하되는 문제 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었다. 현재 국민권익위가 조사기관에 이첩한 사건의 평균 처리기간은 205일에 이르고, 최근 5년간 혐의 적발률은 약74%에 불과한 상황이다. 또한, 부패신고가 접수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질 경우 피신고자에게 정부발주 사업 입찰이나 보조금 지원신청 등에서 사실상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고사건 처리 초기단계에 피신고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여 신고사건 처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다.

2. 추진 경과

‘부패신고 사실확인 기능 보완’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2. 반부패 개혁으로 청렴한국 실현’ 과제의 세부과제 중 하나로 포함되었다. 국민권익위는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를 하였고, 관계기관 협의 및 차관·국무회의 등 정부입법절차를 거쳐 2018년 9월 21일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 국정과제 ‘2. 반부패 개혁으로 청렴한국 실현’ 세부과제에 포함(‘17.7월)
- 입법예고(‘17.10.27~12.6), 관계기관 협의(‘17.9월~‘18.7월)
- 규제심사(‘18.7.19.~8.8.), 법제심사(‘18.8월~9월)
- 차관회의·국무회의(‘18.9월)
- 국회 제출(‘18.9.21)
-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의(‘18.11~12월)

3. 법안 주요내용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원회에 접수된 신고의 이첩·고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신고자 및 관계기관에 진술청취 및 자료제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신고자 및 관계기관의 진술청취 등 사실 확인만으로 이첩·고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한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피신고자에게 진술청취 및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부패신고에 대한 사실확인의 목적은 이첩·고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제한적·보충적으로 실시하는 점을 명시하여 타 조사기관의 조사·수사 및 감사 등 기능과 중복을 방지하였다.

4. 향후 계획

국민권익위는 부패신고 처리 과정에서 피신고자의 진술기회를 보장하고 신고처리의 객관성·공정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적극 설명하여 조속히 입법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 제 2 절 | 부패신고자 보호 · 보상

1. 추진 배경

부패행위 신고제도는 자율적 신고의식에 기초한 저비용 · 고효율의 부패방지 정책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부패행위 신고자는 보복이나 두려움 사이에서 갈등하게 되고 특히 조직 내 밀고자, 배반자로 인식되기도 해 신고를 한 후 조직생활을 계속하는 데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신고자를 보호하여 누구나 안심하고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부패행위 발생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필요가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부패의 발생을 예방함과 동시에 부패행위 신고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내용의 부패행위 신고제도를 운영하여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 부패신고자 보호제도 주요 내용

1) 신고대상 및 신고 방법

부패행위 신고대상은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에 규정된 부패행위와 같은법 제8조에 따른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이다.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국민권익위에 신고하고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특히 공직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른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사기관 · 감사원 또는 국민권익위에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누구든지 피신고자가 소속된 공공기관에 신고하거나 피신고자의 소속기관 · 단체 또는 기업 등을 지도 · 감독하는 공공기관에 신고한 경우에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부패행위 신고자는 신고자의 인적 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써 신고하여야 한다. 이때 신고자는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신고자가 신고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보호를 받을 수 없다.

2) 주요 보호제도

(1) 비밀 보장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³⁾. 국민권익위에서는 신고의 접수에서부터 의결까지 신분 비공개를 요구한 신고사항에 대하여 비밀보장이 엄격히 유지될 수 있도록 기록·관리하고 있고, 조사기관에 이첩·송부할 때에도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심사하여 처리하고 있다. 또한 신고사항을 조사하는 감사·수사기관에 대해서도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이 공개된 경우에는 그 경위를 확인하고, 비밀보장규정을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권자에게 관련자의 징계를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2) 신분 보장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을 이유로 소속기관·단체·기업 등으로부터 징계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신고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당하였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국민권익위에 해당 불이익 처분의 원상회복·전직·징계의 보류 등 신분보장 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신고로 인하여 인·허가 등의 취소, 계약의 해지 등 경제적·행정적 불이익을 당한 때에는 국민권익위에 원상회복 또는 시정을 위하여 인·허가 계약 등의 잠정적인 효력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는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한 자에 대하여 징계권자에게 징계요구를 할 수 있고,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불이익을 가한 자가 국민권익위의 신분보장조치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3) 신변 보호

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을 느끼는 경우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4조의2⁴⁾에 따라 국민권익위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신변보호조치 요구를 받고 국민권익위가 신변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해당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3) 부패방지권익위법(2017.10.31. 법률 제15024호로 개정되어 2018.2.1. 시행) 제64조제1항

4) 2017.10.31. 법률 제15024호로 개정되어 2018.2.1. 시행

국민권익위로부터 신변보호조치를 요구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특정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신변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변보호 조치의 종류로는 ①특정시설에서의 보호, ②신변경호, ③참고인·증인으로 출석 또는 귀가 시 동행, ④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⑤기타 신변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등이 있다.

(4) 책임 감면

신고를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의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의 징계처분에 관해서도 이를 준용한다.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고자가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보호사건 주요 사례]

【신분보장조치요구 사례】

요구인은 ○○공사 사장이 2016년도 9급 신규직원채용시험에서 특정인 2명을 합격시키기 위해 면접시험 점수를 조작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을 신고했고, 이 신고를 이유로 ‘해임’ 처분을 당할 우려가 있다고 하면서 위원회에 신분보장조치를 요구하였고, 그 다음달에 해임되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결과 요구인이 신고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인 해임 처분을 받았다고 인정되어, ○○공사 사장에게 요구인에 대한 해임 처분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고, 요구인에게 해임 처분을 한 전(前) ○○공사사장 직무대행에게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신변보호조치요구 사례】

요구인은 ○○시에서 발주한 하수관거공사의 시공업체가 설계내역과 달리 시설물의 일부 수량을 미시공한 의혹을 신고한 이후 피신고자 측으로부터 미행을 당하는 등 물리적 위협으로 인해 매우 불안하다며 보호조치를 요구하였다.

국민권익위에서는 신변보호조치요구를 확인한 결과, 요구인의 신변위험에 따른 요구내용이 상당히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관할 경찰서에 요구인의 주거지 순찰 강화, 위치추적장치 제공 등의 신변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다.

【신분공개여부확인요구 사례】

요구인은 ○○요양병원에서 환자 수를 허위로 부풀리는 방법으로 요양급여비를 편취한 사실을 신고했는데, 이 신고 사건을 이첩 받은 경찰에서 “○○병원 전 원무부장으로부터 첩보 입수” 등의 내용을 포함한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신분이 공개되었다면서 경위 확인을 요구하였다.

국민권익위에서는 조사 결과 보도자료에 포함된 관할 경찰서, 제보자의 병원에서의 직위, 병원 상호의 변천 등의 정보가 결합되어 신고자를 직접 추정할 수 있게 한 것은 신고자 비밀보장 위반이라고 판단하여 관련 경찰관들의 징계를 요청하였다.

3. 부패신고자 보상·포상제도 주요 내용

1) 보상·포상제도의 의의

신고자에 대한 보상·포상제도는 부패행위 신고로 인하여 공익 증진에 기여하거나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 신고자에게 금전적 대가를 지급하는 제도로, 각종 위험부담을 안고 공익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개인의 용기있는 행동에 대해 보상(reward)함으로써 부패행위 신고에 대한 국민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부패방지 수단으로의 기능을 하고 있다.

2) 보상·포상제도의 주요내용

신고로 인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신고자에 대하여 상훈법 등의 규정에 따라 포상을 추천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포상금 지급 사유를 충족하는 경우 2억 원 이하로 지급할 수 있으며, 금품 등을 받아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 금액의 30% 범위에서 5억 원 이하로 지급할 수 있다.

부패행위 신고 보상금은 포상금과 달리 부패행위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을 때 신고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한다. 보상금 지급은 최대 30억 원 이하에서 보상대상가액의 4%~30%로 하고,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감액할 수 있다.

[보상·포상금 지급 주요사례]

【기술개발 정부 출연금 편취 신고 사례】

신고자는 기술개발 정부 출연금을 받은 A업체가 기술개발과 무관한 곳에 출연금을 사용한 의혹을 국민권익위에 신고하였다. 조사 결과, 신고 내용이 확인되어 A업체에 7억 6,561만 원을 환수결정하였고, 위 금액을 보상대상가액으로 산정한 보상금 7,179여만 원을 신고자에게 지급하였다.

【외주업체로부터 편익수수 신고 사례】

신고자는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여 관련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공공기관 직원을 해당 공공기관에 신고하였다. 조사결과 신고자가 관련 업체로부터 숙소와 차량을 무상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드러나 해당 직원이 파면처분을 받은 점 등을 감안하여 포상금 300만원을 신고자에게 지급하였다.

4. 부패신고자 보호·보상 제도 기반 강화

국민권익위는 2018년 1월 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부패신고자 보호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위원회의 보호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으로써 위원회 결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둘째, 위원회의 보호조치 결정이 있기 전이라도 위원회가 당사자 간 화해를 유도함으로써 신고자의 불이익 상태가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화해권고 제도를 신설하였다. 셋째, 법원·국회 증언이나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한 경우까지 보호대상 신고자의 범위를 확대했다. 넷째, 신고로 인한 이사·치료비용 등을 보상금과 별도로 신청할 수 있는 구조금 제도를 도입하였다. 다섯째, 신고 취소를 강요하거나 신고 방해 행위를 한 자에게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 제 3 절 | 공익신고자 보호 · 보상

1. 추진 배경

국민생활이 복잡화 · 고도화 되어감에 따라 민간부문의 공익침해행위가 사회적 혼란과 공공 지출을 유발하고 있음에도 그동안 신고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보호는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공직자의 뇌물수수, 국가 예산낭비 등 공공부문의 부패 신고자에만 한정되어 민간부문의 공익침해행위 신고로 불이익을 받더라도 보호받지 못하는 법 · 제도적 사각지대가 존재하였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국민의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민간부문의 공익침해 행위를 예방 · 통제하기 위해 관련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제정하여 시행('11년 9월 30일)하고 있다.

아울러 법 시행 이후 현행 법령상 드러난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 됨에 따라, 공익신고 대상 법률 확대, 내부 신고자 보호강화, 보호조치 결정의 이행력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지속적으로 개정 · 시행하였다. '18년 10월에는 신고자의 비밀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변호사 대리신고를 도입하여 시행 중이다.

2. 공익신고자 보호 · 보상제도 주요 내용

1) 신고대상 및 신고 방법

신고 대상 공익침해행위는 기존 5대 분야인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에 '18년 5월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분야가 추가되었고, 284개 신고대상 법률에서 징역 등의 벌칙 또는 인 · 허가 취소,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가져오는 위반 행위이다. 아울러 '18년 5월 신고대상 법률에 「채용절차법」, 「자본시장법」 등 5개 법률이 추가되어 신고대상 법률이 확대되었다.

[공익침해 분야별 주요 공익침해행위 사례]

공익침해분야	주요 사례
건강	무자격 의료행위, 원산지 거짓 표시 식료품을 학교급식에 사용하는 행위
안전	부실시공, 소방시설 미설치, 아동학대
환경	폐기물 불법 매립, 폐수 방류, 악취 관리지역 내 악취 배출시설 미신고 행위
소비자이익	각종 허위·과장 광고, 개인정보 무단 유출, 농수산물 원산지 허위 표시
공정경쟁	기업 간 가격 담합, 하도급 대금 미지급, 불법 산업기술 유출

공익신고 접수기관은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의 대표자·사용자,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수사기관, 국회의원,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의 공공단체가 있다.

2) 보호제도 내용 및 절차

(1) 보호 내용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는 크게 공익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분이 공개되거나 보도되는 것을 금지하는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의무, 신분보호 조치, 공익신고자 등이 공익신고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거나 이미 발생한 피해를 원상회복시키기 위한 조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 보호조치 주요 절차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으면 국민권익위에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보호조치 신청은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보호조치 신청이 있으면 국민권익위는 보호대상이 되는 공익신고인지 여부, 신고와 불이익조치와의 인과관계 등을 조사·확인을 거치게 된다. 공익신고자 등이 신고로 인해 불이익조치를 받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에서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불이익조치자 등에게 원상회복 등을 요구하는 ‘보호조치’ 결정을 하게 된다.

3) 공익신고자 보상제도

공익신고 보상금은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하고, 이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①벌칙, 통고처분, ②몰수, 추징금의 부과, ③과태료·이행강제금의 부과, ④과징금 부과, ⑤국세, 지방세 부과, ⑥부담금·가산금 부과, ⑦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 등의 판결을 하여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발생하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지급한다.

보상금액은 국민권익위의 내부 보상심의위원회와 전원위원회를 각각 거쳐 결정 되는데, 보상대상가액의 4~20%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증거자료의 신빙성' 등 사유가 있는 경우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할 수 있으며, 개별신고당 30억원을 최고 한도로 한다.

한편 전문신고자의 무분별한 신고로 인한 행정력 낭비, 서민의 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익신고자보호법」이 개정되어 2016년 1월 25일 이후부터 공익신고 보상금 신청은 내부 공익신고자만 가능하게 되었다.

3. 주요 운영성과

1) 효율적 공익신고 처리 및 공익신고제도 인프라 확대

국민권익위는 공익침해행위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효율적으로 사건을 처리하고 있으며, 각급 공익신고 기관의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자체 운영기반 구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표준조례안, 공익신고 처리 흐름도, 자체교육 자료 등을 제공하여 기관의 자율적 노력을 독려하고 있다. 위원회는 무자격자 의료행위(건강), 제작결함 자동차 판매(안전), 건설 폐기물 불법 방치(환경), 환각성분이 포함된 대마씨앗 수입·판매(소비자이익), 품질기준 미달 성인용 기저귀 수입·판매(공정경쟁) 사건 등 국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들을 적극적으로 처리하여 긍정적 사회제도 개선에 기여하였다.

아울러 민간기업 대상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체계를 구축하고 공익침해행위의 자율 예방을 위한 기업가이드를 제작하여 주요 협회에 배포하여 민간분야의 공익침해행위 예방 인프라를 확대하였다.

2) 공익신고제도 인지도 제고

위원회는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인지도 제고 및 신고자 보호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하였다. 공익신고제도 안내 및 공익신고자에 대한 인식개선 메시지 전달을 위하여 라디오 및 지하철 광고를 실시하고, 쉬운 제도 안내용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온라인(페이스북, 유튜브 등) 및 옥외매체(KTX)를 통해 송출하였다.



지하철 광고



제도안내용 홍보영상



리플릿

아울러 공익신고 포스터, 리플릿 및 국정만화, 카드뉴스 등을 고속도로 휴게소, KTX역사 등 대국민 이용시설에 배포하여 국민들에게 더욱 친숙한 제도로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및 법 개정 취지에 대한 긍정적 여론을 형성하였다.

이렇게 국민 및 각급기관을 대상으로 공익신고제도에 대한 다양한 홍보 및 교육 활동을 전략적으로 추진한 결과,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16년 28.4%에서 '17년 30.6%로 상승하였으며, 법 시행 이후 인지도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3) 공익신고자 형사처벌 감경·면제 추진

공익신고자가 자신이 한 공익신고의 조사과정 중 드러난 범죄행위로 처벌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신고자 보호라는 법의 목적에 반하고 은밀해지는 공익침해에 대한 신고를 막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응하여 국민권익위는 조사·수사기관이 공익침해행위를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익신고자가 조사·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감경·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을 '18년 6월 8일 국회에 제출하여 개정 논의 중이다.

제 7 장 청렴문화 확산 및 청렴교육 강화

| 제 1 절 | 2018 반부패 주간 운영

1. 추진 개요

국민권익위는 유엔이 지정한 ‘세계 반부패의 날(12월 9일)⁵⁾을 맞아 12월 3일부터 14일까지를 ‘반부패 주간’으로 지정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청렴 문화행사를 진행하였다.

반부패·청렴이라고 하면, 교육·훈련 등 무겁고 어려운 것으로 느껴질 수 있는데 문화행사, 캠페인, 공모전 등 문화적 접근을 통해 국민들이 보다 쉽게 다가갈 수 있고, 일상생활 속에서 청렴을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 것이다.

2. 추진 사항

국민권익위는 2주 동안의 ‘반부패 주간’에 청렴을 주제로 재미와 감동을 주는 다양한 문화행사를 진행하였다.

먼저 4일에는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동화 속 이야기를 통해 ‘정직·책임·권선징악’ 등 교훈적인 내용을 알려주는 어린이 바른생활 인형극을 상연했다. 11월 28일부터 12월 9일일까지 서울시 대학로 혜화당에서 2030 청년세대들이 경험한 우리사회의 불공정, 차별 등의 사례를 연극으로 각색한 ‘반부패 청렴 창작 연극’을 공연했다. 연극은 기획·시나리오 작업·공연까지 청년들이 직접 참여해 제작됐으며, 그들의 시각에서 우리사회의 문제를 살펴보고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5일에는 많은 국민들이 반부패 주간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올해 처음으로 ‘반부패 주간 기념식’을 서울시 광화문 KT스퀘어 드림홀에서 개최했다. 기념식에는 국회·청렴사회민관협의회 등 내빈과 청렴정책 국민모니터단, 정책기자단 등 200여명이 참석했고 ‘함께하는 청렴, 깨끗한

5) '03.12.9 멕시코 메리다에서 UN 반부패협약 조인식을 개최하고, 이를 기념하는 뜻에서 매년 12월 9일을 ‘세계 반부패의 날’로 지정

대한민국'을 주제로 한 축하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특히, 기념식에서 공익신고자의 중요성과 의의를 알리고 공식적인 감사를 표하기 위해 '공익신고의 날'을 선포했다.

['2018 반부패 주간 기념식' 모습]



위원장 기념사



공익신고자 응원



축하공연

국민권익위는 61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와 올해 중점 추진한 주요 반부패 사업의 성과를 발표하고 국내외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6일에는 서울시 르메르디앙에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공동주관으로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의 반부패 정책 운영경험을 논의하는 '반부패 개혁 국제포럼'이 열렸다. 이어 7일에는 서울시 포스트타워에서 바람직한 반부패 민관협력모델 정립 방안에 대해 토론하고 청소년 창작공연과 토크콘서트로 꾸며지는 청렴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9일에는 '세계 반부패의 날'을 기념해 KBS1 TV가 특집 '도전 골든벨'을 오후 7시 10분부터 방영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반부패·청렴과 관련된 시사·상식 문제가 출제됐다. 마지막 날인 14일에는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이 외교부 재외공관장을 대상으로 국제사회에서 주목받는 국민권익위의 반부패 정책과 범정부 반부패 정책 추진방향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2018 반부패 주간' 행사 모습]



세계 반부패의 날 특집 도전골든벨
(KBS1 TV 방영)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공동주관
반부패 개혁 국제포럼



반부패·청렴 창작 연극 공연

3. 향후 계획

국민권익위는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고, 일상 생활속에서 청렴을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행사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매년 '반부패 주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 제 2 절 | 청렴교육 의무화 시행에 따른 교육체계 개편

1. 청렴 집합교육과정 운영

1) 운영 개요

국가청렴도 향상을 위해서는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법률과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고, 이와 함께 공직자의 청렴의식 확산을 위한 반부패·청렴교육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국내 유일의 반부패·청렴교육 전문기관인 청렴연수원은 2012년 10월에 개원하여 각급기관 공직자를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해왔으며, 공직자의 청렴교육 이수 의무화와 미래세대 청렴의식 함양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청렴문화 확산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정책 환경변화에 따라 2018년 청렴연수원에서는 ① 각급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청렴교육 강사 양성, ② 지방의회 의원 대상 청렴교육과정 신설, ③ 기관 맞춤형 청렴도 향상과정 시범운영, ④ 미래세대 청렴교육 확대라는 핵심 전략을 설정하였다.

2) 운영 성과

청렴연수원은 교육수요 조사를 통해 기관대상 청렴교육과 테마별 집합교육을 실시하여 20,473명(20개 과정, 122회 운영, '18.12.12.기준)의 청렴교육 이수자를 배출하였다.

[2018년도 청렴집합교육 과정]

세부분야	과정명
기관대상 청렴교육(3개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찾아가는 기관대상 청렴교육과정 ▶ 연수원 방문 기관대상 청렴교육과정 ▶ 청렴도 향상과정
지방의회 의원 대상 청렴교육(1개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의회 청렴연수 과정
청렴교육 의무화 맞춤형교육(6개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렴리더십 향상과정(고위공직자·학교장) ▶ 신규자 청렴역량 향상과정(공무원/공직유관단체) ▶ 승진관리자 청렴역량 향상과정 ▶ 승진실무자 청렴역량 향상과정(공무원/공직유관단체) ▶ 부패대응능력 향상과정(공무원/공직유관단체)
강사양성 및 교사대상 교육(5개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렴교육 강사양성 기본과정(기본·전문·시연평가) ▶ 강의역량 향상과정 ▶ 청렴교육 DREAM 교원 직무연수과정
청렴역량 향상교육(2개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렴역량 이해과정(공무원/공직유관단체) ▶ 청렴역량 강화과정
청탁금지법 교육(3개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직원·공직자·언론인 과정

청렴한 공직문화 확산을 위해 중앙부처를 비롯한 다양한 기관을 선정하여 17,236명(49회, '18.12.12. 기준)의 공직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렴교육(청렴콘서트 시즌 I·II)’을 진행하였다.

[‘찾아가는 기관대상 청렴교육’ 모습]



문화체육관광부 청렴콘서트



인사혁신처 청렴콘서트

반부패·청렴교육 의무화에 따라 고위공직자 과정을 포함한 다양한 과정을 개설하였고, 올해 청렴교육을 이수한 고위공직자는 2,054명이었다. 특히 기관의 전 직원이 참여하는 ‘찾아가는 기관대상 청렴교육’은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가 다수 참여함으로써 청렴에 대한 높은 실천 의지를 볼 수 있었고, 청렴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하였다.

[2018년도 주요 고위공직자 참여 현황]

- ▶ 헌 법 기 관 : 대법원장, 청주지방법원장
- ▶ 중앙행정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공정거래위원장,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통계청장, 조세심판원장
- ▶ 지방자치단체 : 양산시장, 천안시장, 서울 마포구청장, 부산 해운대구청장, 서울 도봉구청장, 목포시장
- ▶ 교육자치단체 : 경상북도교육감

청렴연수원은 공직자 대상 부패방지교육 의무화에 따라 각급 기관 자체에서 강의할 수 있는 청렴교육 기본강사 461명을 양성하였다. 또한 교수설계·기법 함양을 위해 마련한 ‘청렴교육 강사양성 전문과정’ 이수 후 ‘강의 시연 평가’에 합격하였거나 ‘청렴교육강사 운영 심의위원회’를 통과한 총 45명을 외부 출강이 가능한 소양·전문강사로 배출하였다.

아울러 주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의회상 정립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의회 청렴연수 과정’을 신설하여 청렴리더십을 향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교육과정을 교육인원과 시간별대로 다양화하는 등 의원들의 수요에 맞춘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설계하였고, 각 광역시도 및 시군자치구 의회에 홍보하였다.

[‘지방의회 청렴연수 과정’ 모습]



영등포구의회 청렴연수 과정



상주시의회 청렴연수 과정

2. 청렴 사이버교육과정 운영

1) 운영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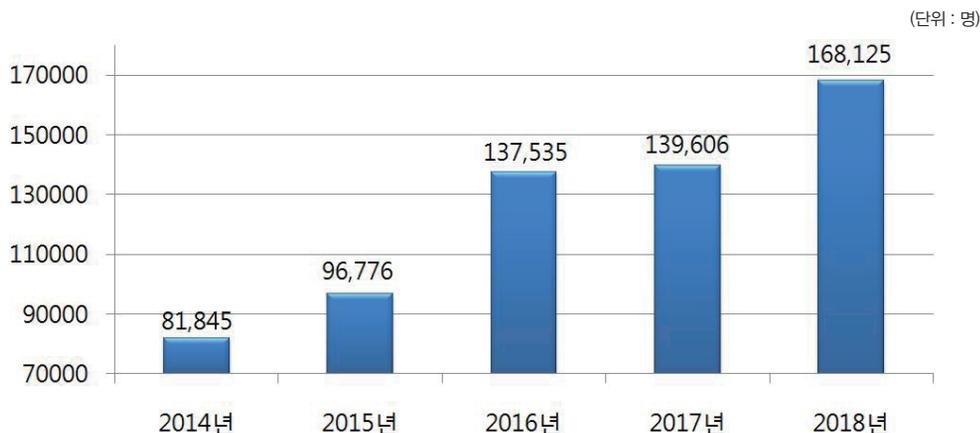
청렴연수원은 많은 공직자들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청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사이버교육센터(<http://acti.nhi.go.kr>)’를 통해 ‘청렴 사이버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 출범 이후 11년 동안(’08~’18년) 총 78만여 명의 공직자가 사이버과정을 이수하였다.

사이버 교육과정은 국민권익위 자체 개발 교육과정 10종⁶⁾과 타 기관에서 개발한 공직윤리·청렴 관련 콘텐츠를 공동 활용, 폭넓은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2) 운영 성과

2008년 이후 매년 교육 수료인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기관 자체운동을 제외한 연수원 직접 운영 과정의 경우 2018년에는 2014년 대비 2배 증가한 168,125명의 공직자가 사이버교육을 이수하였다.

[최근 5년간 사이버교육 연수원 직접운영 과정 수료현황]



3) 향후 계획

사이버 교육을 통한 공직자 청렴의식 함양 및 공직사회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을 위하여 2019년에는 공공기관 대상과정의 수료인원을 20만 명으로 확대하는 한편, 고품질의 신규 사이버교육 콘텐츠를 추가 개발하여 다양한 교육과정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수강생들의 교육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스마트폰 등 모바일기기로도 사이버교육을 수강할 수 있도록 모바일 호환과정 운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6) 부패 앞에 단호해지기, 청탁금지법의 이해, 사례로 배우는 청탁금지법, 사례로 배우는 부패영향평가, 성공조건으로서의 청렴, 공직자를 위한 신목민심서 등

| 제 3 절 | 대국민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국민참여 청렴 프로그램 운영

1. 국민참여 청렴콘텐츠 공모사업 운영

1) 운영 개요

‘국민참여 청렴콘텐츠 공모사업’은 「청탁금지법」 시행 등에 따라 높아진 국민들의 청렴에 대한 관심을 다양한 형태로 표현하고 이를 확산·전파하여 우리사회 전반의 청렴의식을 고취하고자 기획된 프로그램이다.

다수 국민들이 지난 수상작을 쉽게 열람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별도의 웹사이트 (<http://www.integritycontents.kr>)를 운영하였으며, 포스터, 배너 등을 제작하여 각급기관에 배포하고, 서울 지하철(4호선) 객차 광고 및 서울시청 광장 전광판 옥외광고 등 다중밀집장소에 공모전을 홍보하여 공직자와 일반국민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2) 운영 성과

공무원, 회사원, 대학생, 주부, 청소년, 군인 등 사회 각계각층의 국민들이 참여하여 총 1,553편의 사연·수기와 단편소설, 단편영화, 독후감 원고가 접수되었고, 이 중 45편의 우수작품을 선정하였다.

[공모 작품 수]

분야	사연·수기	단편소설	단편영화	독후감	합계
부문별 작품	· 공직 583편 · 일반 130편	부문 구분 없음	· 개인 40편 · 팀 102편	부문 구분 없음	-
출품 작품	713편	255편	142편	443편	1,553편
시상 작품	16편	7편	9편	13편	45편

아울러 각 분야의 공모전이 모두 마무리된 12월 7일에는 일지아트홀(서울시 강남구 소재)에서 문화제 형식으로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반부패 주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개최된 시상식은 수상자 및 가족 등을 초청하여 우수작품을 공유하고 청렴 문화를 즐기는 반부패·청렴의식 나눔의 장으로 구성되었다.

3) 향후 계획

국민권익위는 공모전을 통해 수집된 청렴콘텐츠 우수작품을 보완하고 발전시켜 청렴연수원의 교육 자료로 활용하는 한편, 위원회 SNS채널 등을 통해 각급 공공기관 및 일반 국민들에게 공유하여 사회 전반에 반부패·청렴의식 및 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2. 청렴교육 강의·강연 경연대회

1) 운영 개요

‘청렴교육 강의·강연 경연대회’는 국민참여 청렴콘텐츠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반부패·청렴 관련 법령 및 제도를 주제로 한 교육용 강의 또는 청렴과 관련한 개인의 경험, 소회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강연 공모를 통해 우수 청렴교육 콘텐츠를 발굴·공유하고, 청렴문화를 확산하고자 개최한 대회이다.

1차로 7월 2일부터 9월 16일까지 만 19세 이상의 일반국민과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반부패·청렴 관련 법령·제도 및 그밖에 청렴의식 함양을 내용으로 하는 교육용 강의와 반부패·청렴에 대한 경험, 소회 등을 주제로 강연하는 모습을 영상물 형식으로 공모했다. 이를 바탕으로 1, 2차 서면 심사와 3차 발표 심사를 진행하여 최종 14명을 선정하였다.

2) 운영 성과

올해는 청렴과 관련한 개인의 경험, 감동 및 소회 등을 이야기하는 강연분야를 새로이 신설하여 공직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공감할 수 있는 일상생활 속 이야기를 공모하는 데에 더욱 초점을 두었는데, 이에 따라 전체 응모자 92명 중 37%(34명)가 강연분야로 응모하였고, 63%(58명)가 강의분야에 응모하였다. 이 중 강연분야 응모작으로는 내부 공익신고자의 신고 경험, 엄마로서 아이들에게 청렴의 필요성을 당부하는 이야기, 대학생으로서 경험했던 청렴과 관련한 에피소드, 교사가 학생들을 통해 바라본 청렴의 의미 등 다양한 이야기가 접수되었다. 이처럼 일반 국민들의 생활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과 공감할 수 있는 청렴 이야기가 상당히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청렴교육 강의·강연 경연대회 응모 현황]

구분	합 계	강의분야	강연분야
합 계	92편	58편(63%)	34편(37%)
공직자	62편	41편(66%)	21편(34%)
일 반	30편	17편(57%)	13편(43%)

3) 향후 계획

수상자들의 강의·강연 내용은 별도의 동영상으로 제작, 청렴연수원 홈페이지 (<http://www.acrc.go.kr/edu>)에 게시하여 각급 공공기관 및 일반국민들이 청렴교육 자료로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제 3 편

기관별 부패방지 노력

제1장 참여와 소통에 기반한 투명성 강화

제2장 공정성과 신뢰성 향상

제3장 국민생활 속 불합리한 제도 개선

제4장 조직내부 혁신과 청렴문화 확산

제 1 장
참여와 소통에
기반한
투명성 강화

국민신뢰 제고를 위한 조직쇄신방안 시행

| 추진 배경 |

공정위는 작년 9월 공정위의 사건 처리 절차 및 조직 문화 혁신을 위한 ‘공정거래위원회 신뢰제고방안’을 발표하였다. 심의속기록 공개 등 절차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건처리 실시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하며,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 제정 등 공직윤리를 강화하기 위한 총 12개 방안이 포함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 신뢰제고방안 주요 내용 (2017. 9. 28.)]

목 표

“신속 · 공정한 사건처리를 통해 위원회 신뢰 제고”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한 꾸준한 노력에 힘입어 공정위 사건절차의 투명성 및 공정성이 제고되는 등 소기의 성과를 나타내었으며 특히 올해 1월 전 부처 최초로 도입한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을 통해 공정위 업무와 관련한 외부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시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위 퇴직자 재취업 과정에서의 문제 또는 일부 퇴직자의 부적절한 일탈행위 등으로 말미암아 공정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하된 상황을 깊이 반성하며 이를 개선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고자 올해 8월 ‘공정거래위원회 조직쇄신방안’을 발표하고, 이를 적극 시행하고 있다.

| 제도 개요 |

공정위는 지난 8월 20일 그 간 공정위 퇴직자의 재취업 과정에서의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관행을 타파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고자 ‘공정거래위원회 조직쇄신방안’을 발표하였다.

금번 발표한 조직쇄신방안은 ①재취업 알선 관행 타파, ② 재취업자 관리 강화, ③공직윤리 강화를 목적으로 한 총 9개의 방안이 포함되었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공정위 SNS를 통해 홍보한 조직쇄신방안 카드뉴스]



01

재취업 알선 관행 등을 타파하겠습니다.



- ☑ 재취업 과정 **관여 전면 금지**
- ☑ 재취업 관련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 ☑ 경력관리 의혹 차단을 위한 **인사원칙 설정**

02

재취업자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 ☑ 퇴직자 재취업 **이력 공시** (퇴직 후 10년간)
- ☑ 부적절한 **자문계약** 발견 시 **즉각 조치 및 예방 강화**
- ☑ 퇴직예정자 재취업 **자체 심사 강화**

03

공직윤리를 강화하겠습니다.



- ☑ 퇴직자와 현직자 간 **사건 관련 사적 접촉 일체 금지**
- ☑ 유착 의혹을 살 수 있는 **외부교육 참여 금지**
- ☑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유료 강의 금지**

먼저 재취업 알선 관행 타파와 관련한 첫 번째 방안은 재취업 과정에의 관여 전면 금지이다. 어떠한 명목인지를 불문하고 공정위 직원의 재취업 문제에 대한 공정위 차원의 모든 직·간접적 개입을 전면 차단하였다.

둘째, 재취업 관련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이다. 공정위가 퇴직자의 재취업에 관여하는 행위, 공정위 직원이 기업에 대하여 재취업을 청탁하는 행위 등 재취업 관련 부당 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신고센터는 공정위 직원 뿐 아니라 관련 기업체 임직원 등 누구라도 신고할 수 있도록 공정위 홈페이지에 설치할 예정이며, 특히 주요 재취업 기업들에게는 신고센터 운영사실을 적극 홍보하여 신고를 독려할 계획이다.

셋째, 경력관리 의혹 차단을 위한 인사원칙 설정이다. 4급 이상 직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비사건부서 3회 이상 연속 발령 금지 등의 인사원칙을 설정하여 퇴직자가 재취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이른 바 ‘경력관리’ 의혹을 차단하였다.

재취업자 관리 강화와 관련하여 첫째, 퇴직자 재취업 이력 공시 제도를 도입한다. 공정위를 퇴직하여 민간기업 등에 재취업한 자의 이력을 퇴직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공정위 홈페이지에 10년 간 공개한다.

둘째, 부적절한 자문계약 발견 시 즉각 조치하고 예방을 강화한다. 취업 심사 승인을 받지 않은 퇴직자가 대가를 받고 자문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행위 발견 즉시 인사혁신처에 통보하고, 또한 퇴직예정자 및 주요 기업 등에게도 위와 같은 행위가 위법 행위임을 적극 알릴 것이다.

셋째, 퇴직예정자 재취업 자체 심사 강화이다. 퇴직예정자의 재취업 자체 심사가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위 재취업 자체심사 매뉴얼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직윤리 강화와 관련하여 첫째, 퇴직자와 현직자 간 사건 관련 사적인 접촉을 일체 금지하였다. 외부인 접촉으로 인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우려를 불식시키도록 공정위 현직자와 퇴직자 간 사건과 관련한 사적인 접촉을 일체 금지하고, 공적인 접촉 또한 보고하도록 하였다.

둘째, 유착 의혹을 살 수 있는 외부교육에의 참여를 금지한다. 공정위 직원에 대하여 공정위 퇴직자 및 기업·로펌의 공정거래 관계자가 함께 참여하는 모든 외부교육에의 참여를 금지하였다.

셋째,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유료 강의 금지이다. 공정위 직원이 기업 및 로펌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대가를 받고 하는 강의를 전면 금지하고, 공정위 주관의 무료 설명회를 통해 기업들의 법 위반 예방 교육을 보완할 계획이다.

Ⅰ 추진 경과 및 성과 Ⅰ

1) 취업 알선 관행 타파 관련

먼저 공정위 퇴직자의 재취업 과정에의 공정위 관여 전면금지는 발표 즉시 시행되었다. 발표 이후 그 관여가 어떠한 명목인지 직접적인, 간접적인지를 불문하고 공정위 직원의 재취업 문제와 관련한 공정위 차원의 관여는 일절 없으며, 이는 그 간 공정위 퇴직자의 재취업 과정에서의 잘못된 관행을 타파한다는 기관의 의지를 천명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재취업 관련 부당행위 신고센터는 공정위 직원뿐만 아니라 관련 기업체 임직원 등 누구라도 신고할 수 있도록 공정위 홈페이지에 설치할 예정인데, 현재 신고센터 설치를 위한 홈페이지 개선 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 특히, 신고센터 설치가 완료되는 시점에 주요 기업들에게는 신고센터 운영사실을 적극 홍보하여 신고를 독려할 계획이며, 앞서 적시한 재취업 과정에 공정위 차원의 관여 전면 금지 및 재취업 과정에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재취업과 관련한 부당행위 혹은 위법행위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 홈페이지에 개설 예정인 재취업 부당행위 익명신고센터 화면]

민원참여 > 공정위에 신고하기 > 재취업 부당행위 익명신고센터

재취업 부당행위 익명신고센터

[재취업자 관련 익명 제보서]

-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하고 투명한 사건처리를 위한 조직해신방안의 일환으로 소속 공직자의 재취업과 관련하여, 기관의 재취업 관여행위 및 개인의 취업 정략행위 등 재취업과 관련한 부당행위에 대한 "재취업 관련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및 소속 직원으로부터 재취업과 관련한 부당한 청탁을 받은 기업체 임직원 또는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소속 공무원 등 누구라도 신고할 수 있으며, 제보자의 신원과 제보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제보자의 IP정보 등 부수정보가 별도로 저장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위와 같은 부당한 정략행위에 대해 제보하실 분은 유효원칙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갖고 개신 경우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글 작성시 표시된 항목은 꼭 기재해 주세요

제목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text" value="제목 입력"/>
내용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text" value="유효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첨부파일	<input type="text" value="파일 선택"/> 선택된 파일 없음

마지막으로 경력관리 의혹 차단을 위한 인사원칙 설정과 관련하여 3급·4급 직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비사건 부서 3회 이상 연속 발령 금지, 외부기관 등 파견 및 비사건 부서 근무

를 합하여 5년 이상 연속 복무 금지하도록 '공정위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을 개정하였다. 이를 통해 공정위 직원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 심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취업심사의 대상이 되는 기간의 근무 부서를 관리한다는 이른 바 '경력관리' 의혹이 원천 차단될 것으로 기대한다.

[조직쇄신방안 이후 개정된 공정위 소속공무원 인사규정(2018.9.21.개정) 내용]

제20조(전보의 기준) ③ 3·4급 공무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도록 전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별표4>의 비사건부서에 3회 이상 연속적으로 전보
2. 외부기관 파견 및 <별표4>의 비사건부서 근무기간을 합하여 연속적으로 5년 이상 근무

2) 재취업자 관리 강화 관련

먼저 퇴직자 재취업 이력 공시 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현재 이를 위한 홈페이지 개선 작업이 진행 중이다. 또한, 이력 공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정위 퇴직자에게 사전에 취업사실 신고 및 이력 공시 등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는 내용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다. 재취업 이력 공시 제도가 활성화 되면 향후 공정위 퇴직자의 재취업 현황이 투명하게 공개됨으로써 공정위 퇴직자 재취업 문제와 관련한 국민들의 우려를 조금이나마 불식시켜 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운영 예정인 재취업 이력 공시 게시판 화면]

The screenshot shows a web interface for 'Retiree Re-employment History Disclosure'. On the left is a navigation menu with 'Information Disclosure' selected. The main content area has a breadcrumb trail: 'Information Disclosure > All Notices > Retiree Re-employment History Disclosure'. Below the title is a search bar with '등록일' (Registration Date) selected, and buttons for '시작일 선택' (Select Start Date) and '종료일 선택' (Select End Date). A search button labeled '검색' (Search) is also present. Below the search bar is a table with the following data:

번호	제목	담당부서	등록일	첨부	조회
1	재취업자 취업이력 공시 TEST 게시글입니다.		2018-11-28		6

At the bottom of the table is a pagination control showing page 1 of 6.

다음으로 부적절한 자문계약 발견 시 즉각 조치 및 예방 강화와 관련하여 공직자윤리법상 위법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자문계약 등에 대한 안내문을 공시대상 기업집단 등 주요 기업에게 배포하였으며, 향후 공정위 퇴직 예정자들에게도 이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고 관

런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퇴직예정자에 대한 공정위의 재취업 자체 심사가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위 재취업 자체심사 매뉴얼을 마련 중에 있으며 향후 동 매뉴얼에 따라 퇴직예정자에 대한 자체심사를 보다 객관적이고 엄격하게 할 계획이다.

3) 공직윤리 강화 관련

먼저 퇴직자와 현직자 간 접촉을 상당히 강화하였다. 조직쇄신 방안 발표 이후 공정위 현직자는 퇴직자와 사건과 관련한 어떠한 개인적인 접촉도 할 수 없다. 즉, 사건과 관련하여 논의하고자 하는 경우 개인 전화 또는 개인 메일 등을 이용한 접촉은 전면 금지되고, 공적인 영역에서의 접촉만 가능하다.

특히 이와 관련하여 과거에는 사무실 전화, 공직메일 등을 통한 업무연락은 외부인 접촉 보고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조직쇄신방안 발표 이후 현재는 사무실 전화, 공직메일 등을 통한 접촉보고 대상 퇴직자와의 연락 또한 보고하게 하였다. 외부인 접촉, 특히 퇴직자와의 접촉이 한층 강화됨으로써 공정위 사건 처리와 관련한 퇴직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우려가 상당 부분 감소될 것으로 기대되며, 사건 처리의 공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공정위 조직쇄신 방안 발표 즉시 유착 의혹을 살 수 있는 외부교육에의 참여가 전면 금지되었고,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유료 강의가 금지되었다. 현재 공정위 현직자는 공정위 퇴직자 또는 기업·로펌의 공정거래 업무 관련자가 함께 참여하는 외부 교육에 참여할 수 없으며, 기업 또는 로펌 등의 요청에 따른 유료 강의 또한 할 수 없다. 이를 통해 외부인과의 부적절한 유착 의혹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 향후 계획 |

금 번 발표한 조직쇄신방안은 공정위 퇴직자의 재취업 문제와 관련한 그간의 잘못된 관행을 타파하고 외부인과의 접촉으로 인한 사건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공정위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금번 방안은 일회성 조치가 아니라 향후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며, 장기적으로는 공정위 사건 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는 등 공정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법무부 탈검찰화로 법무행정 전문성 및 지속성 강화

| 추진 배경 |

그 동안 법무부는 검찰 외에 교정, 출입국·외국인 정책, 범죄예방, 인권옹호 등 다양한 법무행정 사무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실·국·본부장 7개 중 6개 직위에 모두 검사를 보임하는 등 주요 직위에 직제 상으로 검사만 보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검사를 보임하여 왔다.

이로 인해 법무부는 주요 법무행정 사무를 담당하는 검사가 1년 내지 3년의 짧은 인사 주기에 따라 이동함으로써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정책 추진이 어렵고, 검찰 사무를 감독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검찰의 시각만을 반영하여 정책을 추진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 제도 개요 |

'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국민의,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이 선정되었고, 그 세부과제로 법무부 탈검찰화도 포함되었다.

'17년 8월 법무부가 법무검찰의 개혁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추진하기 위하여 외부위원들을 위촉하여 발족한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는 제1차 권고안으로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권고하였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17년 8월부터 법무실장,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인권국장, 범죄예방정책국장을 모두 외부 인사 또는 검사가 아닌 내부 공무원 출신으로 임명하는 등 탈검찰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법무부는 탈검찰화의 지속적 추진으로 법무부와 검찰이 본연의 임무를 더욱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법무행정 영역에서 전문성과 지속성을 강화함은 물론 국민의 시각을 보다 충실히 반영한 법무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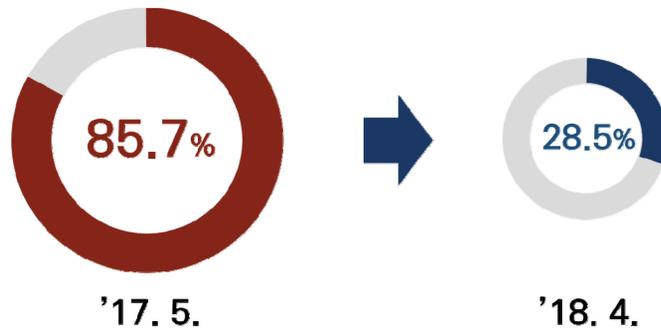
| 추진 경과 |

1) 실·국·본부장 직위에 대한 탈검찰화

'17년 8월 직제 개정으로 검찰국장을 제외한 전 실·국·본부장에 비검사를 보임할 수 있도록 복수직제화를 완료하였다.

법무실장('17.8.22.),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17.9.4.), 인권국장('17.9.29.)을 각 법무행정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외부 인사로 보임하는 한편, 범죄예방정책국장('18.4.2.)은 보호직 공무원 출신 인사로 임용하였다.

■ 검사 보임 실·국·본부장 비율



이로써, 법무부 내 검사 보임 실·국·본부장 비율은 기존 85.7%(7명 중 6명)에서 28.6% (7명 중 2명)로 축소하였다.

2) 국장급 직위에 대한 탈검찰화

'17년 10월 기존에 검사로만 보임 가능하던 국장급인 감찰관 및 법무심의관 직위에 일반 직 보임이 가능하도록 직제규정 개정을 완료하였다.

'18년 10월 검사로 보임하던 법무심의관을 외부에 개방하여 법제처 공무원 출신 인사로 임용하였고, '18년 11월 현재 감찰관 직위에 대하여 외부 공모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3) 과장급 직위에 대한 탈검찰화

'17년 10월 기존에 검사로만 보임 가능하던 검찰국을 제외한 모든 과장 직위에 대하여 일반직 보임이 가능하도록 직제규정 개정을 완료하였다.

검사로 보임하던 8개 과장 직위를 해당 직위의 특성을 고려하여 외부 공모절차를 거쳐 외부 변호사 등에 개방하거나 내부 승진·전보를 통해 내부 공무원으로 보임하였다.

구체적으로는, '17년 11월 인권정책과장에 비검사 인권 전문 공무원을 임용하고, '18년 4월 보호정책과장, 여성아동인권과장, 국제법무과장에 외부 변호사를 임용하였다.

'18년 7월 상사법무과장에 외부 변호사를 임용하고 '18년 8월 범죄예방기획과장 및 치료처우과장에 내부 보호직 공무원을 보임하였으며, '18년 9월 인권구조과장에 외부 변호사를 임용하였다.

4) 평검사 직위에 대한 탈검찰화

'17년 10월 기존에 검사로만 보임 가능하던 검찰국을 제외한 모든 평검사 직위에 대하여 일반직 보임이 가능하도록 직제규정 개정을 완료하였다.

'18년 2월 법무실 및 인권국 평검사 10개 직위를 외부에 개방하고, 범죄예방정책국 평검사 2개 직위는 내부 보호직 공무원으로 보임하였다.

'18년 8월 범죄예방정책국 평검사 2개 직위를 추가적으로 내부 보호직 공무원으로 보임하였다.

| 향후 계획 |

법무부는 탈검찰화를 통해 각 법무행정 분야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강화하여 국민에게 고품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탈검찰화로 인하여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업무공백 등의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신규 채용 직원을 대상으로 행정실무에 대한 이해와 내부 소통력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원활한 업무수행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또한, 채용과정에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이 될 수 있도록 블라인드 방식 등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해당 직위에 가장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거나 전문성을 갖춘 내부 공무원을 보임하도록 하고 있다.

향후 인사시기에 맞추어 검사로 보임하고 있는 일정 직위를 선별하여 탈검찰화를 지속 추진할 예정이며, 탈검찰화로 임용된 보임자들을 궁극적으로 법무행정에 정통한 인재로 양성함으로써 탈검찰화를 정착시키고, 국민의 눈높이에 보다 충실한 법무행정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내부 혁신을 거듭해 나갈 것이다.

투명성 · 청렴성 제고를 위한 개방형 국방운영

| 추진 배경 |

국방부는 현 정부가 ‘반부패 개혁으로 청렴한국 실현’이라는 국정목표를 설정하고 민관 협력형 부패방지체계를 구축하는 등 반부패 정책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는 정책기조에 적극 부응하고자, 국방업무 전반에 대한 국민의 감시와 참여를 확대하여 개방적인 국방운영을 통해 투명성과 청렴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또한 국방 예산, 군수 관리, 국방정책 분야 등에 시민단체, 일반시민, 학계 등 다양한 외부 인사들을 참여시켜 국방업무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제고하고 공감대를 확산하는 등 대국민 소통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고자 한다.

시민단체와 외부전문가가 국방업무에 참여함으로써 국민과 함께 투명하고 청렴한 국방조직문화를 정착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한다.

| 추진 내용 |

투명성과 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한 반부패 제도 개선은 첫째, 시민의 국방업무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청렴국방 민·관협의회 설치, 둘째, 국방부문이 청렴하고 깨끗해지기 위해서 국방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들과 함께 부패방지 노력을 약속하는 청렴사회협약 체결, 셋째, 국방주요사업에 대한 국민의 감시 및 군 내부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접수·권고 등을 독립적인 지위에서 수행하는 청렴옴부즈만 제도 도입을 통해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의 참여와 소통을 확대하기 위해 첫째, 對국민 영향 및 국민적 관심이 큰 국방 분야에 민간전문가와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NGO 포럼, 국방예산 토론회 개최를 통해 군과 시민사회의 연계를 강화하고, 둘째, 국민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어머니 모니터링단 운영 등을 통해 국방정책 형성 및 시행 과정 중 국민의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1) 청렴국방 민·관협의회 설치

국방부는 문재인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한 ‘반부패 개혁으로 청렴한국 실현’을 위해 국민의 참여와 감시를 확대하고, 민·군이 협력하는 부패방지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청렴국방 민·관협의회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를 모델로 하여 국방부, 방위사업청, 병무청 등 국방기관과 시민단체, 그리고 국방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방산업계·군납업계·군 건설업계 등을 대변하는 협회의 대표자 등 총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계획이며, 국방부차관과 민간분야의 대표자가 공동의장을 맡아 협의회를 운영하게 될 것이다. 협의회는 국방분야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상황 점검·평가기능을 수행하고, 특히 청렴사회협약(안)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

2) 청렴사회협약 체결

국방 분야가 보다 더 청렴해지기 위해서는 국방기관 종사자만 청렴하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국방기관과 이해관계 집단이 함께 부패방지를 위해 노력해야만 사회 전체적으로 청렴문화가 정착되고 이를 통해 국가 청렴도를 제고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청렴국방 민·관협의회 주도로 시민단체를 포함하여 방산업계, 군납업계·군 건설업계 등을 대변하는 협회 등의 대표들과 청렴사회협약을 체결하고자 한다. 그리고 시민단체와 함께 각 부문별로 청렴사회협약의 내용을 실천하고 그 이행상황을 점검해 나갈 것이다.

3) 청렴옴부즈만 도입

국방업무에 대한 폐쇄성으로 국민들의 참여와 감시가 제한적이었으나 앞으로 청렴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여 청렴옴부즈만이 접수한 부패행위, 위법·부당행위 신고에 대해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내부 신고자가 인사나 경제적 불이익 조치를 받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모든 간부를 대상으로 내부 신고자 보호 교육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국방부 청렴 옴부즈만은 도덕성·청렴성·전문성을 갖춘 민간 전문가 5인으로 구성하였으며, 시민단체와 감사원, 국민권익위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위촉을 하였다. 청렴옴부즈만이 국방 주요사업에 대한 부패행위 감시를 수행하고 군 내부의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 접

수, 조사, 시정 권고 등을 독립적으로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부패행위 감사의 공정성·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국방 청렴음부즈만 신고 전용 메일 주소

▲서주석 국방부차관(가운데) 주관 위촉(10.23.)

4) 국방 NGO포럼, 국민 참여 국방예산 토론회 개최

민간 전문가의 단순한 참여나 일회성 민·관 협력만으로는 軍의 본질적 체질개선과 국방개혁의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우며, 이제는 軍에 대한 민·군 협력체계 마련과 같은 구조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 작년 12월 19일 서주석 국방부 차관 주관으로 개최된 ‘제1차 NGO 포럼’에는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7개 NGO 단체가 참여하였는데, 본 포럼은 국방 분야에 대한 시민사회의 참여 의지를 확인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또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국방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국방 분야 반부패·청렴대책’, ‘국방 양성평등정책 발전방안’ 등의 주제로 NGO 포럼을 개최하였으며 그 결과를 정책으로 구현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방부는 국민적 관심이 큰 국방예산 정책 결정 과정을 국민과 함께하기 위해, 지난 5월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국민 참여 국방예산 대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본 토론회에서는 200여 명의 국민 및 장병이 함께 모여 다양한 분야의 국방예산 사업에 대해 토론하고, 국방부 및 각 군 담당자들도 참여하여 국민들이 국방정책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토론회 당일 논의되었던 사업 중 관심이 많았던 사업 일부는 '19년 국방예산 요구안에 반영하여 국민이 직접 제안한 국방예산 사업이 실제 국방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동안은 국방예산에 대한 국민의 직접적인 참여 기회가 부족하였지만, 앞으로 국방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마련하여 국방운영에 국민참여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송영무 前국방부장관 주관 국민참여 국방예산 대토론회 개최(5. 11.)



▲국방예산 대토론회 홍보자료

5) 「국방개혁 2.0 국민제안 공모전」 등 추진

국방부는 국민과의 거리감을 해소하고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일 것이다. 국방부는 「국방개혁 2.0」 과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지난 1월 「국방개혁 2.0 국민제안 공모전」을 개최하였다. 본 공모전은 장병 복무여건, 인권 보호 강화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주제를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대학생·시민·장병 등 다양한 계층에서 613건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시하였다. 아울러 기존에 장병 급식의 안정성 점검을 위해 운영해오던 ‘어머니 모니터링단’의 활동 분야를 타 군수 분야로 확대할 것이다.



▲ 어머니 장병급식 / 피복 모니터링단 5기 발대식에 참석한 16명의 단원 및 서재현 국방기술품질원 품질경영 본부장(가운데)

| 향후 전망 |

‘국민과 함께 하는 국방’은 국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여 국민의 시각에서 반부패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때 실현이 가능하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시민사회와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적극 확대하기 위하여 청렴국방 민·관협의회 설치, 청렴사회협약 체결, 청렴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고, 대민 연계성 강화, 개방성 차원에서 NGO포럼, 국민이 참여하는 국방예산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국민과 함께 부패방지 대책 발전 및 열린 국방부를 구현해 나가고자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투명성·청렴성 제고를 위한 개방형 국방운영’ 과제는 국방운영 전반에 있어 개방성과 투명성을 한 차원 높여 국민들의 기대수준을 충족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국방에 대한 국민의 굳건한 신뢰를 확보함으로써 국방개혁 추진의 동력을 얻고 군의 궁극적인 목표인 국가보위 임무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한다.

| 향후 계획 |

국방부는 '18년 10월 청렴옴부즈만을 위촉한 후 매월 2회 회의를 통해 부패행위 감시 및 부패신고 사건 조사 등을 수행하고, '18년 11월에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를 설치하기 위하여 규정을 제정할 것이며, 협의회 회의를 통해 청렴사회협약(안)을 마련하여 협약내용을 충실히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국방부는 국민의 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기 위해 국민의 관심이 높은 분야를 대상으로 선택과 집중의 소통에 더욱 노력할 것이다.

조직문화 및 제도개선 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추진 배경 |

보건복지부는 그간 보건복지 정책 추진에 있어 잘못된 관행과 제도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발굴하고 보건복지부 조직문화를 혁신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조직문화 및 제도개선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2017년 11월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위원회는 민간 위원을 위원장으로 보건, 복지, 법률, 행정 일반 등의 전문가인 외부위원 7인, 보건복지부의 주무국장 중심인 내부위원 7인의 총 14인으로 구성하였다.

기본적으로 위원회는 과거 잘못에 대한 책임자 처벌보다는 정책 추진에 있어 국민적 우려를 자아냈거나 갈등이 발생하게 된 원인을 밝히고 그러한 우려와 갈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좀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되는 데 필요한 일들을 해보자는 미래지향에 뜻을 모으고 논의를 진행하였다.

| 추진 경과 |

위원회는 2017년 11월 2일부터 권고문을 발표한 2018년 4월 18일까지 약 6개월 동안 총 10차례 전체회의와 안건별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한 소위원회 회의(7회) 및 조직문화 관련 심층 면접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논의 중간 과정에서 장관 주재 토론회를 통해 위원회의 논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기도 하였다. 위원회에서 살펴본 과제와 이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주요 이행계획은 아래와 같다.



* (사진출처) e브리핑 및 뉴스스

1) 국민연금 의사결정구조 개선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의 찬성 결정 및 그 과정과 그에 따른 기금 손실 등의 사회적 논란은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성과 신뢰성을 떨어뜨렸다. 이에 따라 위원회에서는 국민연금과 관련한 중요한 의사결정은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를 거치게 하여 내부위원회 결정만으로 최종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고, 기금운용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스투어드십 코드를 도입할 것 등을 권고하였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에서는 의결권 전문위원회 위원 3인 이상이 요구하는 의결권행사 안건은 기금본부가 아닌 전문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지침 개정을 완료하고 스투어드십 코드 도입을 선언하는 등의 조치를 진행하였다. 또한 기금운용위원회 권한 및 책임 설정에 대하여 기금운용위원회,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하여 기금운용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2) 의료공공성 강화

의료영리화에 관한 국민들의 인식 중에는 일련의 정책들이 추진될 경우 동네 의원과 중소 병원들이 타격을 입고, 비싼 병원비 때문에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게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다. 위원회는 이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보건복지부가 의료 공공성을 훼손하는 의료 영리화 정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힐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공공보건의료 발전위원회에서 논의한 의료 공공성 강화 대책과 더불어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춘 산업 육성 간의 조화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하였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에서는 의료영리화 우려가 발생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공공보건의료 발전위원회에서 논의한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 추진을 통해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등에 대해서도 참여와 투명성에 기반한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논의할 예정이다.

3) 신설·변경 사회보장 협의제도 개선

서울시 청년수당·성남시 청년배당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복지정책에 대해 중앙정부와 갈등이 발생한 이유와 이를 원만하게 해결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를 검토하였다.

검토 끝에 위원회는 조정절차 및 기한, 조정 시 관계기관의 의견개진 기회 보장 등의 협의·조정절차를 명확하게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협의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에서는 사회보장조정 관련 법령 등을 개정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조정 신청 권한을 부여하고 조정 시 관계기관의 의견 개진 기회를 보장하는 등 규정과 절차를 명확하게 하였다.

4) 정부위원회 운영 개선

국민연금과 같이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정부위원회, 특히 보건복지부의 경우 국민연금 뿐 아니라 건강보험처럼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보험 관련 위원회의 대표성과 독립성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위원 구성의 대표성을 확보할 것과 민간위원의 안전발의권 부여 등 논의 과정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우선 각 부서에 분야별 전문가 풀(pool)을 제공하여 위원 구성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위원회별로 현황을 파악하여 안전 제시 요건과 관련된 규정을 완화하거나 신설할 필요성을 검토하는 등 독립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5) 보건복지부 조직문화 분석 및 개선

보건복지부는 앞서 살펴본 과제들을 개선하고, 국민과 맞닿아 있는 정책을 실제로 설계·

추진해야 하는 주체이다. 위원회에서는 이 조직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바뀌어야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정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 권고 내용으로는 건전한 협업문화 정착, 반복적 악성 민원에 대한 대응체계 개선, 달라진 사회 환경을 반영하는 심층적 조직진단 실시 등이 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공공기관과의 관계에서 정책의 파트너로서 협업하는 자세를 갖도록 하며, 지속적인 상담센터 인력 충원에 힘쓰고, 민원인 폭언 시 민원 응대를 종료할 수 있는 절차를 안내하는 등 민원 업무를 개선하였다. 또한 좋은 관리자 실천규약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조직관리를 위한 조직진단을 완료할 예정이다.

| 향후 계획 |

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서는 위원회 권고에 따른 이행계획이 진정한 조직문화 및 제도개선 결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추진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며, 현재 2018년 3분기 점검이 완료된 상황이다.

이번 위원회 활동을 계기로 보건복지부는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보건·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제공 주체로서 더 건강한 조직 구성원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기록관리체계 혁신 추진

| 추진 배경 |

촛불민심으로 표출된 혁신에 대한 국민의 열망은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게 사회혁신의 과제를 부여하였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부터 정부혁신을 통해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를 구현한다는 목표를 수립하고 사회 각 분야에서 혁신을 주요 화두로 제시하였다.

국가기록관리는 공공업무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업무효율성을 높임으로써 국민에게 양질의 정보 제공을 통해 권리 보호 및 역사 보존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

지난 10년 간 국가기록관리는 기록의 생산 책임 부여, 기록관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 변화되는 전자환경을 반영하는 새로운 시스템의 구축, 국민에 대한 양질의 정보제공을 위한 노력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일정한 변화와 발전을 이루었다. 그러나 사회적 혼란의 순간마다 국가기록의 전문기관으로서 역할 수행이 부족했던 것도 사실이었다. 따라서 국가기록관리 혁신을 통해 과거 국가기록관리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공정하고 중립적이며 전문적인 국가기록관리 체계의 확립을 요구받게 되었다.

국가기록원은 새로운 정부 출범과 함께 그 동안 누적된 국가기록관리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고 전문성과 중립성을 갖추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가기록관리혁신을 추진하였다.

| 추진 배경(국가기록관리혁신TF) |

1) 국가기록관리혁신의 방향

국가기록관리 혁신의 배경에는 국가기록관리 현장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가 내포되었다는

인식이 있었다.

첫째, 2005년 기록관리 혁신의 첫 번째 아젠다이기도 했던 공공업무의 기록화 과제는 기록물의 생산등록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다양한 유형의 기록물을 포괄하지 못하고 미등록 기록물 등에 대한 법적 책임성 부여 미비 등의 한계를 드러내었다.

둘째, 국가기록관리 혁신의 핵심은 각급 기록물관리기관이 전문성과 체계를 갖추고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직, 인력, 관리절차를 구비하고 불필요한 법률상 규제를 제거하는데 있다. 그러나 장기간 1인 기록관의 지속,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의 비정규직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였고, 특히 광역지방자치단체 등의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설치가 미진했다.

셋째, '07년 공공기록물법의 전부개정 방향이 '태생적 전자기록'으로 전환을 고려하고 있었음에도 '종이기록의 전자적 관리'라고 하는 근본적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로 인해 전자기록의 생산에서 보존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기록관리체계를 갖추지 못하였고, 중복 데이터의 생산, 낮은 품질의 기록정보 제공 등의 문제를 안고 있었다.

넷째, 기록관리의 본질은 기록정보의 적극적 공개와 서비스를 통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 그러나 공개 가능한 비현용 기록에 대한 정보공개법의 적용 등으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서 기록물 서비스의 한계를 드러냈다. 또 영구기록물관리기관 간 통합서비스 방안 검토 등 보다 나은 서비스를 위한 시스템 구축 노력도 부족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새로운 국가기록관리체계의 혁신을 달성하기 위해 ① 공공업무의 철저한 기록화, ② 기록관리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와 인프라 정비, ③ 환경변화에 대응한 전자기록관리체계의 재설계 ④ 기록정보의 공개 공유 확대와 자원화의 4대 목표가 설정되었다.

2) 국가기록관리혁신TF의 구성과 운영

'17년 9월 13일 기록관리 현장 및 학계, 단체를 대표하는 전문가로 구성된 국가기록관리혁신TF(이하 '혁신TF')가 출범하였다. 혁신TF는 3개 분과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위원장으로는 안병우(한신대)교수가 위촉되었다.

제1분과는 국가기록원의 조직과 인사, 업무 관행에 관한 조사와 지난 10년간 기록관리 현안문제에 대한 진실규명을 목표로 삼았다. 제2분과는 공공기록관리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혁신 방안의 도출을 목표로 하였다. 제3분과는 NLL 대화록, 대통령 지정기록물관리 등

정치적 문제로 비화되었던 대통령기록물관리의 전문성 강화 방안을 목표로 삼았다.

각 분과는 분과장을 중심으로 담당 분야에서 문제점의 분석과 토론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다. 또한 분과 단위의 토의 내용은 8차에 걸친 전체 회의를 통해 공유되었고, 혁신과제로 정리되었다.

'17년 12월 7~8일 혁신TF 주관으로 경주에서 혁신과제 대토론회가 개최되었다. 국정기록비서관실, 국가기록원, 기록관리 학계와 민간단체, 중앙 및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기록물관리전문요원 등 300여명이 참석하였다. 참석자들은 혁신TF의 발표 및 토론을 통해 현장에서 느낀 다양한 문제를 제시하고 혁신의 올바른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혁신TF는 '17년 1월 31일자로 활동을 종료하였다. '18년 1월 15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NLL 대화록 유출 사건 등 11개 국가기록관리 폐단 및 수사의뢰 등 5대 권고사항, 처분동결제도 도입 등 공공기록관리 혁신을 위한 20개 세부과제, 대통령지정기록물 제도 개선 등 17개 세부과제를 발표하였다. 그리고 '18년 2월 26일 최종 보고서가 제출되었다.

한편 국가기록원은 최종보고서 접수 전부터 전 직원이 참석하는 국가기록관리 혁신과제 공유 워크숍을 개최하여 혁신과제의 방향과 개념의 공유를 추진하였다.

3) 국가기록관리 혁신과제의 제안

혁신TF는 국가기록관리체계 혁신을 위해 공공기록관리 및 대통령기록관리에 관한 혁신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공공기록관리 혁신과제는 8대 과제와 20개 세부과제로 구성되었다.

대과제	세부과제
1. 국가기록평가제도 재설계	① 국가기록평가정책수립 ② 평가도구(지침) 재설계 ③ 기록동결제도 도입
2. 기록관 기록관리 기반 강화	① 기록관 역할과 기능 재정의 ② 기록관 조직과 인력배치기준 제시 ③ 국가기록원의 자원체계 강화 ④ 기타 공공기관의 기록관리 기반강화
3. 지방기록관리의 정상화	① 지방기록관리제도 개선 ② 지방기록관리기관 설립 촉진
4. 헌법기록물관리기관 기록 관리 강화	① 헌법기록물관리기관 기록관리 역할과 기능강화
5. 기록전문직 윤리와 전문성 강화	① 기록전문직 윤리 강화 ② 기록전문직 전문성 강화
6. 기록 및 메타데이터 관리의 연속성 · 효율성 확보	① 메타데이터 관리 혁신 ② 기록분류체계의 재설계 및 평가도구 연계 ③ 이관 프로세스 및 정책 개선
7. 전자기록 장기보존정책 수립과 이행	① 장기보존 기본정책수립 ② 전자기록 유형별 관리, 보존설계 및 제도화
8. 기록정보공개의 체계화와 서비스 개선	① 기록공개제도 개선 ②보존재 공익침해심사제도 도입 ③ 기록서비스 강화

대통령기록관리 혁신과제는 우선과제 4개, 중장기과제 3개 등 7대 과제와 17개 세부과제로 구성되었다.

대과제	세부과제
1. 지정보호제도 개선	① 정치중립화 기록전문성에 기반한 지정 재분류, 해제 등 권한의 법제화와 업무절차 개발 ② 유고시 대통령 지정기록 지정 등 권한 및 절차
2. 생산기관 기록관리 개선	① 기록생산 및 관리절차 개선 ② 기록평가제도 개선 ③ 기록 이관제도 개선 ④ 생산기관-비서실기록관-대통령기록관 업무체계 재정립 ⑤ 유고 시 생산, 유지, 이관 등 절차 규정
3. 디지털기반 대통령기록관 모델 정립	① 개별 및 통합대통령기록관 공존을 고려한 디지털아카이브시스템 구축 전략
4. 대통령기록관 중립성·전문성 보장	① 대통령기록관 독립조직화를 통한 정치중립성 지향, ② 대통령기록관 고유전문 업무를 강화하는 거버넌스 조직개편 ③ 대통령기록관장 인사 및 전문자문위원 선정의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
5. 대통령기록 정의 등 재정립	① 전자환경에 부합하고 국정 설명책임성 담도하는 대통령 기록의 정의와 범위 제시 ② 대통령기록의 성립요건 규정으로 관리대상확정
6. 원칙·법령에 부합하는 업무기록 시스템요건 정의	① 통합전산자원 운용 기반 대통령기록·데이터생산·관리고도화 ② 대통령 소셜 미디어 기록아카이브 및 기관내외 접근보장 체계 설계
7. 정치적 악용 방지	① 처벌조항 보완 ② 엄밀한 기록정의와 기록식별을 통한 정치적 악용방지

최종보고서에서 제시된 혁신과제의 구체적 이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기록원 혁신추진단이 구성·운영되었다.

| 추진 내용(국가기록관리혁신추진단) |

1) 국가기록관리혁신추진단의 구성

'18. 2. 국가기록원은 혁신TF가 제시한 혁신과제 이행방안 마련 등 혁신추진을 담당할 국가기록관리혁신추진단(이하 혁신추진단)을 구성하였다. 국가기록원장을 단장으로 하고 총괄팀, 공공 및 대통령기록관리혁신팀 3개팀으로 구성된 추진단은 조직개편 및 법률개정, 공공 및 대통령기록관리혁신과제 이행방안 마련을 주요 목표로 설정하였다.

혁신추진단은 혁신과제 이행방안 마련을 위해 원내 과장급 이상 간부 및 혁신과제 담당자가 참석하는 혁신워크숍을 개최하였다. 2월 27~28일 양일간 천안에서 개최된 워크숍에서는 혁신TF가 제시한 과제를 검토하여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토론했다. 혁신추진단은 워크숍 결과를 바탕으로 과제 간 연계 및 현업 관련성을 고려하여 과제의 조정을 추진하였다.

조정 결과 8대 과제 20개 세부과제가 5대 과제 24개 세부과제로 정비되었고, 혁신TF 2분과장의 검토 및 국가기록원장 보고를 통해 최종 결정되었다.

과제 정비가 완료된 후 과제 담당자를 중심으로 혁신과제 이행방안 마련을 위한 각종 협의회 등이 진행되었고, 4월에는 중간 점검을 위한 검토회의가 원장 주재의 영상회의로 진행되었다. 혁신추진단은 8월말 해단하였고 정책기획과 주관으로 혁신과제 이행방안 검토 세미나 등이 추진되고 있다. 10월 현재 혁신과제는 2개의 완료과제를 포함하여 단기과제는 금년 중으로 결과물을 제출하고, 중장기 과제는 '19년도 부서별 업무계획에 반영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현장의 기록관리 전문요원, 학계 및 단체의 기록관리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손동유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자문위원회는 6월말까지 약 4개월 간 혁신과제, 조직개편, 법령개정 등 각종 현안에 대한 자문을 실시하였다.

2) 공공기록물법 및 대통령기록물법 개정

혁신과제 수행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변화하는 기록관리 환경을 반영한 법률의 개정이다. 그 동안 혁신TF의 제안은 물론 국회, 학계, 단체 등에서 기록관리 영역에서 발생한 문제를 지적하며 현실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법률 개정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계속되었다.

혁신추진단은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여 공공기록물법 및 대통령기록물법의 개정을 추진하였다. 특히 개정안 마련 초기 단계부터 현장 전문요원, 학계 및 단체 등과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기록관리 체계 혁신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였다.

공공기록물법 개정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공공업무의 철저한 기록화, 변화하는 전자환경을 반영한 전자기록관리 기반강화, 기록관리 내실화, 기록정보공개제도 개선 등이다. 특히 공공업무의 철저한 기록화를 위해 기록물폐기 중지제도의 도입과 생산 관리 의무의 강화, 처벌조항에 대한 준거규정이 명확하게 규정되었다. 또한 전자기록물의 속성을 반영한 이관 절차 개선, 행정정보데이터세트의 관리체계 마련, 공개 재분류제도 개선 등이 핵심 내용이다.

대통령기록물법은 대통령기록물 생산체계 개선, 수집관리 체계 개선, 지정기록물 보호제도 보완, 대통령 궐위 시 기록물관리, 대통령기록관리의 책임성과 전문성 강화를 주요 방향으로 하고 있다. 생산체계 개선에서는 생산기관 기록관리를 강화하고 폐기절차 개선 및 무단 파기와 유출에 대한 처벌 규정 명문화, 수집관리 개선에서는 전직대통령 기록물 열람제도 개선, 이관 누락·유출 기록물 회수절차 규정 등을 마련하였다. 지정기록물 보호제도와

관련해서는 과지정 방지를 위한 세부기준 수립, 국회 등에 지정기록물 사본 제공 시 반환 및 처리규정 명문화, 지정기록물 해제근거 및 유고시 지정기록물 열람 근거 등을 마련하였다. 또한 권위 시 기록물 관리 및 이관, 지정 등에 관한 조항이 정비되었으며,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의 거버넌스 기구화 등도 추진되었다.

두 개의 법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및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18년 12월 중 국회에 제출될 계획이다.

| 향후 계획 |

문재인 정부의 출범과 함께 시작된 국가기록관리 혁신은 법률 개정, 혁신과제 이행방안 마련을 넘어 국가기록관리체계의 근본적 개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공기록물법이 제정된 1999년 이후 20년이 지난 지금을 돌아보며 잘못된 관행은 과감히 혁신하고,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올바른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특히 2019년은 국가기록원 출범 50주년이며, 동시에 공공기록물법 시행 20년을 맞이하는 해로서 의미가 있다.

외부로부터 요구에서 시작된 국가기록관리의 혁신의 책임은 이제 국가기록원이 가지게 되었다. 과감하고 추진력 있는 혁신 과제의 해결을 통해 국가기록관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새로운 국가기록관리 체계 구축이라는 목표에 한걸음 더 다가가려고 한다.

여객선 국민안전감독관 제도 운영

| 추진 배경 |

세월호 사고 이후 정부는 여객선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많은 제도적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그동안 해양경찰청에서 담당하던 여객선 안전업무를 해양수산부로 이관하여 정부 내 해사안전감독관 제도를 도입하고, 민간에 있던 운항관리자 조직도 공공기관으로 이관하여 독립성을 강화하는 안전관리 체계를 정비하였다. 아울러 여객선 선령제한, 여객신원 확인절차, 화물전산발권 등 제도적 개선책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여객선 안전에 대해 확신을 주지 못하는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어, 새롭게 들어선 정부에서는 여객선 안전관리에 대한 그동안의 노력을 재평가 받고, 재정비할 것은 없는지 되짚어 볼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러기 위해서 국민의 눈으로 여객선 안전관리 현장을 직접 확인하도록 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여객선 안전관리 체계에 개선할 점은 없는지 직접 살펴보고, 시정권고해 줄 수 있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였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여객선 안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이 직접 여객선 안전관리 현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존의 운항관리자, 해사안전감독관으로 구성된 안전관리 체계에 국민안전감독관을 추가하도록 하였다.

| 제도 개요 |

여객선 국민안전감독관은 여객선 안전관리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

항에 대한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민안전감독관이 비노출 점검 활동을 원칙으로 각자 점검활동을 수행한 후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해사안전감독관·운항관리자·선사에 문제점 등을 전달하여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다 같이 모여 토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국민안전감독관간의 의견교환, 선사·도서민들의 애로사항 등을 듣기 위하여 합동점검 등을 실시하여 내실 있는 운영이 되도록 하였다.

| 추진 경과 |

1) 국민안전감독관 선발·위촉

먼저, 여객선 국민안전감독관은 여객선 안전에 관심이 있으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대국민 공모를 통해 선발하기로 하고, 2018.1.15.~1.26.간 공모를 실시하였다.

각계 각층에서 응모한 지원자 76명에 대해 서류심사, 휴대전화 화상면접을 거쳐 최종 15명을 선발하였다.



선발된 국민안전감독관은 선박에 대한 규정 등 기본지식을 갖추 수 있도록 '18.2.22~3.15 기간 동안 권역별로 선박종사자 안전관리 프로그램을 이수하였다.

2) 국민안전감독관 추진활동



기초 교육을 마친 국민안전감독관은 신분을 노출하지 않고 여객선을 이용하는 국민의 입장에서 점검을 실시하였다. 점검 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발견되면 현장 조치가 가능한 사항은 해사안전감독관, 선사에 전달하여 직접 개선하도록 하였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지방해양수산청·선박안전기술공단 등이 참여하는 제도개선 TF회의에서 논의하여 반영하도록 하였다.

대학교수, 강사, 공무원, 공사 직원, 자영업자, 프리랜서 기자 등 다양한 분야의 경력을 가진 국민안전감독관들의 여객선 안전점검 참여는 실제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여객선 안전에 대한 기대 수준과 의견 등을 파악할 수 있는 훌륭한 통로가 되었다.

또한 해양수산부와의 합동점검 때에는 선사 대표자, 도서민 등과 간담회 시간을 가짐으로써 여객선 안전관리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불편 사항도 청취하여 균형감 있는 의견 제시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여객선 국민안전감독관은 '18년 10월까지 총 30회, 선박 47척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차량·수화물 고박 미흡 등 44건의 지적사항과 교통약자 편의 제공 등 6건의 제안사항을 발굴하였다.

| 추진 성과 |

1) 국민안전감독관 주요 점검내용

여객선 국민안전감독관은 일반 이용객 입장에서 안전관리 전반에 대해 점검한 결과 계류용 밧줄상태 불량, 소화기 외관 상태 불량 등 44건의 지적사항과 교통약자 편의 제공 등 6건의 제안사항을 발굴하였다. 지적사항은 규정 위반 여부 파악 및 시정 조치를 완료하였으며, 제안사항은 TF회의를 통해 논의 및 개선 진행 중이다.

그 밖에도 제도개선TF를 통해 제시된 대표소 직원 등에 대한 교육, 구명부환 설치 위치 조정 의견 등은 해사안전감독관들의 현장 지도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중이다.

2) 국민안전감독관 제도 만족도 조사결과

국민안전감독관 제도에 대하여 여객선을 이용하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18.7월과 10월 2차례에 걸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367명, 345명이 응답하였으며, 대부분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내었다.

일반 국민들은 국민안전감독관 제도에 대해 상당수 인지하고 있었으며(1차 59%→ 2차 66% 인지답변) 안전확보·투명성·제도개선·신뢰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긍정 의견이 다수이며, 점차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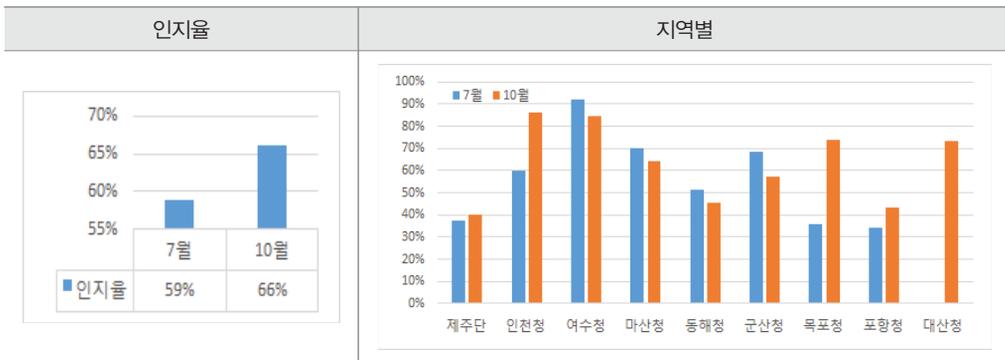
참여의향 및 지속필요성 부문에서는 참여 의향, 지속필요성에 대해서는 다소 유보적 입장이 우세하나, 긍정적 의견도 증가 추세이다.

이는 8개월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제도를 운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객선 국민 안전감독관 제도에 대한 긍정적 시그널로 풀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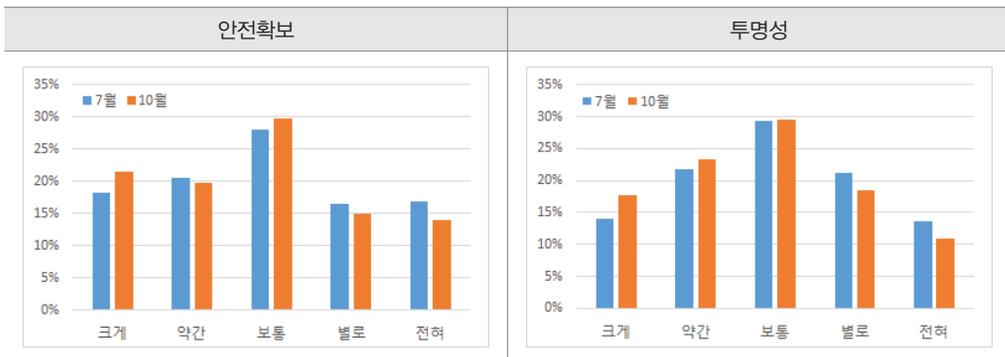
[조사개요]

<p>【1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기간 : '18. 7. 6 ~ 7. 13 • 전체 응답자 367명 • 조사대상 : 일반인 	<p>【2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기간 : '18.10.15 ~ 10.25 • 전체 응답자 345명 • 조사대상 : 일반인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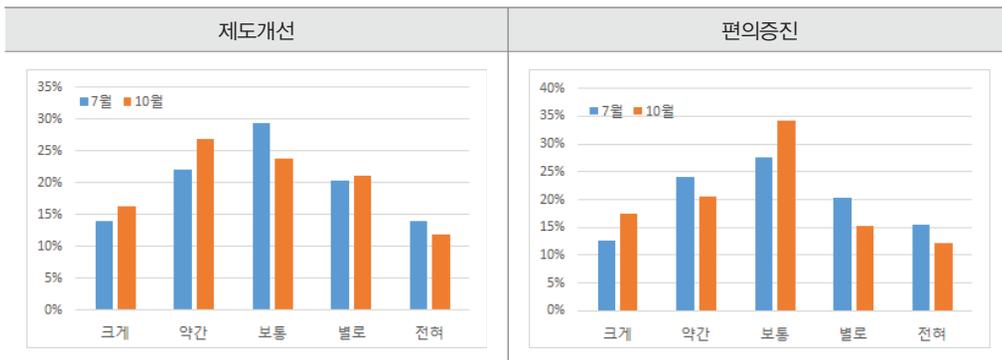
① 국민안전감독관 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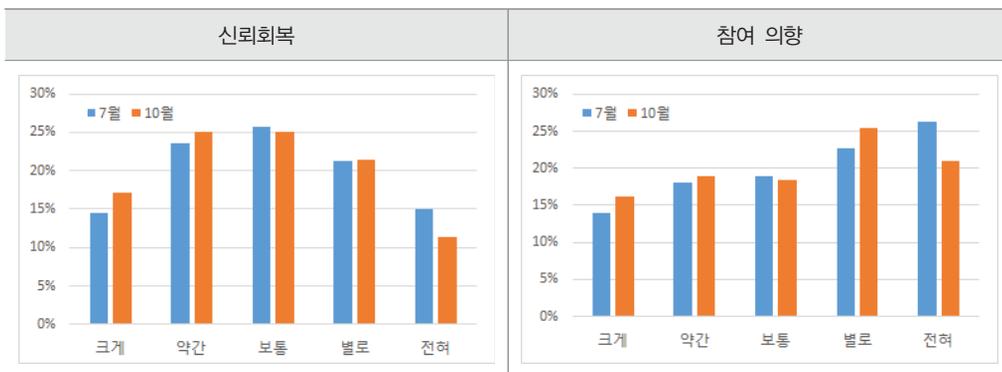
② 안전확보 및 투명성에 대한 도움 정도는?



③ 제도개선 및 국민(이용객) 편의 증진에 대한 도움 정도는?



④ 안전 신뢰회복 및 참여 의향은?



| 향후 전망 |

여객선 국민안전감독관 제도가 금년에 첫 도입되면서 일부 우려하는 의견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본인이라면 참여하겠느냐는 의견에 다소 소극적인 반응을 보인다거나, 지속할 필요가 있느냐는 물음에 보통이라는 답변이 우위를 점하는 점이 그렇다.

아울러, 여객선 국민안전감독관 제도가 도입되어 여객선 안전은 좋아지나, 점검 때문에 여객선 운항이 지연된다거나 통제됨으로 인해 이용편의가 저해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앞으로 철저한 여객선 안전 점검으로 초래될 수 있는 이용불편 등 소수의견도 개선될 수 있도록 지역별로 소그룹 형태의 의사소통 기회를 자주 마련할 계획이며, 국민안전감독관 제도의 내실있는 추진과 적극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워크숍이나, 합동점검 확대 등 재정적인 지원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

제안서 평가시스템 수요기관 개방

| 추진 배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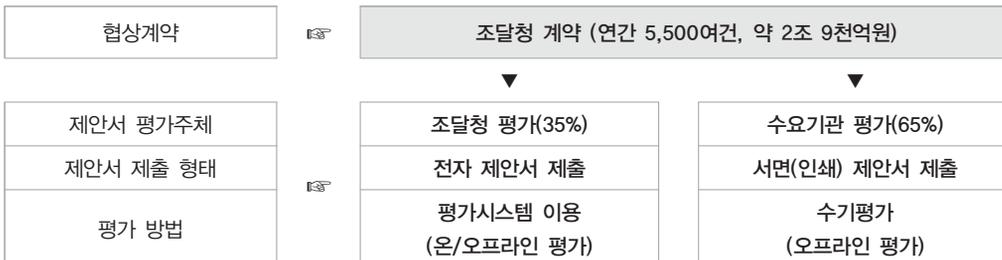
1) 현황

수요기관이 조달청에 계약을 요청하였으나 제안서를 직접 평가하는 비율은 전체 협상계약 대비 65% 수준이었다. 이 비율은 단일응찰에 따른 수의계약과 규격가격동시입찰의 제안서 적합성 평가를 포함한 것이다. 연도별 협상계약 실적 및 조달청 기술평가 대행 실적은 아래와 같다.

[조달청 기술평가 대행 실적]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6월
협상계약 실적(A)	4,896	5,474	6,077	5,537	2,934
기술평가대행 실적 (B)	2,115	2,407	2,626	2,538	1,297
점유율 (B/A)	43.2	44.0	43.4	45.8	44.2

수요기관이 제안서를 직접 평가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제안서를 오프라인으로 접수하고 수작업으로 평가를 진행하고 있었다.



2) 문제점

제안서를 오프라인으로 접수하고 평가할 경우 입찰 및 평가비용 상승으로 인한 불만 및 입찰공정성 저하 우려가 있다. 입찰자 입장에서는 제안서 인쇄비용 및 입찰장 방문경비가 상승하며, 수요기관 입장에서는 원거리 평가위원 교섭이 힘들다. 또한 수기로 평가접수 집계 시 오류 가능성이 있으며, 평가접수를 즉시 공개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투명·공정성이 훼손되는 사례도 있다. 평가위원 입장에서도 평가장을 직접 방문하여 평가하는 것은 많은 시간과 경비가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다.

〈관련기사〉 스타트업이 손사래 치는 정부과제 〈한국경제 '17.6.1. 오피니언〉

“제안서는 제본해 10부 제출, 요약본 별도 10부 제출, 요약서가 들어 있는 CD2개...” 조달청의 전자조달 플랫폼인 나라장터에 떠 있는 정부사업 입찰에 요구되는 서류 양식이다.

아울러 계약담당자, 평가위원, 발주기관, 참여업체가 대면하여 업무를 처리하므로 부정청탁 및 비리 등의 부패 발생 가능성 상존한다.

| 제도 개요 |

1) 조달청 ‘e-발주시스템’의 제안서 평가부분을 수요기관에 개방(Open)

‘e-발주시스템’은 조달청이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하는 시스템으로 중앙조달로 요청한 수요기관도 자체평가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조달청 ‘e-발주시스템’을 수요기관에 개방하였다.

평가대상 사업은 협상계약으로 중앙조달 요청된 SW사업 중 수요기관이 자체평가하는 사업에 대하여 우선적용하고 향후 규격가격동시입찰 또는 단일응찰에 따른 수의계약 제안서 적합여부 판단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수요기관이 조달요청서 접수 시 신청을 하면, 경쟁입찰 및 수의계약에 따른 기술제안서 검토 및 평가에 ‘e-발주시스템’의 활용이 가능하다.

구체적인 처리절차는 e-발주시스템의 제안서평가 서비스와 나라장터를 연계하여 ‘평가위원 자동입력’ → ‘평가실시’ → ‘평가결과 공개’로 업무처리가 진행된다.

| 추진 경과 |

1) 시범서비스 실시 및 지침마련

'17년 12월 조달청 평가시스템 외부 활용운영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였고, 'e-발주시스템'의 수요기관 자체평가 시범서비스 이용기관을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으로 선정하여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등 시스템 개선 및 시범서비스를 실시하였다.

2) 이용약관 제정 및 홍보 활동

'18년 9월 국민신문고 '전자공청회' 및 '국민생각함'을 통해 국민의견 수렴을 거쳐 'e-발주시스템' 제안평가 부분 이용에 관한 약관을 제정하였고, 조달청 평가시스템 발주기관 개방에 앞서 대내외 사용자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였다.

〈보도자료〉 조달청, 'e-발주시스템' 사용법 전국 순회교육 실시 〈18.8.30.〉

- 조달청은 9월 3일부터 2주간에 걸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 조달기업의 협상 계약 담당자를 대상으로 'e-발주시스템'에 대한 전국 순회교육을 실시한다. 〈중략〉
- 이상윤 신기술서비스국장은 "e-발주시스템은 조달청이 소프트웨어사업발주 선진화를 위해 구축한 것으로, 공공기관 및 조달업체가 많이 활용할수록 공공입찰의 공정성과 효율성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3) 서비스 오픈

'18년 10월 중앙조달 수요기관을 대상으로 'e-발주시스템' 자체평가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보도자료〉 조달청, 'e-발주시스템' 수요기관 직접 평가에도 이용가능 〈18.10.5.〉

조달업체, 종이 인쇄 제안평가자료 제출 부담 완화 ... 10월 8일부터 전면개방

조달청 발주 협상계약의 제안서 제출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조달청은 10월 8일부터 수요기관이 직접 제안서를 평가하는 경우에도, 'e-발주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 e-발주시스템은 수요기관의 제안요청서 작성부터 제안서 평가, 계약 후 사업관리까지 협상계약과 사업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

- 그동안 조달청에서 평가하는 경우에만 e-발주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었다.
 - 이번 전면 개방으로 연간 3,000여건에 육박하는 수요기관의 직접 평가도 e-발주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이하생략〉

| 향후 전망 |

1) 정량적 효과

수요기관은 'e-발주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연평균 자체평가 3천여건(중앙조달의 54%)에 대한 입찰비용 절감과 업무효율성 제고가 가능하다. 또한 범부처 공동·활용을 통해 전자정부 서비스 이용률도 높아질 것이다.

제안서를 전자적으로 제출하고 시스템으로 평가함으로써 인쇄비용 및 평가비용 절감 등 연간 112억원 상당의 비용편익 효과가 발생한다.

2) 정성적 효과

수요기관은 제안서 자체평가 시 정확성과 공정성을 확보 가능하고, 조달기업은 제안평가 공개에 따른 만족도 및 평가에 대한 신뢰성이 향상될 것이다. 또한 조달업체·수요기관·평가위원 등과의 대면접촉을 차단하여 입찰의 투명성·공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분	추진이전	추진이후
평가공정성 (비리발생차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접수 미공개 처리 수기평가(집계) 방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온라인 접수공개 시스템 자동평가 방식 ↑
기술평가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위원 수기평가 수당, 교통비 비용 증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자평가(온/오프라인)실시 평가수당/교통비 절감 ↓
입찰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안서 인쇄비용 증가 입찰장 방문 비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안서 인쇄비용 없음 온라인 전자제출(무방문) ↓

국민 눈높이에서 관세행정 혁신방향 설계

| 추진 배경 |

시대의 흐름에 따라 사회·문화적 환경은 변화하고 이에 따른 행정의 변화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도 증가하기 마련이다. 관세행정 혁신TF는 청렴성에 대한 요구 증가, 안전한 생활·공정한 사회에 대한 기대감 증가, 新 과학기술 진보에 따른 사회변화 가속화 및 납세자 권리의식 강화 등 대내외 관세행정 환경변화에 따라 관세청이 관행적으로 추진해오던 업무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향후 관세행정이 나갈 방향과 과제에 대해 국민의 시각에서 살펴보기 위해 1년을 활동기한으로 갖고 '17년 10월 발족하였다.

혁신TF는 학계·시민단체·법조계·경제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관세행정과 관련된 전문적 식견을 가진 15명의 외부위원과 함께 내부위원(차장, 국장)으로 구성하여, 국민의 눈높이에서 개선 과제와 개선안을 도출하고자 노력하였다.

| 추진 경과 |

1) 특별권고안

혁신TF의 활동 과정에서 한진家の 밀수 의혹 사건이 발생하여 참여를 희망하는 8명의 외부위원으로 특별분과를 구성하고 직접 인천공항 현장방문을 통해 세관업무 실태를 점검하였다. 특별분과에서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관련 언론보도를 살펴보고 개선안을 마련하고자 관세청 관계자와 밀도 있는 토론을 실시하여 제3자적 관점에서 문제의 본질과 개선방향을 정리하고 그 결과를 5월 30일에 발표하였다.

[특별권고안 주요 내용]

- ①휴대품 담당인력의 인적쇄신, ②사회지도층의 휴대품 검사강화, ③밀반입 취약분야 관리 강화 및 기관간 공조 확대, ④현 휴대품 통관검사체제의 근본적 재검토 등

관세청은 혁신 TF의 특별권고사항과 자체적인 개선 논의사항을 반영하여 6월 20일자로 후속조치를 마련·발표함과 동시에 같은 날 인적쇄신을 위해 인천공항 휴대품 담당인력 총 224명을 전면 교체하고, 아래와 같은 후속조치를 시행중에 있다.

밀반입 취약분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상주직원 통로와 외곽초소에 대한 불시점검과 함께 입항항공편의 불시 기내점검을 지속 실시하고 있으며, 항공사 수입화물 검사강화 및 보세구역 점검강화 방안(7월), 항공사 파우치·승무원·항공사 직원 등 여행자 휴대품 밀반입 취약분야 관리강화 지침(7월)을 수립하여 시행 중에 있다.

사회 지도층에 대한 휴대품 검사를 강화하기 위해 출입국수, 면세점과 해외에서의 신용카드 구매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위고하를 막론한 철저한 검사를 시행 중에 있으며, 과잉 의전 제한을 위해 8월까지 행정지도 기간을 거치고 9월부터 국토부령에 따른 공식 의전 대상자와 세관에 사전 등록된 자 이외 항공사 의전팀의 비공식 의전을 통한 휴대품 대리운반도 전면 금지하였다.

아울러 휴대품 통관검사체제의 재검토를 위해 여행자 휴대품 실태점검, 휴대품 검사에 대한 국민인식 및 전문가 의견 수렴, 연구용역 등을 통해 여행자 휴대품 통관체제 개편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현재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공항 현장점검(5.16)



특별권고안 발표(5.30)

2) 중간권고안

혁신TF는 6월 26일, 안전·공정·투명·민생 등 가치에 중점을 두고 관세행정 혁신을 위해 우선 추진해야 하는 7개의 과제, 19개의 중간권고안을 발표하였다.

[중간권고안 주요 내용]

- ①국민건강·사회안전 중심으로 통관체제 개편, ②투명하고 공정한 면세점 행정체제 확립, ③관세법 체계의 정비, ④부패없는 청렴한 관세행정 문화 정착, ⑤현장중심 지역 밀착형 혁신의 지속추진, ⑥新성과관리제도의 성공적 정착, ⑦기업 관세조사 통합 운영

관세청은 중간권고안을 적극 수용하여 이행하고 있다. 우선, 국민건강·사회안전 중심으로 통관체제를 개편하기 위해 통관검사 내실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중에 있으며, '19년부터는 세관장 확인대상 품목을 중심으로 국민참여형 수입검사제도를 시행하고, 계속해서 안전성 검사 품목 확대를 통해 협업검사체제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투명하고 공정한 면세점 행정체제 확립을 위해서 대리구매 가능성이 높은 우범여행자를 선별하여 현장인도를 제한하는 시스템을 구축(8월)하는 등 면세시장 질서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 특허심사 사업계획서의 이행내역 중 상생협력 등 분야의 점검결과를 공개하고 규제개선을 위해 업계 의견수렴 등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관세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관세법 체계를 정비하기 위해서 현재 주무부처인 기재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부패없는 청렴한 관세행정 문화 정착을 위해서 항공사 등에 대한 알선·청탁행위 금지를 관세청 공무원행동강령에 반영하고 직원간 의견 및 통관편의 제공 금지를 시달하였으며, 적극행정 모범사례 발굴 등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한 감사행정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현장중심 혁신의 지속추진을 위해 현장의 아이디어 소통창구를 홈페이지에 마련하여 국민의 다양한 의견제시와 제안이 가감 없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기관장의 혁신방향을 공유하고 현장직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을 위해 오픈टे이블, 수시 브라운백 미팅을 통해 현장과의 혁신 환류를 추진하고 있다. 향후에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행정 편의주의적인 규제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그간 우수한 평가를 받아온 성과제도도 현장중심의 실질적인 성과향상을 위해서 성과관리 체계를 전면 재설계하여 新성과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新성과관리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 상반기에는 현장컨설팅, 매뉴얼, 성과평가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하여 현장의

이해도 제고에 집중하였고, 조기에 성과관리 세부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등 시행착오를 최소화하여 정부부처 성과관리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관세조사의 수용성 제고와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기업 관세조사 통합 운영과 관련해서는 시스템의 중복조사 조회기능을 확대(8월)하는 등 중복조사 방지를 위한 체계 구축과 함께, 납세자보호담당관 제도의 도입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3) 최종권고안

혁신TF는 발족한 이후, 총 33회(전체회의의 5회, 분과회의의 18회, 간사단회의의 2회, 특별분과회의의 3회, 현장점검 2회, 현장간담회 3회)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한 최종권고안을 10월 29일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의결하고 발표하였다. 이번 최종권고안은 이전 발표했던 중간권고안을 보완하고, 추가과제를 발굴하여 만들어졌으며, 관세청 노조, 소수 직렬, 여성 직원과의 간담회도 3차례 개최하여 현장의 업무처리를 개선하고 내부 직원의 고충을 반영하고자 하였다.

혁신TF는 관세청이 관세행정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면서도 사회적 가치를 밀도있게 추구하여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 구현의 선도기관이 될 수 있도록 중간권고안을 보완하고 추가과제를 발굴하여 10월 29일 ①국민을 위한, ②국민에게 열린, ③미래를 대비하는 관세행정을 주제로 총 14개의 과제, 44개의 최종권고안을 발표하였다.

[최종권고안 주요 내용]

- ①국민건강·사회안전 중심으로 통관체제 개편, ②강제과세 방식에서 협력에 기반을 둔 납세체제로 전환, ③자발적 법규준수 유도로 예방중심 관세행정 운영, ④무역을 악용한 반사회적 중대범죄 차단, ⑤기업 관세조사 통합 운영, ⑥민간수요 친화적 관세행정 공공데이터의 개방 확대, ⑦투명하고 공정한 면세점 행정체제 확립, ⑧복잡한 관세법 체계의 정비, ⑨부패 없는 청렴한 관세행정 문화 정착, ⑩현장중심·지역 밀착형 혁신의 지속 추진, ⑪효율화와 사회적 형평성 제고를 위한 인사정책, ⑫국가관세종합정보망을 직접운영으로 전환, ⑬국제협력 업무의 경쟁력 강화와 국제기여도 제고, ⑭新성과관리 제도의 성공적 정착



제4차 전체회의(중간권고안 의결, 6.21)



제5차 전체회의(최종권고안 전달, 10.29)

| 추진 성과 |

정부기관으로서의 일방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자체 점검이 아닌 「관세행정 혁신 T/F」를 통한 문제해결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객관성 있는 검토를 하였고, 민간위원들의 권고사항을 적극 수용하고 그에 따른 신속한 업무개선을 추진하면서 관세청 업무에 대한 국민들의 오해 해소는 물론, 이해도를 제고하였다고 평가받고 있다.

※ 대학생을 대상으로 행정현장학교 체험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관세행정을 체험한 대학생들은 바깥에서 보는 것과는 달리 관세행정 위험관리시스템의 우수함에 놀라움을 표시, 우범 시각지대를 없애고 공정한 관세행정을 해 줄 것을 당부 (7.30)



| 향후 계획 |

관세청은 혁신 TF의 최종권고안에 대해서도 열린 자세로 검토하고, 인력과 부처 간 협의 필요사항 등 현실적인 여건을 충분히 고려한 수용안과 이행계획을 마련하여 속도감 있고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단기·자체개선이 가능한 과제들에 대해서는 조속히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즉각적으로 추진하고, 중장기 검토 또는 법령개정이 필요한 과제들은 내부 연구검토,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의 등을 통해 법적·제도적 개선 방안들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자 한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지속적 혁신을 추진하여 국민이 신뢰하는 관세행정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방위사업 혁신TF 운영 (방위사업 혁신종합 계획 수립)

| 추진 배경 |

과거 '올곡사업 비리', '린다김 사건' 등 방위사업에 대형 권력형 비리가 지속 발생하였고, 국방획득 기능은 각 기관으로 분산되어 비효율적인 방위사업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에 따라 분산된 국방획득 기능을 모아, 2006년 방위사업청을 개청하면서 방위사업법 제정, 방위사업 혁신을 통한 의사결정 시스템을 마련하여 투명성을 확보하였다.

그러나 사업수 대비 관리인력 부족, 내부 자정시스템이 미흡 등 제도적 취약점으로 인한 실무형 비리가 지속 발생하였다. 특히 통영함 음탐기 구매사업 비리(14년) 이후 방산비리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어 국방과제에 방산비리 척결이 포함되었고, 문재인 대통령도 국방부 업무보고시 “방산비리는 장관·차관·방사청장이 연대책임을 지고 직을 건다는 각오로 근절하라”는 지시를 하였다.

이에 따라 방위사업 전반의 문제를 분석하고, 대·내외 기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토의를 거쳐 「방위사업 혁신종합 계획」을 수립하였다.

| 제도 개요 |

「방위사업 혁신종합 계획」은 획득관련 전 국방기관이 참여한 방위사업개혁협의회를 통해 대과제 5개, 소과제 10개, 세부과제 27개, 세세부과제 71개 과제를 식별하였다. 혁신종합 계획은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사업관리의 유연성 및 인력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관계기관간의 유기적 협업을 통해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목표를 두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고, 나아가 방위산업이 자주국방의 토대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국방 R&D 역량과 방산경쟁력 확

보방안을 포함하였다.

| 추진 경과 |

방위사업청은 방위사업 혁신을 위해 방위사업 혁신TF를 구성하였고, 국방부차관·방위사업청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한 방위사업개혁협의회를 통해 71개 세부과제를 포함한 「방위사업 혁신종합 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였고 이를 실행할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방위사업법 개정안 주요 내용]

과 제	개정안 반영 내용
• 군산 유착 근절 및 비리예방대책 고도화	• 방위사업중개인 등록제 도입 • 퇴직공직자 취업이력 관리
• 방위사업 비리제재 실효성 강화 및 상벌의 균형	• 비리 정의·유형화 등 • 비리업체 처벌·제재 강화 • 원가 전문화공정화 기반 마련
• 국방획득 전문역량 강화	• 국방획득교육원 설립
• 사업관리 유연성 확보	※ 방위사업법 분법
• 국방 R&D 기획 및 수행체계 개선	• 미래도전기술품개발 도입 • 국방기술기획평가원 신설 및 국방기술품질원 재편
• 국방 R&D 역량의 국방분야 활용 확대	• 국방R&D 문턱완화(협약 적용, 성실수행인정, 지재권 공동소유 개선)
• 기술품질 중심의 방산기업 경쟁력 강화	• 부품국산화 및 국방 중소기업 지원 • 방위산업진흥원 신설
• 수출형 산업구조 전환 및 일자리 창출지원	• 질충교역 패러다임 전환 • 정부간 판매제도 개선 • 방산 전문인력 양성

| 추진 내용 |

1) 방위사업 투명성 제고

방위사업 투명성 대책은 사후 처벌·제재 중심에서 비리의 원천을 사전 차단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군수품무역대리점에 적용하던 등록제도를 모든 방위사업중개업으로 확대하되 미등록 중개인에 대해서는 처벌조항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퇴직공직자의 재취업 규제 강화, 재취업이력 조회·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 軍·産 유착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통해 그동안 방산비리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방산브로커’의 음성적 활동을

차단할 예정이며, 또한 사업관리 단계별로 검증/평가 기능을 강화하여 비리와 부실의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하고 해소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비리에 대한 처벌과 관련하여, 비리행위의 유형을 방위사업법령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면서 기존의 금품·향응 수수 이외에 공문서 위·변조 및 방위사업 참여업체와 공직자간 금전 거래도 비리행위에 포함하고, 뇌물수수 등 악성비리에 대해서는 가중처벌(1.5배)을, 비리공직자에 대해서는 징계의 유예·감경을 금지하는 등 엄중하게 처벌하는 한편, 비리가 아닌 시행착오에 대해서는 ‘성실수행 인정제도’ 등을 통해 재도전 기회를 부여하는 등 유형별로 실효성 있는 제재방안을 적용할 것이다.

2) 방위사업 인력/조직의 전문성 증진

방위사업 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이원화되어 있는 방위사업청과 국방대학교의 획득교육을 통합, ‘(가칭)국방획득교육원’을 설립하여 단계별 실무중심의 심화교육을 실시하고, 사업의 시작부터 끝까지 장기복무할 수 있는 ‘전문직 공무원제’를 도입함으로써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전문역량을 체계적으로 배양할 계획이다.

방위사업청 조직은 사업관리와 계약관리 기능을 통합하여 사업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방산수출, 기술관리 등 대내외적 요구가 많은 정책역량을 보강하는 한편, 국방규격관리, 비용분석 등의 전문업무는 아웃소싱하여 핵심기능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3) 국방획득의 유연성 제고

소요기획은 동일한 성능의 무기체계를 일괄적으로 개발·양산하는 현재의 ‘완성형 획득 방식’에서 탈피, 기술진보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성능을 개량해가며 양산하는 ‘진화형 획득방식’으로 전환하고, 특정 무기체계의 필요성, 운영개념, 적정수준의 작전요구능력 등을 심층 연구하는 ‘사전개념연구’ 제도를 신설하는 등 소요기획 역량을 강화하여 소요의 타당성과 획득가능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또한, 유연한 소요관리를 위해 사업추진 과정에서 안보환경, 기술 성숙도, 재정여건 등 사업여건의 변화에 따라 성능·비용·일정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중간점검’ 제도를 신설할 예정이다. 사업관리 단계에서는 사업의 규모, 시급성, 기술수준 등에 따라 최적의 프로세스와 사업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복잡한 사업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사업별 특성을 반영한 프로세스를 다양화해 나갈 방침이다. 예를 들어, 구매의 경우 ‘신속시범구매’ 및 ‘간접구매’ 제도를 신설하고, 개발의 경우에는 ‘민·軍 또는 국제 공동개발’ 제도를 도입할 것이다.

4) 유기적 협업/국방R&D 역량 및 방산경쟁력 강화

국방관련 기관이 방위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안에 대해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방위사업협의회'를 신설하는 등 사통팔달의 소통과 협업을 제도화하여 적시적인 의사결정과 갈등해결을 실현할 계획이다.

국방R&D는 무기체계 수요를 뒤따라가던 방식에서 수요를 선도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국가전반의 R&D역량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협약방식의 도입과 국방R&D 지식재산권의 공동소유 등 제도를 개선하고, 기초·원천 기술은 국가(비국방) R&D, 기술응용·실용화는 국방R&D 중심으로 개발하되 民·軍 공동활용이 가능한 기술·제품은 다부처 공동으로 개발하는 등 효과적인 분업과 협업을 병행할 것이다.

국방R&D 수행체계는 기관별로 '선택과 집중'을 하는 방향으로 재정립하고, 현재의 비용중심 경쟁구도에서 기술·품질 중심의 경쟁여건으로 전환하기 위해 제안서 평가 시 기술평가 배점을 상향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지체상금 상한제(10%) 확대적용 (체계개발→초도양산까지), 협력업체 귀책사유에 대한 체계업체의 책임부담 완화 등의 적극적인 규제완화로 방산성장의 걸림돌을 제거하여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할 것이다.

또한, 중소·벤처기업이 체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방산진입부터 기술개발, 경영개선 및 수출시장 개척에 이르기까지 성장단계별 지원사업을 확대함으로써 방위산업 기반을 강화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도 연결되도록 할 계획이다.

방산수출은 수출대상 권역별·국가별로 맞춤형 수출전략을 수립하고, 수출방식과 품목을 임대(리스), 중고무기, 불용장비, 기술이전 등으로 다양화하는 한편, 기술획득 중심의 '절충교역' 제도를 수출지원과 일자리 창출 중심으로 개선하는 등 수출중심의 방위산업 구조 전환을 추진중이다.

| 향후 계획 |

방위사업청장이 직접 개혁과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모니터링하여 국민과의 약속인 방위사업 혁신종합 계획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며, 방위사업 혁신을 진행하면서 국민의 목소리에 지속적으로 귀 기울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혁신을 추진하겠다.

방위사업청은 단호하면서도 씬 없는 혁신을 통해 방위사업을 명실상부한 군사력 건설의 중심으로 우뚝 세우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새일센터 온라인 서비스 플랫폼 구축

| 추진 배경 |

'09년부터 육아·가사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를 지속적으로 확대·운영하고 있으나, 온라인에서 사업을 홍보하고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대국민 홈페이지 및 SNS 홍보채널은 부재한 상황이었다. 또한 새일센터 홍보 및 정보제공 공간이 부족하여 구직 희망여성이 활용할 수 있는 온라인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이 한정적이고 상담사가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내부시스템 기능 보완이 필요하게 되었다.

새일센터 확대에 따른 구직자 증가에 따라 온라인을 통한 새일센터 취업서비스 제공을 위한 온라인 서비스 플랫폼 구축이 필요한 상황으로, 기존 상담사들이 취업실적 입력 등 내부 활용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새일센터 홈페이지(saeil.mogef.go.kr)를 대국민 홈페이지 채널로 전환하고 각 새일센터(156개) 홍보채널도 통합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추진 내용 |

1) 대국민 홈페이지 구축

[홈페이지 개편 전('17.11월 이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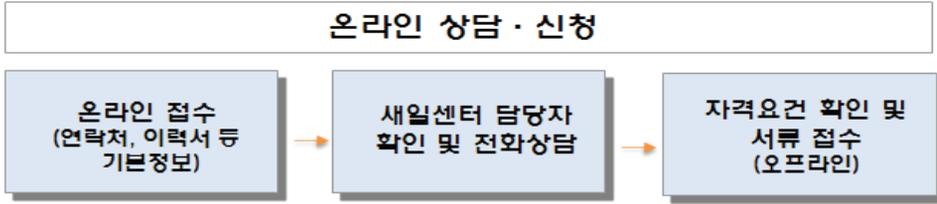
단순 정보 제공(교육훈련 정보 등)

[홈페이지 개편 후('17.11월 이후)]



대국민 접근성 강화(온라인 교육신청 및 접수 등)

‘온라인 서비스 플랫폼’ 구축을 통해 기존 내부 종사자 위주의 홈페이지를 대국민 서비스 체제로 전환하고, 새일센터에서 제공하는 각종 일자리 정보,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정보, 온라인교육 등을 한눈에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온라인 새일진단센터]



- 450여개의 온라인교육 콘텐츠와 1:1 커리어코칭, 이력서클리닉, 직업선택도검사, 창업역량 진단 등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함께 제공

2) 내부시스템 기능 강화

취업상담사가 새일센터 구직자의 취업연계,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등의 참여이력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구직자 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멘토링 코너’ 운영, 내부시스템 기능 및 화면 개선 등을 통해 일자리 현장과 적극적인 소통 추진이 가능하게 되었다.

3) 새일센터 SNS 통합 홍보

여성가족부 및 156개 새일센터에서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각종 온라인 홍보 활동을 통합 연계할 수 있도록 새일센터 페이스북, 블로그 등을 개설하여 새일센터 통합 홍보 실시가 가능하게 되었다.

내 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홍보성 : 프로젝트 소개, 직훈, 우수사례 인터뷰 정보성 : 여성 취업 관련(직업소개, 면접 팁 등) 	
홍보단	<p> 파워블로거 + 직업훈련 수료자(6인)</p> <p>* 18년도 상반기는 파워블로거 비율을 높게 선정</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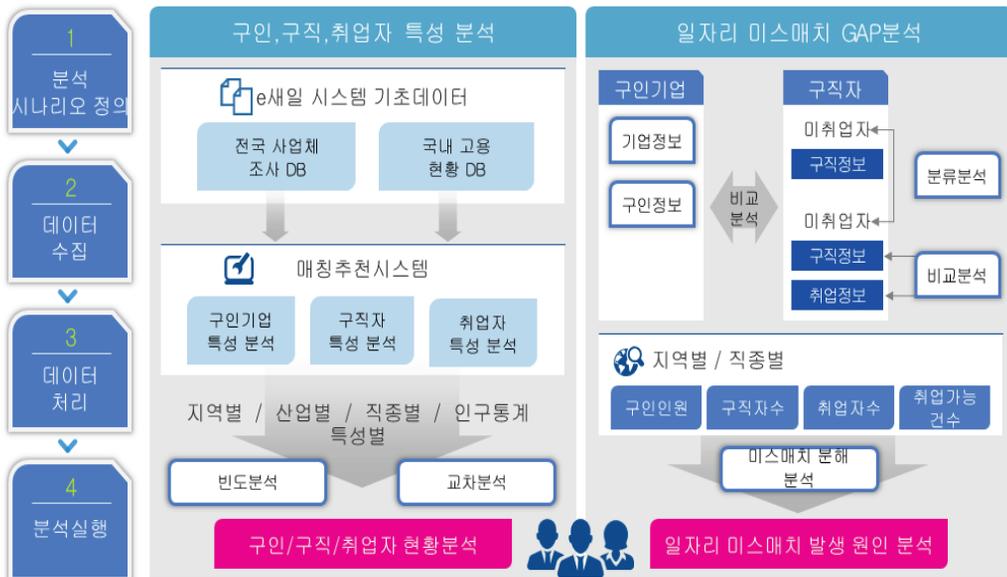
| 추진 성과 |

1) 온라인 서비스 플랫폼 구축

사업을 홍보할 수 있는 대표 홈페이지 구축 및 SNS 소통채널 확보로 새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받을 수 있었던 각종 일자리 정보,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정보, 온라인교육 등을 한 눈에 온라인에서 쉽게 확인신청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대국민 서비스 및 사용자 만족도를 제고하게 되었다.

2) 정책결정 지원

경력단절 원인 분석 및 데이터 기반의 정책결정 지원기능을 제공하여 과학적 정책 의사결정 및 미스매치 현상 해소로 구직자 취업률 향상 및 미취업기간 감소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3) 구직자 연계 이력관리

구직자에 대한 새일센터 서비스(직업교육훈련 내역, 인턴십 참여정보, 취업연계 이력 등) 연계 이력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어 상담사가 구직자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고 중복참여 방지 등을 통한 서비스 품질 제고가 가능하게 되었다.

AS-IS ○ 연계이력 확인이 어려움

TO-BE ○ 연계이력 조회/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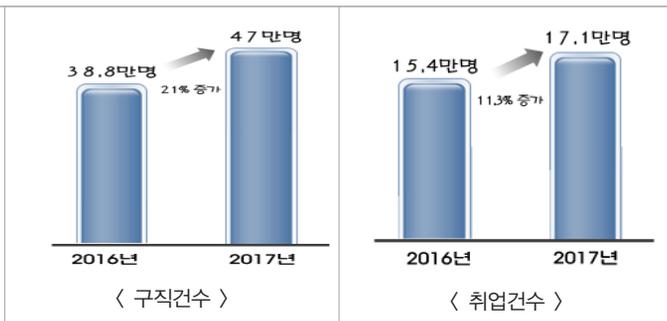
4) 새일센터 이용자 증가

온라인 새일센터 구축 등에 힘입어 새일센터 방문자 수가 급증하는 등 전년대비 8.2만명 증가한 47만명(17년)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에 기여하고 있다.

[새일센터 현황]



[구직 및 취업건수]



| 향후 계획 |

새일센터 소개 및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정보 등 이용자 맞춤형 정보제공을 통해 부족했던 접근성·편의성을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시스템 고도화를 진행하여 구직자 이력관리·통계분석 등 최적화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용자의 업무편의성 및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지식재산권 출원환경 국민디자인단 운영

추진 배경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며 지식재산권은 개인 및 기업의 경쟁력 뿐 아니라 신산업 발굴 및 일자리 창출과 연계되며 국가의 경제규모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특히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AI(인공지능), 사물인터넷, 3D 프린팅 기술 등은 기술변화의 속도가 빨라 신속하게 특허로서 보호되지 못하면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간편하고 신속하게 특허로 등록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특허출원의 98% 이상이 전자출원을 이용하고 있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IT 환경 및 수요자의 니즈에 맞추어 특허출원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전자출원 시스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자출원 홈페이지 이용 및 관련 SW 사용에 불편함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다. 따라서 특허청은 수요자 중심의 간단하고 편리한 출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선사항 도출을 2018년 국민디자인단 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였다.

[전자출원 시스템 이용자 설문조사 결과]



※ (출처) '17.12 한국능률협회, 컨설팅 지능형 정보화시대를 대비한 전자출원 제도 발전 방안 연구

| 제도 개요 |

1) 국민디자인단 개요 및 특허청 국민디자인단 연혁

국민디자인단은 공무원과 서비스 디자이너, 정책수요자인 국민이 함께 일상생활 속에서 불편하거나 개선해야 할 점을 찾아서 정책의 입안, 집행, 환류 등 정책 전 과정에 걸쳐 의견을 반영하고 공공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는 제도이다.

특허청은 대국민 특허행정 서비스 개선을 위해 지난 3년간 국민디자인단을 운영하여 단계적으로 국민과의 접점을 넓히고, 지식재산권 분야의 국민 편의를 증대시키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16년에는 특허 등 지식재산권 분야의 생소함과 어려움을 완화시키기 위해 특허청 업무를 홍보하고 제공되는 서비스를 알기 쉽게 전파하였고, '17년에는 일상 속 아이디어를 지식재산권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개선하였다. 올해는 초보자도 직접 출원할 수 있는 출원서비스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이 특허에 대해 알고, 본인의 아이디어를 특허화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며, 최종적으로 스스로 특허출원을 할 수 있도록 일련의 로드맵을 그렸다.

2) 2018년 특허청 국민디자인단 구성

특허청 국민디자인단은 총 1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분야별 전문가 2명(변리사)과 정책수요자 2명(출원인)을 국민으로 참여하게 하고, 서비스 디자이너 3명과 공무원 4명(국민디자인단 과제 담당, 사업담당자 2명)이 함께 업무를 수행하였다. 역할도 세밀하게 구분하여 올해 4월부터 11월까지 특허출원환경 개선을 위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솔루션을 제시하는데 함께 노력하였다.

구분		역할	구분		역할
국민	분야 전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문지식 제공 정책방향, 해결방안 제시 인터뷰 참여 	공무원	국민디자인단 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진상황, 사후관리 총괄 일정 및 목표관리
	정책수요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제점 및 아이디어 제시 인터뷰, 설문조사 참여 등 		사업 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디자인단 활동결과 정책반영 및 이행
서비스디자이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비스디자인 방법 통해 과제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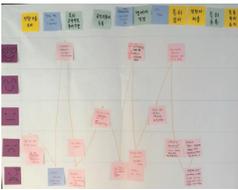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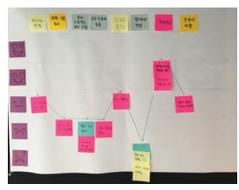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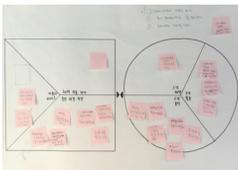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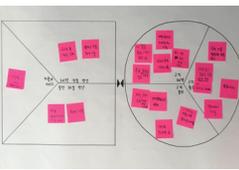
| 추진 내용 |

1) 리서치, 워크숍 등을 통해 특허출원 프로세스 문제점 파악

특허청 콜센터 상담내역, 출원인 간담회, 특허행정모니터단 조사,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 내용 등을 분석한 결과, 전자출원 이용자의 대다수(84%)가 특허출원 초보자로서 전자출원 전용 SW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사용에 불편함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토대로 국민, 변리사 등 전문가, 사업담당 공무원, 서비스디자이너가 워크숍을 통해 리서치 조사내용을 분석하고 특허출원 프로세스별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특허출원 과정상 문제점 도출]

<p>〈 국민팀 여정맵 〉</p> 	<p>① 특허고객번호 신청 - SW설치가 너무 많음 - 전자서명 안내 부족</p> <p>② 공인인증서 등록 - 용도 안내 부족</p> <p>③ 명세서 작성 - 절차 복잡, 오류 많음</p>	<p>〈 전문가팀 여정맵 〉</p> 	<p>① SW설치종류가 많고 복잡</p> <p>② 명세서 작성 - 명세서 작성 도중 오류 - XML 변환이 어려움</p> <p>③ 특허관리 - 본인 확인 방법 다양화 필요</p>
<p>〈 국민팀 가치맵 〉</p> 	<p>① 고객불만 - 진행확인, 서류출력 곤란 - 메뉴구조 복잡</p> <p>② 불안사항해결 - 서식작성시 풍선말제공 - 프로세스 링크 서비스 - 사용빈도 높은 메뉴 쉽게 찾을 수 있게</p>	<p>〈 전문가팀 가치맵 〉</p> 	<p>① SW설치 서식방법 어려움</p> <p>② 명세서작성 - 현재 전자적 처리 가능 - 특허로 진행 SMS 제공중</p> <p>③ 특허관리 - 안정적 SW개발 - 한컴 명세서 작성기 신규 개발</p>

2) 전문가 인터뷰 통해 솔루션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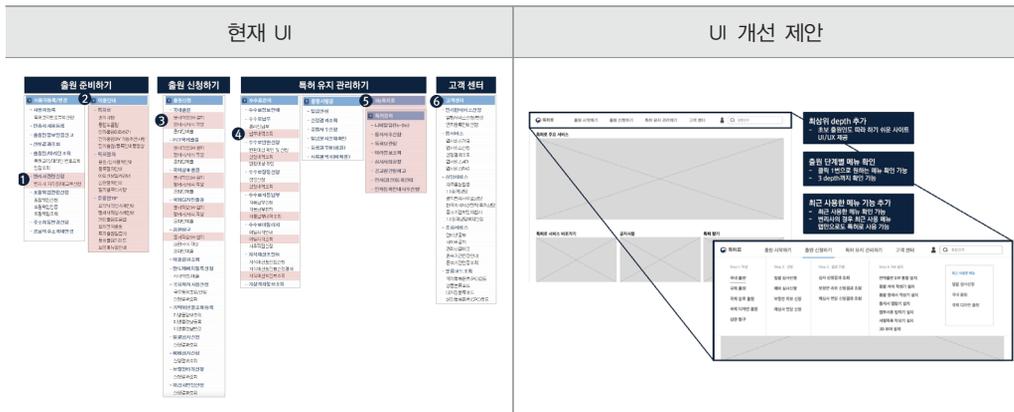
5명의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서비스 여정별 주요 이슈에 대한 해결책을 탐구하였고, 그 결과 각 단계별 중장기 비전의 솔루션이 수립되었다.

Issue 1 (사이트 탐색)	Issue 2 (인증/등록)	Issue 3 (서류작성)	Issue 4 (출원/수수료관리)
원하는 기능 찾기 곤란 복잡한 메뉴구조도와 중복메뉴, 생소한 용어 많음	특허고객번호 발급 어려움 본인인증 방식 번거로움 포괄위임 절차 복잡	명세서 작성방식 안내가 부정확/ 작성시 오류 다 전용SW 설치 불편	출원진행상황 알기 어려움 수수료, 출원료 납부확인 어려움(영수증 확인 불가)
Solution 1	Solution 2	Solution 3	Solution 4
메뉴구조도 개선 챗봇도입, 가이드 강화 용어사전 접근성 강화	인증 처리방식 편의성 ↑ 인증시점 개선 자세한 설명 제공	작성가이드 제공 자유로운 양식 작성기 서류작성 웹 전면 제공	결과조회 서비스 모바일 링크 알림 서비스 (수수료, 심사진행상황 등)

추진 성과

1) 특허로 사이트 UI 개선 제안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 중인 전자출원 사이트인 특허路 사이트 정보구조에 대해 분석하고 미국, 유럽 등 외국 특허청 사이트와 비교하여 잘된 점을 벤치마킹 하였다. 출원인 사용빈도가 높은 메뉴를 기반으로 메뉴를 재조정(Re-Group)하고, 중복 메뉴는 한 화면으로 통합하여 한 번의 클릭으로 메뉴를 찾도록 메인 메뉴 UI를 개선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2) 통합서식 작성(웹사이트 개선)

현재 전자출원 사이트는 일부 서식의 경우 웹에서 곧바로 명세서 작성이 불가능하여 반드시 서식작성기 SW를 통해서만 작성해야 하므로 불편함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여 모든 서식의 작성을 웹에서 가능하게 하고 현재의 서식작성기 SW에서 제공되는 편의기능을 웹에서도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 향후 계획 |

특허청은 '18년 국민디자인단 과제에서 제시된 이용하기 편리한 특허출원 서비스 개선방안을 실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한 눈에 보기 편하고, 출원서 작성 등이 편리한 전자출원 사이트 개선을 위한 특허로 사이트 개선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 노력하여 '19년 정부예산안에 전자출원 시스템 개선 예산이 반영되었다. 앞으로 '19년과 '20년에도 추가 예산을 확보하여 총 3개년 개발계획으로 시행착오를 최소화 해 나가며 수요자 중심의 특허로 UI를 변경하고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해 나가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농촌진흥청 소관 위원회의 심의·심사 등 투명성 제고

| 추진 배경 |

위원회는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각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토론과 조정과정을 거쳐 다수의 공감 하에 결론에 이르게 함으로써 의사결정의 합리성·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이다

각종 심의·의결위원회가 실질적 의사결정의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위원 구성·운영 관련 공정성 문제와 비리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 제도 개요 |

1) 비료공정규격심의회

비료공정규격심의회는 비료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비료 공정규격의 설정·변경 또는 폐지와 부산물비료의 지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우량비료의 지정·고시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비료의 품질 관리를 위하여 농촌진흥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한다.

비료공정규격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농촌진흥청 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촌진흥청의 비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며 위원은 농촌진흥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위원의 임기와 의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2) 정보화용역 사업자선정 심사위원회

정보화용역 사업자선정 심사위원회는 정보화용역 사업의 입찰결과 단일 응찰로 인하여 유찰이 되고, 이에 따라 수의계약 사유가 발생된 경우 수의계약 대상자가 제출한 사업제안서의 적격성심사를 한다.

농촌진흥청 지식정보화담당관은 심사위원회 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하는데, 외부인의 경우 기관이 소재한 인근지역의 대학 및 공공기관의 정보화 부서 인력, 농업·기타 분야의 경우 전문분야를 선택하여 관련 사업부서의 추천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심사위원회는 5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외부위원은 60%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추진 경과 |

1) 비료공정규격심의회

농촌진흥청은 「농촌진흥청 농자재 관리업무에 관한 규정」을 개정(18.10.22)하여 비료공정규격심의회 운영 기준, 위촉위원에 대한 직무윤리 사전 진단, 해임·해촉 사유 명기 등 심의회 규정을 신설하였다.

2) 정보화용역 사업자선정 심사위원회

농촌진흥청은 「농촌진흥청 정보화용역 사업자선정 지침」을 개정(18.2.28)하여 정보화용역 사업자선정 심사위원회 후보 명부 작성방법을 명확하게 하였고 심사위원회 구성 방법도 구체화 하였다.

| 개선 결과 |

1) 비료공정규격심의회 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및 서약서 작성 의무화

농촌진흥청은 부정·불량 비료에 대한 농업인 등 국민의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비료공정규격심의회 공정성과 청렴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비료공정규격심의회 설치 운영, 심의회 구성, 심의사항 등을 명시하는 「농촌진흥청 농자재 관리업무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였다.

또한 내·외부 위원을 불문하고 위촉 후보자에 대해서는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의무적

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직무윤리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도록 하였으며, 신규 위촉 위원은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직무윤리 서약서를 반드시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장 및 위원직에서 해촉하고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하였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 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정보화용역 사업자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방법 효율성 제고

농촌진흥청 정보화사업 사업자선정 심사위원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 후보자 명부 작성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특정인이 심사위원으로 여러 차례 위촉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외부 위원의 경우 외부기관의 추천을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인근지역의 대학·공공기관으로부터 후보자를 추천 받거나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개된 인적정보를 활용하여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심사위원회 위원 후보자 선정은 후보자 명부에서 각 분야별 전문 인력 구성 인수의 3배수 인원을 감사담당부서에서 추천하여 추천 순위에 따라 정함으로써 투명성을 제고하였다.

| 향후 계획 |

향후, 비료공정규격심의회 및 정보화용역 사업자선정 심의위원회의 운영 개선방안을 농촌진흥청 소관 다른 위원회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위원회 의사결정의 합리성과 신뢰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제 2 장

공정성과 신뢰성 향상

청구인과의 사전접촉 방지를 위한 비상임심판관 운영체계 개선

| 추진 배경 |

국무조정실의 소속기관인 조세심판원은 대표적인 납세자 권리구제기관으로서 그 역할과 기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조세심판의 청구세액 규모는 '08년 2조 792억원에서 '17년 5조 9477억원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17년 구제기관별 청구비율은 타 기관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것(조세심판원 90.4% 국세청 7.6% 감사원 2%)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조세심판의 사회적인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비상임심판관들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사전접촉 등의 로비가능성 차단을 통한 심판결정의 중립성·공정성 제고 요구가 꾸준히 제기 되고 있다.

| 추진 내용 |

1) 문제점

현행 조세심판결정은 고위공직자인 상임심판관(2인)과 외부민간전문가인 비상임심판관(2인)으로 구성된 각 심판관회의에서 결정한다. 비상임심판관은 각 심판부당 4명을 위촉, 2개 조로 구분하여 격주로 심판관회의에 참석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심판청구인에게 심판관회의 일자 통보 시 담당 비상임심판관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어 이해관계자의 사전접촉 의혹 등 공정성 논란 소지가 있어 공정한 조세사건의 처리를 위해 비상임심판관과의 사전 접촉 차단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2) 개선 내용

각 심판부별로 위촉된 4명의 비상임심판관 중 심판관회의에 참석할 비상임심판관 2명을 일주일(7일) 전에 무작위로 선정하도록 개선하였다. 해당 사건의 담당 비상임심판관을 상임심판관, 심판조사관, 사건담당자 등 심판부도 당일 심판관회의 시까지 알 수 없도록 운영하여 사건 이해관계자와 비상임심판관의 사전 접촉 가능성으로 원천 차단하는 것이다. 또한 비상임심판관의 직무수행 내용을 정기적으로 평가(다면)하여 재위촉 시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하였다.

[조세심판회의 업무흐름도]



| 추진 경과 |

1) 보도자료 배포

비상임심판관제도의 운영체계 개선, 신속 사건배정, 장기미결사건 집중관리 방안 등을 포함한 납세자 권리구제 종합 대책을 마련하여 보도자료로 배포하였다.

‘비상임심판관 7일전에 무작위 선정’ 한다 (세정일보, '18.9.26)	‘비상임심판관 1주前 무작위 선정’ (세정신문, '18.9.27)

2) 교육·홍보

시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비상임심판관제도 운영방법 개선사항 및 변경된 세부절차,

납세자 권리구제 실효성 강화방안 관련 Q&A 등의 내용에 대해 전 직원 교육홍보를 실시(18.10.1)하였다.

[조세심판원 전 직원 대상 직무교육 실시]



3) 훈령개정 추진

제도운영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세심판원 운영규정」(조세심판원 훈령)의 개정을 추진(18년 11월)하고 있다.

* (제7조 제1항 단서 신설) ① 심판원장은 청구사건을 모아서 2주에 1회 이상 담당심판관을 지정한다. 다만, 심판관회의에 참석할 비상임심판관은 회의 개최 전에 심판원장이 지정한다

| 향후 전망 |

이해관계자와의 접촉 등 조세심판의 공정성·중립성 훼손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여 조세심판 결정의 공정성 및 신뢰도 향상에 크게 기여함과 동시에 비상임심판관에 대한 정기다면평가 등의 결과를 재위촉 시 반영함으로써 비상임심판관의 공정성과 전문성·책임성 제고에 큰 도움을 줄 것이다.

문화분야 공정성 확립

| 추진 배경 |

문화체육관광부는 특정 문화예술인·단체에 대한 부당한 지원배제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민관 협치 기구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를 공식 발족(2017.7.31.) 하였다. 위원회는 문체부 훈령에 근거한 위원회로 문화예술계, 학계·법조계 등 민간위원과 문체부 공무원 등 총 21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진상조사소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 백서발간소위원회 등 3개 소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위원회는 11개월 간 운영되었으며, 총 145건의 사건을 조사하고 사건 내용의 유사성 등을 고려한 사건 병합 과정을 거쳐 총 115건의 진상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다. 또한 법제도, 문화행정, 후속조치 등 개선권고 및 6개 문화예술 공공기관 개선권고 등 총 9건의 제도개선 권고안과 책임규명 권고안을 발표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제도개선 권고안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여 부당한 지원배제 사태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고, 문화분야 공정성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9개의 제도개선 권고안을 민관 협치를 통해 이행하기 위해 예술계 현장 및 법·행정 전문가가 참여하는 이행 협치추진단을 구성하여 과제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주요 사항을 논의하고 있다.

| 추진 내용 |

1) 국정운영 차원의 문화예술정책 수립

새정부 문화정책 정체성 확립을 위해 '문화비전 2030, 사람이 있는 문화'를 수립하고 발표

(2018.5.16)하였다. 문화비전 2030은 민간이 의제를 주도해 내용을 구성하고 정부가 제안된 정책의 구체화를 지원하면서 완성한 새로운 방식의 정책비전이다. 개인의 자율성 보장, 공동체의 다양성 실현, 사회의 창의성 확산이라는 가치와 방향을 중심으로 개인의 문화권리 확대, 문화예술인·종사자 지위와 권리 보장, 성평등 문화의 실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확산 등의 과제를 담고 있다.

또한, 예술지원정책의 인식전환과 원칙수립의 차원에서 '새예술정책 - 사람이 있는 문화, 예술이 있는 삶'을 수립하고 발표(2018.5.16)하였다. 새예술정책은 예술표현의 자유와 예술인의 인권보호, 예술지원체계의 독립성과 자율성 제고, 예술 가치 중심의 창작 지원 등의 과제를 담고 있다.

2) 문화행정 협치 기반 조성 및 제도화

'자율, 분권, 협치'에 기반한 문화행정을 펼치기 위해 국가단위 정책수립 과정에 문화 분야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이를 통해 콘텐츠 비전(2017.12월), 관광진흥기본계획(2017.12월), 2030 스포츠비전(2018.3월), 새예술정책(2018.5월) 등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문화예술 등 관련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였다.

또한, 참여와 협치에 기반한 문화행정 평가 및 환류체계 구축을 위해 자체평가 개선을 추진하였다. 2018년도 자체평가위원 구성 시 민간위원 중심, 여성위원 확대, 교수 편중 완화 등의 조치를 하였으며 자체평가에 국민평가 방식을 도입하였다.

3) 문화예술 지원사업 심의제도 개선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심의제도 개방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공개 심의제도 시범 운영, 심의자료 심층검토제 및 지원 외압신고제 도입, 옴부즈만 제도 적용범위 전면 확대 등 심의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예술인복지재단은 심사위원 풀 구축 등을 통해 보다 투명하고 개방적으로 심사제도 운영기반을 마련했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조직 내에 '청렴·윤리경영 및 반부패 전담체계'인 청렴위원회를 마련하고 보조사업 심의·평가위원회 운영규칙을 제정하였다. 또한 보조사업 심사 고충처리 옴부즈만 제도 운영을 준비 중에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심사평가위원 명단 공개, 협의·토론 방식의 심사방식 도입 및 총평 작성 강화, 심사평가 참관인 제도 등 혁신적인 심사방식을 도입하여 지원심의 제도를 전면 개선하였다.

4) 문화예술 공공기관 개방성 및 투명성 확대

문화예술 공공기관의 개방성과 투명성을 보다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하였다. 각 기관은 자율성·다양성·창의성 등의 가치 중심 지원 강화를 위해 조직개편 및 기관발전 전략 등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였다. 기관별 주요 개선 사례는 다음과 같다.

[주요 개선 사례]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회의록 공개 및 연차보고서 발간 추진
- (영화진흥위원회) 참여예산제 도입, 공정환경조성센터장, 영화정책연구위원장에 대해 개방형 직위제 실시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기관 발전 전략 수립, 이사회의 전문성 및 기능 강화
- (예술인복지재단) 이사 선임과정 개선, 개방형 직위 도입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임원 선임과정 개선, 개방형 직위 도입, 출판정책연구센터 신설 등 전문성 강화를 위한 조직 개편
- (한국콘텐츠진흥원) 장르 중심 조직개편, 문체부-콘진원 정례 협의체 운영

또한, 상시적으로 현장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다양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문화예술 공공기관이 보다 현장 중심의 정책 및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기관별 민관 협치조직 구성 및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다.

기관명	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현황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현장 예술인 중심 소위원회 5개 구성(현장소통, 예술정책·지원, 예술확산·지역협력, 자원확충, 미래전략)
영화진흥위원회	주요 업무 연관 소위원회로 확대 개편(공정환경조성특별위, 한국영화성평등, 독립예술영화지원, 독립예술영화인정, 지역영화문화진흥, 사회적가치경영, 비디오퓌업진흥, 영화기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17개 시·도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참여하는 지역협력위원회, 문화예술 유관기관 교육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예술인복지재단	지역문화재단이 참여하는 예술인복지 지역협력위원회 구성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해외진출, 전자출판, 유통, 독서진흥 등 분야별 민관협의체 운영
한국콘텐츠진흥원	방송, 게임, 애니, 캐릭터, 만화, 이야기, 음악, 패션 등 장르별 8개, 지역 및 해외 기능별 2개, 총 10개의 정책협의 네트워크 운영

| 향후 계획 |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예술 표현의 자유와 예술인 권리보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현재 예술계 주도로 (가칭)예술인 권리보장법 제정을 추진하고 문체부가 지원해 나가고 있으며, 현장 의견 수렴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법률안을 마련 중이다. 이를 통해 예술 표현의 자유 보장,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 보호와 증진, 성희롱·성폭력 없는 예술 환경 조성, 부당한 예술지원 배제 등 예술행위 방해 시 구제 및 시정 조치를 제도적으로 정착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문화예술 지원기관의 자율성·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팔길이 원칙을 실현하는 성과 협약 체결을 준비 중이다. 합의제 형태의 문화예술 지원기관(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의 경우 위원장 선임 절차를 위원 간 합의에 의한 호선으로 선출하는 방안으로 변경하는 것도 검토 중에 있다.

앞으로도 문화체육관광부는 이행협치추진단과 내용을 공유하고 문화예술 현장과 논의하며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부당한 지원배제 사태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고, 문화분야 공정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갈 것이다.

군의문사 진상규명과 문제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 추진 배경 |

최근 수년간 병영문화혁신 등을 통해 군 복무중 사망자 수는 매년 감소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사망원인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유가족이 장례를 거부하거나 고인의 영현을 인수해 가지 않는 등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의문사는 지속적으로 누적되어 왔다.

과거 정부는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06~09년)」를 한시적으로 가동한 바 있으나 그동안 쌓여온 유가족들의 의문과 군에 대한 불신을 완전히 해소하기에는 부족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고마운 군이면서도 국민들로부터 불신의 부정적 인식을 만드는 주요인이기도 했다.

따라서 새로운 정부는 군복무중 사망한 유가족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군의문사 해결을 국정과제에 포함하여 추진해 왔으며, 군은 전향적인 자세를 바탕으로 근본적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유가족이 사망원인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고에 대해 근본적 해결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 중이다.

| 제도 개요 |

국방부는 군의문사 문제해결을 국정과제 및 국방개혁과제로 선정하여 그동안 여러 부서에 분산되어 있던 재조사, 재수사 및 재심사 기능을 '17. 9. 1부로 차관 직속의 독립된 「군의문사 조사·제도개선 추진단」으로 통합 이관하여 운영함으로써 유가족들의 소중한 의견을 들어 개선책을 마련했고, 군의문사 조기해결을 위해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설치, 군인사법 개정을 통한 순직기준 확대, 군의문사 재발방지를 위한 수사 신뢰성 및 독립성 확

보를 위한 제도개선, 유가족 심사 신청 및 보상지원 편의를 위한 원스톱 행정지원 등을 통해 유가족들의 군에 대한 신뢰회복에 기여하고 있다.

| 추진 내용 |

1) 문제 해결을 위한 전담 추진단 운영 및 유가족과의 열린 소통 노력

'17.7월 국방부장관 주관 유가족 간담회시 사망사고를 조사하는 사람들이 헌병 지휘관인 조사본부의 통제를 받으면 안 되고, 각 부서별 결재라인이 복잡하여 유가족들이 요구하는 내용들이 지연되고 있다는 요청을 받아들여 군의문사 문제 해결을 위한 전담조직으로 차관 직속의 군의문사 조사제도개선 추진단을 '17.9.1부 운영하고 있다.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단장으로 영현관리심사제도팀(유가족 상담, 미인수영현 관리, 중앙전공사상심사)과 조사팀(재조사 등 민원업무 진행), 법무심사팀(재수사 등 민원업무 진행)으로 편성하여 독립적인 업무진행을 통해 성과를 냈다.

아시아투데이 | <http://me2.do/x7yAdZtg>



송영무 국방장관, 군 의문사 유가족 면담...“진상규명·제도 개선 최선”

기사승인 [2017-07-20 15:43]



20일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군 의문사 관련 유가족 간담회'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참석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유가족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장관주관 4회(유가족 초청행사 3회, 이등병의 엄마 연극관람 1회), 차관 5회(7지구방안소 유가족 위로, 연극 관람, 위령제 참석/간담회, 개소식 참석 축하, 유가족 초청) 등 유가족을 직접 찾아가거나 초청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소통을 위

해 노력하였고, '18년 4월 24일 군사상자유가족협의회 창단시 국방부 차관이 참석하여 유가족 위로한 바 있다. 특히 17년 11월 2일 실시한 합동위령제를 통해 국방부 차관 및 각 군 인사참모부장이 유가족 앞에서 공식적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렸고 유가족 간담회를 통해 궁극적 해소 및 변화된 국방부의 모습을 홍보하는 계기가 되었다.

국방부의 진정어린 소통과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의 결과 '18. 8월 국방부장관 주관 유가족 간담회시 유가족들은 국방부장관에게 취임 전부터 가장 먼저 유가족들을 만나주고 문제 해결을 위해 전향적인 자세로 적극 노력해준데 대한 감사의 표시를 하는 등 군 사망사고 유가족들이 그동안 군에 대해 가져온 불신을 해소하는 전환점이 되었다.



'18.8.3.군사상자유가족협의회장(김순복)이 국방부장관에게 전달한 감사패에는 '장관님의 진정어린 눈물과 약속을 지켜주심에 대한 감사함을 영원히 잊지 않고자 이 패에 유가족들의 마음을 담아 전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

2) 군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법령 제정 및 위원회 설립 적극 지원

군은 과거에 발생한 군의문사 사건에 대해 조속히 진실을 규명하고 투명하고 객관적인 진상규명을 통해 유가족의 의혹을 원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전향적인 자세로 노력해왔다. 새 정부 출범이후 군 사망사고 유가족들과의 소통을 통해 많은 의견을 수렴한 결과 과거 군 사망사고 중 유가족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의문이 제기되는 건에 대해 군 외부 기관으로부터 객관적 진상규명을 통한 의혹 해소를 위해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해 달라는 요구가 많았다. 이에 국회차원에서 진상규명 특별법 입법 추진을 논의하고 국방부가 전향적 입장에서 이를 수용하여 적극 지원함으로써 '18. 9. 14부로 대통령 소속의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진상규명위 추진 경과]

-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 이철희 의원 대표 발의 : '17.6.15.
* 국회 법안소위, 국방위 전체회의, 공청회('18.2월), 법사위, 본회의 등 적극지원
-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 특별법」 공포: '18.3.13.
- 「진상규명위원회 설치 이행계획」 수립: '18.3.23.
* 위원회 구성, 시행령 입법, 준비단을 편성하여 예산, 사무실, 인력채용 등 준비
-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 특별법 시행령」 공포: '18.9.11.
-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발족: '18.9.14.(위원장 : 이인람 변호사)

군의문사 진상규명은 군 복무 중 발생한 각종 사망사고 중 그 사망원인에 의문이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그 진상을 명확히 규명, 피해자 명예를 회복함과 동시에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국방부는 '17년 6월 국회 이철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적극 입법지원하고 '18년 8월 법 시행령을 입법 후 진상규명위원회 설치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를 발족함으로써, 군 사망사고 유가족들 중 군의 수사결과를 불신하고 사망원인에 많은 의문을 제기해온 사건에 대해 군 외부에 설치된 조사기관을 통해 객관적인 조사를 가능하도록 적극 지원했다.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이인람)」 출범식 행사에 참석한 장관과 유가족들('18.9.28)

3) 군의문사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과 유가족의 중심의 행정 추진

과거 군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된 현장훼손, 유품 등 임의소각,

부대적 원인에 대한 왜곡, 은폐와 축소, 수사에 대한 지휘권 개입 등 초동수사 부실로 인해 군 수사에 대한 불신 만연으로 인해 군의문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던 바, 군 수사 결과에 대한 신뢰제고 방안을 강구하는데 중점을 두고 군의문사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힘써 왔으며, 유가족들이 국방부에서 전공사상심사시 제출하는 서류를 보존처 심사 신청시 재제출해야만 하는 이중의 고통을 토로하여 양 기관 협업을 통해 해결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유가족이 제기하는 군 사망사고 수사와 행정 처리의 문제점]

- (수사과정 불신 팽배) 책임회피, 부실수사, 축소·은폐 수사, 불공정·불투명 수사
- (전문가의 조력 부재) 초동수사부터 결과 발표 시까지 군 주도로 일방향적 수사 진행
- (유가족에게 고통을 가중시키는 행정) 군 순직심사와 동일 서류를 보존 심사시 재요구

그 제도 개선책으로 첫째, 국방부는 초동수사 부실 등 수사결과에 대한 유가족의 불신이 군 사망사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사인을 인정하지 않는 중요 요인으로 인식하고 사망사고 수사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사권을 사고가 발생한 야전부대에서 각 군 본부 또는 국방부로 이관하여 수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수사전문인력(현병 군무원)을 보강하여 초동수사부터 수사 전문성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둘째, 국방부는 유가족들의 요구사항 중 하나였던 ‘군 수사과정의 공정·투명성 확보’와 ‘유가족 법률지원’을 위하여 유가족 요청시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추천 받은 각 지역(권역)별 변호사(62명)중 가능인원을 유가족에게 지원함으로써 군의문사 문제로 비화되지 않고 약자의 입장인 국민의 편에서 명확한 수사를 통해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사망사고 원인이 타살이라고 주장하며 재수사를 요구하는 유가족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여 지금까지 시행되지 않았던 공개 현장검증 재연 등을 통해 군 수사과정의 의혹과 불신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셋째, 유가족의 아픔을 위로하고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사망사고 발생시 ‘유가족 중심의 행정지원 편익’을 고려하여 국방부와 보존처간 심사신청절차와 구비서류 간소화 등을 검토 후 원스톱(ONE STOP)으로 ‘심사접수-심사진행-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국방부-국가보훈처 업무협약(‘18. 4. 3부)을 통해 양 기관의 심사신청서류를 통합대체 또는 삭제하는 등 행정업무간소화와 심사자료 공유로 심사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다.

넷째, 순직결정을 받은 유가족이 상응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상 제한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였는 바, 그동안 자해 사망자의 경우 군인보험의 약관 규정으로 제한하여 미지급 되어온 사망위로금을 자해 사망자일 경우라도 순직으로 결정된 경우 '18년 1월부터는 군 인복지기금에서 전우사랑위로금(1억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선 완료하였으며 순

직 처리 후 청구시효 소멸로 인해 지급이 제한되어온 유족연금을 순직 결정일을 기산일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 중이다.

4) 군의문사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전공사상심사 관련법령 개정(순직기준 확대)

국방부는 기존에 발생한 군의문사의 조기해결을 위해 '18년 1월부터 심사체제 해소를 위해서 심사대상을 월 1회 12명(회당 6명)에서 월 2회 20명(회당 10명)으로 증가시키고, '18년 4월에는 과거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순직권고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재심사 미신청으로 해결하지 못한 91명에 대해 '권익위원회'와 협의 후 일괄심사를 통해 순직요건 해당하는 90명을 순직 처리하였다.

또한 '14. 9. 1. 부로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각 군 보통심사위원회의 심사에 대한 이의가 있는 유가족의 신청 또는 조사권한이 있는 타 국가기관의 재심권고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 재심을 실시해 오고 있으나, 심사 기준이 엄격하고 내용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아 '17~'18년 2회에 걸쳐 군인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순직기준을 확대하였다.

'17년도 1차 개정에서는 정신질환이 입대 전에 발병했으나, 입대 후에 부대적 원인으로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에도 순직 처리할 수 있도록 순직분류 기준표에 포함하여 발병시기와 상관없이 입대 후에 정신질환이 악화되었을 경우에도 공무와 연관성이 인정된다면 순직처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한 경우에 동일한 청구사항을 재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었으나, 타 국가기관의 재심 청구 가능체계와의 형평성, 당사자 및 유가족의 권리 보장, 사망사고에 대한 대군 신뢰증진 의지 등을 반영하여 '1회에 한하여 재심사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여 각 군의 보통심사를 포함하면 총 3회의 심사가 가능하도록 심사체계를 정비하였다.

'18년도 2차 개정에서는 구체적인 사망의 사실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진상규명 불명 사망자'를 심사하여 순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진상규명 불명 사망자'를 시행령 순직분류기준에 포함시켰고, '상이자'로만 되어있던 공상자 분류기준에 '질병으로 인한 상이자'를 명시하여 공상자에서 제외될 우려가 많았던 공무를 원인으로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도 공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공상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순직Ⅲ형에만 반영되었던 입대 전에 발생한 질병이 입대 후에 공무 및 교육훈련을 원인으로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를 순직Ⅱ형으로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순직기준을 보완하고, 2가지 유형이었던 공상자 분류기준을 34개 유형으로 세분화하여 공상자 심사기준을 구체화하였다. 또한 군의문사 등 조기 해결

을 위한 심사횟수 확대에 맞추어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 후보군을 50명에서 80명으로 증원하여 심사 여건도 개선하였다. '18년도 개정은 특히, 그 동안 군인사법 해석의 방법으로 일부 '진상규명불명사망자'에 대해서도 순직 의결을 해왔으나, 이를 시행령에 명시하였다는 의의가 있었다. 이로써 사망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순직처리 되지 않았던 당사자의 명예회복과 유족의 아픔을 해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전공사상심사 순직률 변화 추이]

•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순직(전사포함) 결정 현황					
* 심사 / 순직 : 누적현황					
구 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10월기준)
순직률(%)	91.6	78.7	81.9	93.9	96.4
(심사/순직, 명)	(12 / 11)	(108 / 85)	(210 / 172)	(264 / 248)	(476 / 459)

5) 군 복무중 사망사건 민원의 철저한 재조사를 통해 재심사 순직처리 지원

군의원사 조사제도개선 추진단 조사팀의 재조사 실적은 첫째, 조사팀은 '98년 故 김훈 중위 사건을 계기로 전 국민적 이슈로 부각된 군 의문사의 근원적 해결과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통해 유가족 분들의 아픔을 조기에 치유해드리기 위해 고군분투 노력한 결과, '98년부터 '18. 10월초 현재까지 접수된 1,010여건의 민원중 470건을 치밀한 재조사 활동과 재조사 결과보고서 등 관련자료 제공을 통해 순직처리토록 기여하였다. 둘째, 현 정부의 국정과제에 군의원사 진상규명 관련 과제(89번)가 반영된 이후 급증하는 군의원사 민원을 조기 해결하기 위해 '17년 12월부터 조사인력을 증원하여 재조사에 매진한 결과, '18년 접수된 민원 106건 중 64건을 처리 완료하여 1년 평균 재조사 실적인 50여건을 이미 상회하였으며, 연말까지 100여건의 재조사 처리 완료를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

유가족 분들의 입장에서 공정하고 신속한 재조사 활동으로 첫째, 재조사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조사관들은 2인 1조로 활동하고, 유가족 및 유가족이 추천하는 전문가를 재조사에 참여토록 하고 있으며, 헌병의 최초 수사에 대한 재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사팀장 및 총괄반장을 헌병병과가 아닌 전투병과 장교로 편성하여 신뢰성을 보장하고 있다. 둘째, 신속한 재조사 처리를 위해 민원접수후 처리 완료시까지 전 조사관들의 재조사 유형을 분석하여 민원 한 건당 평균 소요기간을 판단하고, 조사관별 상이한 민원처리 방법과 절차를 규격화·통일화 시켜 최단기간 내에 재조사가 추진되도록 보장함으로써 유가족들의 아픔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주요 사례]

- 상기와 같은 재조사 활동결과, 현재까지 유가족 분들로부터 단 한건의 불만사례가 없음을 물론 故 상병 이○○ 군 유가족으로부터 재조사에 대한 신뢰 및 감사와 함께 담당조사관(상사 임기수)에 대한 격려와 포상을 요청하는 국민신문고 민원을 접수한 사례도 있었음.
- 특히, 유가족의 입장에서 함께하는 민원처리를 통해 '18년 상반기 국방부 전화친절도 평가결과 조사팀이 전군에서 2위, 국방부 국·실 전체에서 1위를 달성하는 등 유가족분들의 아픔을 조기에 치유해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

| 향후 계획 |

군의문사 조기 해결과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은 국방개혁과 군 적폐청산 과제로 선정되어 지속적으로 추진상황을 점검 중이다. 군 복무 중 발생한 사망자에 대하여 국가적 책임을 다하고 차후 사망원인에 의문이 제기되는 사건이 없도록 수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수사체계를 조정하여 '의무복무 중 사망한 군인에 대한 예우와 처우'를 개선하여 '믿고 보낼 수 있는 책임 있는 군대'로 거듭남으로써 국민이 신뢰하는 강한 군대로 거듭나는데 지속 기여할 계획이다.

다툼 것만 다투는 합리적 상소문화 구현

| 추진 배경 |

국가·행정소송에서 국가의 관행적 상소를 방지함으로써 소송 지연에 따른 국민 불편 해소 및 재정 낭비 방지를 도모하고자 한다. 특히 과거 국가권력으로부터의 인권침해 관련 배상소송의 경우, 무리한 상소를 자제하고 조기종결을 도모함으로써 신속한 피해회복을 통한 인권보장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 추진 내용 |

1) 국가송무 상소심의위원회

'17년 11월부터 전국 5개 고등검찰청에 외부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국가송무 상소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였다. '18년 9월 현재까지 총 17차례 개최하여 중요사건 30건에 대해 심의를 진행하였고,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상소 여부를 결정하였다.

2) 과거사 국가배상 Fast Track 시행

'18년 1월부터 재심 무죄 확정된 과거사 국가배상사건의 신속하고 적절한 피해전보를 위해 '과거사 국가배상 Fast Track'을 시행하고 있다. 과거사 국가배상 Fast Track의 시행을 위해 과거사 사건의 패소원인 및 위자료 금액을 사건 유형별로 분석하고, 배상책임의 성부 및 적정 위자료 금액에 대한 자체 기준을 수립하여 일선에 배포하였다. 또한 자체 기준에 따라 무리한 상소를 자제하고, 화해·조정 등 ADR, 청구인낙 등을 적극 활용하여 소송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 상소기준 정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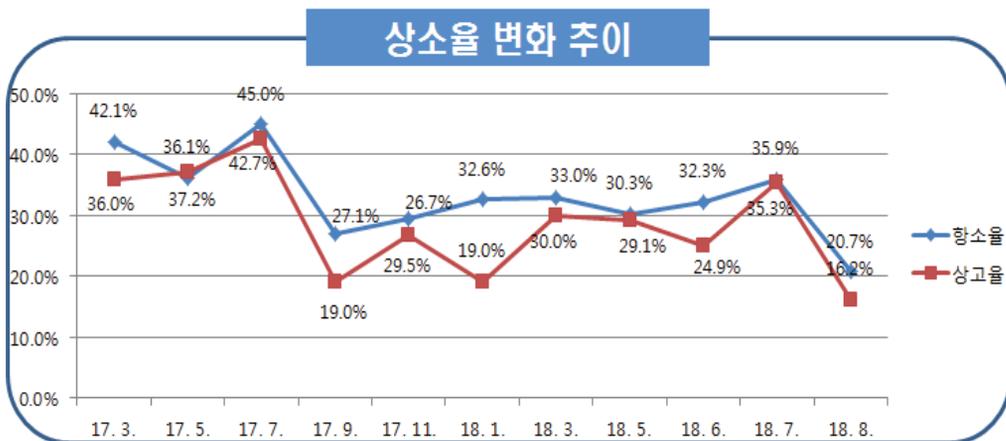
'18년 1월 최근 3년간 주요 패소사례에 대한 법리를 분석한 소책자를 발간, 소송수행자들을 대상으로 이를 배포 및 교육하고 있으며, 또한 최근 5년간 과거사 국가배상 판결례의 위자료 금액 분석을 통해 유형별 적정 위자료 기준을 수립하여 배포하였다. 한편 주요 패소사례 및 위자료 분석 결과를 토대로 상소권 적정행사 업무처리 지침(상소기준)을 개정하였다. 현재 법무연수원에서 각 소송수행청 담당자들에게 「국가·행정소송 주요 패소사례 및 공통법리」 교육을 연 14회 실시하고 있다.

4) 중요사건 관리 강화

'17년 11월 일선청 실정에 맞도록 중요사건 분류기준을 정비하고, 향후 중요사건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지시하는 한편, 소송개시 단계부터 소송수행계획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다양한 방식의 수시보고 체계를 갖추므로써 지휘청의 소송지휘권을 강화하였다. '18년 2월부터는 법무부에서 직접 취합·정리한 전국 중요사건 목록을 토대로 해당사건의 소송진행상황을 격주마다 점검하고 있으며, '18년 9월 기준으로 국가소송 500건, 행정소송 399건 총 899건의 중요사건을 관리하고 있다.

| 추진 성과 |

'17년 7월 이후 절제된 상소권 행사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폭넓게 확산되면서 자연스레 상소율이 감소하였고, 현재까지 상소율이 합리적인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 '15.~'16년 항소율 평균 44.4%, 상고율 평균 42.3%

※ 항소(상고)율 : 국가만 항소(상고)한 비율, 동일한 가치치 부여를 위해 국가·행정소송의 항소(상고)건수/패소건수를 각 구한 후, 합산하여 나눈 값

한편, '과거사 국가배상 Fast Track' 시행 후 현재까지 구로농지 사건, 납북어부 사건, 유럽 간첩단 사건 등 38건에 대해 소멸시효 항변을 자제하고, 상소포기·화해권고 동의 등을 통해 소송의 조기 종결을 이끌어 내었다.

| 향후 계획 |

국가송무 상소심의위원회의 운영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일선청과의 피드백을 통해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는 등 국가송무 상소심의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상소권의 적정 행사를 위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상소권 행사가 적절히 이루어지도록 지휘·감독하고자 한다. 또한 국가송무 교육 출강, 송무 지도점검, 소송 총괄관 회의 및 송무 담당 법무관 워크숍 등 일선청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상소권 적정 행사 관련 선순환 피드백 시스템을 구축하여 합리적 상소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민간 보조사업자 청렴이행서약서 제도

| 추진 배경 |

정부 복지·보조금·연구개발(R&D) 예산이 2013년 117조, 2014년 195조, 2015년 203조, 2016년 210조, 2017년 221조로 지속 증가함에 따라, 부정수급 신고건수도 2013년 145건, 2014년 802건, 2015년 896건, 2016년 1,032건, 2017년 927건으로 꾸준히 증가하였다.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정부예산 (복지·보조금·R&D)	177조	195조	203조	210조	221조
신고 건수	145건	802건	896건	1,032건	927건

분야별 적발액 현황을 살펴보면, 보건복지 분야가 48,299백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산업자원 16,862백만 원, 노동 6,711백만 원, 농림 6,097백만 원, 해양수산 1,264백만 원 순으로 나타났으며, 여성가족 분야 적발액은 740백만 원으로 나타났다.

분야	계	보건복지	산업자원	노동	농림	해양수산	기타*
적발총액	81,215	48,299	16,862	6,711	6,097	1,264	1,982
비중(%)	100	59	21	8	8	2	2

또한 신고건수는 보건복지 분야가 640건(56.6%)로 가장 많았고, 고용노동 156건, 산업자원 133건, 농축산식품 57건, 건설교통 43건 순으로 나타났고 여성가족 분야는 32건(2.8%)으로 나타났다.

분야	계	보건복지	고용노동	산업자원	농축산식품	건설교통	기타*
신고건수	1,130	640	156	133	57	43	101
비중(%)	100	57	14	12	5	4	8

한편, 같은 기간 동안 여성가족부로 이첩된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건은 6건, 적발 금액은 141백만 원에 이르렀고 적발 기관 6개소 전부가 국가 및 지자체 보조를 받는 사회복지시설로 나타나 민간 보조금의 부정집행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첩 연도	계	2013~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이첩 건수(건)	6	-	2	4	-
적발 금액(백만원)	141	-	18	123	-

Ⅰ 추진 경과 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 제30조에 따르면, 법령 위반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 있고 같은 법 제31조에 따르면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발생자와 함께 반환을 명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보조금을 부정집행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수행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보조금 교부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제32조에서 다른 보조금 교부의 일시정지, 제33조에서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 환수, 제33조의2에서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 제33조의3에서 강제징수를 규정하는 등 보조금 부정집행시 강한 제재를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보조사업자들이 위와 같은 법령을 스스로 찾아보기를 기대하기는 어렵고 또 이를 강제하기 어렵다. 그러나 보조사업자들이 보조금 부정집행시 위와 같은 법령상 불이익을 사전에 인지하도록 해야 보조금 부정집행을 사전에 억제할 수 있다. 따라서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보조금 부정집행시 보조금법상 불이익을 사전에 인지하도록 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민간 국고보조시 국고보조 부정집행 보조금 반환 및 향후 보조사업 제외 등 제재사항을 안내하고 직접 청렴이행을 서명하도록 하는 민간 보조사업자 청렴이행서약제도를 마련하였다. 이는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보조금 관련 법령을 직접 확인하고 청렴이행서약을 통해 보조금 집행행위에 경각심을 갖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여성가족부는 민간 보조사업자 청렴이행서약제도의 정착을 위해 여성가족부 공무원 행동강령에 반영하여 제도화하였다.

이를 위해 '18년 10월 24일 여성가족부 공무원행동강령 개정을 추진하였고 내부의견 수렴을 거쳐 '18년 10월 31일 개정을 완료하였다. 다만, 기존 민간 보조사업자와 규정 적용 이후 보조사업자에 대한 형평성 및 보조금 지급 시기, 개정 규정 적용에 대한 충분한 안내 및 홍보 기간 등을 고려하여 시행일은 '19년 1월 1일로 하였다.

| 향후 전망 |

민간 보조사업자 청렴이행서약제도는 민간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보조금 부정집행 행위에 대해 경각심을 갖도록 하여 보조금 부정집행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된다.

먹거리 불안 해소를 위한 친환경 인증제도 개선

| 추진 배경 |

살충제 계란 사건(17.8월)을 계기로 농피아(농관원 퇴직자 재취업)와의 유착이 이 사건의 원인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어, 국민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 농업정책을 지속적으로 유지·발전시키고자 친환경 인증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개선하고자 한다.

| 추진 경과 |

1) 친환경 부실인증 가능성 차단

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무원 경력만으로 심사원 취업 가능 ◦동일 인증기관에 연속 인증신청 허용(횟수 제한 없음) 	→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직자 재취업 제한 ▷ 연속 인증은 2회로 제한
----	--	---	----	---

최근 친환경 부실인증의 원인으로 퇴직공무원의 인증기관 재취업과 인증기관의 ‘동일농가 연속인증 허용’ 등이 제기되었으며,

민간 인증기관에 대한 감독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퇴직자 상당수가 민간 인증기관에 재취업하면서 상호 유착가능성에 대해 언론 등에서 지속적으로 보도되었고, 인증기관이 동일농가에 대해 연속으로 인증하면서 그 심사과정에 상호 이해관계가 얽혀 부정·허위 인증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는 의구심이 높아졌다.

따라서 감독기관·인증기관·농가 간의 부실인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심사원 자격제한, 공직자 재취업 제한, 인증기관 선정 제한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하였다.

2) 친환경 부실 인증기관 퇴출제도 도입

현행	인증기관의 부실인증 사례 여전	→	개선	질적 성장을 위해 역량평가제도 도입 및 연속 '미흡' 부실기관 퇴출
----	---------------------	---	----	--

친환경 인증기관이 양적 확대에 치중하여 인증의 신뢰도 문제 및 부실인증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중대위반시 친환경 인증기관에 대한 퇴출 근거는 있으나 인증기관별 역량평가를 통한 부실기관 퇴출근거는 없던 상황에서, 인증기관 평가 세부지침에 따라 매년 상반기 감독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제3자인 평가기관을 선정하여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역량평가 '미흡' 인증기관이 심사한 인증농가를 대상으로 정부 감독기관이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3회 연속 '미흡' 평가를 받은 인증기관은 '인증취소' 하는 것으로 개선하였다.

3) 중대 부정행위 농가에 대한 처벌 강화

현행	안전성 기준 위반 축산농가와 상습위반자 제재수단 미흡	→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1회 위반 즉시 인증취소 ◦징벌적 과징금 부과·징수
----	----------------------------------	---	----	--

국민적 먹거리 불안 해소를 위해 안전성 기준을 위반한 자에 대한 징벌적 차원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으나, 친환경 축산의 경우에는 잔류허용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도 시정 명령 이외에는 제재수단이 미흡한 상황이었으나, 즉시 '인증취소' 및 상습위반자(인증취소 처분 3회)를 대상으로 한 영구퇴출제 신규 도입 등 부정행위 농가에 대한 실질적인 행정처분을 강화하였다. 또한 3년간 2회 이상 농약 사용 등으로 인증취소 처분을 받을 경우 위반 금액의 5배 이하의 과징금 부과규정을 신설하였고 친환경 인증 취소처분을 3회 받은 경우 영구퇴출, 정부의 친환경 관련 정책자금(자재 지원 등) 지원 대상에서도 3년간 참여를 제한하는 등 삼진아웃 제도를 도입하였다.

| 향후 전망 |

친환경 인증제도 개선을 통해 친환경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퇴직자의 재취업으로 인한 인증기관과의 유착의혹 및 부실인증 가능성 차단하고, 평가기관에 대한 역량평가제를 도입하여 인증기관의 역량을 강화하며, 인증농가 책임성을 확보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 인증제의 질적 성장을 견인할 예정이다.

체육분야 공정성 확립

| 선수등록에 관한 불합리한 관행개선 |

1) 추진 배경

우리나라 각 종목별 선수들이 국내외 선수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대한체육회의 「지도자·선수체육동호인 등록규정」에 따라 각 종목단체 승인을 통하여 대한체육회에 팀(선수)으로 등록해야 한다.

이 규정의 연혁을 살펴보면 1971년 (구)대한체육회가 회원종목단체의 선수 선발과 등록에 있어서 발생 가능한 문제점과 사회적 물의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선수등록지침」을 제정하였다. 2005년에 「선수자격심의위원회 규정」과 「선수선발 및 등록지침」을 통합하여 「선수등록규정」으로 재 제정하였으며, 2013년에는 지도자를 포함하여 「지도자·선수 등록 규정」으로 개정하였고,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이 통합되었던 2016년에는 생활체육 분야인 「체육동호인 등록규정」을 포함하여 (통합)대한체육회 「지도자·선수·체육동호인 등록규정」으로 통합 제정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 규정은 선수권의 보호 추세와 선수등록의 폭을 넓혀야 하는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고 최근 체육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드러냈다.

[체육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주요 사례]

- A 종목 초등부 선수가 더 나은 여건의 클럽으로 팀을 이적할 경우에는 현 소속 팀의 이적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선수활동의 제한을 받는데, 팀 감독들이 이적 동의를 쉽게 해주지 않음 (2017년 A종목 초등연맹 관련 스포츠비리신고)
- 학점 인증제 대학인 직업전문학교 소속의 B종목 선수는 대학부 선수로 등록하여 전국대회 입상을 하였으나, 대학부 선수로 등록하지 못한다는 대한체육회 유권해석에 따라 일반부로 등록해야 하고, 입상실적을 박탈당할 위기에 처함 (2018년 국민신문고 민원)

2) 추진 내용

(1) 선수권익보호를 위한 규정개정 추진 (초등선수 이적제한 폐지)

「지도자선수체육동호인 등록규정」 제21조 제4항에는 “전 소속단체장의 이적동의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선수 등록 변경일로부터 학교급(초·중·고·대학) 및 소속팀을 달리한 기간을 포함하여 최소 만2년 동안 선수활동 제한을 받는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선수 이적 제한” 제도는 지방체육의 균형발전 및 선수 수급 체계의 적정한 유지, 과도한 스카우트 경쟁의 방지 등 선수 수급과 관리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것에 그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다.

A종목 초등부 선수의 경우 더 나은 지도자가 있는 팀, 훈련여건이 더 좋은 팀으로 이적을 하고 싶어도 이적 동의를 해주었을 때 팀(클럽)의 수입 감소 문제 때문에 이적 동의를 해주지 않는다는 민원이 스포츠비리신고센터에 접수 되었다.(2017.5월)

문화체육관광부는 관련 사항을 조사하고(2017.5.25.~6.2.), 선수이적 제한이 일부 긍정적인 효과가 있더라도 진로가 결정되어 있지 않는 초등부 선수에 대해서까지 이적 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선수권익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스포츠 환경 변화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대한체육회에 대하여 「지도자선수체육동호인 등록규정」을 개정, 초등부 선수에 대해서는 전 소속단체장의 이적동의를 없더라도 선수 활동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것을 요구하였다.(2017.6월)

(2) 선수등록 폭을 넓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개정(직업전문학교 등 인증제 대학팀의 대학부 선수 인정 가능)

「지도자선수체육동호인 등록규정」 제9조에는 선수등록의 구분을 초등부, 중학부, 고등부, 대학부, 일반부, 동호인부로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구분은 신체 연령상의 기준을 감안하고 특히 대학부의 경우 체육특기자 제도 취지를 살리기 위해 이전부터 구분되어 있었던 제도이다.

그러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학점 인증제 대학의 소속팀(선수)(예: 직업전문학교 등)의 경우 대학부로 등록하지 못하는 상황이 수년째 계속되고 있었다. 그 이유는 대한체육회가 직업전문학교 등 학점인증제 대학의 경우 고등교육법상의 ‘대학’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으로 이러한 선수들은 일반부로 등록하게 한 것이다.

문제는 대한체육회의 기존 입장을 알지 못한 채 B 직업전문학교 소속 C 종목 팀은 C 종목 단체의 승인을 받아 대학부로 소속팀(선수)을 등록시켜 당당히 전국대회에서 입상을 하였으나 입상을 하지 못한 측에서 자격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였다. 이에 C 종목단체는 대한체육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하였고, 대한체육회에서는 기존의 입장대로 B 직업전문학교는 고등교육법상 '대학'이 아니므로 일반부로 등록해야 한다는 해석을 해주었다.

결국 C 종목단체에서는 B 직업전문학교 소속 C 종목 팀에 대해 기존 입상실적 박탈과 대학부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결론을 통보하였고, 이에 B 직업전문학교는 이것이 부당하다며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였다.(2018.7월)

문화체육관광부는 해당 사항을 검토하고 신체능력과 나이를 고려하여 전문학교 및 평생교육원 등 학점 인증제 대학 등에서도 학생선수(대학부)로 등록이 가능하도록 선수등록의 폭을 넓히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하고, 대한체육회에 「지도자·선수·체육동호인 등록규정」의 개정을 권고하였다.(2018.7~8월)

3) 향후 계획

대한체육회는 초등 선수 이적 제한을 철폐하고, 학점인증제 대학팀 선수는 원칙적으로 일반부로 등록하되 종목단체에서 대학부 선수등록 가능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방향으로 「지도자·선수·체육동호인 등록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2018년 9월 12일 대한체육회는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시도교육청, 스포츠클럽, 선수, 지도자, 심판,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지도자·선수·체육동호인 등록규정」 개정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였고 2018년 말까지 등록전산시스템을 다시 재정비하여 2019년에는 개정된 규정을 시행할 예정이다.

|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근무 여건 개선 |

1) 현 황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사업은 지역생활체육 활성화 및 청년체육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10년부터 추진된 사업이다. 2018년 현재 전국 228개 시·군·구 체육회에서 활동 중인 2,600명의 생활체육지도자들을 위하여 인건비 및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정책방향을 정하고 지자체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며 대한체육회에서는 생활체육지도자 인력을 관리하는 공동 협력 사업이다.

생활체육지도자는 시군구 체육회에 배치되어 주민들을 위한 생활체육활동 지도 및 프로그램 기획 보급, 생활체육동호인 활동 지도·관리, 기타 생활체육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구체적으로는 공공 체육시설, 경로당, 학교 등에서 1일 3회 이상의 체육지도활동 등을 수행하면서 생활체육분야의 중요한 공공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다.

2) 추진 배경

체육 분야에서 국민들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체육지도자들은 그간 시도체육회와 시군구 체육회에 소속되어 있었지만, 2016년부터 시군구 체육회로 소속이 제한되는 과정에서 생활체육지도자들의 고용 안정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관계법령 개정에도 불구하고 생활체육지도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던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직과 출산휴가 이후 복직 시 연차휴가 보장’에 대한 제도개선 요청이 있었으며 난임 휴가, 유연근무제도 등 근로자의 권리 보장에 대한 요청이 있었다.

3) 추진 경과 및 성과

대한체육회는 생활체육지도자 사업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생활체육지도자들의 고충을 해결하고 근로자들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2017년 11월과 2018년 4월 두 차례에 걸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근무규정」을 개정하여 생활체육지도자들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였다.

2017년 11월,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근무 규정」 개정을 통해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하고 있는 시도체육회에서 시군구체육회로 생활체육지도자 고용관계를 이관하고자 하는 경우 채용절차 없이 고용이 승계될 수 있도록 부칙 조항을 신설하였다.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규정된 근로자 권리를 생활체육지도자들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2018년 4월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근무규정」을 다시 한번 개정하였다. 개정된 규정에는 ① 유연근무제도 실시 ② 육아 휴직 복직자, 출산휴가 복직자, 근무 중 재해로 인한 휴직자의 복직 시 연차휴가 보장 ③ 난임 휴가 등의 근로자 권리를 인정하는 조항이 반영되었다.

개정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근무 규정」은 개정과 동시에 시행되면서 생활체육지도자들의 근로환경 개선에 기여하였다.

불합리한 차별법령 정비

| 추진 배경 |

국민이 열망하는 ‘나라다운 나라’,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법령과 제도에 존재하는 부당하고 불합리한 차별을 철폐할 필요가 있다. 법령에 따른 구조적인 기회의 불평등과 불공정은 성실히 살아가는 일반국민들을 좌절시키고, 우리 사회의 통합을 저해한다는 측면에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법제처는 법령과 제도에 존재하는 부당하고 불합리한 차별을 정비함으로써 국민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차별을 해소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제도 개요 |

법제처는 2017년 일정한 주제를 선정하여 정비를 추진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3개년 로드맵을 마련하여 차별법령의 체계적인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현행 법령 전반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차별법령 정비 3개년 로드맵에 따라 전체 법령을 대상으로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보건, 복지, 여성, 가족, 세제, 노동 및 중소기업 등 국민의 일상생활에 밀접히 관련 있는 주요 분야의 불합리한 차별법령을 발굴하고 정비를 추진하였다.

[차별법령 정비 3개년 로드맵]

발굴 추진 연도	정비 분야(내용)
2017	독학사 등 자격요건 정비, 결격사유 정비, 교육 분야
2017.12~2018	보건·복지, 여성·가족, 노동, 공정거래·중소기업, 산업·자원, 국토·물류, 농수축산 분야 등
2019	환경, 문화·정보, 안전, 법무·외교·지방자치, 공무원 일반 분야 등

또한 국민법제관 간담회,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등을 활용하여 차별법령 과제 발굴 경로를 다각화함으로써 국민 의견 수렴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2018년 계획된 국민법제관 간담회 중 상·하반기 각 1회를 차별법령 관련 주제로 시행하여, 발굴된 불합리한 차별법령에 대한 국민법제관 의견을 수렴하였다.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에서는 ‘차별 법령 정비’를 주요 주제로 하여 총 539건의 국민제안을 접수받아 내부검토 및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채택된 제안을 대상으로 경진대회를 실시하여 우수작을 선정하였다. 이 밖에도 정비 추진 분야 관련 비영리민간단체 의견 청취, 차별법령 발굴 내부 공모제, 정책연구용역, 차별법령 신고센터 등 다양한 창구를 통하여 차별법령 정비 과제를 발굴하였다.



국민법제관 간담회 진행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경진대회 시상(11.7.)

| 추진 경과 |

1) 국민의 일상생활 속 불합리한 차별법령 정비 추진

법제처는 법령에 존재하는 부당하고 불합리한 차별 규정을 발굴하고 소관 부처와 협의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2018년 상반기까지 19개 부처 소관 64개 정비 과제를 발굴하여 국무회의에 보고(6.12.)하였으며, 이 중 31개 과제는 연내 정비 추진을 목표로 각 소관 부처가 검토 및 정비를 추진 중에 있다. 또한 2018년 총 191개 정비과제를 발굴하여, 부처 협의를 거쳐 97개 정비 과제를 확정하였다(부처 수용율 약 50.7%).

[불합리한 차별법령 주요 정비 사례]

- 재직 중 부상을 입고 **퇴직한 후에 사망한 순직 소방공무원**에 대하여도 경찰공무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후(死後) 특별승진임용을 통한 예우**를 할 수 있도록 임용시기의 특례 마련(「소방공무원임용령」 제5조, 2018. 5. 31. 개정)
-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전면적으로 적용**하도록 적용범위 확대(「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2018. 5. 28. 개정, 2019. 1. 1. 시행)
- 다른 과학기술원과 달리 **광주과학기술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3년 이상 다른 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에서 근무하지 아니하면 광주과학기술원의 교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고 있던 **자격기준을 정비**(「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22조, 2018. 10. 2. 개정)
-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상 제7급 또는 제12급에 해당하는 외모의 **상해***를 입은 경우, 남녀간 다른 배상한도액을 **여성의 상한액으로 통일**(「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입법추진중(법제심사 진행중))
 - * (7급, 3200만원)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여자, (12급, 1000만원) 외모에 흉터가 남은 여자
- 국가배상사건에서는 일반배상사건과 달리 여자 보통인부의 **일용노동임금**을 기준으로 피해자에게 간병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여, 피해자의 생활 지원비용이 낮게 책정될 우려가 있으므로, **과소 보상 우려가 없도록 간병비 산정 기준을 ‘여자 보통인부의 일용노동임금’에서 ‘보통인부의 일용노동임금’으로 변경**(「국가배상법 시행령」 입법추진중(입법예고 진행중))

2) 2017년 추진한 독학사 등 자격요건 정비(취업현장에서의 차별) 완료

한편 법제처는 2017년에 불합리한 학력차별을 시정하기 위하여 독학사나 학점인정을 통해 학위를 취득한 사람도 정규대학 졸업자와 동등하게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41개 법령, 90개 과제의 정비를 추진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18년에 「수상레저안전법」(2018.5.1. 시행)과 「건강가정기본법」(2018.7.17. 시행)의 개정 및 시행으로 90개 과제의 정비를 완료하였다.

[취업현장에서의 불합리한 학력차별 법령정비 현황]

법령유형	정비과제 건수	정비완료 건수	정비율
법률(2개)	2	2	100%
대통령령(19개)	26	26	100%
총리령·부령(20개)	62	62	100%

| 향후 전망 |

이처럼 법령에 존재하는 불합리한 차별 규정을 발굴·정비함으로써 국민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사회 통합에 기여하며 차별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접수된 의견을 법령 정비에 반영함으로써, 국민의 정부에 대한 신뢰와 효능감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역외탈세로 인한 국부유출 방지

| 추진 배경 |

역외탈세는 정당한 세부담 없이 국부를 유출하는 조세부패행위로 조세정의와 공평과세의 원칙을 훼손하고 성실히 납세하는 일반 국민에게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다. 또한, 역외탈세는 소득과 자산이 부당하게 국외로 이전되어 국내의 소비와 투자에 활용될 국부를 유출시키기 때문에 국내 탈세보다도 그 폐해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역외탈세는 국외 소득을 해외신탁에 은닉하여 취득한 해외부동산을 상속하는 방식으로 상속세를 누락하거나, 수입대금을 특수관계가 있는 해외자회사에게 과다 지급하고 사주의 해외금융계좌로 빼돌려 사적으로 유용하는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지능적이고 교묘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더하여 디지털 경제의 확산, 금융규제 완화 등에 따라 증가하는 국제거래를 이용한 신종 역외탈세거래가 계속 출현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

| 추진 경과 |

1) 역외탈세 방지 과세인프라의 지속 확충

국세청은 '09년 「역외탈세전담 T/F」를 설치한 것을 시작으로 역외탈세대응 인력·예산 등을 확보하고 '11년 역외탈세담당관실을 신설함으로써 역외탈세 대응 전담조직을 정비하였다. '11년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최초로 시행하였고, '14년에는 해외부동산 신고제도를 법제화하였으며, '15년부터는 국제거래 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는 등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

올여왔다. 또한 '14년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에 가입하고, '16년 「한미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을 체결하는 등 국가 간 정보공조 네트워크도 확대해 왔다.

2) 역외탈세에 대한 엄정한 조사 실시

국세청은 역외탈세 근절을 위해 조사역량을 집중한 결과, 추징세액이 '13년 이후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왔다. '17년에는 추징세액 1조 3,192억원으로 최대 실적을 달성하였으며, 조세포탈이 확인된 6명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하였다.

[역외탈세 세무조사 실적]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조사건수(건)	211	226	223	228	233
추징세액(억원)	10,789	12,179	12,861	13,072	13,192

| 추진 성과 |

1) 정보수집 · 분석 방식의 다각화 · 고도화

조세회피처 현장정보 수집활동을 강화하고 유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수집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정보 수집을 보다 다각화하여 역외탈세 정보활동의 실효성을 높였다. 이에 더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국가 간 정보교환제도 등을 적극 활용하여 국내에서 수집하기 어려운 고급 탈세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또한, 이렇게 다각적인 방법으로 수집한 정보와 외환거래 · 해외투자내역 등을 모니터링하여 발견한 비정상적인 거래 정보 등을 활용하여 납세자의 신고내용을 정밀 검증함으로써 역외탈세 혐의자를 찾아내었다.

아울러, '17년 12월부터 최초로 수집한 다국적기업의 재무정보 · 세무정보가 포함된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를 활용하여 DB 구축을 진행 중이며, 이러한 DB 정보를 활용하여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 조작혐의 등을 효율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 역외탈세 세무조사 강화

국세청은 그 동안 해외거래를 이용한 전통적인 역외탈세 수법에 역량을 집중해 왔으나

최근 전문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갈수록 지능화하고 있는 신종 역외탈세를 차단하기 위해 '18년에는 탈세제도, 외환·무역·자본거래, 국가간 금융정보교환자료, 해외 현지정보 등을 종합 분석하여 역외탈세 혐의가 큰 법인과 개인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특히, 대기업이나 대재산가뿐만 아니라 중견기업 등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역외탈세 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성실신고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해외 투자·소비 자금의 원천이 불분명한 중견기업 사주일가, 고소득 전문직 등으로 검증대상을 확대하여 역외탈세 차단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면밀하게 대응하고 있다.

3) 제도개선 사항 적극 발굴

역외탈세 근절을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비거주자가 개입된 국제거래에 한정되어 있던 부과제척기간 특례를 거주자 간 국외자산·용역 거래도 포함하는 역외거래까지 확대하였고,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금액에 대한 자금출처 소명의무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세법개정안에 반영하였다.

이에 더하여,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글·페이스북 등 글로벌 IT기업의 고정사업장 기준 수정을 위한 국제적 논의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 또한, 역외탈세가 주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이루어진다는 점에 착안하여, 일부 OECD 회원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조세회피 의심거래 사전신고 제도」의 도입 여부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4) 부처 간 협업 강화 및 국제공조 확대

'18년 6월 검찰·국세청·관세청·금감원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검찰청 산하에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을 신설하였다. 국세청은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과 협력하여 역외탈세를 통해 해외에 불법으로 은닉한 재산을 추적하고 있으며, 이를 환수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금감원·관세청 등이 보유하고 있는 역외탈세 관련 자료의 수집범위를 확대하는 등 부처 간 협업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해외금융자산의 은닉을 통한 역외탈세와 다국적기업의 세원잠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 간 정보교환을 활성화하고 있다.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에 따라 금융회사로부터 제출받은 상대국 거주자의 금융정보를 매년 자동교환하고, 다국적기업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가별보고서의 자동교환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다. 또한 「EC/OECD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이 추가로 체결·발효됨에 따라 정보교환 국가가 더욱 확대되었다.

| 향후 계획 |

앞으로도 국세청은 정당한 세부담 없이 해외에 소득·재산을 은닉하는 역외탈세 행위에 대해 세정역량을 집중하여 끝까지 추적·과세하는 등 엄정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 특히, 탈루혐의 분석 및 조사과정에서 신종 역외탈세 유형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대기업·대재산가 뿐만 아니라 중견기업·고소득 전문직 등 그 누구라도 역외탈세 혐의가 있다면 반드시 조사하여 역외탈세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할 것이다. 한편, 역외실체(entity)의 설립, 역외탈세 구조의 설계 등 역외탈세에 적극 가담한 전문조력자에 대한 정보수집과 조사도 확대할 예정이며, 역외탈세를 자문·설계한 전문조력자의 구체적 위법 행위가 발견될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히 처벌할 것이다. 아울러 탈세제보, 유관기관 정보수집, 국가 간 정보공조 등 역외정보수집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역외탈세 분석·조사 지원팀을 확대하는 등 조사대응 역량도 제고해 나갈 것이다.

이를 통해 국세청은 국민들에게 상실감을 주는 반사회적 역외탈세를 근절하여 조세정의를 구현하고, 국내 소비·투자에 활용될 국부의 유출을 방지하는 것은 물론, 우리 사회 전반에 “역외탈세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인식이 확고히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의약품 재평가 심사기준 합리화

| 제도 개요 |

의약품 품목허가(신고)는 당시의 의학, 약학 등의 과학적 수준에서 이루어진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 및 품질에 대한 평가 결과를 근거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새로운 평가방법의 개발 및 분석기술의 향상으로 안전성·유효성 또는 품질이 개선된 새로운 의약품이 출현하고 확인되지 않았던 안전성 및 상호작용의 문제가 제기되는 등, 최신의 과학 수준에서 안전성·유효성 및 품질을 재검토·평가하여야 하는 필요성이 요구된다. 또한, 의약품의 안전성 및 오남용 문제에 대한 소비자(환자)의 관심도가 증대되는 등 임상적·학술적·제도적·사회적 환경변화도 겪게 된다.

따라서, 허가 후의 의약품을 최신의 과학 수준에서 안전하고 합리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위와 같은 환경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의약품 재평가라는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의약품 재평가는 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 업무의 일환으로 1975년부터 이미 허가된 의약품에 대하여 최신의 과학 수준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을 재검토·평가하거나 의약품동등성을 입증함으로써 허가된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을 조정(update)하여 보다 안전하고 우수한 의약품을 공급하고, 의약품을 합리적이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 추진 배경 |

그러나 이러한 의약품 재평가 제도의 심사 기준이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그동안 의약품 재평가 시 국내·외 사용현황에 대한 종합적 검토 없이 8개국(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및 캐나다)의 사용현황만을 근거로 유용성을 불인정한 사례가 발생하였는데, 오랜 기간 국내 의료현장에서 사용되어 왔거나 외국 사용현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8개국에서 발간된 의약품집에 수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용성을 인정받지 못한 사례 등이었다. 즉, 외국 의약품집 수재 여부는 해당 국가 내 의약품 사용실태, 의료환경, 대체의약품 등에 따라 국가별로 상이할 수 있는데 이러한 개개의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8개국 의약품집 수재 여부만으로 이를 국내 유용성 판단의 절대적 근거로 삼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민원인이 제출한 재평가 자료에 대한 심사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민원인의 예측 가능성이 저하된다는 불만이 제기되어 왔다.

| 추진 내용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재평가 절차 초기부터 사용현장의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제출된 재평가 자료에 대한 심사 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해 행정예고를 실시('18년 10월) 하였고 자체 규제심사('18년 10월), 법제처 검토('18년 11월) 및 규제개혁위원회 심사('18년 11월)를 거쳐 '18년 11월에 동 규정을 개정하였다.

[주요 개정 사항]

- **재평가 제외대상 추가**(제2조제1항제6호) : 원료의약품은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별도의 심사가 요구되지 않으므로 재평가 대상에서 제외
- **의약품 재평가 대상 선정 및 시안 작성 시 관련 전문가 의견 수렴 절차 마련**(제3조제5항 및 제6조제3항) : 재평가 절차 초기부터 사용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대상선정 및 시안작성 시 관련 단체에 의견조회 절차 마련
- **재평가 자료 제출을 위한 임상시험 절차 마련**(제5조의2) : 임상시험 시 절차 및 준수사항에 대해 관련 규정에 명시
- **재평가 자료에 대한 신뢰성 조사 근거 조항 마련**(제5조의3) : 제출자료에 대한 신뢰성 조사 근거를 관련 규정에 명시
- **재평가 자료 보완 절차 명확화**(제6조의2) : 보완 요구 등 절차를 관련 규정에 구체적으로 명시
- **재평가 평가방법 및 판정기준 정비**(별표 1) : 평가방법 및 판정기준 중 중복 내용 삭제, 복합제 배합의 판정기준 추가 등

기존	개선
<p>「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p> <p>(신설)</p>	<p>「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p> <p>제5조의2(임상시험의 실시)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제출된 임상시험 계획서를 「의약품 임상시험 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검토하고 그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p> <p>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의 임상시험 계획서가 이미 허가된 효능효과, 용법용량의 일부만을 입증하기 위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품목허가한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조제3항에 따라 변경을 명령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p> <p>③ 제1항에 따른 임상시험은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30조 및 별표4의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 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승인'은 '검토·회신'으로 본다</p>
<p>(신설)</p>	<p>제5조의3(제출자료의 신뢰성 조사)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출자료에 대한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약사법」 제69조제1항제2호에 따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 또는 관계 장부나 서류, 그 밖의 물건의 검사 또는 관계인에 대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p> <p>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필요한 경우 「약사법」 제6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진행 중인 임상시험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임상시험 실시 기관 등을 방문하여 시설 또는 관계 장부나 서류, 그 밖의 물건의 검사 또는 관계인에 대한 질문을 하게할 수 있다.</p>
<p>제6조(심사 및 시안의 작성)①, ② (현행과 같음)</p> <p>③ (신설)</p>	<p>제6조(심사 및 시안의 작성)①, ② (생략)</p> <p>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재평가 시안 작성 시 필요한 경우 재평가 시안을 관련단체에게 의견 조회 할 수 있다.</p>
<p>(신설)</p>	<p>제6조의2(자료의 요청 및 보완 등)</p> <p>① 제출한 재평가 자료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p> <p>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보완요구를 받은 민원인이 보완 요구를 받은 기간 내에 보완을 할 수 없음을 이유로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분명하게 밝혀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다시 보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의 기간 연장 요청은 2회로 한정한다</p> <p>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완</p>

기존	개선
	기간내에 자료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항에 따라 다시 보완 요구한 기간 내에 자료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출된 자료만으로 제6조에 따라 심사할 수 있다.

또한, 의약품 재평가 시 8개국 의약품집 수재현황 외에 국내 사용경험 및 기타 국가의 사용현황 등을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의약품 재평가 시 유용성을 인정하는 자료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동 규정 개정사항을 바탕으로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가이드라인」을 개정(19년 1월)하여 외국 사용현황에 8개국 외 국가의 사용현황도 포함할 예정이다.

기존	개선안
4. 제출자료의 범위 가~마 (현행과 같음) 바. 외국의 사용현황(최신 의약품집 등) 등 조사비교자료	4. 제출자료의 범위 가~마 (생략) 바. 외국의 사용현황(「의약품 품목허가·신고·심사규정」 제4조제4항의 최신 의약품집, 그 밖에 국가의 허가 및 사용현황 근거자료 등) 등 조사비교자료

| 향후 전망 |

의약품 재평가 제도에 대한 심사 기준을 합리화함으로써 업무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고 더 나아가 국민보건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의약품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 것이다.

중소기업 기술탈취 등 부정경쟁행위 근절

| 추진 배경 |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혁신적 기술과 아이디어가 국가 및 기업 경쟁력의 핵심으로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중소기업의 혁신적인 기술을 대기업이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탈취하는 일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의 성장사다리가 무너지고 ‘유니콘 기업’이 나오기 어려운 환경이다.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은 기술탈취 피해에 대응하여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장기간의 소송전을 견디지 못하고 파산해버리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소송 외에도 행정적, 형사적 조치를 통해 기술탈취를 예방하고 피해를 구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술탈취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경찰, 검찰,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나서고 있지만,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기술탈취의 특성 상 그 처리가 지연되고 있고, 관련 기관 간 협업이 부족하여 효율적인 사건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게다가 정부 기관 중 기술 전문가를 가장 많이 보유한 특허청은 기술탈취에 대한 행정조사나 수사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아 기술탈취 사건 처리에 전문성을 발휘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은 범부처 공동대책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 추진 내용 |

'18년 2월 정부는 여당과의 당정 협의를 거쳐 범부처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을 발표하였고 정보 공유와 공조로 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TF’도

구성하였다.

특히, 특허청의 기술전문성을 활용한 기술탈취 사건 처리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고 피해 중소기업의 애로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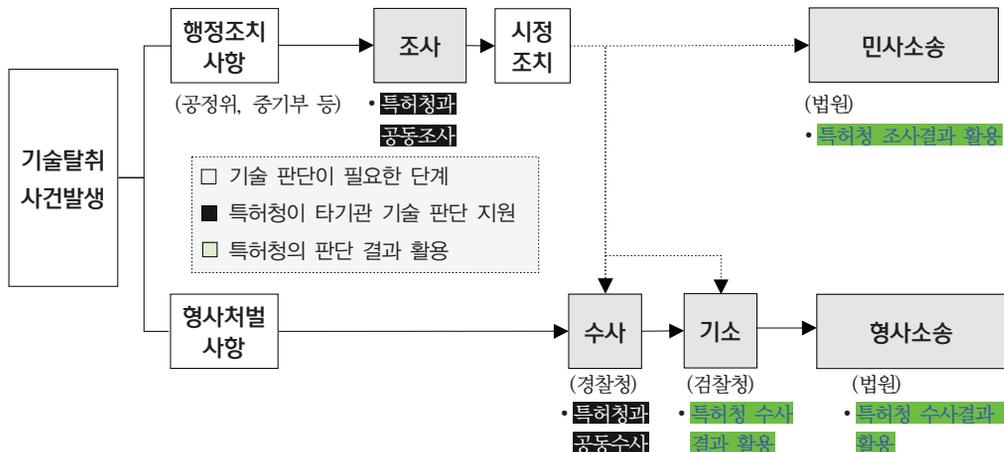
먼저 특허청의 기술탈취 사건 처리 권한을 마련하는 기초작업이 시작되었다. 거래상담, 입찰, 공모전에서 기술 등 아이디어를 탈취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특허청에 조사·시정권고 권한을 부여하도록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을 개정하여 2018년 7월부터 시행하였다.

시행 2개월만에 아이디어 탈취 신고가 20건이나 접수되어 중소기업들의 높은 관심과 기대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동안은 명확한 계약이 없는 경우, 기술과 아이디어를 빼앗겨도 대응이 쉽지 않았으나,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의 시행으로 인해 이러한 보호사각지대가 해소되고, 특허청에 신고함으로써 분쟁을 신속하고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특허청에 특허·영업비밀·디자인 침해에 대한 수사 권한을 부여하는 사법경찰직무법이 2018년 12월 개정되어 2019년 3월 시행 예정이다. 기술이나 지식재산 사건의 경우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고 침해 여부 판단이 쉽지 않으므로 사건처리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다. 여러 기술분야의 기술전문가와 지식재산법 전문가를 보유한 특허청이 신속하게 수사함으로써 지식재산 침해 범죄의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신속한 구제를 위한 법개정과 아울러 기술전문성을 지닌 특허청이 특허·영업비밀 침해, 아이디어 탈취 등 특허청 소관 사건 뿐 아니라 공동조사·수사를 통해 하도급법, 산업기술 유출방지법 위반 등 타 기관 소관 기술탈취 사건의 기술 판단도 지원하는 협업체제도 구축(18.5월)하였다.

[특허청의 전문성을 활용한 기술탈취 근절 협업 체계도]



특허청은 기술탈취 뿐 아니라 다른 부정경쟁행위들에 대해서도 관련 부처와의 협력을 적극 추진하여 시장질서 바로잡기에 나섰다. 대표적인 예로,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와의 협조를 통해 대형통신사의 부당한 올림픽 이미지 활용 마케팅(Ambush Marketing) 행위에 대한 시정 조치를 완료한 바 있다.(18.1월)

[기관 간 협업을 통한 부정경쟁행위 시정조치 사례]

부정경쟁행위 내용	올림픽 공식후원사가 아닌 S社가 평창올림픽 홍보대사인 김연아 선수를 모델로 기용하고, “2018 평창”, “SEE YOU in PyeongChang” 문구 사용 등을 통해 소비자가 S社를 평창올림픽 공식후원사로 오인·혼동토록 하는 광고 송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호 나목 ‘영업주체 혼동행위’)
광고 화면	
시정 조치	특허청이 올림픽 조직위원회와의 협업을 통해 조사한 후 광고 중단 등 시정권고 → S社 광고 중단(18.1.)

| 향후 계획 |

특허청은 혁신성장과 공정경제를 저해하는 기술탈취와 부정경쟁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한 조사·시정권고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정권고에 따르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마저 따르지 않을 경우 불이행죄로 형사처벌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그리고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수사 외에 행정조사·시정권고 제도도 도입하여 경미한 영업비밀 침해 사건에 대한 조속한 시정을 유도하고 영업비밀 침해 예방을 위한 행정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러한 제도 개선 사항들이 효과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행정조사와 수사를 담당하는 전담조직을 신설하여 전문성, 독립성, 책임성을 확보함으로써 기술탈취와 부정경쟁행위 근절을 위한 기반을 확고하게 구축할 예정이다.

임금유용 차단을 위한 노무비 대금지급시스템 개선

| 추진 배경 |

1) 현황

국토부 발표에 따르면 '17년 추석에 국토부 및 산하기관 현장 전수조사 결과 106억원 상당의 노무비 체불이 발생하였다.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공공공사에서도 노무비 체불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건설사의 임금유용을 예방하는 대책이 필요하였다.

건설사의 임금유용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조달청에서는 '13년 12월부터 하도급 대금, 노무비 등을 전자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대금지급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를 운영하고 있다.

발주기관에서는 하도급지킴이 상에서 하도급 대금, 노무비 등의 지급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건설사의 체불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으나, 건설사 선택에 따라 노무비 인출이 가능하였다.

2) 문제점

하도급지킴이 상에서는 노무비 지급방식에 따라 본인 몫 이외 타인 몫은 출금할 수 없도록 계좌에 제한을 두는 '인출제한 적용'과 '미적용' 등 2가지가 있으며, 이는 계약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선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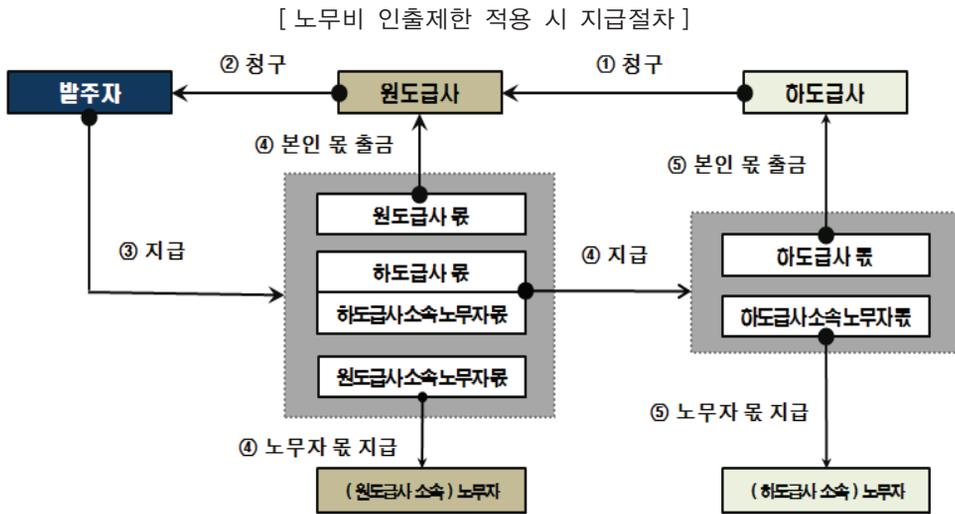
'인출제한 적용'인 경우에는 건설사가 노무비 인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노무비 유용 가능성이 없지만, '인출제한 미적용'인 경우에는 건설사가 노무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기 전 인출할 수 있어 노무비 유용 및 체불이 발생 가능하였다.

이에 따라 하도급지킴이에서 건설사의 노무비 인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 제도 개요 |

1) 인출제한 미적용을 선택할 수 없도록 기능구현

하도급지킴이 상에서 노무비는 발주기관 지급 → 원도급사, 하도급사 등 건설사 계좌로 입금 → 건설사가 노무자 계좌로 노무비 이체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인출제한 적용방식’은 발주기관에서 지급한 노무비는 건설사의 계좌로 입금 후 노무자 계좌로 이체되고, ‘인출제한 미적용 방식’은 건설사 계좌로 입금된 노무비는 건설사가 인출할 수 있으며, 인출된 노무비는 건설사 계좌로 재입금되고 난 후 노무자 계좌로 이체가능하다.

노무비 인출제한 여부는 하도급지킴이에 계약정보를 등록할 때 선택할 수 있는데, 이 때 ‘인출제한 미적용’ 선택할 수 없도록 하여 건설사의 노무비 인출을 제한하였다.

| 추진 경과 |

1) 공사계약특수조건 개정

’18년 5월 하도급지킴이 ‘인출제한’ 의무설정 추진 계획을 조달청장에게 보고하고 공사계약특수조건을 개정하였다.

2) 이용자 안내 및 하도급시스템에 반영

'18년 6월 하도급지킴이 이용자를 대상으로 '노무비 인출제한 적용 의무설정' 추진 내용 및 적용 시기를 안내하였고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에 반영하였다.

| 추진 성과 |

1) 정량적 효과

임금 유용 가능성 차단으로 '인출제한 의무설정' 전·후 평균 노무비 지급소요일수는 1.27일에서 0.81일로 0.46일 단축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인출제한 의무적용 전·후 노무비 평균 지급소요일수 비교]

(단위 : 일)

구분	개선 전 ¹⁾	개선 후 ²⁾
노무비 평균 지급소요일수	1.27	0.81

1) 개선 전 : '인출제한 의무설정' 이 시스템에 적용되기 전 등록된 원·하도급 계약 중 '인출제한 미적용' 대상으로 조회한 노무비 평균 지급소요일수(조회기간 : '13.12월 ~ '18.6.28.)

2) 개선 후 : '인출제한 의무설정'을 시스템에 적용한 후 등록된 원·하도급 계약을 대상으로 조회한 노무비 평균 지급소요일수(조회기간 : '18.6.29. ~ '18.9.30.)

2) 정성적 효과

건설현장 근로자의 노무비가 체불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여 임금유용 비리 발생을 예방하였다.

병적 별도관리제도 도입을 통한 공정한 병역문화 조성

| 추진 배경 |

병역은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이행해야 하는 신성한 권리이자 의무로 생각하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실하게 병역을 이행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일부에서는 여전히 다양한 수법을 동원하여 병역면탈을 시도하고 있다. 특히 일부 고위공직자와 고소득자(자녀), 국민의 관심을 받는 대중문화예술인, 체육선수 등이 연루된 병역비리가 세상에 드러날 때마다 국민들이 느끼는 상실감과 병무행정에 대한 불신은 커질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병무청에서는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병역을 실현하기 위해 병역의무 이행여부가 사회적 관심이 되는 계층에 대해 병역사항을 따로 분류하여 관리하는 ‘병적 별도관리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 제도 개요 |

1) 병적 별도관리제도 입법 과정

과거 역대 정부에서도 특수병역관리, 병역특별관리, 사회관심 병역자원 중점관리 등의 명칭으로 고위공직자, 부유층, 연예인, 체육선수 등에 대하여 병적을 관리했던 적이 있었으나,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1997년에 중단되었다. 2004년 제17대 국회에서 정부입법안을 제출하여 법제화를 시도하였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기본권 침해 우려로 무산되었다. 이어 제18대 국회에서도 의원입법으로 발의되었으나 별다른 진전 없이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되었다. 제19대 국회에서는 정부입법과 의원 입법이 동시에 추진되어 1급 이상 공직자와 그 자녀에 대한 병적을 별도 관리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마련, 2016. 6. 16.부터 시행하였다. 이후 제20대 국회에서는 관리대상을 확대하여 4급 이상 공직자와 그 자녀, 종합소득 과

세표준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와 그 자녀, 대중문화예술인, 체육선수를 포함하는 병역법 제77조의4(공직자 등의 병적 관리 등) 개정을 통하여 2017년 9월 22일부터 사회적 관심계층의 병적을 별도 관리하게 되었다. 별도관리 당위성에 대한 설문조사와 정책 토론을 통한 대국민 홍보,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의 결실로 13년 만에 법제화에 성공할 수 있었다.

2) 병적 별도관리 인원과 내용

현재 병무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병적 별도관리 인원은 3만 3천여 명으로, 신분별 자원관리 현황은 아래의 표와 같다.

[신분별 자원관리 현황]

(’18.10.31.기준, 단위 : 명)

계	공직자(자녀)	%	체육선수	%	대중문화예술인	%	고소득자(자녀)	%
33,360	4,135	12.4	25,571	76.7	1,260	3.8	2,394	7.2

이들에 대해서는 병역처분 기준 적용 등은 일반 병역의무자와 동일하게 적용하되, 병역의무가 발생하는 18세부터 병역의무가 종료될 때까지 병역의무의 연기 및 감면, 각종 병역처분을 포함한 병역이행 전 과정을 모니터링 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병역을 공정하게 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지난 3월에는 별도 관리자로 분류된 대상자에게 선정 안내문을 발송하여 성실한 병역이행을 당부하였다.

| 추진 경과 |

1) 제도 시행을 위한 업무기반 마련

2017년 3월 17일 병무청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공정병역추진단을 구성하여 제도 시행을 준비하였다. 공정병역추진단에서는 별도관리를 위한 전담인력 및 예산을 확보하고, 병역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관련 훈령을 전면 개정하여 2017년 9월 22일부로 공포하였다. 2018년 3월 30일부로 전담인력 13명을 직제에 반영, 인력을 배치하였다.

병적 별도관리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별도 관리대상자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유관기관이나 단체들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4급 이상 공직자와 자녀 명단은 ‘공직자 등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공직자가 소속된 기관에서 병무청에 신고한 자료로 파악한다. 고소득자는 국세청, 대중문화예술인은 2,400여 개 연예기획

사. 체육선수는 5개 프로 종목 경기단체와 대한체육회에서 자료를 협조하여 관련 대상자 명단을 확보하고 있다. 2018년 9월부터는 수작업에 의존했던 명단 확보 방식을 병무청 홈페이지와 연계하여 유관기관에서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병적 별도관리시스템을 마련하여 보다 엄정하고 효율적인 자원관리 체계를 마련하게 되었다.

2) 불합리한 제도의 합리적 개선으로 병역 공정성 제고

2018년 초 언론매체를 통해 일부 연예인 등의 편법 입영연기 의혹이 제기되면서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학습권 보장을 위한 입영일자 연기 제도 등을 편법적으로 이용하여 입영을 지연시킨 것이다.

[주요 사례]

- 사회관심계층 A씨, 29세에 박사과정 진학예정 사유를 입영 지연 수단 악용
- 사회관심계층 B씨, 입영일자에 맞추어 국외 출국, 단기 체재 후 귀국하는 방식으로 국외 입영연기 사유를 입영 지연 수단 악용
- 사회관심계층 C씨, 단기 국외여행허가 후 출국과 입국을 반복하면서 입영 지연 수단 악용

병무청에서는 일반인과 비교하여 사회관심계층의 병역이행 사항을 면밀히 살피는 과정에서 입영일자 연기제도와 국외여행허가 제도를 악용하여 병역의무 이행을 지연하는 불공정한 사례를 확인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였다.

편법적인 입영연기를 차단하기 위해서 당초 30세까지 통산 2년, 5회 범위 내에서 입영일자를 연기하던 방식을 개선하여, 28세 이상자는 질병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편법으로 입영연기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였다. 또한 국외 체재기간에 관계없이 출국 사실로 입영연기 처리하던 방식을 개선하여, 6개월 이상 국외에서 체재하는 사람에 대하여만 입영연기 하도록 하여 제도의 공정성을 높였다. 그리고 단기 국외여행의 총 허가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허가횟수도 5회로 제한하도록 하여 제도 악용 소지를 최소화 하였다.

[제도 개선 주요 내용]

- (현역병 입영연기 규정) 28세 이상 고령자의 편법연기 사례 위주, 연기 제한

당 초	• 연기기간 (통틀어 2년·5회, 30세) 범위 내 연령제한 없이 연기	➤➤	개 선	• 대학원 진학예정 등 8개 연기사유 28세이상자 연기 제한
------------	---	----	------------	-----------------------------------
- * 8개 사유 : 각급학교 졸업예정, 대학원 진학예정, 공약·국가업무 수행, 형제 동시복무, 민간 자격시험 응시, 고졸 검정고시 응시, 학점은행제 수강, 직업훈련원
- (국외 입영연기 규정) 국외체재기간에 따라 구분관리, 공정성 및 효율성 확보

당 초	• 국외체재기간 관계없이 출국 시 입영연기	➤➤	개 선	• 6개월 미만 단기 국외체재자 입영연기 제외, 입영일자 연기
------------	-------------------------	----	------------	------------------------------------
- (단기 국외여행허가 규정) 허가일수 및 횟수 제한, 병역 지연 악용 방지

당 초	• 1회 1년, 최대 3년 범위 내 횟수 제한 없음	➤➤	개 선	• 1회 6개월, 통틀어 2년 범위 내 5회까지로 허가 제한
------------	------------------------------	----	------------	-----------------------------------

이처럼 입영연기와 관련한 불공정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제도 악용 사례 및 병역 면탈 시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최근에는 사회관심계층의 병역이행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사회 인식의 변화로 유명 대중문화예술인들의 입영 풍속도가 변화하고 있다. 20대 초·중반에 군에 입대, 모범적으로 군 생활을 마친 후 사회에 복귀하여 대중의 사랑을 받으면서 왕성한 활동을 하는 것이 그 예이다. 사회관심계층의 자발적이고 성실한 병역이행은 공정병역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3) 공정병역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병적 별도관리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공정병역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는 노력도 활발히 하고 있다. 관리대상자의 명단을 보유하고 있는 대한체육회, 대중문화예술기획사 대표 등 관련 단체 임직원을 초청하여 제도 도입의 배경과 목적을 설명하고, 간담회 등을 통하여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특히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대중문화예술기획사 대표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법정교육에 별도의 시간을 할애 받아 병적 별도관리제도의 입법 취지와 대중문화예술인과 관련된 각종 병역제도를 설명하고 있다. 올해 7월부터 11월 까지 총 16회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 외에도 다중이 이용하는 지하철, 행정기관의 옥외 전광판, 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 등을 활용하여 병적 별도관리제도 동영상 상영, 제도 홍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병적 별도관리제도의 대국민 홍보 및 병역제도 개선 등을 통해 병역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올해 외부 조사기관에서 실시한 병역 공정성·신뢰성에 대한 국민인식도 조사에서 전년도 비하여 동일 조사항목의 점수가 1.5점이 상향되는 성과를 이루었다. 앞으로 병적 별도관리제도가 정착된다면 병무행정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은 과거에 비하여 점점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병역 공정성 신뢰성에 대한 국민인식도 조사 결과]

구분(단위 : 점)	2015년	2016년	2017년(A)	2018년(B)	GAP(B-A)
병무행정에 대한 인식도	66.9	68.1	66.6	68.1	▲ 1.5

* 조사기관 : 리서치랩(주), 조사기간 : '18. 7월~10월, 조사대상 : 병역이행 전·후자 1,200명

| 향후 계획 |

반칙과 특권 없는 공정한 병역문화 정착, 병적 별도관리제도가 시행된 지 1년 남짓 지났다. 그동안 시대변화에 뒤처진 기존의 관행을 바꾸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왔다. 나아가 병역에 대한 인식과 문화를 혁신하여 국민의 공감과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제 병적 별도관리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해야 하는 과제가 남았다. 해외에서 활동하는 유명 스포츠 선수, 기획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 활동하는 대중문화예술인의 경우 병역이행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음에도 관리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현행 법령 상 체육선수는 국내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사람, 대중문화예술인은 연예기획사와 계약을 맺고 있는 경우에 별도관리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2018년 10월, 이들을 관리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의원입법)이 발의되었다. 입법 발의된 내용과 같이 선정대상자 확대에 관한 병역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제도의 실효성과 신뢰성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병무청은 병적 별도관리 제도를 기반으로 사회적 지위와 신분을 이용한 부당한 병역회피 발생을 예방·단속하는 한편,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 중 모범적으로 병역의무를 잘 이행한 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반칙과 특권 없는 투명하고 공정한 병역문화를 확립해 나갈 것이다.

부패예방 병무감사시스템 구축·운영

| 추진 배경 |

병무청은 17개 소속기관에 대한 자체감사를 기관규모 등을 고려하여 1~2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다. 병무행정의 특성은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행정으로 불합리하거나 불패발생 가능성이 있는 업무를 식별, 부패행위 등을 사전예방하고 발생 즉시 시정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데도 자체감사는 사후적발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예방적 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제한된 감사인력으로 자체감사를 연 10회 실시함으로써 단편적인 결함사항 지적 위주로 감사가 진행되고, 정책 및 제도개선 등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의 감사기능은 인력 및 시간 상 제약으로 인하여 점차 약화되는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아울러, 병무청 내부 보유정보만으로 인사, 예산 및 병무행정 전반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는데 한계가 발생하여 인사혁신처, 행정자치부 등 유관기관 자료와 연계한 데이터 분석의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감사의 예방적 기능을 강화하고 정책·제도개선 위주의 감사에 필요한 인력 및 시간 부족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단순 업무처리 데이터를 비교분석하여 결함사항을 실시간으로 자동추출, 통보하여 해당기관에서 직접 시정조치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다.

| 추진 경과 |

1) 병무감사시스템 기획(1단계)

최근 5년간 자체감사 지적사항, 부정적 언론보도 사항, 국회지적사항,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민원 내용을 분석하여 오류발생유형을 구분하고 이를 사전에 시스템적으로 통제하는 방안을 기획하여 계획을 수립하였다.

2) 예산확보(2단계)

전산시스템을 2017년에 구축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예산을 요구하여 예산 219백만원을 확보하게 되었다.

3) 전담조직 구성(3단계)

시스템 구축을 위한 테스트포스팀을 2016년 12월 감사담당관실, 정보화 부서, 소속기관 현업 실무자 등 42명으로 구성하고 활동을 시작하였다.

4) 시스템 개발 요구(4단계)

시스템구축 시 필요한 기능 등을 워크숍을 통해 소요를 파악하였고, 파악된 내용별로 업무오류 예방 및 사전식별 시나리오 개발과 사용자 편의성 등 기능적 측면을 고려하여 요구사항을 만들고 2017년 2월 개발 요구(발주)를 하였다.

5) 시스템 구축 및 시범운영(5단계)

2017년 5월 병무감사시스템 구축 사업자 선정에 이어 7월에는 사업자와 시스템 분석 작업을 통해 설계를 완료하였고 11월에 구축 완료하였다. 구축완료 후 1개월간의 적합성 테스트와 안정화 기간을 거쳐 식별된 문제점을 보완하는 한편, 전 소속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고 2017.12.7. 정식 오픈, 운영을 시작하였다.

6) 정상운영(6단계)

2018년 10월 기준 행정결함 예방 및 식별을 위한 152개의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실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개발과정에서 미처 식별하지 못한 미비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유지보수를 하는 한편, 직원들이 추가적으로 탑재를 요청하는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시스템 개발 또는 구현 검토를 거쳐 지속적인 보완을 하고 있다.

| 제도 개요(병무감사시스템) |

병역처분 및 의무부과 등 관련 자체감사 지적사항을 분석하고 소속기관에서 빈발하는 결함유형을 수렴하여 시스템으로 오류를 차단하는 한편 발생결함을 추출하여 담당자에게 통보함으로써 결함사항 시정이 이루어지는 순환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다.

[시스템 개요도]



1) Sensor&Filter, 업무처리 진단 및 조치

반복적으로 발생 또는 오류발생 개연성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 사전에 설정해 놓은 오류 조건 시나리오에 부합하는 업무처리 사항이 발생할 경우 실시간으로 오류 여부를 알려주거나 실시간 판단이 곤란한 경우에는 업무처리 완료 후 결함여부를 식별 업무처리 다음날 담당자에게 알려주어 즉시 시정조치하게 하는 체계를 구축하였다. 한편 발생한 업무오류 조치과정을 소속기관 관리자가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여 감사시스템의 활용도 및 효과성을 높이고 있다.

2) 유관기관 데이터 연계, 자정기능 강화

인사혁신처에서 운영하는 표준인사시스템의 복무정보를 감사시스템과 연동하여 복무점검을 실시간 및 원격으로 실시하는 체계를 갖추었으며,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재정집행 자료를 감사시스템에 탑재하여 예산 부당집행 여부를 모니터링하여 부적정 행위 예방과 병무청의 자정기능을 강화하게 되었다.

3) 민원접점 모니터링, 부패예방

주요 민원처리 및 복무현장 실태조사 시 담당공무원의 부패행위 또는 불친절 행위 여부를 민원처리 다음날 또는 실태조사 완료 다음날 관련 민원인 등을 대상으로 휴대폰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개별 응답내용을 분석하여 시정조치함으로써 부당행위 예방과 민원인들의 신뢰를 제고하게 되었다.

| 추진 성과 |

1) 정책감사 및 예방감사 집중 기반 마련

일상적, 반복적 업무결함에 대한 감사활동 및 감사로 인한 시정조치 활동은 감사시스템을 통하여 실시하고 신규 업무규칙을 지속으로 발굴하여 적용함으로써 그 역할과 비중을 늘리고 있다. 이에 따라 감사역량을 정책감사 및 제도감사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게 되었으며 정책감사를 통한 제도개선 수가 2018년 8월 현재 21건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5건이 증가하였다.

2) 사용자(직원)의 시스템에 대한 만족도 94.1%

2018년 소속기관 자체감사 종료 후 실시한 7개 기관 직원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94.1%의 직원이 병무감사시스템 활용이 실무업무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점으로 볼 때 직원들이 긍정적 효과를 체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업무결함 지적사항 및 신분상 조치인원 감소

반복 유사결함으로 감사에 지적되는 사례건수가 2018년 8월 현재 98건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61건 감소하였으며, 이에 따라 신분상 조치 인원도 전년 동기간 302명에서 149명으로 153명 감소하였다.

4) 감사정보의 전산화 및 감사관 역량 강화

감사활동을 하면서 발생하는 데이터와 감사노하우를 시스템에 탑재하고 이를 분석하여 환류함으로써 감사기법을 고도화하고 감사관의 역량강화에 기여하게 되었다.

| 향후 계획 |

병무감사시스템은 업무를 처리하면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결함사항을 시스템으로 사전 식별·시정 등 통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부패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다만, 현재 정형데이터 위주로 개발된 시나리오의 한계에서 벗어나 병무행정의 비정형, 반정형데이터를 분석하여 특이패턴 또는 오류패턴을 찾아내는 분석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업무오류에 대한 식별체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하며, 유관기관과의 연계데이터의 범위도 확장하여 상시 모니터링 모델을 다양하게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운영과정에서 적재된 데이터를 자동분석할 수 있는 툴 및 기법을 개발하여 환류체계를 계속 발전시킬 필요성과 자체 보유데이터 외 웹상의 공유데이터를 크롤링하여 SNS, 언론기사 등 병무의무와 관련된 부정정보를 사전에 탐지하여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병무감사시스템의 고도화 계획도 적극 검토, 추진할 계획이다.

국외위조부품 도입 방지를 위한 국외업체 검증 강화

| 추진 배경 |

제조 능력 없는 국외 업체가 제조사로 등록 후 군수품을 납품하는 등 위조품 납품 사례가 발생하였다.

▶ '12~'15년 간 국외도입 군수품 중 535건 위조품 납품 적발 ('16년 청 자체감사 『국외도입 군수품 품질보증 감사』 결과)

따라서, 동일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달원 등록절차에서 제조사·공급사별 검증절차 강화, 현장실사 등 업체 검증을 강화하고자 한다.

| 제도 개요 |

국외업체가 업체정보를 등록 후 정부와 「군수품 납품계약」을 할 수 있으므로 국외업체 등록 시 제조/공급업으로 부여하던 업종을 납품희망 품목별 생산·공급 유형에 맞춰 세분화하고 해당 유형에 따라 맞춤 검증하는 내용이다.

- ① 원제작사(Original Manufacturer/Original Component Manufacturer 이하 OM)
 - ※ 업체 발행 보증서 또는 제3자 승인을 받은 증명서로 검증
또는 제3자 승인을 받은 증명서로 해당 업체 검증
- ② 주문제작자(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r 이하 OEM)
- ③ 제조자 설계생산(Original Design Manufacturer 이하 ODM)
- ④ 유통 승인 공급자(Licensed Supplier 이하LS)
 - 원제작사와 유통 권한만 위임받아 원제작사 제품을 납품하는 업체
 - ※ ② OEM, ③ ODM, ④ LS는 원제작사가 승인한 문서나 계약서로 검증
- ⑤ 일반 공급자(Supplier) : 검증 불필요
 - 제작사로부터 물품을 구매, 최종 수요자에게 판매하는 업체

1) 국외업체 현장실사 근거 및 절차를 아래와 같이 마련

국외구매 군수품 위조를 의심하는 사업관리본부·계약관리본부(이하 검증희망부서)가 업체 사전 동의를 얻고 현장실사 할 수 있는 절차

- 국외업체 신규 등록신청서식에 청이 방문 시 동의하는 문구 삽입
- 현장실사 전 업체와 일정, 장소, 인력지원 등을 협의 후 방문하는 절차 마련

업체 정보(신용정보, 생산품 단종여부)를 확인 후 현장실사를 결정할 수 있는 절차

2) 재국 및 제3국 제재 중인 국외업체 정보를 등록심사 시 활용

최근 민간 및 유럽에서 활용 중인 신용정보사 제재보고서(santion report)를 업체 등록처리 절차에 활용하고, 등록신청서 상 업체 및 주요 임원 제재 여부를 기입하고 신용정보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와 불일치 시 해당 업체 등록 거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등록신청서에 삽입한 문구 (신규)]

귀사나 귀사의 주요임원이 귀사의 정부로부터 계약금지 중이거나 입찰부적격 판정을 받고 있습니까?

예 아니오

Is your company or anyone in the company's major management position currently under any form of debarment by any of your government agencies, restricting the company from signing contracts or participating in biddings?

yes no

3) 입찰참가 제한 업체 등록 보류

입찰참가 제한 중인 업체가 상호·대표자 변경 등으로 등록신청 하는 경우 처분기한 만료 전까지 등록 보류하도록 하여, 입찰참가 제한 업체로부터 권리를 승계한 업체가 등록 시 입찰참가 제한 처분을 승계하도록 관련 절차 개선하였다.

| 추진 경과 |

[추진 경과 (일자별)]

- 『위조부품 방지 대책』 수립 지시(청장 →획득기획국) : '18.4.23
- 『위조부품 방지 정책』 수립을 위한 협조회의 : '18.5월
 - * 획득정책과 주관(조달기획팀, 국제부품계약팀, 표준기획과) : 1차(5.1) / 2차(5.8)
- 『위조부품 방지 검토』 보고(획득조정과 →청장) : '18.6.1
 - * 세부추진과제 및 주관부서 배정
 - 조달원재분류(조달기획팀), 계약조건 개정(국제부품계약팀), 단종부품관리(표준기획과)
- 『위조부품관리 세부 추진계획』 제출 (조달기획팀 → 획득정책과) : '18.6.26
- 『조달원 등록정보 관리 지침』 개정 협조 회의 : '18.7.10
 - * 조달기획팀 주관, 기품원, 국제부품계약팀, 민간 신용정보회사(d&b) 등 참석
- 『조달원 등록정보 관리 지침』 개정안 확정/의결 : '18.10.24
 - * 제165회 정책심의회(10.24) 심의 완료
- 『조달원 등록정보 관리 지침』 개정 (예정): '18.11월

| 향후 전망 |

대한민국 정부와 계약하려는 국외업체(연간 100여개) 업종을 검증하여 해당 업체의 위조 부품 납품을 방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외도입 군수품이 납품 후 위조가 의심되는 경우 현장실사를 하는 등 방산비리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기반 마련하였다.

청렴서약 위반 시 입찰참가 제한 확대

| 추진 배경 |

방위사업법상의 청렴서약 위반시 제재를 강화하여 공정한 계약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개선 필요하였다.

청렴서약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방위사업법 제59조가 개정(시행일 : '17.6.21.)됨에 따라, 이를 시행령·시행규칙에 반영하였다.

방위사업법 제59조(청렴서약위반에 대한 제재) 국방부장관과 방위사업청장은 제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방산업체·일반업체, 방위산업과 관련없는 일반업체, 전문연구기관 및 일반연구기관에 대하여 5년의 범위 안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다.

| 제도 개요 |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70조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개정 내용 : 방위사업법 개정에 따른 청렴서약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간 확대(2년→5년) 내용 반영
- 개정안

현 행	개정 안
제70조(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 ①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체 및 연구기관의 대표 및 임원이 청렴서약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위반사실과 관련된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70조(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 ① 방위사업청장은 ~ (중략) _ 1개월 이상 5년 이하의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세부기준)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개정 내용 : 방위사업법 시행령(제70조) 입찰참가제한 기준(최대 5년) 개정을 근거로 시행규칙상의 입찰참가자격 기준 세분화
- 개정 내용
 - 금품·향응 제공 또는 약속한 자에 대한 제재 부문
 - * 기 준 : 2억원 이상 (최대 2년)
 - * 개 정 : 10억원 이상(최대 5년), 5억원이상 10억원 미만(최대 3년)
2억원이상 5억원 미만(최대 2년)
 - 방위사업 관련 특정정보 제공요구 및 제공에 대한 제재 부문
 - * 기 준 : 최대 1년
 - * 개 정 : 1급비밀 등의 특정정보(최대 5년), 장기간 2급 또는 3급비밀 등의 정보 (최대 5년), 대외비 등의 특정정보 (최대 2년)
 - 계약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연구성과물 등 특정정보를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한 경우에 대한 제재 부문
 - * 기 준 : 최대 2년
 - * 개 정 : 무기체계와 관련한 특정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최대 3년), 무기체계를 제외한 특정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최대 2년)

| 추진 경과 |

[추진 경과 (일자별)]

• 비리근절 방사청 안 제시 (국무조정실장 주관 회의) *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별로 6개월 ~ 5년의 제재기간 설정	: '15. 9. 15.
• 방위사업법 개정 * 청렴서약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1월 이상 5년 이하)	: '16. 12. 20.
• 방위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 청렴서약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별표3, 세부 기준)	: '17. 6. 20.
• 방위사업법령 시행	: '17. 6. 21.

| 향후 전망 |

방위사업법상의 청렴서약서 위반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을 기존 2년에서 최대 5년으로 확대함으로써 방위사업에 참여하는 업체의 청렴의식 제고 및 반부패·비리 예방 가능하다.

또한, 입찰참가자격의 최대 제한기준인 5년내에서 ① 금품·향응 제공 금액, ② 특정정보 제공 종류(1, 2, 3급, 대외비 등) 및 ③ 연구성과물 등 특정정보 등으로 세분화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입찰참가자격 제한 실효성 증대가 기대된다.

[청렴서약 위반 시 입찰참가 제재 사유/기간]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	제재기간
1. 영 제7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가. 10억원 이상의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약속한 자	5년
나. 5억원 이상의 10억원 미만의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약속한 자	3년
다.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의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약속한 자	2년
라.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약속한 자	18개월
마.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약속한 자	1년
바. 1천만원 미만의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약속한 자	6개월
2. 영 제7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가. 2급 비밀 이상의 중요한 사항인 경우	3년
나. 대외비, 3급 비밀에 해당되는 경우	2년
다. 비밀과 관계없는 사항인 경우	1년
3. 영 제70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가. 무기체계 운용에 중요한 사항	3년
나. 무기체계 운용에 중요한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	2년
4. 영 제70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	
가. 수급인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행위를 하여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한 경우	1년
나. 수급인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	6개월

방위사업 원가부정행위 ‘징벌적 가산금 2배’로 강화

추진 배경

방위사업법에 따라 원가부정행위 시 부당이득금의 1배에 해당하는 징벌적 가산금을 부과해 왔으나, 원가부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제58조(부당이득의 환수) 방위사업청은 방산업체·일반업체·전문연구기관 또는 일반연구기관이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내용의 원가계산자료를 정부에 제출하여 부당이득을 얻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당이득금과 부당이득금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원가부정행위 발행 현황

'17. 6. 27. 현재, 단위: 회 / 억 원

적발연도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합계
횟수 (방산/일반)	2 (2/0)	4 (3/1)	4 (1/3)	4 (3/1)	9 (8/1)	7 (6/1)	6 (1/5)	3 (1/2)	1 (1/0)	4 (3/1)	-	44 (29/15)
계약건수 (방산/일반)	9 (9/0)	21 (13/8)	32 (2/30)	49 (47/2)	81 (63/18)	64 (47/17)	62 (2/60)	12 (6/6)	12 (12/0)	46 (42/4)	-	388 (243/145)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	78	25	22	244	180	536	120	5	78	44	-	1,332

* '06~'16년 간 44건의 원가부정행위로 1,332억원의 부당이득금과 가산금 부과

계속되는 원가 부정행위로 인해 국내 방산시장의 경기가 둔화되고, 해외 수출 및 국제 경쟁력을 약화시키며, 무엇보다도 방위사업에 대한 대국민 불신 초래하였으며, 이에 따라 공

정하고 투명한 방위사업 환경 조성을 위해 원가부정행위자에 대한 금전적 제재를 강화하는 등의 제도개선 필요성 대두되었다.

| 제도 개요 |

원가부정행위자에 대한 금전적 제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부당이득에 대한 징벌적 가산금 규모를 확대하여 방위사업법 개정하였다. ('16.12.20.)

* 제58조의 가산금 규모 확대 : 부당이득금의 1배 → 최대 2배

부당이득금 규모, 하도급자와 공모여부, 부당이득행위의 반복 적발 및 자진신고 여부 등을 고려한 가산금 산정기준을 마련하여 방위사업법 시행령 개정하였다.('17.6.20.)

- 부당이득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부당이득금의 1배~2배까지 부과
- 하도급자와 공모하거나 반복 적발 횟수를 고려하여 각각 50%까지 가중
- 다만, 원가 부정행위를 자진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50%까지 감경

* 제69조 별표1의 가산금 산정 기준 및 방법 : 별지 참조

| 추진 경과 |

[추진 경과 (일자별)]

- 비리근절 방사청 안 제시 (국무조정실장 주관 회의) : '15. 9. 15.
* 부당이득 가산금 규모 확대(부당이득의 1배 → 최대 2배) 등 5개 과제
- 방위사업 비리근절 우선대책 발표 (총리실 부패척결추진단) : '15. 10. 29.
* 원가 부당이득에 대해 1배에서 최대 2배까지 가산금 부과 추진
- 방위사업법 개정 (제58조, 부당이득의 환수 등) : '16. 12. 20.
* 허위 및 부정한 원가계산 자료를 제출하여 부당이득을 얻은 경우 부당이득 가산금 규모 확대(부당이득금의 1배 → 2배 이내)
* 가산금의 산정 기준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방위사업법 시행령 개정 (제69조, 부당이득금등의 환수) : '17. 6. 20.
* 부당이득금 규모, 공모여부, 부당이득행위의 반복 적발 및 자진신고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가산금 산정 기준 마련
- 방위사업법령 시행 : '17. 6. 21.

| 향후 전망 |

원가부정행위 시 부당이득 가산금 규모를 확대하여 계약 상대자의 금전적 제재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킴으로써 원가부정행위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원가부정행위 감소로 인해 국내 방산시장의 활성화와 해외 수출 증대 및 국제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나아가, 공정하고 투명한 방위사업 추진 환경 조성으로 방위사업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가산금 산정 기준 및 방법]

□ 기본금액 산정

부당이득금 규모 및 비율	기본금액
• 5억원 이상 이거나 20% 이상	부당이득금의 2배
•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이거나 10% 이상 20% 미만	부당이득금의 1.5배
• 1억원 미만 이거나 10% 미만	부당이득금의 1배

* 부당이득금 비율 : 부당이득금이 계약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 가산금 가중 / 감경

가산금 가중		가산금 감경	
• 하도급자와 공모한 경우	50% 가중	• 적발 전 자진신고 • 적발 후 다른 부정행위 자진신고	50% 감경 30% 감경 (적발된 건, 자진신고 건)
• 최근 5년 이내 반복 적발 횟수 - 3회 이상	50% 가중		
- 2회	30% 가중		
* 시행일 이후 적발 건부터 적용			
• 공모한 경우와 반복 적발 횟수 모두 해당 시 가중비율 합산			

□ 최종 산정한 가산금이 부당이득금의 2배를 초과할 경우에 가산금은 부당이득금의 2배로 결정

* 방위사업법 제58조에 가산금은 부당이득금의 2배 이내로 한정

□ 적용기준 : 시행일('17. 6. 21.) 이후 체결되는 계약 건부터 적용

군수품무역대리업 중개수수료 신고제

| 추진 배경 |

해외 무기도입 과정에서 무역대리점의 비리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군 전력화에 차질을 유발하고, 방위사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 하락을 초래하고 있다.

- 터키 기업(H)의 국내 무역대리점(I)이 전자전훈련장비(EWTS) 사업 과정에서 가격 부풀리기를 하고, 뇌물을 주고 기무사 직원으로부터 기밀을 유출함.
- 무역대리점(S)이 해상작전헬기 도입 과정에서 영국 기업(A)이 선정될 수 있게 로비를 벌임.
- 무역대리점(O)이 관급장비 국외구매 과정에서 특정 기업(H)이 선정되도록 제안요청서 문서를 변조함.

방위사업 비리 예방 및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국방 예산의 낭비를 막고 국외 조달 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무역대리점의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요구되었다.

이에 따라 '방산비리 근절 및 투명성 강화'할 수 있도록 청렴서약서 제출의무를 무역 대리점에 부여하고 군수품무역대리업 등록제 및 중개수수료 신고제 도입을 추진하게 되었다.

- 청렴서약서 제출의무 확대 법제화 (개정 '16.1.19.)
- 군수품무역대리업 등록제 (개정 '16.5.29.)

| 제도 개요 |

군수품무역대리업을 하는 자에게 중개수수료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하여 중개수수료를 미신고하거나 허위 신고한 경우 등록 취소 또는 벌칙을 부여할 수 있도록 방위사업법 개정하였다. ('16.12.20.)

* 중개수수료 신고제(제57조의4) 신설, 등록취소(제57조의3) 및 벌칙(제62조) 근거 마련

법에서 위임된 중개수수료 신고대상 규모, 신고의 절차, 신고기한 등의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방위사업법 시행령 개정하였다. ('17.6.20.)

- 2백만 불 이상 사업에 대한 중개수수료 신고의무 부여
- 중개수수료 신고서 및 변경신고서 신고기한 지정

* 중개수수료 신고제(제68조의5) 신설

또한, 중개수수료 신고서 서식을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에 마련하였다. ('17.6.21.)

* 중개수수료 신고서 서식(제57조의3, 별지 제26호) 신설

| 추진 경과 |

[추진 경과 (일자별)]

- 비리근절 방위사업청 안 제시 (국무조정실장 주관 회의) : '15.9.15.
* '무역대리점 관리 강화' 등 5개 과제
- 방위사업 비리근절 우선대책 발표 (총리실 부패척결추진단) : '15.10.29.
* 무역대리업 등록제 및 무역대리업 중개수수료 신고제 도입 등
- 방위사업법 개정(안) 국방위 제출 : '16.7.7.
- 방위사업법 개정 (제57조의3) : '16.12.20.
- 방위사업법 시행령 개정 (제68조의5) : '17.6.20.
-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제56조의3, 별지 제26호 서식) : '17.6.21.
- 방위사업법령 시행 : '17.6.21.

| 향후 전망 |

중개수수료를 미신고하거나 허위 신고하는 등 무역대리점의 위법행위가 발생한 경우 등 록을 취소하고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무역대리업자의 비리행위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를 통해 과도한 중개수수료로 인한 가격인상을 방지하고 로비 등의 논란 및 가격 부풀리기 등의 위법행위를 예방할 수 있으며, 나아가, 국외구매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정한 방위사업 환경을 조성하여 국제 경쟁력 강화와 대국민 신뢰 회복이 가능하다.

보훈단체 수익사업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 제도 개요 |

보훈단체는 1972년부터 단체 운영, 회원 복지증진 등을 목적으로 수익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현행법 상 14개 보훈단체가 수익사업을 운영할 수 있으며, 그 중 6개 단체가 수익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국가보훈처는 보훈단체의 관리·감독 기관으로서,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등에 근거하여 보훈단체가 수익사업을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법 제19조 및 제21조에 따라 보훈단체 임·직원과 변호사 및 공인회계사 등이 참여하는 ‘복지사업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수익사업의 신설·중단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있다. 외부 전문가(변호사, 회계사)의 참여로 의사결정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강화하고, 수익금 사용계획을 사전에 심의하도록 하여 집행의 적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다.

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보훈단체 수익사업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회계처리를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하도록 관리하여 보훈단체가 국민에게 존경받는 애국단체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 추진 배경 |

1) 현황

2018년 현재 14개 보훈단체 중 6개 단체가 수익사업을 운영 중이다. 그 중에서도 4개 단체(대한민국상이군경회, 4·19민주혁명회,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는 법률에 의해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과 수익계약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 2017년 기준으로 보훈단체 수익사업의 전체 매출액은 약 6,300억원에 달하며, 이 중 단체 운영, 회원 복지 등을 위해 사용하는 금액은 354억원 수준이다.

2) 문제점

보훈단체는 애국단체로서 보다 높은 수준의 준법성과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할 법령을 위반하는 등 부적절한 수익사업 운영으로 문제가 된 경우가 있었다. 특히, 민간업체에 단체 명의를 빌려주어 수익계약 권한을 대리 행사하도록 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보훈단체 회장과 임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사회적 물의를 빚었다. 또한, 이미 국회·언론 등에서 보훈단체 회계처리가 체계적이지 않고 투명하지 않다는 지적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국가보훈처는 이러한 문제점을 바로잡고자 ‘보훈단체 혁신 TF’ 운영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내부 심사 강화를 위한 ‘수익사업심의회위원회’ 신설, 체계적인 실태조사를 위한 ‘수익사업 실태조사 및 후속절차 지침’ 제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였다.

| 개선 결과 |

1) ‘보훈단체 혁신 TF’ 운영 : 수익사업 투명성 확보방안 마련

보훈단체는 회원 복지증진을 위해 수익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나, 최근 수익사업 회계·운영에 투명성 문제가 발생하였고 ‘회원 복지’라는 본연의 목적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되었다.

이에 국가보훈처는 2017년 12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변호사와 회계사 등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보훈단체 혁신 TF’를 구성하여 단체가 운영하는 수익사업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문제점을 파악하였으며,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수익사업 수익금이 회원들의 복지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수익사업 활성화 방안도 함께 논의하였다.

2) 수익사업심의위원회 신설 : 수익사업의 전문적·종합적 검토

기존에는 수익사업 승인을 위해 보훈처 담당자 위주로 내용을 살폈기 때문에 전문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국가보훈처는 2018년 2월 ‘보훈단체 수익사업심의위원회’를 신설하였다. 수익사업 내용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회계사 등 민간 전문가가 포함된 인재풀을 구성하여 사업의 승인·취소 심사 시 다각적으로 검토할 수 있게 하였다.

3) 수익사업장에 대한 체계적 실태조사 : 수익사업 운영 투명성 강화

기존에는 보훈단체가 운영하는 전국의 수익사업장에 대해 비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수익사업이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국가보훈처는 2018년 초부터 모든 수익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했다. 또한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 「보훈단체 수익사업 실태조사 및 후속조치 지침」을 제정하여 실태조사의 구체적 사유와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현장 중심의 점검체계 확립을 위해 실태조사 범위와 기간 등을 명문화하는 등 점검 체계를 확립하였다.

4) 회계처리 가이드라인 마련 : 회계 투명성 및 비교 가능성 제고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보훈단체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가 의무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기초가 되는 회계기준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이로 인해 단체마다 회계기준을 달리 적용하게 되어 회계 투명성과 단체 간 비교 가능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국가보훈처는 「공법보훈단체 재무회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보훈단체가 운영하는 모든 보조사업·기부금·수익사업에 대해 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작성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단체별 상이한 회계처리 기준을 통일하였다. 이로써 회계 투명성과 단체 간 회계처리의 비교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향후 계획 |

국가보훈처는 보훈단체 혁신 TF에서 제시된 개선방안을 바탕으로 현행 제도 하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종합적으로 개선·보완하여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① 수익사업 정지, 승인의 유효기간 설정 및 연장, 실태조사 등을 도입, ② 수익사업 운영 관련 정보공개 및 재무회계규칙 등 도입으로 투명성 제고, ③ 거짓으로 사업 승인을 받거나, 명의를 대여하는 등의 법령 위반행위를 제재하기 위한 벌칙규정을 신설 등이다.

제도 정비를 통해 수익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더 많은 수익금을 회원 복지에 사용함으로써 보훈단체가 국민에게 존경받는 단체로 거듭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상장비 도입의 투명성 · 공정성 제고

| 추진 배경 |

최근 외부에서 기상청을 바라보는 시각은 부정확한 예보, 장비도입 비리 등으로, 국회 및 언론 등을 통해 부정적인 내용이 빈번히 등장하고 있다. 특히 과거 기상청의 라이다, 항공기 등 도입과정에서 참여업체의 소송과 민원 발생, 언론의 의혹 보도와 국회지적 등으로 기상청의 이미지와 신뢰도가 실추되어 현재까지도 씻기지 않는 아픈 상처로 남아 있다.

기상청에서는 이러한 오점을 해소하기 위해 기상장비 도입체계 효율화 추진계획을 통해 구매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오고 있으나 여전히 기상장비에 대한 전문성 및 도입 행정역량 부족 등으로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그동안의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게 되었다.

| 제도 개요 |

기상청에서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기상장비 도입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으며, 그 결과 기상장비 도입과 관련한 감사·수사 건수는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외부, 국민들이 기상청을 바라보는 시선이 여전히 차갑기만 하다.

기상청에서는 내·외부의 시각차에 대해 다양한 조직문화에 대해 전직원이 공감하는 합리적이고 실천적인 조직문화 확립을 위해 「기상청 조직문화 혁신방안 세부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기상장비 도입 제도개선을 위해 그동안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①첨단·신규 도입되는 장비에 대하여 내부인력의 전문성 및 행정역량이 부족으로 사업 지연 및 도입절차상의 공정성 문제, ②장비성능·구조의 사전 검증을 위한 시험운영 및 기존 운영 장비의 개선·보완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부재, ③기상장비 구매제도 개선에 대한 내·외부의 시각차 해소를 위한 홍보 및 소통의 부재 등이 문제점으로 분석되었다.

| 추진 경과 |

기상장비 도입 제도개선 계획 마련(5개분야, 13개 과제, 28개 세부추진과제)

기상청에서는 기상장비 도입체계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단을 하고 구체적인 대책마련을 위하여 외부전문가(7명)로 구성된 「기상장비 도입 제도개선 TFT」을 구성하여 운영(2018년 6~9월)하였다. 기상청 외부의 시각에서 정확히 진단하고 외부에서 바라는 기상청의 모습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4차례의 회의를 통해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상장비 도입 제도개선을 위한 5개분야 13개과제, 28개 세부추진과제를 선정하였으며, 내·외부 의견수렴을 통해 「기상청 기상장비 도입 제도개선 계획」을 마련하였다.

- ※ 5개분야 : ① 도입 타당성 및 공정성 강화 ② 담당자 직무수행 보장 및 책임성 강화
③ 기술성능 사전 검증체계 구축 ④ 구매업무 전문성 및 행정역량 강화
⑤ 구매제도 외부홍보 강화

| 추진 성과 |

1) 기상장비 도입 타당성 및 공정성 강화

하나의 기상장비가 도입되기까지 구매 계획단계에서 도입 후 검사검수 단계까지 모든 단계에 대하여 타당성과 공정성을 강화해 나가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다. 도입 계획단계에서 타당성 심의 시 외부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고, 예산 확보 및 집행단계에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취득 심의 시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제안서 평가, 검사단계에 인수조건을 강화하여 업체와의 비리문제가 발생할 수 없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특히, 장비도입부터 검사·검수까지 외부전문가 참여를 확대하여 타당성과 공정성 확보하고, 법·제도 강화를 통해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2) 담당자 직무수행 보장 및 책임성 강화

기상청에서 구매업무는 직원들이 기피하는 업무 중에 하나이다. 그동안 기상청에서 발생

하는 감사, 수사, 언론 등의 이슈사항을 모든 직원들이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듯 내부적인 인식의 개선을 위해 대형·핵심사업의 경우 장비구매 분야 전문직위 또는 경력자를 채용하여 전문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또한, 구매담당자의 소송·분쟁 시 행정적·경제적 지원하고 관리자가 책임있는 자세로 대응하여 구매사업 담당자의 책임을 경감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3) 기술성능 사전 검증체계 구축

정확한 기상예보 생산을 위해서는 정확한 기상관측이 밑바탕이 되어야 하며, 정확한 기상관측을 위해서는 성능과 내구성이 보장된 기상장비의 설치·운영이 중요하다. 하지만, 그동안 기상청은 기상장비의 신뢰도 확보를 위한 형식승인제도를 운영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기상장비에 대한 검정 및 형식승인업무를 수행해오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8년 4월 「기상관측표준화법」을 개정하여 기상측기 형식승인업무 추진과 대기기관지정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2021년 4월부터 기상청, 지자체 등 28개 관측기관에 기상관측 용도로 제공되는 기상관측장비는 사전에 해당 기상측기의 구조·규격 및 성능 등에 관하여 기상청장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제도를 바탕으로 기상산업에서 기상장비의 신뢰성 확보로 국가브랜드를 높이고 국산 장비 품질향상과 해외 시장 진출에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4) 구매업무 전문성 및 행정역량 강화

구매업무 담당자의 전문성 및 업무역량 향상은 무엇보다도 우선 강화해 나가야 할 요소이다. 교육과정을 통해 전문 역량을 높이고 외부전문가의 자문 및 컨설팅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 할 예정이다. 또한, 구매지원반(Help-Desk), 구매담당자 이력 관리제를 통하여 상시 지원체계를 구축할 것이다.

5) 구매제도 외부홍보 강화

기상청에서는 다양한 매체(리플릿, 소식지, 학회지, 언론, SMS 등)를 활용하여 이러한 활동을 홍보해 나갈 것이다. 또한, 구매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구매계획을 정기적으로 사전 공개해 업체들이 사업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제공 할 예정이다. 또한, 기상장비 설치 현장 체험방문 활동을 통해 기상장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등 선제적으로 홍보해 나갈 것이다.

| 향후 계획 |

아무리 잘 만들어진 제도도 기상청 내부만의 정책만으로 남는다면 그 의미는 퇴색 될 수 밖에 없다. 얼마나 꾸준히 잘 이행하고, 이행한 결과가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과 일치되는지 모니터링하고 방향이 다르다면 과감한 수정과 변화가 필요하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모든 것을 해소할 수 없을 것이다. 제도개선을 통해 기상청에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고, 향후 도출되는 문제점을 꾸준히 보완, 개선하여 향후, 기상청의 이미지를 쇄신하고 신뢰도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나갈 예정이다.

문화재 행정 부패 취약분야 집중관리

| 추진 배경 |

최근 반부패·청렴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매우 높다. 현 정부에서는 “부정부패 척결을 새 정부 모든 정책의 출발로 삼을 것이며, 정부가 국민과 역사 앞에 평가 받을 핵심지표가 되어야 한다.”(17.9.26. 제1차 반부패정책협의회), “반부패의 기준은 변화하는 국민의 눈높이이며 그동안 관행으로 여겼던 것도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면 그에 맞게 개선해야 하며, 반부패 개혁은 한 달, 두 달 또는 1년, 2년에 끝날 일이 아니라, 우리 정부 임기 내내 계속되어야 한다.”(18.4.18. 제2차 반부패 정책협의회) 등의 반부패·청렴과 관련된 강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으며 ‘반부패 개혁으로 청렴한국 실현’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설정하여 청렴한 대한민국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이러한 정부 기조에 부응하여 대국민 문화재행정 중 특히 부패에 취약하다고 생각되는 4대 부패 취약분야를 설정하여 집중적으로 관리·개선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행정의 투명성 향상과 절차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문화재청 반부패 취약 집중관리 분야]

- 현상변경허가(문화재 주변 건축허가 등)
- 문화재 수리·보수
- 매장문화재 시굴 및 발굴허가
- 무형문화재 지정 및 지원·관리

현상변경허가 및 매장문화재 시·발굴허가 분야는 문화재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규제가 민원인의 재산권 행사와 관련하여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연 2,000건에 이르는 현상변경허가 신청 가운데 현상변경 등에 대한 불허처분, 매장문화재 시·발굴허가에 따른 개발

제한 등은 민원인의 불만이 크게 높을 수 밖에 없는 분야이다.

문화재 수리·보수 분야는 사업내용과 관련자들의 특수한 연관관계 및 잦은 만남으로 인하여 부정부패 발생 가능성이 높은 분야이다.

무형문화재 지정 및 지원·관리 분야는 소위 인간문화재라고 불리고 있는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를 개인 또는 단체에 인정(지정)하고 이를 지원·관리하는 것으로서, 분야의 특성상 전승관계에 있는 스승과 제자 간 불합리한 관행이 존재할 수 있으며, 보유자 등 전승자 선정에 대한 불투명성과 사후 관리에 대한 미흡한 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 추진 경과 |

1) 현상변경허가

현상변경허가 분야는 부패가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인과 현상변경 허가 관계자 간 부패 취약지점에 대한 환경적·제도적 개선을 추진하고, 친절·신속한 민원처리, 제도의 합리화를 통한 민원인 규제 수용성(만족도) 제고를 위해 제도개선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건축행위등에 관한 허용기준」의 합리적 조정을 '17년 334건, '18년 192건(10월 말 기준) 추진 완료하였으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경미한 건축행위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하여 자체처리 및 지자체 허가사항의 위임을 확대하여 신속한 행정 처리를 위한 제도를 개선하였고, 현상변경허가 관계자(문화재위원, 지자체 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제도의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2) 매장문화재 시굴 및 발굴허가

매장문화재 시굴 및 발굴허가 분야는 업무처리기준 및 절차에 대한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를 위해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민원인의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해 기존에 없었던 발굴허가에 대한 처리기한 도입, 발굴허가 후 착수·완료 시 신고의무 규정 신설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의 행정 편의성과 국가의 절차에 대한 투명성 제고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예상된다.

3) 문화재 수리·보수

문화재 수리·보수 분야는 관계자(관계전문가, 발주자, 시공자, 감리자, 지자체 공무원 등)들의 인식개선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이다.

이를 위해, 문화재청에서는 관계자들에 대해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새롭게 이 분야에 발을 딛는 문화재수리기술자·문화재수리기능자의 신규 자격증 발급과 연계하여 청렴 안내문 발송 등 관계전문가들의 청렴의식 제고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4) 무형문화재 지정 및 지원·관리

무형문화재 지정 및 지원·관리 분야는 업무처리기준·절차의 공정성과 수용가능성 제고를 중점적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보유자 인정조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3단계 절대평가 방식을 도입하고 10년 주기 보유자 인정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무형문화재 보유자(보유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종목별·분야별 특성이 반영된 평가항목 조정, 평가지표의 세분화 등을 통한 공개행사의 체계적 평가절차 수립을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무형문화재 전승자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불합리한 관행들이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 추진 성과 및 향후 계획 |

문화재청의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관리를 통해 많은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점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를 통해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8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문화재청 종합청렴도는 전년 대비 1등급 상승하는 등 2년 연속 등급이 상승하고 있으며, 부패 취약분야에 대하여 민원인 등이 실시한 외부청렴도 평가결과 또한 전년과 비교하여 점수가 상승하였다.

그러나 문화재청 부패 취약분야 관리대상인 ‘현상변경허가’, ‘매장문화재 시굴 및 발굴허가’, ‘무형문화재 지정 및 지원·관리’, ‘문화재 수리·보수’ 분야 외에 ‘지자체 지원’ 분야는 청렴도가 다소 하락하였다고 나타나 아직 문화재행정에 대한 제도개선과 부패에 대한 개선노력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

이와 같이 문화재청은 문화재행정에서의 부패를 척결하고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신뢰받는 문화재청이 되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더 나아가 문화융성이라는 정부의 정책이 온 국민에게 직접 와 닿을 수 있도록 헌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방송통신 조사·심결 업무의 공정성·투명성 강화

| 추진 배경 |

방송통신시장 결합상품 조사의 업무처리 절차 적정성에 대한 특정감사 실시 결과, 방송통신 금지행위 등에 대한 조사업무 처리과정에서 조사종결·중지 권한 남용 우려의 문제와 조사업무의 세부절차에 대한 미흡한 점이 발견되었다.

이에 방송통신시장 조사 및 심결 업무의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제도개선을 위해 방통위 금지행위 처리규정을 개정하고 조사업무 처리지침을 제정하는 등 방통위 조사·심결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 추진 내용 |

1)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처리규정」 개정

(1) 업무처리규정의 명확화

전기통신사업법, 방송법, IPTV법 및 단말기유통법의 금지행위는 사건관리, 자료제출 명령, 출석요구 및 현장조사 등의 조사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조사의 경우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개인정보 침해 사건도 업무처리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였다.

(2) 보완조사 명령 권한 상향

조사결과보고서 최종 보고대상이 사무처장이므로 보완조사 명령의 최종 주체를 해당국장

에서 사무처장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3) '경고' 명령 주체 일원화

법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하는 등 시정조치의 실익이 없는 경우에 해당 국장과 위원회에서 '경고'를 명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경고' 명령은 위법행위의 정도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므로 위원회에서만 '경고' 명령을 결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4) 조사종결 및 중지 권한 상향

폐업 등으로 시정조치의 이행이 불가능할 경우 사건을 종결할 수 있고, 부도 등으로 조사가 곤란할 경우 조사를 중지시킬 수 있는 권한을 해당 국장에서 사무처장으로 상향하였다.

(5) 조사 종결·중지 시 결과통지

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사무처장이 조사절차 종결, 사건종결 및 조사중지를 결정하는 경우 조사대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는 규정이 없었다.

이와 관련하여 조사절차 종결, 사건종결, 조사중지 시 조사대상자에게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도록 하였다.

2) 「방송통신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세부 업무처리 지침」 제정

(1) 조사절차의 개시

조사관은 사건번호, 사건명칭 등이 기재된 조사착수보고서를 전산망을 통해 등록하고 사무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였고, 사건번호는 사업자별·조사사건별로 1개를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조사대상기간이 동일한 여러 조사사건을 동일 기간 내에 처리하는 경우에는 1개의 사건번호만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조사과정에서의 자료작성 등

조사관이 출석요구나 현장조사를 통해 사실을 확인할 경우에는 별도 서식에 따른 확인서 및 현장조사서를 작성하여 사건담당 부서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였다.

(3) 디지털증거 수집 등

디지털 기록 삭제 등 증거인멸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를 두고 디지털포렌식을 전담하게 하는 등 조사역량을 강화하였다. 또한, 디지털자료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수집 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확인서 또는 현장조사서에 수령일시, 장소 및 사용자 정보 등을 적시하게 하였다.

(4) 피조사자의 변호인 참여

피조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피조사자가 선임한 변호인을 조사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5) 조사결과보고서 등록 등

조사관이 조사실시 후 작성하는 결과보고서는 반드시 전산망을 통해 등록하고 사무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였다.

(6) 자료관리

조사관이 작성, 수집, 접수한 자료(디지털자료 포함)는 별도 서식에 따라 목록을 기록하고 기록한 순서에 따라 편철하며, 디지털자료는 클라우드에 보관하도록 하였다.

(7) 업무인계·인수

사실조사를 착수한 이후 사건담당 부서장 또는 조사관이 조직개편, 인사발령 또는 업무분장 조정 등의 사유로 그 업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원인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전산망을 통해 업무를 인계·인수하여야 하고, 업무인계·인수 시 입회자를 두도록 하였다.

| 추진 경과 |

방통위 조사·심결업무 개선활동 실적	추진일정
조사 및 심결업무 개선(안) 마련, 조사관 의견수렴 및 법률자문회의 개최(2회)	'18. 4 ~ 5월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 개정(안) 마련	'18. 6 ~ 7월
「방송통신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세부 업무처리 지침」 제정(안) 마련	
관련 부서·기관 협의, 법률자문회의 개최(4회)	'18. 7 ~ 8월

| 향후 전망 |

1) 조사의 책임성 확보 및 조사대상자의 권리 강화

시정명령 및 조사종결중지 권한의 일원화를 통해 조사·제재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고, 조사종결·중지 시 피조사자에게 해당사실에 대한 통보를 의무화하여 조사대상자의 권리가 강화될 것이 기대된다.

2) 조사업무의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

조사의 개시부터 종결까지 모든 과정을 전산망을 통해 관리하고, 조사과정에서 작성·수집한 자료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누락 및 오류 없는 조사절차이행과 자료관리가 가능할 것이다.

또한 업무인계·인수 절차와 방식 등을 정해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행정의 공백에도 업무의 지속성이 확보되어 부패행위 발생 예방에 기여할 것이다.

3) 조사절차의 투명성 제고 및 피조사자의 권익 보호

확인서 및 현장조사서 작성 후 부서장 보고를 의무화하여 조사 절차의 신뢰도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변호인 참여 근거조항 마련을 통해 피조사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등 보다 공정한 조사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 향후 계획 |

방송통신위원회는 조사업무 절차 개선을 위해 관련 규정을 제·개정함으로써 업무 처리 절차의 투명성과 정당성을 제고하는 한편, 조사담당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확대하고, 디지털 증거수집 및 분석 전문인력을 확충하는 등 조사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향후 계획	추진일정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 개정	'18. 4분기
「방송통신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세부 업무처리 지침」 제정	
조사관 대상 제·개정 규정 및 준수해야 할 세부세항에 대한 교육 실시	

풍속업소 단속업무의 국민신뢰 제고

| 추진 배경 |

경찰청은 성매매 및 신·변종 풍속업소를 근절하기 위해 강력한 단속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기초질서 확립 차원에서 국민 홍보 및 계도 위주의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반복·고질적으로 불법풍속업소 업자와의 유착비리가 발생하면서 경찰 조직 전체에 대한 비난과 불신을 초래하였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풍속업소 단속과 관련한 유착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여 국민 신뢰를 높이는데 힘쓰고 있다.

| 추진 내용 |

1) 지방청 풍속수사팀 운영

'11년까지 풍속업소 단속은 주로 경찰서 단위(생활안전과)에서 이루어 졌다. 경찰서 생활안전과에서 불법풍속업소를 단속하면 이를 수사과에 인계하였으며 수사과에서는 불법풍속업소에 대한 특별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기에, 당일 적발한 내용만 조사하는 등 단편적으로 수사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로 인해 소위 바지사장 외 실제 업주를 규명하고 추가적인 불법행위를 밝혀내는 것은 어려웠다. 또한, 경찰서 풍속요원의 얼굴과 차량번호 등 신상정보가 지역 내 불법풍속업자들 사이에 알려져 단속을 쉽게 피하는 문제도 있었다.

이에 '12년부터 지방청 단위에서 불법풍속업소를 단속하는 「풍속수사팀」을 창설하였다. 「풍속수사팀」에서는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과 함께 실제 업주와 관련 공무원에 대한 심도 있는 수사를 진행함으로써 업주와 경찰관간 유착행위를 근절하고 있다.

※ (풍속수사팀 운영 현황) '12.6월 7개 지방청 108명 → '18. 6월 10개 지방청 121명

2) 특별관리업소 지정·관리

불법풍속업소가 112 등 반복적인 신고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단속을 피해갈 경우 이를 특별관리업소로 지정하고 경찰서·지방청 단위에서 순차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몇몇 경찰관과의 관계를 악용하여 운 좋게 단속을 피해가더라도 끝내 적발하여 불법풍속업소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특별관리업소 지정 및 관리]

- 지역경찰 月 3회 신고 미단속 ⇨ 경찰서 자체 단속(1개월 內) ⇨ 미단속 ⇨ 특별관리업소 지정 여부 결정(1개월 內)
- <특별관리업소 지정> 신고내용·신고횟수/업소규모/미단속/비난가능성 등을 종합 고려 ⇨ 특별관리업소 지정(과장)
- <특별관리업소 관리> 경찰서에서 1개월 內 자체단속 ⇨ 미 적발업소에 대해 지방청 풍속수사팀에서 재차 단속·점검

3) 풍속요원 대상 청렴교육 강화

유착비리 예방을 위해 상·하반기 인사 발령시마다 풍속요원을 대상으로 △유착비리 주요사례 △단속 시 주의사항 등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불법풍속업소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게임물관리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업소동향 △법원판례 및 관련 법률 정보 등 핵심이론도 함께 교육하고 있다.



4) 풍속요원 근무기간 제한

풍속업소 업주와의 유착을 방지하기 위해 근무기간을 제한*하고 있다. 풍속요원의 신규

전입, 연장근무 희망자에 대해서는 6개월 단위로 심사위원회를 구성 후 적격 및 연장 허용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장기 근무로 인한 업주와의 유착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다.

※ (풍속요원 근무기간) △지방청 및 1급서 : 1년, 1년 연장 가능 △2·3급서 : 1년, 2년 연장가능

| 추진 성과 |

국가 경제가 하강국면에 접어들면, 팍팍한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 도박·성·게임·담배 등 소위 ‘금기시’ 되는 업종이 호황을 누린다는 말이 있다. 힘든 현실의 도피처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의미로 실제 경기 불황이 장기화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유흥주점, 게임장 등 풍속업소가 지난 '12년 133,854개소에서 '18년 147,684개소로 10.3%나 늘어났다.

경기 흐름에 따라 특정업종이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경제현상이지만, 불법 게임장은 서민들에게 한탕주의와 요행을 부추기며 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하고* 키스방, 유리방 등 성매매 업소는 학교주변과 주택가까지 파고들고 있기에 경찰 단계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의 조사에 따르면 도박 이용자의 40% 이상이 월 소득 20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임 (2005년)

만약, 계속되는 유착비리로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었다면 현 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풍속수사팀 운영 △특별관리업소 지정 △청렴교육 강화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18년에는 유착비리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 (풍속요원 유착비리 현황) '13. 6건 → '14. 7건 → '15. 2건 → '16. 2건 → '17. 2건 → '18.10월 0건

한발 더 나아가 단속을 피해가는 수법이 갈수록 고도화·지능화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풍속업소를 꾸준히 단속하며 생활주변의 불법과 무질서를 바로잡고 있다.

※ (단속 현황) 성매매 6,289건, 사행행위 4,557건 등 총 27,233건 단속, '18.10월 현재



[외부감시용 CCTV]



[경찰출입문]



[공장 창고로 위장한 바다이야기]

| 향후 계획 |

예전보다 경찰과 풍속업소 업자간의 유착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한다. 하지만 단속업무에 임하다 보면 언제든지 금품·향응과 같은 유혹에 노출될 수 있기에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앞서 언급한 유착비리 근절 대책을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자체·게임물등급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며 업주의 범죄수익을 환수하고 단속 업소를 영구 폐쇄하는 등 불법풍속행위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제 3 장
국민생활 속
불합리한
제도 개선

산재 신청의 걸림돌로 작용하던 불합리한 사업주 날인제 폐지

추진 배경

산재 발생 시 재해노동자는 재해발생 경위 등에 대해 사업주 확인을 받아야 했다. 사업주 확인을 받도록 한 것은 산재보험이 시행(64년)된 이후 약 50년간 지속된 오래된 제도다. 산재발생 공가를 꺼리는 사업주에게 확인을 받기 어려워 노동자들이 산재신청을 포기하거나 진행 과정에서 사업주와 갈등이 발생해서 처리가 지연되기도 하였다. 재해를 입은 노동자가 산재를 신속하게 신청하고, 제 때 적절한 치료와 보상을 받는데 사업주 확인(날인)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었다.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산재신청서 양식에 사업주 확인(날인)란 有

추진 내용

1) 재신청 과정에서 사업주 확인제도 폐지

기존 산재신청서는 소속 사업장, 재해 발생 경위 및 의학적 소견, 사업주 확인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었다. 산재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18.1월부터는 사업주 확인 란을 삭제하였다. 또한, 근로복지공단 요양업무처리규정을 개정하여 최초요양급여 신청의 처리 절차·방법을 개선하고 신청서 서식에 사업주 확인 사항을 삭제하였다.

2) 근로복지공단의 신속한 확인절차 마련

산재신청 접수 시 사업주에게 요양신청 사실통지서를 자동으로 DM 발송하고,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조사표와 요양신청서를 자동 비교 확인하도록 했다. 요양신청 접수 시 전화

ARS 자동 안내 시스템을 도입하여 통화내용을 녹음·저장하고, 재해경위를 불인정하게 되면 현재의 재해조사 절차(현장조사 등)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였다.

3) 보험가입자 확인제도 폐지 대국민 홍보 및 직원 교육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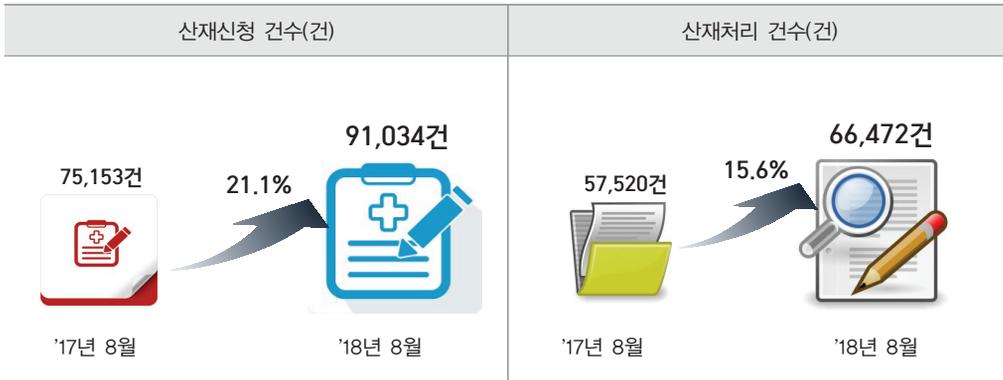
근로복지공단의 기존 인프라, 포털사이트, 의료기관, 유관기관, 대중교통 등을 활용해서 전방위적 홍보를 실시하고, 사업주 날인제 폐지에 따른 업무처리 요령 등 직원 교육을 전국 6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18.2~3월간 집중적으로 실시하였다.

[사업주 날인제도 폐지 내용에 대한 대국민 홍보]

구분	홍보방법	내용	홍보일자
공단 인프라	홈페이지 팝업 게시	- 공단 홈페이지 팝업노출	18.1~3월
	토탈서비스 팝업 게시	- 보험가입자(사업주) 확인 폐지 팝업노출 및 홈페이지 연계	18.1~3월
	전자팩스 자동화신 서비스	- 보험가입자(사업주) 확인 폐지 안내 추가	18.2월
포털 사이트	요양급여신청서 서식 변경 요청	- 2018. 1. 1. 개정된 서식으로 게시되도록 요청 (다음, 네이버)	18.2월
의료기관	의료기관 및 종사자 회의 회의자료	- 보험가입자(사업주) 확인 폐지 내용 포함	18.3월
유관기관	안전보건공단 옥외전광판 노출광고	- 전광판(40개소) 노출광고	18.3월
	광역지방자치단체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	- 부산, 대전(전광판, 버스정보안내단말기) - 광주, 울산(버스정보안내단말기)	18.3~5월
	공인노무사협회 간담회	- 보험가입자(사업주) 확인 폐지 등 안내	18.3월
	취업포탈 알바몬 홈페이지	- '산재보험 제대로 알기' 코너에 보험가입자(사업주) 확인 폐지 소개	18.4월
방송	tvN, 연합뉴스, YTN	- TV 영상 광고	17.12월~ 18.3월
대중교통	KTX	- 객실모니터 영상 광고	17.12월~ 18.5월
	서울 지하철	- 지하철 2호선 승강장 행선 안내기(승강장 50개역, 대합실 43개역)	18.4월

| 추진 성과 |

사업주 날인제도 폐지로 산재신청 제약요인이 해소되어, '18.8월 기준으로 산재신청이 91,034건이 접수되었다. 전년 동기 75,153건 대비 15,881건이 늘어나 21.1% 증가하였다. 이 중 66,472건을 처리하여 전년 57,520건 대비 8,952건 증가, 처리도 15.6%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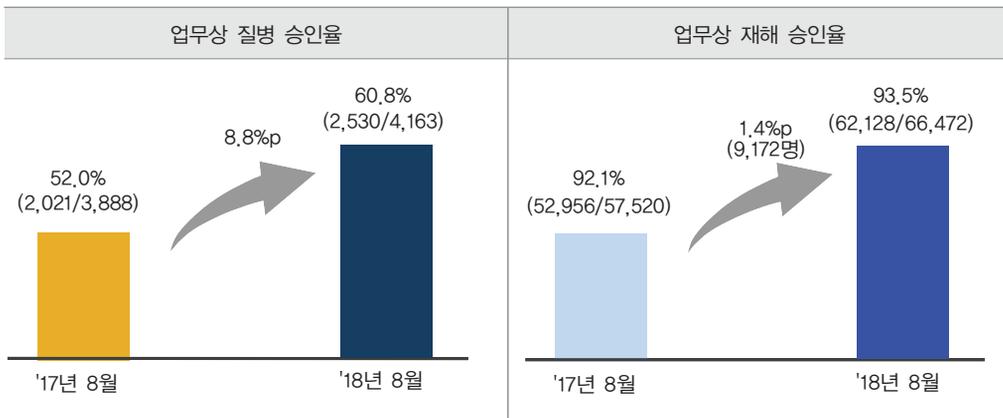


산재발생일로부터 신청일까지 평균 소요기간도 45.5일로 전년 49.2일에 비해 3.7일 단축되었다.

* 소요기간(소요일/처리건): ('17.8월) 49.2일(2,828,334/57,520) → ('18.8월) 45.5일(3,027,499/66,472)

특히, '18.8월 업무상 질병 승인율은 60.8%로 전년의 52.0% 대비 8.8%p 증가하는 등 산재 노동자에 대한 보상이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재해승인율도 93.5%로 전년 동기 92.1% 대비 1.4%p 상승했다.

* 업무상 재해 승인건수: ('17.8월) 52,956/57,520건 → ('18.8월) 62,128/66,472건



| 향후 계획 |

사업주 확인 제도 폐지로 인하여 앞으로 산업재해를 입은 노동자에게 적절한 치료와 신속한 보상을 제공하여 더 나은 삶과 사회복귀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턱을 낮춘 산재신청 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산재의료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신속한 요양급여 신청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 * (홍보) 산재보험 의료기관장 및 종사자 회의, 의료기관 간담회를 통해 제도 개선 적극 안내
- (평가) 의료기관 평가 시 신속히 산재신청서를 제출한 의료기관에 대해 가점 부여

아울러, 요양급여 신청사실 통지 등 사업주 확인절차를 개선하고, 재해조사 거부·불응 사업주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부과하여 산재노동자 권리를 적극 보호해 나갈 예정이다.

건설공사 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전격 도입

추진 배경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고질적 병폐의 하나다. 정부는 그동안 이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단속을 강화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체불이라는 뿌리 깊은 사회악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근로자들이 한 푼의 돈이라도 아쉬워할 설이나 추석 등 명절에 체불해소를 독려하기 위해 산하 및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체불실태를 점검한다. 점검한 결과 금년 설까지 적게는 2.8억원에서 많게는 74억원까지 체불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최근 5년간 명절 체불점검 결과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하도급대금 체불액	임금 체불액	총 체불액
'18	설	89.1	2.8	91.9
	추석	106.4	2.2	108.6
'17	설	86.5	6.5	93
	추석	167.8	7.9	175.7
'16	설	214.6	8.2	222.8
	추석	284.5	13.1	297.6
'15	설	467.6	9.2	476.8
	추석	238.4	14.9	253.3
'14	설	606.4	74.0	680.4

제 때에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공공공사에서도 체불이 발생하는 상황으로 건설사의 임금유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꼭 필요한 실정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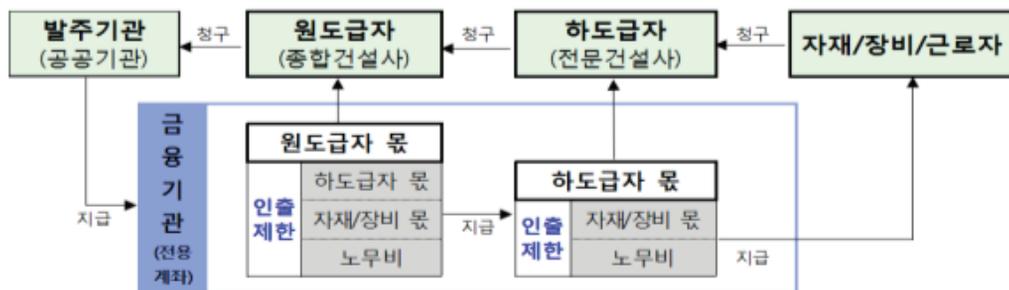
이에, '17.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동 대책의 일환으로 공공 건설공사에 대한 '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Ⅰ 추진 내용 Ⅰ

개선방안의 핵심은 임금체불의 사전예방을 위해 발주자가 임금·하도급대금 등을 직접 지급하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전면 확대하는 것이다. 발주기관(공공기관)이 고정계좌를 통해 공사대금을 지급하면 원도급자는 본인 몫을 제외하고 인출제한되며, 임금·하도급대금 등은 근로자 및 자재·장비업체별 전용계좌로 송금만 가능하도록 관리한다.

이렇게 ICT를 활용한 직불시스템을 통하여 체불을 구조적으로 방지할 수 있고, 공사대금 흐름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전자적 대금지급관리시스템 개요도]



구체적인 실천사항으로는 먼저 국토교통부 공사에 전면시행하고 민간공사 장려를 위한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공공공사 의무화를 위한 입법화도 진행하고 있다. 대책을 발표하는 즉시 지침개정, 행정지도 등을 실시하여 2018. 1월부터 국토부 및 산하기관 공사 현장(2,200여개)에 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를 시행하도록 하였다.

세부내용을 들여다보면, 신규공사는 입찰 공고문에 시스템 적용대상 공사임을 명시하고, 기존 공사는 기성금 지급방식을 변경하도록 통보(발주자 → 건설사)하였다. 또한, 차질없는 현장안착을 위해 실태점검 및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현장에서 제시된 애로사항 등을 수렴하여 2018. 5월에 조달청에 시스템의 개선을 건의한 바도 있다.

* (현장점검 3회) '18.3~4, '18.7, '18.9/ (간담회 4회) '18.4, '18.5, '18.6, '18.7

아울러, 모든 공공공사에 의무화하기 위해 2018. 1월에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입법화를 진행하는 한편, 민간공사에 대한 장려대책의 하나로 18. 3월에 건설업자 상호

협력평가기준을 개정하여 원도급사가 직불시스템을 활용할 경우에는 공공공사 입찰참가 사전적격성심사(PQ)에 가점을 주도록 하였다.

*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사에 시스템 수용의무 부과 ⇨ 상임위 계류
 (전자조달법) 공공기관 등 발주자에 시스템 사용의무 부과 ⇨ 입법예고

| 추진 성과 |

제조업 불황 등으로 인해 8월말까지 국내산업 전체의 임금체불 금액은 전년 대비 26.5% 증가한 1조 1,274억원으로 나타났고, 피해 노동자는 전년보다 7.9% 증가한 235,700명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암울한 환경에서도 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가 전면 적용된 국토부 및 산하기관 건설현장에서는 금년 추석 전인 지난 8.27부터 9.6까지 하도급대금(공사·장비대금 등) 및 임금 체불실태를 점검한 결과, 그간 체불이 근절되고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으나, 금번 조사에서는 2,856개 전체 현장에서 체불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17. 설 93억원 → '17.추석 109억원 → '18.설 92억원 → '18.추석 0원

[금년 추석 명절 체불점검 결과 현황]

(단위 : 개, 억원)

구 분	하도급대금 체불					임금 체불
	현장수	계	공사	자재	장비	
합 계	2,856	0	0	0	0	0
국토청(5개)	781	0	0	0	0	0
항공청(2개)	0	0	0	0	0	0
한국도로공사	560	0	0	0	0	0
토지주택공사	953	0	0	0	0	0
한국철도공사	156	0	0	0	0	0
철도시설공단	318	0	0	0	0	0
한국공항공사	36	0	0	0	0	0
인천국제공항	52	0	0	0	0	0

| 향후 계획 |

금년 추석 명절대비 점검결과를 통해 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가 체불발생을 구조적으로 차단하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디딤돌로 삼아 국토교통부는 체불예방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다.

먼저, 공공공사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모든 공공공사에서 확대 적용하는 한편, 법령 개정과 별개로 경기도(‘18.9~), 성남시(‘19.1~) 등이 대금 지급시스템 도입을 결정하는 등 행정지도 등을 통해 조기 추진 노력도 시도하고 있다.

그리고, 민간공사의 있어서는 ‘19년 상반기 상호협력평가 결과가 발표되고, 입찰등에 적용되는 하반기부터 공공공사 인센티브 등을 통해 확산이 되도록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도로 인프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파트너십 구축

| 추진 배경 |

우리 사회는 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정보화 시대가 열리면서 이동 전화 수요증가와 스마트폰의 대중화, 지역 케이블 방송 공급 확대 등 인프라 확장을 필요로 하는 통신 등 관로 매설이 지속적으로 증가¹⁾하고 있다.

이동통신 및 케이블TV 등 통신(전력) 공급을 위해서 도로 등 굴착을 통한 관로 매설을 시행하여야 하며 도로 굴착 시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심의 및 허가가 필요하다. 하지만 통신(전력) 사업자별로 관로 매설 시기가 달라 같은 장소에서 도로 반복 굴착이 반복됨에 따라 도로가 침하되거나 파손되어 교통사고 위험 등 도로이용자의 불편이 발생하고, 굴착 장기화에 따른 차량 정체, 이의 반복적인 유지보수로 도로 유지관리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도로굴착, 복구, 유지관리로 이어지는 단기·사후적인 관리 체계를 장기·사전적인 관리 체계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도로 교통 안전성을 높이고 도로유지관리 효율성을 제고하며 통신 등 인프라 확장이라는 국민, 국가, 통신(전력) 사업자간 WIN-WIN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요구되었다.

| 추진 내용 |

도로에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의 신설 등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에 도로점용 허가를 신청하여 하며, 같은 법 제60조에 따라

1)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굴착 심의 건수 : '14년 34건, '15년 56건, '16년 76건, '17년 80건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6항에 따라 신설·확장 또는 개량한 도로로서 포장된 도로의 노면에 대해서는 그 신설·확장 또는 개량한 날부터 3년(보도인 경우에는 2년) 이내에는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신설 도로에 초기 통신 등 도로 굴착을 통한 관로 매설이 불가하여 인프라 확장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 추진 경과 |

1) 민·관·공 공동 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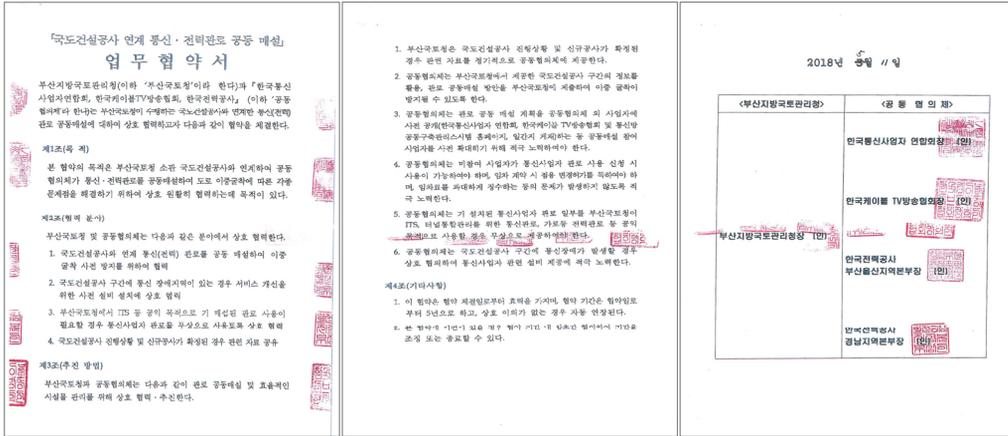
국토교통부 소속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이러한 도로 굴착을 수반하는 통신(전력) 관로 매설의 종합적인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자체 TF팀을 구성하여 통신 등 관련 사업자와 수차례 협의를 통해 우리 청에서 시행하는 도로사업의 진행 정보를 공동협의체²⁾에 제공하고,

통신(전력) 관로를 협의체의 사업자와 향후 수요 예상지역의 국도건설공사와 연계하여 공동으로 사전 매설토록 하는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통신(전력) 사업자는 수요가 필요한 시기에 맞추어 사전 공동 매설한 관로의 여러 삽입공에 케이블만 삽입만 하면 설치가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가로등이나 ITS 구축, 터널통합관리 등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공익 목적의 통신 관로 사용이 필요할 경우 무상 사용이 가능하도록 예비 삽입공을 확보토록 하였으며, 산악지 등에 국도건설공사 시 통신장애가 발생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관련 설비 제공에 적극 협조하는 Patnership 구축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2) 한국통신사업자 연합회(SK텔레콤(주), (주)KT, 등 10개 통신업체 참여), 한국케이블TV 방송협회((주)씨제이헬로비전 등 92개 케이블 방송업체 참여), 한국전력공사 부산울산·경남본부



2) 문제점 해결 노력

한편 당초 협약에 미 참여한 사업자가 기존 매설된 관로 사용이 필요할 경우에는 도로점용 변경 허가 후 관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업무협약 대상자를 개별 사업자가 아닌 통신 및 방송 협회, 한국전력공사로 함으로써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 제공의혹도 해소하였다. 또한, 관로 공동 매설 계획이 있을 경우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및 협회 홈페이지에 공지하거나 일간신문에 게재토록 협의함으로써 공개적으로 행정 절차를 진행하여 사업자의 참여 확대를 유도하였다.

| 추진 성과 |

1) 시범 사업 추진으로 성과 공유·확산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경남 양산~울산 울주로 이어지는 국도7호선 웅상~무거 국도 건설공사 구간에 시범사업(3km 구간)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도로 교통 안전성 및 도로유지관리 효율성을 제고 성과 공유사례로 다른 지방국토관리청에 확산될 전망이다.

최신기사
부산국토청 도로 이종굴착 방지사업장 2곳 선정

송고시간 | 2018/09/20 16:23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 부산국토관리청은 통신사 공동협의체와 함께 도로 이종 굴착 방지 사업장 2곳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장은 울산 웅상~무거 국도건설공사와 경남 거제-마산2 국도건설 공사장이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3개 통신업체가 시범사업에 참가한다.

부산국토관리청, 통신사와 공동협의체와 도로 이종굴착 방지에 앞장

김동기 기자

최종 기사입력 2018-09-20 11:01

부산지방국토관리청(청장 정태환)은 통신사 공동협의체와 도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국도건설공사와 연계, 통신 관로를 공동으로 매설하는 시범 사업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2) 업무 효율성 제고 및 대국민 만족

공동협약체의 협약에 따라 미리 통신(전력) 관로를 매설함에 따라 향후 공용할 국도 구간에 사업자간 도로 반복 굴착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도로유지관리 효율성과 교통 안정성을 향상시키고, 도로점용 등 행정업무의 간소화와 도로개통과 더불어 국민들에게 편리한 교통 및 통신·전력·방송 등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되었다.

특히 사업자끼리 사업비를 분담하여 투자함으로써 사업비 이중 투자를 사전에 해소하고, 국가는 향후 공익 목적의 관로를 무상으로 사용하여 국가 예산이 절감되는 효과³⁾를 가져오게 되었다.

| 향후 계획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추진 중인 시범사업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 후 문제점을 개선하고, 확대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관련 기관에 효율적인 업무 방안 사례로 전파함으로써 전국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도모할 예정이다.

3) km 당 ITS 구축 관로 설치비 : 평균 50백만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 추진 배경 |

'18. 6. 궁중족발집 사장 김모씨가 임대료를 4배 인상하거나 나가라는 요구를 한 새로운 건물주 이모씨를 망치로 폭행하였다고 알려진 이른바 '궁중족발 사건' 등을 계기로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었다.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이란 도심 인근의 낙후지역이 활성화되면서 외부인과 돈이 유입됨에 따라 원주민이 밀려나는 현상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서울의 가로수길, 망원동, 궁중족발 사건이 일어난 서촌 등이 젠트리피케이션 피해지역으로 꼽힌다. 상가임차인의 열악한 지위와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가임대차 법제 개선에 대한 사회적 요청에 따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추진되었다.

| 추진 경과 |

법무부는 합리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였다. TF에는 관계부처 및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여 임차인과 임대인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18. 8.에는 법무부장관, 법무실장 등 법무부 측 인사들과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 국민운동본부' 주요 간부들 및 상인들이 참여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현장 정책간담회'도 개최하였다. 간담회 장소인 망원동 역시 젠트리피케이션이 문제되고 있는 지역이다. 참여한 상인들 및 관계자들을 통해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을 반영하는 기회로 삼았다.

논의 과정을 통해 상가 임차인들이 적어도 10년은 한 장소에서 계속해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전통시장을 권리금 보호대상에 포함하는 개정

안 등에도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법무부는 이런 의견들을 반영해 법 개정을 추진하였고, 마침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이 '18. 9. 20.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같은 해 10. 16. 시행되었다(단,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신설에 관한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추진 내용 |

1)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연장

개정 전 법률은 계약갱신요구권을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법 제10조 제1항 내지 제3항). 5년의 기간은 임차인의 영업권 보장 및 젠트리피케이션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을 불식시키기에 미흡하다는 비판이 있었다.

개정법률은 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였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의 연장으로 상가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권이 보장되어 젠트리피케이션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2) 권리금 보호기간 연장

개정 전 법률은 임차인의 권리금 보호기간을 계약 종료 3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로 규정하고 있었다(법 제10조의4 제1항). 위 기간은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를 위하여 신규임차인을 임대인에게 주선해야 하는 기간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바, 3개월의 기간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하기에 충분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존재했다.

개정법률은 상가임차인의 권리금 보호기간을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로 연장하였다. 신규임차인 주선기간이 충분히 확보됨에 따라 상가임차인은 보다 용이하게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권리금 보호대상에 대규모점포인 전통시장 포함

개정 전 법률은 전통시장을 포함한 대규모점포 전부를 권리금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었다(법 제10조의5). '대규모점포인 전통시장'의 경우 개별상인이 모여 대규모점포를 이루고 상권을 형성하여 백화점 등과 차별되는 특성이 존재하고, 장기간의 영업으로 인한 권리금 보호 필요성이 높음에도 권리금 보호대상에서 제외되어 문제가 되어왔다.

개정법률은 권리금 보호대상에 '대규모점포인 전통시장'의 상가임차인도 포함시켰다. 기

존에 권리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전통시장의 영세임차인에 대한 권리금 보호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4)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신설

주택임대차 분쟁의 효율적 해결을 위해 '17. 5. 30.부터 대한법률구조공단 6개 지부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의 경우 민사소송 외에 마땅한 해결방법이 없어 분쟁 해결을 위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는 문제가 존재했다.

개정법률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하였다. '19. 4.부터 운영될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임차인과 임대인은 상가임대차 분쟁을 쉽고 저렴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 향후 계획 |

이번 법 개정은 상가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권을 보장하여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하고, 상가임차인이 땀과 노력을 들여 쌓아온 재산적 가치를 실질적으로 상가임차인에게 돌아가게 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는 의미가 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상생의 길을 모색하는데 그 소임을 다할 것이다.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방문예약 신청경로 개선

| 추진 배경 |

'18년 9월 현재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인은 약 232만 명에 이른다. 출입국·외국인관서를 찾는 방문 민원인이 매년 증가하다 보니 아침 일찍 출입국·외국인관서 앞에서 줄을 서서 대기하거나, 이른 시간에 방문하여 장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민원 불편과 혼잡이 자주 발생하였다. 이러한 출입국·외국인관서 내에서 발생하는 민원혼잡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방문 예약 제도를 실시하게 되었다.

'16년 2월 체류외국인이 비교적 많이 거주하는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등 수도권 소재 6개 기관에서 우선적으로 사전 방문예약제를 시행하였다. 사전 방문예약제 시행으로 각종 민원 신청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가능해졌을 뿐만 아니라 대기시간도 획기적으로 감소되었다. 이러한 장점으로 방문예약제는 '18년 9월 현재 전국 12개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확대 운영 중에 있다.

하지만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 예약이 PC 인터넷에 국한되다 보니, PC가 없거나 이용이 서툰 일부 민원인은 다른 사람에게 예약을 부탁하거나 PC가 설치된 장소를 찾아야 하는 또 다른 불편을 겪게 되었다. 이는 스마트폰을 통한 모바일 예약서비스를 도입하면 해결 가능한 문제였고, 이러한 개선사항에 대한 건의가 접수되어 담당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개선을 추진하게 되었다.

| 추진 내용 |

일반 PC에서만 가능했던 방문예약을 시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쉽게 예약할 수 있고, 회원가입은 물론 예약 현황까지 조회·수정 가능한 모바일 예약시스템이 되었다. 특히 앱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도 모바일에서 곧바로 예약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만들어졌으며, '17년 10월 18일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가 개시되었다.

[방문예약 신청경로 개선(PC, 모바일 병행)]



| 향후 계획 |

일반 PC 사용에 익숙하지 않아 방문예약에 어려움을 겪었던 외국인들에게 모바일 예약 서비스가 제공됨으로써, 국내 체류외국인들이 앞으로 보다 편리하게 출입국외국인관서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 법무부는 민원불편사항을 발굴·개선하기 위해 민원 모니터링에 더욱 힘쓰는 한편 지속적인 현장방문을 실시하여 민원인의 작은 의견 하나하나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붙임 1. 언론보도자료 (세계일보, 법률신문 등)

 법무부		보도 자료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
보도일시	2017. 10. 18.(수) 조간부터 보도		총 2쪽
배포일시	2017. 10. 17.(화)	담당부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담당과장	체류관리과장 이동휘 (02) 2110-4055	담당자	김민경 사무관 (02) 2110-4062
사진	사진있음 <input type="checkbox"/> 사진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대변인실	(02) 2110-3717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예약」 이제 모바일로 신청하세요
- 10월 18일부터 하이코리아 방문예약 모바일 서비스 개시 -

- 법무부는 그동안 컴퓨터를 통해서만 예약할 수 있었던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예약을 모바일로도 가능하도록, 오는 10월 18일부터 확대 시행합니다.
 - ‘방문예약제’는 민원인이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기 전에 미리 인터넷(하이코리아, www.hikorea.go.kr)으로 방문일시를 예약하면 대기시간 없이 민원업무를 볼 수 있는 제도로서, 현재 12개 사무소*에서 운영 중입니다.
 - * (출입국관리사무소) 서울, 인천, 수원, 서울남부, 부산, 양주, 청주 (출장소) 안산, 세종로, 고양, 천안(아산출입국지원센터 포함), 평택

- 그간 방문예약제의 시행으로 출입국관리사무소 내의 민원혼잡과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이 감소하면서 민원만족도가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 하지만 예약방법이 일반 컴퓨터에 국한되어 있어서, 접근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으며, 그에 따라 이번 모바일 서비스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 모바일 방문예약 서비스는 3개국 언어(한국어·영어·중국어)로 제공될 예정이며, 별도 앱을 설치할 필요 없이 모바일에서 하이코리아를 검색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이번 모바일 서비스 도입으로 국내 체류외국인이 언제 어디서나 더욱 편리하게 방문 예약제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법무부는 향후 장애인, 고령층 등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제도 개선도 지속해서 펼쳐 나갈 계획입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여권 발급

추진 배경

우리나라 중증시각장애인 8만명 중 2천여명이 여권을 사용하고 있으나, 여권기재정보를 혼자 확인할 수 없어 해외여행은 물론 일상생활에서도 여권을 사용하는데 큰 불편을 겪고 있었다.

외교부는 시각장애인이 여권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불편함을 해소하고, 해외여행 시 필요한 여권 정보를 주위의 도움 없이 혼자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맞춤형 서비스의 일환으로 세계 최초로 점자여권을 발급하게 되었다.



※ 출처 : SBS 스포츠 뉴스

| 제도 개요 |

점자여권은 1~3급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여권표지 안쪽 면에 점자로 된 투명 스티커를 부착하여 발급되며, 여기에는 로마자 성명, 여권번호, 발급일, 만료일 등 주요 여권정보가 수록되어 시각장애인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추진 경과 |

1) 법령 신설을 통한 규제 개혁

2015. 6월 법제처가 주관한 “국민행복 법령 만들기” 국민제안 공모에서 점자여권을 도입 하자는 제안이 있었고, 2016. 6월 주승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여권 발급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여권법일부법률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2017.6.22. 여권법이 개정되었다.



※ 출처 : SBS 스프스 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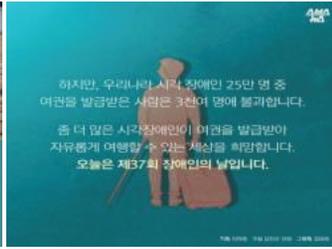
2)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국민불편 개선

외교부는 2016년 7월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시각장애인 현황을 파악하는 한편, 2016년 8월 OECD 회원국 국가를 대상으로 점자여권에 대한 해외사례를 조사하여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여권을 발급하는 국가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외교부는 세계 최초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여권 도입을 목표로 2016.7월부터 수차례 한국시각장애인협회와 협의를 통해, 점자여권 수록정보, 부착위치, 점자강도 등 점자여권 세부사항에 대한 시각장애인들의 의견을 대폭 반영하여 로마자 성명·여권번호·발급일·만료일의 점자스티커를 여권표지 안쪽 면에 표기하기로 결정하였고, 한국조폐공사의 협조를 받아 시험 발급을 거친 후 장애인의 날인 2017.4.20. 세계 최초로 점자여권을 발급하게 되었다.



[SBS 스프스 뉴스]



[SBS 스프스 뉴스]



[보도자료]

1. 외교부는 시각장애인들의 편의증진을 위해 4.20(목) 「제37회 장애인의 날」 부터 국내 240개 여권사무 대행기관 및 해외 175개 재외공관에서 「점자여권」을 발급할 예정이다.



[홍보포스터]



[경향신문,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여권' 세계 첫 시행]



[점자여권 견본 사진]

개선 결과

점자여권 발급을 통해 시각장애인이 해외여행을 위한 항공권 예약, 숙소 예약 등 필요한 경우 주위의 도움 없이도 본인의 여권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편의가 크게 증진되었다.

발급 초기 점자여권 신청 시, 발급대상(1~3급 장애등급) 여부 확인을 위해 장애증명서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를 제출해야 했으나, 2017.6월 여권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해당 서류 제출 없이도 행정정보공동망을 이용하여 장애 등급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 행정안전부 주관, 2017년 국민생활밀접 행정 및 민원제도개선 민원분야 우수사례 선정(17.9.8.)



[서울경기케이블 T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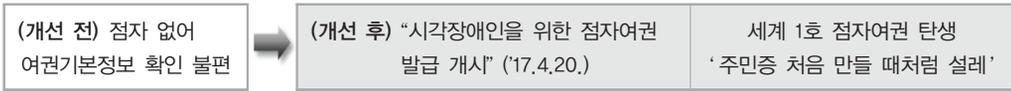
[외교부 블로그(모파랑)]



[NEWSIS]



[경향신문, 세계1호 점자여권]



| 향후 전망 |

우리 정부의 점자여권 발급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세계 최초의 맞춤형 행정서비스 사례로, 국내언론을 통해 보도된 후 다른 나라에서도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일본의 요청으로 우리의 점자여권이 소개된 사례가 있으며, 말레이시아 외교부 차관보는 방한 계기 한국의 점자여권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자국에 도입하겠다는 열의를 보이기도 하였다. 비록 점자여권에 대한 국제 표준이 없어 전 세계적으로는 점자여권이 시작단계이지만, 다른 나라에서도 우리의 점자여권 형식을 도입하여 발행한다면 국제적으로 시각장애인의 권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불공정한 어선거래문화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개선

| 추진 배경 |

우리는 흔히 집이나 땅을 거래할 때는 부동산중개업자를 찾고, 중고자동차를 거래하고자 할 때는 자동차매매상가를 찾아가서 본인이 사고자 하는 집, 땅, 자동차를 중개업자 또는 전문가와 상의하여 품질 및 가격을 꼼꼼히 따져가며 합리적으로 물건을 거래한다.

그렇다면, 어선의 경우는 어떨까? 어선을 사기위해서는 본인이 발품을 팔아가면서 어선이 있는 항포구 곳곳을 찾아다녀야 하며, 운 좋게 어선을 중개하는 브로키와 연결이 되었다 하더라도 어선에 대한 공시가격, 중개수수료 등 규범화 된 규정이 없다보니 울며 겨자 먹기로 적게는 수천만원 많게는 수억원에 이를 정도로 비싼 가격에 어선을 구입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 아무런 정보가 없는 어선매수자들은 브로키의 요구를 모두 다 수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 어선거래의 불공정거래, 불성실중개, 과도한 수수료 등은 어선을 구입하는 사람이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는 것처럼 하나의 문화로 스며들어 있었다.

이 문제는 어선을 살 때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어업인이 어선을 팔 때도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현장에서는 어선거래에 대한 불만과 문제점을 개선하고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었다.

[브로커로 인한 주요 피해사례 및 문제점]

- 어업허가증 위조, 선박매매대금 편취, 담보어선 매매, 무허가 어선 매입 후 어업용 면세유 부정수급 등 다양한 위법거래
- 중개수수료의 경우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매우 높은 수준에서 책정
- 어선거래 관련 법제도의 미비로 피해예방 및 피해구제에 한계
- 자본금이 있는 일부 브로커가 어선매물을 대부분 독점하고 있어 불공정거래 심화

이에, 해양수산부는 1908년 어선법이 제정된 이래, 암암리에 이루어지던 고착화된 어선거래문화를 공정하고 투명하면서 누구나 쉽고 편하게 어선거래를 할 수 있는 문화를 탈바꿈하기 위하여 어선거래 관련 새로운 제도와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2012년 정책연구를 시작으로 법과 제도정비에 돌입하였다.

| 제도 개요 |

1) 어선법 개정

뿌리 깊은 어선거래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 가장 시급한 것은 먼저, 법과 제도의 마련이었다. 해양수산부는 이를 위해 2014년부터 공정하고 투명하게 어선거래를 위한 어선법 개정을 착수하여 2016년 12월 27일에 1개장(제5장), 9개조문(제31조~제31조의9)을 신설하여 공포하였다.

개정된 어선법의 주요 내용은 첫째, 어선중개업등록제도의 도입, 둘째 어선거래시스템 구축, 마지막으로 불공정 어선거래의 지도단속으로 구성함으로써, 제도, 시스템, 관리의 3박자를 이루고자 노력하였다.

[어선법 개정, 주요 내용]

- ① 어선거래시스템 구축운영, ② 어선중개업 등록 등, ③ 결격사유, ④ 어선중개업 등록의 취소 등, ⑤ 휴업·폐업 등의 신고, ⑥ 과징금 처분, 어선중개업자에 대한 교육, ⑦ 거래계약서의 작성 등, ⑧ 보증보험 가입 등에 관한 근거 마련

어선중개업 등록 제도는 기존, 아무나 어선을 중개할 수 있었던 거래행위를 부동산중개업자와 같이 일정한 자격을 갖춘 후 행정기관에 등록한 사람만이 어선중개와 관련된 일체행위를 할 수 있도록 법으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무자격 브로커로 인한 사기피해 등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전문성을 지닌 중개업자에게 어선을 거래함으로써, 거래이후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하였다.

어선중개업등록을 할 수 있는 요건으로는 국가에서 주관하는 교육의 이수, 중개업사무소의 개설, 보증보험의 가입 요건을 의무적으로 갖추어야 하며, 이외에도 「어선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를 제외함으로써, 중개업자의 전문성과 도덕성을 중요시하여 불공정거래, 불성실거래 및 사기 등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고자 노력하였다.

2) 어선거래시스템 구축

어선거래제도 도입을 위해 법과 제도 다음에 가장 크게 요구되었던 것이, 공개시장의 구축 이었다. 부동산 및 자동차와 달리 어선의 경우에는 이를 공개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공개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 어선거래와 관련된 정보를 얻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어선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총망라하고,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나 관련 정보를 한곳에서 쉽고 편하게 접하고 이를 통해 어선거래를 할 수 있도록 2014년부터 ‘어선거래시스템’ 개발을 시작하여 2017년 9월 11일에 시스템을 공개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고도화작업을 통해 2019년 6월에는 거래기능 등을 대폭 수정 보완하여 ‘어선거래시스템’을 구축완료 할 계획이다.

어선거래시스템은 어선거래에 필요한 어선 기본정보, 보험정보, 검사정보 등 관련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들과 상호 연계하여 시스템 상으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현하였으며, 어선을 사고자하는 사람은 어선거래시스템에 등록된 어선만 보고 매수의뢰만 하면 어선중개업자와 자동으로 연결되어 거래가 성사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으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면서도 누구나 쉽고 편하게 접근 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어선거래시스템 주요 연계정보]

구 분	정 보
지자체	어선기본정보, 어업허가정보, 어업정지 등 행정처분정보
수 협	보험정보, 사고(수리)이력, 면세유 정보, 담보·압류·해제·세금체납 등 금융정보
KST	어선검사정보(정기검사, 중간검사, 임시검사, 특수검사 등)

| 추진 경과 |

1) 어선중개업자 교육, 어선중개업 등록

그간, 어선중개 브로커들은 어선법, 수산업법, 거래계약법 등 관련된 전문지식 없이 단순히 어선을 싼값에 매입해서 비싼 값에 되파는 단순 거래만을 주로 하여왔으나, 어선중개업자가 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는 해양수산전문교육기관인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주관하는 전문교육을 이수하게 함으로써, 거래 이외에도 제반 행정능력까지 갖출 수 기회를 제공하게 되어 거래부터 어선소유권 변경에 이르는 종합행정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하였다.

어선중개업자 교육은 2017년 7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7회에 걸쳐 총 578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이중 506명이 교육을 이수하였다.

[어선중개업교육 이수현황 : 2018년 10월 기준]

구 분	합계	이수률	1회	2회	3회	4회	비고
			(교육/이수)				
합계	578/506	87%	250/228	170/141	118/100	40/37	해당 수치는 교육이수 수
2017년	358/314	88%	200/192	120/88	38/34	-	
2018년	220/192	86%	50/36	50/53	80/66	40/37	

교육이수를 완료한 506명 중 197명(2017년 10월기준)은 어선중개업등록을 완료하여 어선중개업 등록제도에 따라, 어선중개업을 합법적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2018년 5월부터 9월까지 분석한 통계자료(지자체 소유권변경 건수 분석)에 의하면 해양수산부에 등록된 어선중개업자가 거래한 어선거래 건수는 765건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어선 6만 여척 중 단순 상속 및 어업인간 직거래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거래 물량이 등록된 어선중개업자를 통해서 거래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어선중개업자 거래건수]

구 분	합계		동해단	서해단	남해단	비고							
어선중개업 등록자(명)	197		47	78	72	- 교육이수 후 1년 이내 미 등록시 교육이수 효력 상실							
지역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북	충남	경북	울산	부산	경남	전북	전남	제주
	2	5	12	10	2	26	20	2	11	33	7	58	8

2) 어선중개업 교재 편찬 및 표준어선 거래계약서 마련

어선중개업은 신규업종이라 부동산중개업과는 달리 업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되는 전공서적이 전무함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어선중개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특화된 ‘어선중개업 교육 교재’ 편찬을 위하여 2017년 5월 교수, 변호사 등 각계 전문가를 중심으로 교재편찬위원회를 구성하여 ‘어선중개업’에 관련된 전문교재 편찬을 시작하였고, 2017년 7월에 ‘어선중개업 교육 교재’ 초판을 발간(발간등록번호 11-1192000-000888-01) 하여 교육용 교재로 배부하고 있으며, 2018년 12월에는 일부 내용을 보완 수정한 개정판을 발간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에는 어선거래에 있어, 규격화된 ‘어선거래계약서’가 없어, 당사자 간 구두계약 또는 브로커에 유리하게 계약서가 작성되어 오면서, 어선을 매수·매도하는 사람들이 불이익을 보는 사례가 발생됨에 따라 해양수산부에서는 법령개정에 앞서 어선중개업자의 책임, 권리, 의무 등을 명시한 표준계약서를 제작하여 지자체와 어선중개업자에게 어선거래 및 어선소유권 변경시 사용토록 권고 하였다.

[권고 ‘어선거래 계약서’ 주요 내용]

① 거래당사자의 성명 등 인적사항 ② 거래대상물의 표시, ③ 계약일, ④ 거래금액·계약금액 및 그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 ⑤ 거래대상물의 인도일시 ⑥ 권리이전의 내용 ⑦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⑧ 중개수수료·경비 등에 관한 사항 ⑨ 해약 또는 해지할 경우 중개수수료·경비 등의 반환에 관한 사항 ⑩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⑪ 어선중개업자가 거래대상물에 대하여 확인한 사항 ⑫ 그 밖에 약정내용

3) 사단법인 어선중개업협회 승인

어선중개업제도의 도입과 함께 어선중개업이라는 새로운 직업군이 창출됨에 따라, 전국 각지에 분포되어 있는 어선중개업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정책에 대한 협조를 위한 사단법인 한국어선중개업협회가 신설되었으며, 이로 인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선거래제도와 관련된 주요정책을 논의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 할 수 창구를 일원화 하였다.

또한, 어선중개업협회를 통해 기존에는 주로 브로커가 어선을 매입한 후 되팔면서 시세차익을 취하는 거래방식에서 부동산과 같이 제3자가 거래를 통해 수수료로 수입을 창출하는 방식으로 어선거래방식이 개선되고 있다. 참고로 시세차익을 취하는 방식은 어선을 파는 사람은 어선을 싸게 팔고 어선을 사는 사람은 비싸게 사는 부작용이 있었으나, 수수료 방식은 매수자와 매도자간 합의만 되면 합리적 가격으로 어선을 사고 팔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향후 계획 |

해양수산부는 공정하고 투명한 어선거래문화 정착을 위해, 어선을 사고 파는 사람이 좋은 어선을 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거래할 수 있도록 현재 어선중개업의 범위, 어선중개업자의 자격 등을 재정비 하여 「어선법」을 개정할 예정이며, 어선거래시스템 상 어선거래 방법을 간소화하여 사용자가 이용하기 편리한 시스템으로 고도화하여 시스템 활용도를 높일 예정이다.

또한, 어선중개업 시장의 긍정적인 경쟁을 지속적으로 유발하기 위하여 어선중개업시장 수요 등을 분석하여 적정 인원을 산정한 후, 어선중개업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지닌 어선중개업자를 지속적으로 양성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어선거래 건수, 매물가격, 수수료 등 어선거래와 관련된 자료의 통계 분석이 되어 있지 않아 정책수립에 한계가 있었으나, '19년부터는 어선거래시스템 개선 및 관련 고시개정을 통해 어선거래와 관련된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과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어선중개업 등록제도 및 어선거래시스템을 통해 어선거래를 원하는 어업인, 귀어촌인들이 어선을 사고팔 때 합리적인 가격으로 원하는 어선을 쉽고 편하게 사고팔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어선중개업자도 기존 '불법 브로커'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어선중개업자' 라는 전문 직종 종사자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어선중개업 분야에 일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하고 있다.

축산물 유통증명 서류 일원화로 국민편익 향상

추진 배경

지금까지, 축산물은 식품안전 및 품질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단계별 다양한(9종) 증명서류를 발급하고 있다.

▶(증명서류, 9종) 도축검사증명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축산물품질공정지정서, 브루셀라예방접종확인서, 혈통등록증명서, HACCP인증서, G마크인증서, 황성한우품질인증서, 친환경축산물인증서

또한, 유통업체 등 수요처에서는 각종 증명서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최대 9개 기관을 통해 확인·방문하고 있어 국민불편·업무 비효율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단계(보유기관/보유정보)	기관별 제공 정보
사육단계(3개기관/4개정보)	농식품부(축산물 이력정보, 소브루셀라검사정보), 한국종축계량협회(혈통등록정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친환경축산물인증정보)
도축단계(3개기관/3개정보)	농림축산검역본부(도축검사정보), 황성군(황성군수한우인증정보) 축산물품질평가원(축산물 등급판정정보)
가공·유통단계(4개기관/4개정보)	축산물품질평가원(축산물품질공정관리지정업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HACCP인증정보), 식약처(식품영양정보), 경기도(경기도지사인증G마크)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의견 수렴·협업, 관련제도 개선 등으로 증명서류를 간소화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일하는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 추진 경과 |

(시민수요 발굴) 공공데이터포털(행안부 운영) 內 “데이터 1번가*”를 통해 시민사회와 소통하고, 국민생각함을 통해 대국민 의견을 수렴(17.8)하였다.

* 살충제 계란의 정확한 정보·축산물등급의 각종 소비자정보(성별·지방함량 등) 요구(17.8, 박**)

[데이터 1번가 의견수렴]



[국민생각함 의견수렴]



[「국민생각함」 국민의견 주요 사례(17.8.)]

- “도축 증명서, 등급판정확인서, HACCP인증서, 친환경인증서, 거래내역서 등 고기를 납품하는 것이 아니라, 서류를 납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하나의 웹사이트에서 식육유통의 흐름에 따라 각 유통단계 종사자가 필요한 정보 서류를 입·출력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 “협업 종사자들이 서류 누락, 오류 등으로 인한 거래 불신이 생기지 않도록 행정 개선으로, 종사자들은 본질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 합니다.”

(관계기관 협업) 축산물 거래 시 필수서류를 전자적으로 통합 제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기관별 보유정보 연계방안 협의(17.5, 관계기관 회의)하였다.

[기관별 정보연계를 위한 역할]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물정보 개방 확대방안 및 제도기반 마련
- (식품의약품안전처) 축산물 부위별 식품영양정보 및 위해농장정보(살충제검출 농장) 제공
- (농림축산검역본부) 도축검사증명서, 축산물잔류물질 위반농가정보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무항생제·유기축산물 등 친환경축산물인증농장정보 제공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유통업체 HACCP 인증정보 제공
- (한국종축개량협회) 혈통등록정보 제공
- (횡성군) 혈통등록정보와 연계하여 “횡성한우품질인증” 정보 제공
- (경기도) 경기도G마크 우수축산물 유통정보제공
-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물거래증명통합시스템 구축 운영(www.ekape.or.kr/one)
 - 축산물이력정보, 등급판정확인서, 축산물품질공정관리지정업체정보

- 기관간 협업을 통해 9개 기관의 축산물 품질·인증정보(이력·질병정보, 도축·등급 정보 등)를 국민이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 확대·제공 실시를 위해 노력하였다.
- * (16년) 8개기관 10종→(17년) 9개기관 12종 정보(농관원, 유기축산물·무항생축산물추가)
- 사이트별 운영 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데이터를 연계하는 기준·방법·주기를 설정하고, 기관별로 주기적으로 현행화를 추진하였다.
- * ① 소의 경우 개체별 이력번호, 사업자번호, 등급 등을 데이터 주요 연계 기준으로 활용, ② 기준 활용이 어려운 기관(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HACCP 인증정보)에 대해서는 데이터 통합을 위해 보완방안(사업자 번호 추가·정비) 강구

(제도개선) 축산물 유통증명 서류의 전자적(시스템명: 축산물거래증명통합시스템) 간소화 추진을 위한 관련 제도 정비 또한 추진하였다.

-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관련조항 개정(17.11)
 - “전자적인 방법으로 도축검사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도축검사증명서의 1년간 보관·휴대를 아니할 수 있다”
- ▶ ‘축산물등급거래규정’ 개정 추진(17.12)
 -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의 소지·계시 방법을 전자적 방법으로 조회 가능한 경우 서류를 소지·계시한 걸로 인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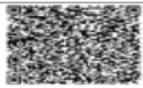
(서류일원화) 각종 거래시 필요한 증명서류(9종)를 ‘축산물거래증명통합시스템’의 데이터를 통해 제공되는 ‘축산물거래정보통합증명서’로 일원화(1종)를 시도하였다.

- (증명서류 9종) 친환경축산물인증서, 도축검사증명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축산물품질공정지정서, HACCP인증서 등 → (1종) 축산물거래정보통합증명서
- (일원화 활용 예시) 학교급식에서 축산물을 납품하기 위해 제출하여 하는 필수서류 ‘축산물등급판정서, 도축검사증명서, HACCP인증서, 친환경축산물인증서’를 ‘축산물거래정보통합증명서’로 대체하여 제출 가능
- (축산물거래통합증명서)

(학교급식, 단체급식 등 용병자료)

출발시번호: 2017-000001

축산물거래정보통합증명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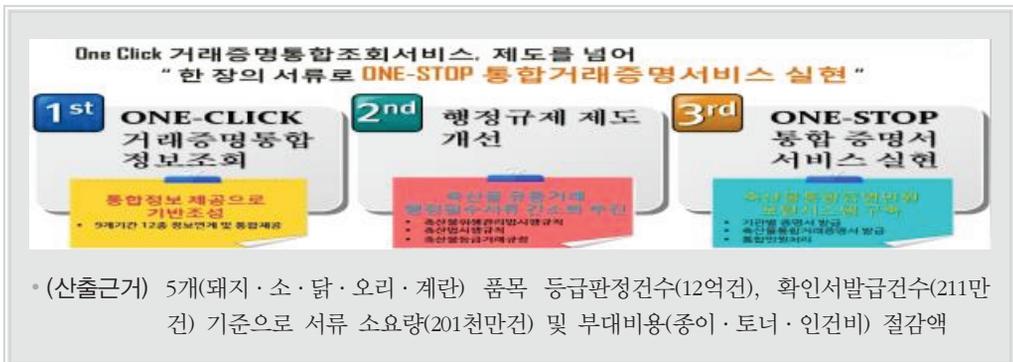
등급판정 확인서	발급번호: 0404-08170001 (발급일자: 2016년 6월 17일)			
이력번호	002 088 764 169			
납품내역	납품업체명	납품처명	부위명	중량(kg)
	상록진축산	오음 초등학교	입지	12.5

| 추진 성과 |

(행정낭비 제거) 수요자 요구에 맞춘 일하는 방식 개선으로 행정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었다.

현 행 (AS-IS)	개 선 (TO-BE)
· (분산) 각 기관별 검증정보 종이서류 확인	· (통합제공) 각 기관 거래정보 통합 온라인 조회
· (조회부담) 확인시간 과다 → 포기	· (시간절감) 거래정보 원스톱 조회 서비스 제공
· (개별서류) 도축검사증명서, 등급판정확인서, HACCP인증서, 친환경축산물인증서 등 9개 기관 9종 서류 개별 발급	· (One-Stop 발급) 가축 및 축산물 관련 증명서 9종을 1곳의 사이트에서 One-Stop 발급
· 수기 확인에 따른 신뢰도 저하	· 전자적 확인으로 신뢰도 향상

(비용 절감) 축산물 거래 시 보관·소지해야 할 각종 거래증명서류를 ‘축산물거래증명통합 시스템’ 구축을 통해 1종의 전자적 방법으로 확인·조회하는 방법으로 개선하여 연간 관련 비용 1,003억원 절감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민편익 증대) 다양한 소비자의 수요를 반영한 축산물 등급·이력 등 통합데이터 제공으로 국민 편의 제고 및 축산물 정보 활용*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

* '17년 축산물거래증명일원화서비스 : 접속 40,930건/월, 조회 236만건(' 17.10)

- ‘축산물등급판정 DB’는 「17년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행안부 주관) 민간활용 우수사례로 선정('17.5)로 선정된 바 있다.

(축산정보 타기관 활용·확대) 학교급식 축산물 정보 활용(교육부), 영양성분 정보 연계(식약처), 지역별 축산물 브랜드 관리* 등 확대 적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 된다.

* 예시 : “횡성한우 품질인증시스템”을 타 지역 축산물 브랜드 관리시스템으로 확산

| 향후 계획 |

축산관련 축산물거래정보통합증명서 ONE-STOP 발급 및 전자유통을 위한 시스템 구축·개선 지속 실시하고, 기관별 축산물 위생안전·품질·인증 정보의 중복내용 제거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해 단일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거래증명 간소화를 위해 시민의견 수렴, 기관간 정보연계, 제도개선 등 지속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

[참고 1] 축산물거래증명통합운영에 따른 편익효과

서류간소화 편익효과

- 축산물 거래 시 보관·소지해야 할 각종 거래증명서류를 전자적 방법으로 확인·조회로 관리비용 1,003억원/년 절감

구 분		소	돼지	닭	계란	오리	계	
현	기준건수 (2015년)	판정건수(천건)	1,007	15,884	98,547	1,067,220	11,381	1,194,039
		건 수	1,031,293	871,840	146,832	44,881	17,223	2,112,069
	확인서발급	업체수	16,852	6,278	106	50	58	23,344
	황	서류 소요량 (천건)	대 분 할 ¹⁾	21,147	-	-	-	-
소 분 할 ²⁾			42,294	95,360	-	-	-	137,654
이력제 매출신고 ³⁾			32,515	15,874	-	-	-	48,389
학교납품 ⁴⁾			1,078	1,250	431	368	46	3,173
소 계			97,034	112,484	431	368	46	210,363
비 용 (백만원)	복사 및 관리비용	종이사용 ⁵⁾	776.2	899.9	3.5	2.9	0.3	1,682.8
		토너사용 ⁶⁾	873.3	1,012.3	3.8	3.3	0.4	1,893.1
		인 건 비 ⁷⁾	44,635.6	51,742.6	198.3	169.3	21.2	96,767
		절감비용 총계	46,285.1	53,654.8	205.6	175.5	21.9	100,342.9

주 1) 대분할 : 판정두수 × 21box

2) 소분할 : (소) 판정두수 × 42개(39개 부위+ 사골 등 3부위)
(돼지) = 전체 정육량(953,597천톤)/1박스(10kg)=95,360천개

3) 이력제 매출신고 : 소·돼지에 대하여 판매내역을 신고토록 되어 있으며 전체 물량의 52% 신고되는 것으로 추정하여 전체로 환산

4) 학교납품 : 2015년도 검수시스템에서 검수한 건수

5) 종이사용 : 8원/장 × 210,363천건 = 1,683백만원

6) 토너사용 : 9원/장 × 210,363천건 = 1,893백만원

7) 인건비 : 460원/건 × 210,363천건 = 96,767백만원

460원/장 = 4.6분(건당 처리시간) × 100원(최저시급 6,030원을 분당으로 환산)

[참고 2] 축산물거래정보통합증명서 서식

(학교급식, 단체급식 등 증빙자료)

증명서번호: 2017-000001							
축산물거래정보통합증명서							
등급판정 확인서		발급번호 : 0404-06170001 (발급일자 : 2016년 6월 17일)					
이력번호		002 086 754 159					
납품내역		납품 업체명		납품처명		부위명	중량(kg)
		신동진축산		으뜸 초등학교		양지	12.5
사육 정보	①성 명		김농장		②농장식별번호		300526
	③소재지		강원도 횡성군 서원면				
	④정부인증		· 친환경축산물인증(무항생제 한우작목반, 인증번호 : 10-5-1056) · 혈통등록(고등등록牛, 등록번호 : 201701011234)				
⑥도 축 정보	업체명		횡성도축장		도축일자		2016년 6월 16일
	소재지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조곡리				
	도축 의뢰업소		횡성축협육가공공장				
⑦도축검사결과		합격 (증명서번호 : 전남22-20160617-0007-0호)					
⑧위해축산물 여부		해당 없음					
⑨등급 정보		도체번호	품종	성별	중량	등급	
		10	한우	거세	452	육질	육량(육량지수)
						1+	A(70.52)
포장 처리 정보	⑩포장처리업소			⑪포장처리일자	⑫HACCP 인증	⑬기타인증	
	횡성축협육가공공장(강원도 횡성군)			2017.6.18	인증번호 : 07-01-5-5	·품질공정 지정 : 2016-62 ·횡성한우 인증	
	두원육가공공장(서울특별시 광진구)			2017.6.20	-		
	신동진축산(서울특별시 강서구)			2017.6.25	인증번호 : 07-01-5-5		
2017년 10월 30일							
축산물품질평가원장 							

※ 상기 연계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축검사결과(농림축산검역본부), 친환경축산물인증(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HACCP인증(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사육·포장처리업소(축산물이력제), 등급정보·축산물품질공정지정서(축산물품질평가원), 경기도 G마크인증(경기도 청), 횡성한우인증(횡성군청), 혈통등록인증(한국축육개량협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참고 3] 축산물거래증명통합시스템 구조도



교원 명예퇴직수당 환수제도 개선

| 추진 배경 |

어떤 제도나 법령이 시행되어 오는 과정에서 시행 목적이나 취지를 벗어나 왜곡되어 운영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그 제도의 내용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일 때에는 명확한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고 제도 운용에서 일부 왜곡되는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근거없이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제도가 왜곡되거나 본래의 취지가 훼손되어 운용되지 않도록 법령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고 법령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법령의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는 행정적 조치가 필요하다.

| 제도 개요 |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제도는 정년 이전에 퇴직하는 공무원에게 정년 이전의 퇴직으로 받게 되는 불이익, 즉 계속 근로로 받을 수 있는 수입의 상실이나 새로운 직업을 얻기 위한 비용지출 등에 대한 보상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정년 이전의 퇴직을 유도하여 조직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고 명예퇴직하였던 공무원이 다시 경력직 공무원으로 재임용된다면,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였던 본래의 취지가 몰각되므로 기지급된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할 필요가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9조의2,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8조의3에서는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勤續)한 사람이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사람이 경력직공무원,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에

는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인 공립학교 교원이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에는 사립학교 교원을 경력직공무원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으므로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일부 시·도교육청은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반납업무 개선 세부추진계획’ 등을 마련하여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공무원이 사립학교 재정결합보조금에서 인건비를 받는 사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경우 명예퇴직수당을 반납받고 임용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일부 교육청은 위와 같은 경우에 명예퇴직수당에 대해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시·도교육청별로 공무원 등이 명예퇴직 후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임용 또는 재임용된 경우에 해당업무를 다르게 처리하고 있었다.

| 추진 내용 |

1) 명예퇴직수당 환수 대상 명확화

공립학교 교원이 명예퇴직 후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명예퇴직수당과 사립학교 교원의 인건비가 동일한 지방재정교부금으로 지급되고, 공립교원이 공립교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및 사립학교 명예퇴직 후 사립학교에 재임용되는 경우 명예퇴직 수당을 환수하는 경우와의 형평성 문제 등에 비추어 볼 때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할 필요성은 있다. 그러나 그 필요성이 있다고 하여 사립학교 교원을 경력직공무원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또한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각 기관별로 업무처리가 다를 경우 행정의 신뢰성, 객관성, 통일성 등이 훼손되므로 이를 통일적으로 적법, 타당하게 처리할 지침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각 시·도교육청에 공립학교에서 명예퇴직 후 사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되는 경우는 명예퇴직수당 환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여 업무처리를 안내하는 한편 명예퇴직수당제도 개선을 위해 법률 소관부처에 법령개정을 요청하였다.

[인사혁신처에 요구한 주요의견]

- ▶ 국가공무원이 공립학교 교원이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고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에는 환수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명예퇴직수당제도의 취지를 훼손**
- ▶ **명예퇴직수당 환수 대상을 사립학교 교원 또는 직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까지 확대**

2) 재정결합보조금 지급방식 개선으로 제도 보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립학교 교원이 명예퇴직 후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에도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할 필요가 있고, 공립-공립, 사립-사립 재임용 교원의 경우와 형평에도 맞지 않으며,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으로 볼 수 있는 교원으로 재임용되는 점을 고려할 때 명예퇴직수당 환수에 준하는 행정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사립학교법」 제43조,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근거하여 사립학교 재정결합지원금 지원계획 및 교원명예퇴직 시행계획 반환대상에 공립학교 교원이 명예퇴직 후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까지 확대하여 운용함으로써 현재 제도의 미비점을 행정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사립학교법」 제60조의3(명예퇴직)과 제43조(지원)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사립학교 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를 신청한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기타의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따른 재정결합액 지원사업도 포함할 수 있고, 이러한 교육감의 지원금 교부 결정에 있어서는 자기부담과 교부목적의 달성함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따라서 법령 개정 전이라고 하더라도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교육공무원이 사립학교에 다시 임용되는 경우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불합리한 면을 재정결합보조금 지급방식의 개선이라는 행정조치로 보완할 수 있었다.

[안내 주요 내용]

- ▶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공립학교 교육공무원이 재정결합보조금을 지급받는 사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될 경우, 교육청은 이를 고려하여 재정결합보조금 교부
- ▶ 학교법인은 이 경우 명예퇴직자 임용 사실을 교육청에 보고

| 향후 계획 |

재정결합보조금 지급방식을 개선하여 명예퇴직수당 환수대상을 확대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거두고 재정결합보조금을 절약하여 교육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명예퇴직수당 지급제도 취지에 비추어 환수 필요성은 인정되는데도 규정 미비로 제외되었던 경우도 관련 제도의 운용을 통해 법집행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명예퇴직수당제도의 취지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환수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명확하고 통일적인 법 집행을 위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해당 법률의 소관부처에 법률개정을 요청(18.10.23.)하였으며, 법률개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연구자 중심의 'R&D 프로세스 혁신'

| 추진 배경 |

정부 R&D 투자가 2014년 약 18조원에서 이제는 약 20조원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으며 논문, 특허 등 양적인 연구성과는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적 수준의 연구자와 성과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으로 이는 정부 주도의 연구기획, 단기적 성과관리 등으로는 혁신적 연구성과와 연구자의 창의성이 충분하게 발현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즉, 세계적 수준의 연구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는 연구현장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연구자 중심으로 R&D 프로세스 전 과정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대두되고 있었다.

이러한 배경 하에 과기정통부는 연구자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원하는 연구에 끊임없이 도전할 수 있는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세계적 수준의 연구성과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로 '알프스TF'를 구성, 연구자 중심의 'R&D 프로세스 혁신'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후 2017년 8월부터 3개월간 연구현장 연구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과제기획, 과제선정, 과제평가, 성과보상 등 R&D 사업 전 과정에 걸친 변화와 혁신을 유발할 수 있는 방안인 'R&D프로세스 혁신방안'을 마련하였으며,

해당 정책은 연구현장에서 연구자들에게 주는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줄이고 자율성과 창의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연구 환경을 정착시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 제도 개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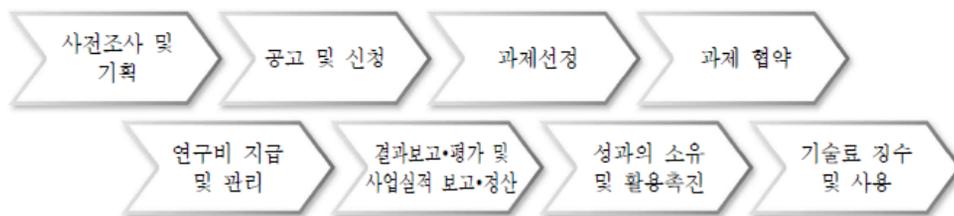
과기정통부는 기초연구를 지원·육성하고 핵심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국가과학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기초연구사업’과 ‘국책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기초연구사업’은 기초과학과 공학·의학·농학 등과의 융합을 통하여 새로운 이론과 지식 등을 창출하는 연구활동으로, 연구자의 창의성이 보다 강조되며 주로 연구주제, 방법, 목표 등을 연구자 스스로 제안하는 형태이다.

‘국책연구개발사업’은 기초연구의 성과 등을 바탕으로 하여 국가 미래 유망기술과 융합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으로, 과제제안서(RFP)를 통해 국가가 과제를 제안하는 형태로 추진한다.

한편, ‘기초연구사업’과 ‘국책연구개발사업’을 포함하여 국가가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은 대통령령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표준적인 프로세스에 따라 진행된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전체 프로세스]



| 추진 내용(R&D 프로세스 혁신방안) |

1) RFP(과제제안서) 간소화 및 요건검토제 도입

RFP는 특히 지정공모(Top-Down)방식으로 추진되는 ‘국책연구개발사업’에서 연구개발의 필요성이나 목표 등을 제시하여 해당 연구개발사업의 수행에 적합한 연구자들이 연구를 신청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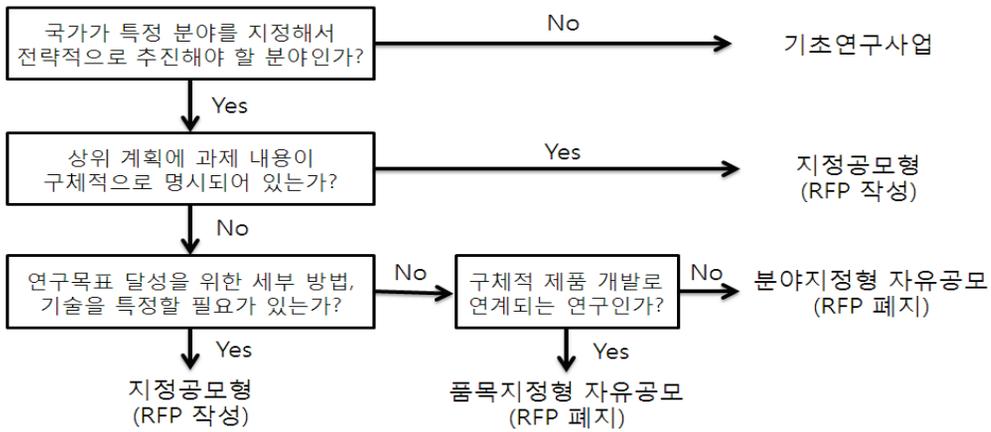
그러나 지나치게 협소하게 기술범위를 한정하거나, 세세한 연구방법론을 제시하여 연구 목표에 보다 부합하는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가 있더라도 신청자체를 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연구현장에서 다수 지적되었다.

[RFP관련 현장의견]

- RFP에 **연구방법론을 적시**하여 창의적 접근을 어렵게 만드는 경우
- 지나치게 **구체적인 RFP**로 인해 경쟁률도 거의 없는 과제들이 있으며, 일부 자신이 개발한 고유한 기술로만 지원할 수 있도록 내용을 한정

이에 과기정통부는 기술범위, 방법론을 지나치게 세세하게 기술하는 것을 지양하고, 뚜렷한 연구목표를 제시하는 수준으로 RFP를 간소화 하였다. 또한 ‘국책연구개발사업’에서도 RFP가 반드시 필요한지를 검토하는 ‘RFP 요건검토제’를 도입하였다. 이를 통해 구체적인 세부방법론을 특정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RFP없이 품목 또는 분야만을 지정하여 공모하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연구방법론이 시도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다.

[RFP 요건검토 방식]



2) 기초연구과제의 성공/실패 판정 폐지

도전적인 연구목표에 따른 우수한 연구 성과는 여러 번의 실패를 통해 탄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당초 목표달성에 실패하더라도 전혀 다른 분야에서 성과로 나타나기도 한다. 특히, 연구자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무엇보다도 강조되는 기초연구과제의 경우, 연구 실패라는 개념의 적용이 연구자들의 도전정신을 꺾고, 단기에 달성이 가능한 쉬운 연구만을 수행하는 부작용을 초래한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기초연구과제의 성공/실패 판정을 폐지하고, 연구를 성실히 수행하였는지 여부만을 평가하도록 하여 연구자들의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를 촉진하였다.

3) 상피제 기준 완화를 통한 평가전문성 확보

기존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 대한 평가는 선정평가 또는 중간, 최종 결과 평가 시, 평가위원이 피평가자와 동일기관에 소속될 수 없도록 하는 등 상피제 요건이 매우 엄격하였다.

이로 인해 능력 있는 연구자는 평가위원에서 제외되고, 상피제 요건만 가까스로 면한 ‘비전문가’에 의한 평가가 이루어짐에 따라,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저하된다는 현장의 지적이 다수 있었다.

[상피제 관련 현장의견]

- 상피제도로 연구 잘하는 주요 학교 교수들이 배제되고 연구실적 없는 교수들이 주로 심사
- 전문성의 부족과 사업취지에 대한 이해 부족(또는 학습 부족)

이에 과기정통부는 피평가자와 동일학부, 학과가 아니라면 동일기관 소속이라도 평가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상피제 기준 완화를 추진 중에 있다. 이를 통해 ‘최고의 전문가’가 ‘최고의 연구자’를 선정하는 평가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

| 향후 계획 |

연구자 중심 ‘R&D 프로세스 혁신방안’ 관련 연구자들의 정책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위 추진과제에 대하여 모두 ‘적절하다’라는 응답이 있었다.

(사업유형 검토) 금년부터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RFP를 작성하며, 그 외에는 공고문과 사업안내서로 대체하는 RFP 요건검토제를 도입”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설문 결과 】

문항	응답자 수	비율
1. 매우 적절하지 않다	1명	1.20%
2. 적절하지 않다	5명	6.02%
3. 보통이다	13명	15.66%
4. 적절하다	43명	51.81%
5. 매우 적절하다	21명	25.30%
6. 기타	0명	0%

(성공/실패 폐지) 금년부터 “기초연구 과제의 성공/실패 판정을 폐지하고, 최종적으로 ‘실패’ 용어 미사용으로 연구자의 도전성을 제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설문 결과 】

문항	응답자 수	비율
1. 매우 적절하지 않다	3명	1.55%
2. 적절하지 않다	3명	1.55%
3. 보통이다	15명	7.73%
4. 적절하다	98명	50.52%
5. 매우 적절하다	75명	38.66%
6. 기타	0명	0.00%

(상피제 완화) 금년부터 “연구비를 신청한 기관(국공립/민간 연구소 등)에 속한 모든 연구자는 평가 참여가 불가한 상피제도를 완화하여(규정 개정 예정) 전문가 풀을 확충”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설문 결과 】

문항	응답자 수	비율
1. 매우 적절하지 않다	7명	4.55%
2. 적절하지 않다	18명	11.69%
3. 보통이다	27명	17.53%
4. 적절하다	66명	42.86%
5. 매우 적절하다	34명	22.08%
6. 기타	2명	1.30%

‘연구자 중심 R&D 프로세스 혁신’은 단기성과 중심의 추격형, 정부 주도형으로 추진해 온 기존 연구개발 지원 방식의 틀을 바꾸기 위한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연구개발의 모든 과정에서 연구자가 창의성과 자율성을 최대한 발휘하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풍토가 현장 연구자가 체감할 수 있을 만큼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공공SW사업 발주제도 혁신

| 추진 배경 |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경제·사회 전반에 소프트웨어의 융합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 산업은 이제 국가 전체의 산업구조 개편 및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이끄는 핵심 산업으로 자리매김 하였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SW산업의 육성의 일환으로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SW사업'(이하 '공공SW사업')의 공정거래 환경조성과 대·중소기업의 상생 발전을 지속 도모하였으나,

발주기관이 피발주기관의 근무자에게 과도한 파견근무를 요청하는 등 공공SW업계의 불합리한 발주관행은 지속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업계의 수익이 저하되고, 개발자의 근로환경 악화되는 현상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과기정통부는 'SW, 아직도 왜?' TF를 구성하여, 공공SW사업 발주제도 전반에 대한 혁신을 추진하게 되었다.

| 제도 의의 |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공공SW사업은 연간 4조원 규모로 국내 전체 SW시장(12.8조원)의 31.3% 수준에 달하며, 공개 경쟁시장에 해당한다.

이러한 특성으로 공공SW시장에 대한 발주제도 혁신은 민간SW사업의 잘못된 관행·제도 개선까지 이어지게 되며, 나아가 우리나라 전체의 SW개발자 육성 및 우수 SW기업의 성장

촉진으로 연결된다.

금번 마련된 ‘공공SW사업 혁신방안 (17.12,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의결)’은 ① 구체적인 과업 요구, ② 과업 변경, 추가 시 정당한 보상, ③ 과도한 파견근무 방지, ④ 기업의 결과물 활용, ⑤ 민간 SW시장 침해 방지 등 크게 5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차 산업혁명시대의 SW 2만개 일자리창출 전략(18.9, 제7차 일자리위원회 발표)’등에도 포함되어 있는 등 향후 미래 일자리 창출에도 큰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 추진 내용(공공SW사업 혁신방안) |

1) SW제안요청서 요구사항 명확화

불명확한 요구사항 때문에 과업변경이 너무 빈번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SW사업 발주 시 요구사항을 명확히 하고 상세하게 작성하도록 개선하였다. 이에 따라 불필요하고 빈번한 과업변경 및 추가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SW기업의 수익성 개선에서 나아가 상세 요구사항 작성에 따른 효율적 사업관리, 구체적 요구사항 사전 제공에 따른 개발자 근로여건 개선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2) 과업 변경 · 추가 시의 과업심의위원회 의무화

발주기관에서 과업을 변경, 추가하여도 피발주기관에게 지급하는 대가에 반영 해주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과업범위 확정, 변경 등을 승인 하는 과업심의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토록 하는 동시에 피발주기관이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심의위원회를 통한 과업범위 확정 및 변경은 과업범위의 객관성 및 투명성을 제고할 것으로 예상되며,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관련 SW기업의 수익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3) 원격지 개발 활성화를 위한 작업장소 협의원칙 강화

피발주기관의 근무자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장소에서만 개발해야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주기관과 피발주기관이 SW개발 작업장소를 협의 할 시, 피발주기관이 제시하는 작업장소를 우선 검토하도록 하였다.

이는 기존의 공공SW 개발문화를 혁신하는 사항으로 피발주기관의 사업범위가 전국으로 확대되고, 나아가 글로벌 아웃소싱의 토대를 마련하는 제도개선 사항에 해당한다.

4) SW지식재산권 기업 활용 촉진을 위한 SW산출물 반출 근거 마련

공공SW사업 후 SW산출물은 공동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모두 반납 후 파기함에 따라 재사용이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추후SW사업자가 결과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산출물 반출 절차’를 마련하였다. 이로 인해 SW기업은 SW결과물의 재사용과 실질적인 (공동)소유가 가능해졌으며, 이를 통해 기업이 전문역량을 축적하고 수익창출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게 되었다.

5) 상용SW 활성화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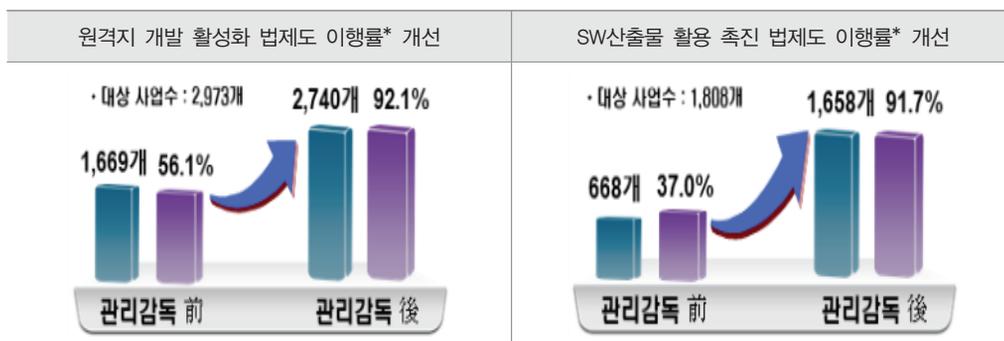
기업이 제공하고 있는 SW나 서비스를 공공기관이 유사하게 개발하고 다른 기관 또는 국민들에게 무상 배포함에 따라, 민간시장을 침해하는 문제가 존재하였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SW 개발 시 민간SW의 아이디어를 도용하거나, 무상 배포하는 등 민간 SW시장 침해여부를 사전에 검토하는 SW영향평가 제도를 강화하였다.

또한 SW분리발주 활성화 및 SW유지관리요율을 글로벌 수준으로 상향하여, SW제값주기를 통해 SW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 향후 전망 |

1) SW기업 수익성 제고 및 SW개발자 근로여건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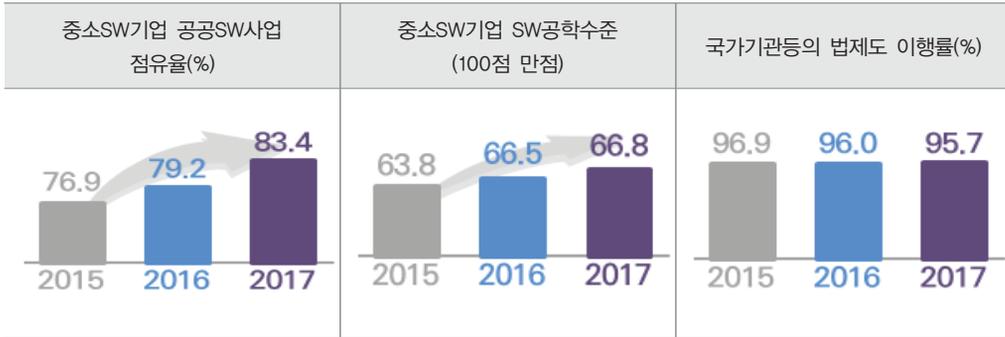
원격개발 활성화, SW산출물 활용 촉진 등 공공SW사업의 지속 개선을 통해 SW기업 수익성 제고 및 SW개발자 근로여건 개선이 기대된다.



* 공공SW사업 중 법제도 관리감독 전후 이행률 비교('18년 상반기 기준)

2) 건전한 공공SW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 구축

발주관행 개선(요구사항 명확화, 과업변경 대가보장, SW사업 산출물 활용 촉진, 민간시장 보호), 제값주기 확산(SW제품 적정가격 구매, SW유지관리 대가 개선), 개발자 근로환경 개선(원격개발 활성화, 법정 노동시간 준수, 등급제 폐지, 투입인력 관리금지), 산업구조 선진화(공공SW사업 패러다임 전환, SW기술가치 보장) 등 공공SW사업 발주제도 전반의 개선을 통해 건전한 공공SW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국민 육군 인사행정서비스 모바일 어플 더 캠프(The Camp) 개발

| 추진 배경 |

군 입대를 준비하는 인원들이나 군에 자녀를 보내려는 부모들이라면 누구라고 한번쯤은 군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인터넷 검색을 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군 관련 정보들은 병무청과 각 군 본부에서 온·오프라인을 통해 각 기관별·업무별로 해당서비스를 분산 지원하고 있어 군 복무와 관련된 통합 서비스를 요구하는 국민들을 만족시킬 수 없었으며, 서비스 내용도 대부분 각 업무별 홈페이지를 통한 안내수준의 일방향서비스와 인력 및 예산 부족으로 제공되는 서비스가 미흡하다보니, 군 복무와 관련하여 보다 나은 맞춤형 서비스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불만은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육군에서는 온·오프라인에 흩어져 있는 '입대 前-軍 복무-전역 後'와 관련된 인사행정 서비스를 지원하는 통합 플랫폼을 개발하고, 모바일 앱을 통해 개인별 맞춤형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대국민 육군 인사행정 서비스 더 캠프(THE CAMP)」를 개발하였다.

| 추진 내용 |

- 1) 휴대폰에 모바일 앱(더 캠프) 설치만으로 軍 복무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입대 병사들과 부모들에게 맞춤형으로 제공토록 개발하여, 국민들의 접근성 및 편의성 제공은 물론 육군의 대국민 신뢰도를 향상시켰다.
- 2) 또한, 모바일 앱 '더 캠프'는 육군에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민간기술과 자본으로 모바일 앱을 개발한 민간자본 유치의 새로운 사업모델로서 프로그램 개발과 유지보수 비용 등 총 72억원의 예산절감에 기여함은 물론, 국민들에게 군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기존의 병역관련 민원안내 소요를 약 30% 감소시켰으며, 민간 기업에서는 모바일 앱

(더 캠프) 운영을 위하여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였다.

3) 모바일 앱(더 캠프)은 전군 시행 5개월만에 가입인원 약 50만명, 일일평균 방문 인원이 60만명으로 국방부 및 육군, 병무청 홈페이지 방문인원 대비 약 10~20배가량의 인원들이 방문하고 있으며, 현재 국민들의 가입현황과 호응을 고려 시 연간 100~200만명의 가입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국방부 지침과 제도를 홍보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창구로서의 기능은 물론, 국민 앱으로서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게 하였다.

추진 성과

1) 모바일 앱(더 캠프)을 활용한 軍 복무관련 포털서비스 제공

휴대폰에 모바일 앱(더 캠프) 설치만으로 각 기관별로 온·오프라인을 통해 분산 지원하고 있는 軍 복무관련 모든 정보를 입대 병사들과 부모들에게 맞춤형으로 제공토록 개발하여, 국민들의 접근성 및 편의성 제공은 물론 육군의 대국민 신뢰도를 향상시켰다.

2) 입영예정자들의 사회경력과 능력을 연계한 육군모집 알림서비스 제공

모바일 앱(더 캠프)에서 입영예정자들이 사회경력과 능력을 고려하여 희망하는 특기를 입력하면, 병무청 육군모집 공지와 동시에 안내문자를 발송하여 육군모집에 지원토록 유도함으로써 본인 희망과 육군 우수인력 획득에 기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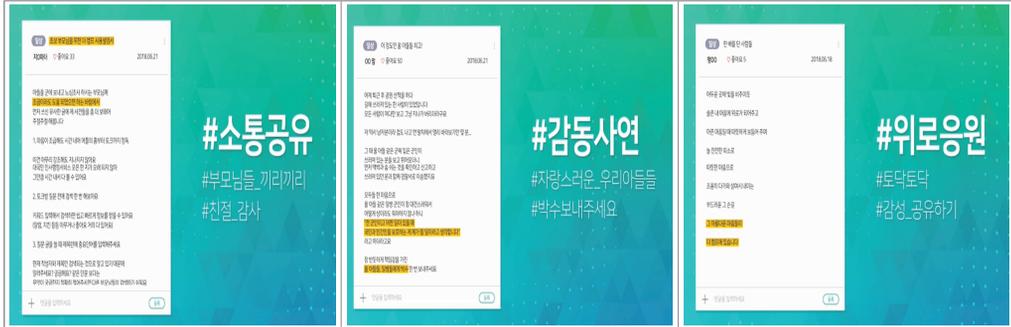
[육군모집 알림서비스 제공]



3) 軍에 대한 궁금증 해소를 위한 국민과 소통하는 SNS 소통 서비스 시행

더 캠프는 가입인원 약 50만명, 일일평균 방문인원이 60만명으로 육군을 홍보하고 국민과 소통하는창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군에 자녀를 보낸 부모님들과 친구들의 자유로운 소통공간을 제공하여 군 관련 정보공유를 통한 군에 대한 궁금증 해소와 공감사연 공유 등 군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 상승에 기여하였다.

[SNS 정보공유등 게시내용]



4) 신병 교육훈련 기간중 인터넷 편지쓰기 및 훈련병 사진 게시 서비스 시행

군에 입대한 인원들이 어떤 훈련을 받고, 어떻게 생활하는지에 대한 궁금증 해소를 위해 입대한 훈련병들의 사진 및 훈련일정 · 식단 · 수료식 일정 등의 군 복무에 대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전파하고 있으며,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한 편지쓰기 기능을 추가하여 국민들은 모바일을 통한 위문편지 작성으로 편의성이 증대되었으며 접수된 위문편지는 분류프로그램에 의거 일괄 출력되고 일일단위 개인에게 전달되도록 하여, 국민들에게 군에 대한 신뢰감 증대에 기여하였다.

| 향후 계획 |

모바일 앱 가입자가 '육군 가족'으로, 육군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창구 활용 가능하고, 각종 국방정책을 국민들에게 소개하는 역할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국민들에게 접근성 및 편의성을 보장하며 군 복무중인 장병들과 군인가족들에게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현역군인 · 군인가족 · 국민들이 활용하는데 유용한 모바일 앱으로 발전 예정임

[주요 시스템 반영 내용]

- 제대군인 취업지원 안내 서비스
- 유해 발굴사업 유전자 채취 홍보안내
- 장병들을 위한 무료교육 콘텐츠(어학 / 자격증)
- 군인가족 복지서비스 공유 채널
- 더 캠프 모바일 앱을 활용한 전자증명서 발급서비스

「경미범죄심사위원회」 확대 운영 으로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 방지

| 추진 배경 |

프랑스의 대문호 빅토르 위고의 소설 ‘레미제라블’은 우리에게 장발장으로 많이 알려진 작품이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던 장발장은 굶고 있는 조카를 위해 빵을 훔치다 19년간 감옥살이를 하게 된다. 법의 냉엄한 현실 앞에 섰던 장발장은 출소 이후에도 전과자란 이유로 사람들의 질시와 외면을 받고 오갈 데 없는 처지가 된다. 단지 배고픔을 못 이겨 빵 한 조각을 훔쳤을 뿐인데, 긴 세월 징역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남들처럼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기회조차 박탈당한 것이다.

현실에서도 아기에게 먹일 분유를 훔치다가 입건된 엄마의 사례나, 폐지를 줍다 절도죄로 입건된 할머니의 사례와 같은 현대판 장발장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경찰관은 이러한 사람을 접할 때 피의자가 잘못을 뉘우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싶지만, 동일한 잣대를 공정하게 적용해야 하는 것이 책무이기에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

경기침체 장기화 등으로 생계형 범죄가 늘어나면서 획일적인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며, 한순간의 실수로 평생 전과자로 사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목소리가 비등하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15년부터 여러 사람의 심사와 숙의를 거친 후 처분을 감경하는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 (운영현황) △'15년 17개서 → '16년 140개서 → '17년 184개서 → '18년 254개서

| 제도 개요 |

1) 경미범죄심사위원회 구성

경찰서장에게는 즉결심판 권한이 있다. 일반적인 범죄는 경찰 수사를 거쳐 검찰에서 기소되고 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하지만, 경미한 범죄의 경우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따라 경찰서장이 검찰 단계를 생략하고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범죄사실이 경미하고 개선의 정이 현저할 경우 형사입건하지 않을 수도 있다.(일명 훈방) 하지만, 자의적 집행과 온정주의 논란 때문에 제대로 적용하기 어려웠다.

이점에 착안하여 생계형 범죄 등 경미한 형사범에 대하여 경찰서장 및 외부 자문위원으로 ‘경미범죄심사위원회’(5~7인)를 구성하고, 심사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에 따라 감경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감경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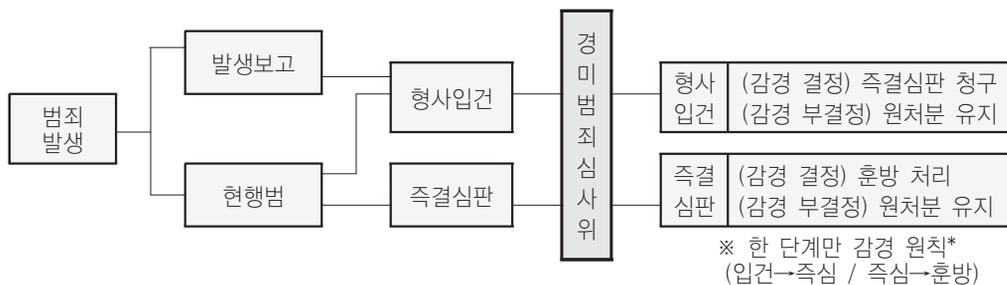
2) 요건과 절차

형사입건 되거나 즉결심판에 청구된 사건 중 피해정도가 경미하고, 피해를 변상하였거나 회복가능성이 있을 때, 범인이 미성년자이거나 60세 이상으로 고령자이고 최근 3년간 같은 범죄로 형사 입건된 기록이 없을 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원회 심사여부를 결정한다.

경찰서 각 부서에서는 평소 처리하는 사건 중 감경이 필요한 사건이 있는지 검토 후 생활안전과에 통보하고, 생활안전과에서는 월 1회 각 부서에서 접수된 사건을 총괄하여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 상정한다.

대상자의 감경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범죄의 경미성 뿐만 아니라 피의자의 가정환경과 개선의 여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사건 담당 경찰관과 심사 대상자가 출석하여 소명할 수 있는 기회도 부여하고 있다. 위원회 심의결과 타당성이 인정되면 형사입건된 사건은 즉결심판으로, 즉결심판은 훈방으로 한 단계씩 감경한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심사 절차]



| 추진 성과 |

'15년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최초 도입한 이래 총 14,086명을 심의하여 13,250명의 처분을 감경하였다.(선처비율 94.0%)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운영 실적]

(단위: 명)

	처분	총계	형사입건	즉결심판
2015~ 2018.9월	계	14,086	8,699	5,387
	처분감경	13,250	8,308	4,942
	선처비율	94.0%	95.5%	91.7%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일반 형사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받을 경우 전과 기록이 남지만, 즉결심판을 거친 벌금형은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다. 즉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통해 감경 받으면 처벌은 받을지라도 사회생활에는 지장을 받지 않는 것이다. 또한 즉결심판은 일반 형사사건에 비해 절차가 복잡하거나 장시간을 요하지 않아 피의자가 사회생활로 조속히 복귀하는데 용이한 장점도 있다.

법원에서도 감경처분 된 대상자에게 대부분(86.4%) 벌금 및 선고유예를 선고하는 등 경미범죄심사위원회의 판단을 존중하고 있다.

연도	구분	합계(명)	법원의 결정			
			벌금형	선고유예	청구기각	기타 (과료, 무죄 등)
2017~ 2018.9월	인원(명)	6,491	4,247	1,364	96	784
	비율(%)		65.4%	21.0%	1.5%	12.1%

※ '15~'16년은 감경처분 이후 법원의 결정을 별도 집계하지 않아 데이터 없음

언론 또한, ‘현대판 장발장을 구제하는 제도’라며 호평하고 있으며, 기재부와 국회에서도 이를 확대 운영하는데 동의하고 있다.

※ (예산현황) '15년 시범운영 → '16년 4억 → '17년 5.2억 → '18년 5.5억

[주요 감경 사례]

- 피의자(62세, 여)는 요양병원 일용직으로, '18.4월 BYC 매장에서 여성용 팬티 3장(시가 6천원 상당)을 절취하여 형사 입건 됨 ⇨ △치매 시어머니와 몸이 아픈 남편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전과가 없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 형사사건에서 즉결심판으로 감경
- 피의자(50세, 남)는 폐지를 수집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기초수급대상자로, '18.4월 재개발지역 내 보일러 부속품 등 고철 3천원 상당을 절취 ⇨ △오른손가락 3개가 절단되어 지체장애 4급 판정을 받은 점 △피해가 경미하고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 형사사건에서 즉결심판으로 감경

| 향후 계획 |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3조(즉결심판의 청구) 등에 근거하여 운영하고 있다. 해당 제도가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만큼,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운영규칙(경찰청 훈령)」을 제정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절차의 공정성과 타당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아울러, 사안이 경미한 고소·고발 사건*은 즉결심판에 회부하고, 재차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 상정하는 등 적용대상도 확대할 계획이다.

- * 예) △일시적 분노에 의해 단순한 욕설을 하여 모욕으로 고소된 경우
△2시간 동안 차량을 가게 앞에 무단 주차하여 일반교통을 방해한 경우

수사민원 상담센터의 본격적인 시행으로 민원만족도 향상

| 추진 배경 |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 지인을 고소하기 위해 경찰서를 방문하면, 대부분 ‘민사사안이니 법원에서 민사소송 절차를 밟으라’는 말을 듣는다. 경찰은 형사사건만 처리하고 민사사건은 법원에서 담당한다고 하지만 민·형사가 무엇인지, 민사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민원인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경찰서를 찾았는데 마냥 억울하고 답답할 뿐이다.

한편, 상담과정에서 민사인지 형사인지 구분이 모호한 사건을 접수하게 되면 고소인의 일방적인 주장 때문에 범죄 혐의가 없는 피고소인을 범죄자로 간주하고, 경찰서에 불려 조사해야 하는 불합리적인 경우를 피할 수 없다.*

* 사기 피고소인 중 ‘기소의견’ 승치는 연간 30%수준에 불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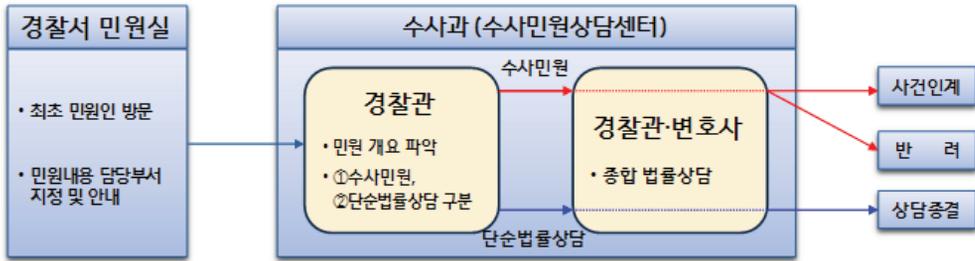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경찰은, 전문 변호사가 경찰서 내방 민원인에게 민·형사상 종합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소·고발 외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함으로써 민사사건의 무분별한 형사사건화를 방지하는 ‘수사민원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 '15.7월 경기북부 일산동부경찰서에서 최초 운영, '18. 10월 현재 86개 경찰서 운영 중

| 제도 개요 |

경찰서 수사민원 안내데스크에 전문 법률지식을 갖춘 수사관과 변호사가 합동 근무하면서 방문 민원인에 대해 1차적 상담을 실시한다. 상담결과에 따라 형사사건은 해당 수사팀에 인계하고, 민사사안은 변호사가 분쟁 해결에 적합한 민사 절차와 기관을 안내하고 종결한다.

[민원상담 절차]



전문변호사는 지역변호사회 등을 통해 위촉하고, 경찰서별 실정에 맞게 평일 일과 중 수사민원인이 가장 많은 시간대에 경찰관과 합동으로 민원 상담업무를 수행한다.

[주요 상담 사례]

- 탈북 여성이 교제하던 남성으로부터 데이트 폭력(협박, 폭행)을 당하여 상담센터를 방문, 상담 경찰관과 변호사가 경찰 신변보호 요청 및 민사상 손해배상 구제방법 안내(18.3월, 서울 강북)
- 치과에서 제작한 틀니가 맞지 않아 환불 요청하였으나 거부하고 있다고 고소장 접수 요청, 민원인이 고령으로 민사 대처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변호사가 손해배상 청구서류 작성 도움 (17.9월, 서울 강동)

| 추진 성과 |

1) 대국민 만족도 제고

노인 등 사회적 약자 또는 법률 지식이 없는 민원인이 법률문제에 부딪힐 경우, 억울한 피해를 당하고도 제대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수사민원 상담센터는 이렇게 경찰관의 법률상담과 법률서비스에 소외됐던 사회적 약자에게 상담을 받을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변호사의 참여를 확대하여 상담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한편 실효성 있는 절차를 안내하여 민원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다.

실제로, 서울의 31개 경찰서에서 상담센터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민원인 234명 대상 설문 조사한 결과 △상담내용과 △경청·지원의지 등의 설문항목에서 93.3%가 만족한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상담센터가 설치된 대구 수성경찰서의 민원인 50명과 미설치 경찰서의 민원인 135명의 만족도를 비교한 결과 수성서의 그것이 현저히 높았다.

※ '17.7~11월, 대전대학교 수사민원 상담센터 운영성과 연구용역 진행

2) 불필요한 고소·고발 방지

전국 경찰서 수사민원 상담센터의 운영 전 후 사건처리 현황을 비교해보면, 고소·고발 사건의 반려율이 상승(37.1→38.2%)하고, 접수사건의 기소의견 송치 비율이 증가하였다. (32.9→35.6%) 이는 종합적·전문적 법률상담을 토대로 실질적인 피해회복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예전 같았으면 정식 사건으로 접수하였을 각하·불기소 사안을 상담 단계에서 종결했기 때문이다.

결국, 무고한 피고소인이 경찰서에 출석해야 하는 불합리한 경우가 줄어들고, 경찰은 불법사금융, 전화금융사기 등에 수사력을 집중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다.

| 향후 계획 |

그간의 운영성과를 살펴볼 때 「수사민원 상담센터」는 경찰서를 방문한 민원인들의 호응을 얻는 것은 물론 상담에 참여한 경찰관 및 변호사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 86개 경찰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담센터를 전국 1급지 145개 경찰서로 확대 운영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전담인력 △관련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또한,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설치와 조직,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경찰청 훈령으로 규정하는 한편, 열정과 실력을 갖춘 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도록 지역변호사회와 적극적으로 협업할 것이다.

해외직구 반품할 때 관세환급, 포기하지 마세요~

| 추진 배경 |

소개팅에 나갈 때 입으려고 해외직구를 통해 미화 800달러인 원피스를 구매한 A씨는 옷을 입은 모습을 상상하며 마냥 들떠 있다. 택배기사로부터 원피스를 받고, 설레는 마음으로 옷을 입어본 순간, 서양인 기준 크기인 것을 확인하지 못했는지 옷이 너무 커서 거실 바닥을 쓸고 다닐 정도다. 해외 판매자와 실랑이 끝에 겨우 옷을 반품하고 물품대금은 환불 받았는데, 생각해보니 수입신고할 때 납부한 관세는 어디서 어떻게 돌려받아야 하는지 난감하다.

최근 전자상거래의 발달로 인해 인터넷 쇼핑물 등을 통해 외국에서 직접 물품을 주문, 구매하는 방식 이른바, ‘해외직구’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A씨 사례처럼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국내 소비자의 단순 변심, 사이즈 상이 등으로 인한 반품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과연, A씨는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을까?

| 제도 개요 |

2016년 관세법 제106조의2(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 조항이 신설됨으로써 종전에는 물품의 하자 등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이 수입된 경우에만 납부한 관세가 환급되었으나, 자가사용물품의 경우에는 하자가 없더라도 구매자의 단순 변심에 따른 반품의 경우에도 관세환급이 가능하게 되었다.

하지만, 관세 환급을 받기 위해 필요한 절차적인 측면에서는 여전히 엄격하게 운용되었다. 특히, 관세법 시행령 제124조의2(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사용물품에 대한 관

세 환급)에 따라 관세환급을 신청할 때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필수서류로 수출신고필증을 요구하고 있으나, 일반 소비자의 경우 세관장에게 수출신고하는 규정을 알지 못하여 수출신고 절차 없이 직접 반품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따라 환급기회를 상실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해외직구 물품을 반품할 때 관세환급제도 운영에 대해서 국민신문고를 통한 불만 제기 등 민원마찰도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관세청은 이러한 해외직구 소비자의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관세 환급제도를 국민의 입장에서 어떤 방향으로 개선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하였다.

Ⅰ 추진 내용 Ⅰ

관세청은 '18년 4월 10일부터 해외직구로 수입한 개인 자가사용물품에 대해 수출신고를 못하고 반품한 경우에도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환급요건을 완화하는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였다.

이 지침 시행 이전에는 단순변심, 사이즈 상이 등에 따라 해외직구한 물품을 반품하는 경우,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한 후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하여야만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어 번거로웠다. 그러나, 해당 지침 시행 이후부터는 수출신고를 미처 하지 못하고 국제우편 등으로 반품한 경우에도 운송 확인서류, 반품 확인서류 및 환불영수증으로 관세환급이 가능해졌다. 올해 시행중인 환급요건 완화는 관세환급을 받은 직구반품 물품의 대부분(85%)이 미화 1,000달러 이하인 점을 감안하여 적용대상을 물품가격 미화 1,000달러 이하로 정하였다.

[환급요건 前·後 비교]

현 행	개 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품환급 수출신고절차 필수 ○ 증빙서류 - 수입신고필증 ⊕ 수출신고필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액환급 수출신고 생략 인정 ○ 증빙서류 - 수입신고필증 ⊕ - 수출신고필증 또는 수출감응서류(송품장, 반품확인서류, 환불영수증)

해외직구물품 환급제도 개선은 관세환급액이 소액인 경우에도 정식 수출신고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에게 불편함이 크고, 규정을 알지 못해 수출신고를 누락하는 경우도 많을 수 있다는 점을 적극 고려하고, 해외직구로 구입한 물품이 반품·환불되어 국내에 수입물품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관세를 부담하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조세환급법령은 세수일실을 방지하기 위해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간 직구 반품 환급도 수출신고필증 제출이 필수 요건이었으나, 관세청이 시행한 환급제도 개선은 해외직구 소비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해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반품확인 증명 자료를 폭넓게 인정한 것이다.

관세청의 이번 제도개선은 국민들이 수출신고 없이도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연간 약 4억원의 관세환급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관세사 등에 지불하는 건당 약 3만원의 수출통관 대행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어 약 3억원의 납세협력비용 절감효과를 가져와 관세행정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가 더욱 높아지는 전환점이 되었다.

관세청은 이러한 제도개선 노력을 인정받아 올해 10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개최한 '2018년 국민생활밀접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사례명 : 직구 반품시 관세환급, 포기하지 마세요)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언론보도) KBS, SBS 등 총 33개 언론사 보도]

일시	언론사명	제목
'18.4.9.	KBS 9시 뉴스 (뉴스 인터뷰)	어려운 해외직구반품, 관세환급 쉬워진다
'18.4.9.~	SBS, 동아일보, 연합뉴스TV 외	1천달러 이하 해외직구 반품 시 수출신고 안해도 관세환급 가능



KBS 9시 뉴스('18.4.9)



동아일보 ('18.4.10)



'18년 국민생활밀접 민원제도개선 대통령상 수상 ('18.10.25)

| 향후 계획 |

해외직구 반품에 따른 관세환급 신청은 전국에 소재한 가까운 세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 또는 팩스를 통해 환급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가능하며, 관련 문의는 관세청 심사정책과(042-481-7754/7863)로 하면 된다. 아울러,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직구반품환급'으로 조회하면 다수의 카드 뉴스가 제작되어 있으니 활용이 가능하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생계 곤란 국가유공자 채무부담 완화

| 추진 배경 |

국가보훈처는 새 정부 출범 이후 ‘따뜻한 보훈’ 정책을 실시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들이 저소득, 질병 등으로 생활이 어렵거나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힘쓰고 있다.

대표적인 따뜻한 보훈 정책으로는 2018년부터 시행된 ‘생계 곤란 국가유공자 채무부담 완화’ 제도가 있다. 이 제도의 목적은 국가보훈처에서 실시하는 ‘나라사랑 대출’을 받은 국가유공자가 과다 채무로 인해 고통 받지 않게 방지함으로써 ‘소외 계층의 보호’라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뿐만 아니라,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줘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제도 개요 |

국가보훈처는 1962년부터 시행된 ‘군사원호대상자 정착대부’를 시작으로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과 자립지원을 위한 장기·저리 대출인 ‘나라사랑 대출’을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3만 명 이상의 국가유공자(제대군인 포함)가 약 2,100억원 규모로 대출을 지원받고 있다. 특히, 나라사랑 대출을 받아 취득한 주택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지는 등 국가유공자의 주거 기반 마련에 나라사랑 대출이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

[나라사랑 대출 조건표]

구분		한도액(만원)	연이율(%)	상환기간(년)
주택자금	주택 구입(분양)	3,000~6,000	2(3)	20
	전(월)세 임차	1,500~4,000	2(3)	7
	주택 개량	600	3(4)	7
생업자금	사업(창업)	2,000	3(4)	7
	생활안정(가계)	300	2(3)	3
농토구입자금		2,500	3(4)	10

* 괄호안은 제대군인에 해당

| 추진 내용 |

1) 생계 곤란 국가유공자에 대한 적극적인 채무 감면 실시

2018년부터는 나라사랑 대출을 받았으나, 저소득(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80세 이상의 고령, 희귀·난치성 또는 중증질환 등으로 채무를 상환하기 어려운 소외계층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채무감면을 실시하고 있다(다만, 채무감면은 국가유공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국가재정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철저한 재산·소득조사로 상환능력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시행).

이는 채무감면을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후 상속인이 없거나 파산·면책을 받은 경우 등에만 매우 제한적으로 실시하던 기존의 관행을 개선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감면대상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이다.

2) 일시적으로 채무 상환이 어려운 경우, 상환 유예 조치

현재 나라사랑 대출을 받은 국가유공자가 재해, 실직, 폐업 및 질병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일정기간(1~3년) 동안 대출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상환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또한 2018년 5월부터는 법령 개정을 통하여 채무상환이 유예된 기간 중에 이자도 부담하지 않도록 개선하였는데, 이에 따라 국가유공자가 상환유예 기간 중에 이자를 납부하여 유예 전보다 변제할 총 채무금액이 늘어났던 기존의 비합리적인 부분이 개선되었다.

3) 연대보증인 제도의 대체 방안으로 ‘보증보험제’ 도입

기존에는 국가유공자가 나라사랑 대출을 받기 위해 부동산 등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연

대보증인을 세워야했다.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국가재정으로 지원하는 대출의 특성 상 담보 제공이 불가피한데, 그간 담보제공이 불가능한 저소득 국가유공자는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하는 어려움을 겪어왔다.

국가보훈처는 이러한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2018년 11월에 「보증보험제」*를 실시하였으며(전세자금부터 시작해 2019년에는 주택구입·사업·생활안정자금에도 확대 적용할 예정), 이를 통해 저소득 국가유공자가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않아도 소정의 보증료(대출금액의 0.05~1%)만 부담하면 나라사랑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 대출자의 채무부실(연체)로 발생하는 위험을 보증기관이 대신 부담하는 제도를 의미함

| 향후 전망 |

국가보훈처는 2018년 생계곤란 국가유공자 75명의 채무 8.2억원을 감면함으로써 총 184명(11억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였다.

그리고 지진 피해, 암 투병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 64명(10억원)에게 상환유예를 통하여 채무부담을 완화했으며, 매년 이와 비슷한 규모의 국가유공자가 상환유예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기존에 담보가 없어 연대보증인을 세워야했었던 연간 약 3천명의 국가유공자는 보증보험제를 이용해 연대보증인 없이도 나라사랑 대출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채무부담 완화 주요 사례]

- 치매를 앓고 있어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고령의 국가유공자 A씨는 생활자금 등으로 받은 나라사랑 대출이 10년 이상 연체되어 1,000만원에 달하는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A씨는 건강이 나빠지기 전까지 조금이라도 대출금을 갚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이제는 매달 들어가는 간병비와 병원비도 자녀들이 부담해야 될 정도로 도저히 채무를 변제할 방법이 없다. 국가보훈처는 이러한 A씨의 사정을 파악하여 재산·소득조사를 통해 변제능력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A씨의 채무를 전액 감면하였다.
- 경북 포항에 거주 중인 국가유공자 B씨는 지난해 11월 지진으로 거주하던 주택이 완파되는 피해를 입었고, 지자체가 마련한 재난대피소에서 지내게 되었다. 이에 따라 생활이 어려워진 B씨는 지자체에서 '재난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국가보훈처에 제출하였고, 약 2,400만원의 나라사랑 대출 상환을 유예할 수 있었다.
- 폐암 환자인 국가유공자 C씨는 항암·방사선 치료 등으로 인해 매일 힘든 투병생활을 이어나가고 있다. C씨는 나라사랑 대출의 상환을 유예하기 위해 국가보훈처에 진단서를 제출하였고, 약 1,300만원의 채무상환이 유예되었다.

매장문화재로 인한 국민불편 개선 추진

| 추진 배경 |

1) 매장문화재 보호 제도

매장문화재는 땅 속이나 바다 밑, 건조물 등에 묻혀 드러나지 않은 문화재를 말한다. 이러한 매장문화재는 선사시대를 증거하는 실체가 되기도 하고, 문헌 등 기록으로만 남아 있는 역사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소중한 문화유산이다. 공주 석장리 유적을 통해 우리나라에 구석기인들이 살았던 사실을 알게된 것도, 백제인들의 뛰어난 예술감각을 백제금동대향로를 통해 현대인들이 생생히 느껴볼 수 있는 것도 이 문화재들이 매장된 형태로 온전히 보존되어 왔기 때문이다.



백제금동대향로

이러한 매장문화재는 한번 발굴하면 원래 상태로 되돌릴 수 없어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학술목적, 유적정비, 건설공사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발굴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온전하게 보호하여 미래 세대에게 전해주는 것이 우리 세대의 임무이다.

2) 매장문화재 조사 제도로 인한 국민의 불편

발굴조사를 실시하는 예외적인 사유 중 건설공사로 인한 경우는 국민들이 매장문화재 조사 제도를 사유재산권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제도 또는 개발의 걸림돌이라고 인식하는 가장 큰 이유이다. 건설공사를 시행하려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공사 착공 전에 지표조사 의무, 발굴조사 의무를 부과하고 그 비용까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을 과도한 제약이라고 여겨 많은 민원을 제기한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이러한 의무

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경우도 있었다(2회, 모두 합헌 판결)

발굴조사 완료 후 조사보고서까지 발간하여 조사내용을 기록으로 남기면 대부분의 경우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하지만 연 20~30여건은 조사된 매장문화재의 중요도가 높아 보존조치되어 사업을 시행할 수 없게 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경우는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제약이 더욱 큰 대표적인 사례이다.

| 제도 개요 |

1) 매장문화재 조사 제도와 국가 지원 현황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면적이 3만㎡이상인 건설공사의 사업시행자는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을 통하여 지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지표조사는 일정 지역안에 유적·유물(즉, 매장문화재)의 분포를 지형을 훼손하지 않고 육안, 문헌, 주위환경 등으로 판단하여 조사하는 방법이다. 사업시행자는 지표조사 결과매장문화재가 존재할 가능성이 희박하면 사업을 시행하도록 통보받는다. 만약 매장문화재 존재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 정도와 공사내용에 따라 공사현장에 입회관이 참관하는 입회조사, 사업면적의 2퍼센트를 굴착조사하는 표본조사, 사업면적 10퍼센트를 굴착조사하는 시굴조사, 사업면적 전체를 굴착조사하는 정밀조사를 이행하도록 한다.

이러한 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인데, 국민의 부담 경감과 조사비용 회피에 따른 매장문화재의 고의적 훼손을 막기 위해 일정규모 미만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국가가 그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있다.(발굴조사 비용지원은 2004년부터, 지표조사 비용지원은 2015년부터 실시)

또한, 발굴조사 이후 보존조치로 인해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토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이 2011년 시행되었으나 2018년까지 예산미확보로 매입을 실시하지 못하였다.

2)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관리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결과 매장문화재 유존가능성이 높은 지역, 발굴조사 결과 매장문화재가 보존조치된 지역, 문화유적분포지도에 따라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표시된 지역 등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으로 관리하며 문화재GIS시스템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하고 있다.

그런데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 건설공사를 하는 경우는 사업면적에 관계없이 매장문화

재 보호를 위한 협의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시행, 입회조사, 발굴조사(표본 시굴 정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유존지역은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는 중요한 정보이다.

그런데 이러한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의 신속성과 정확도에 대한 문제가 2017년 YTN 기획보도(소리없는 난개발...매장문화재 SOS 지도, 2017.8.31.외, YTN) 및 국회 등을 통하여 심각하게 제기되었다.

| 추진 경과 |

1) 매장문화재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부담 경감 추진

매장문화재 조사비용 및 보존조치로 인한 사업미시행의 국민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문화재청은 2018년 조사비용 지원 확대와 보존유적 토지 매입예산 확보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였다.

그 결과 발굴조사 비용을 현행 연면적, 대지면적 기준을 충족하면 지원하던 것에서 대지면적 기준만 충족하면 지원하는 것으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고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2019년 예산증액분을 확보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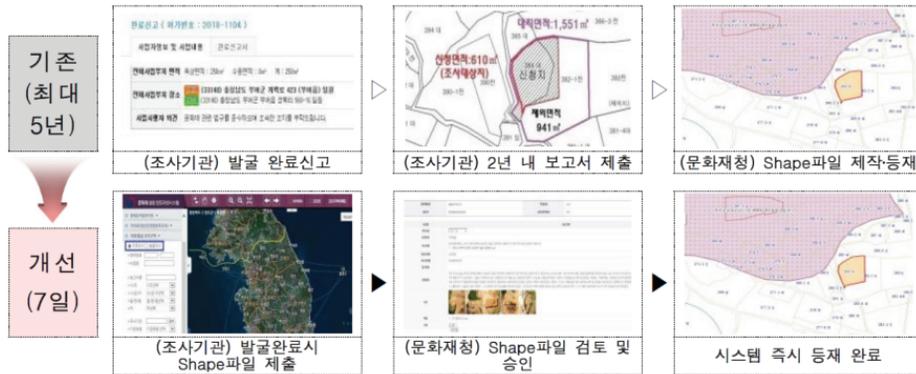
[소규모 발굴조사 지원범위 확대(매장문화재법 시행령 개정)]

2018년 까지	2019년 부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독주택, 개인사업자 대지면적 : 792㎡, 연면적 : 264㎡ ○ 농어업시설 및 공장 대지면적 : 2,644㎡, 연면적 : 1,3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독주택 대지면적 : 792㎡, 연면적 : <폐지> ○ 농어업시설 및 공장 대지면적 : 2,644㎡, 연면적 : <폐지>

보존조치로 사업미시행된 토지에 대해서는 그간 토지매입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실시하지 못했던 것을 2018년 최초로 도입된 국민참여예산 제도를 통해 2019년 매입 예산을 확보하여 국민의 부담을 크게 경감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성과는 국민이 불편을 겪어왔던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 국민의 발의와 참여로 개선을 이루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

2)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관리 고도화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 대해서는 먼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서비스 절차를 획기적으로 단축하여 정보 제공의 신속성을 크게 개선하였다.



기존에는 조사완료 후 조사기관이 제출한 보고서 상의 유존지역을 문화재청에서 용역사업으로 GIS시스템에 등재하였다. 보고서 제출기한 최대 2년에 용역사업으로 등재하기 위한 기간까지 합하면 최대 5년까지 소요되던 상황이었다. 2018년 7월 이를 개선하여 조사기관이 조사완료 신고를 할 때 유존지역 정보를 GIS시스템에 등재가능한 양식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문화재청이 승인하면 즉시 등재되도록 하였다.

또한 유존지역 정보의 정확성 제고를 위하여 유존지역 기준안을 마련하고 유존지역 정보를 현행화하였다. 정보 현행화는 기존의 부정확한 정보를 바로 잡고, 미등재된 정보를 새로이 추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졌는데 미등재 보고서 등재, 문화유적분포지도와 GIS시스템 비교 수정, 지자체 자체제작 자료의 GIS시스템 반영, 부정확하게 설정되었던 성곽 유존지역 범위 재설정 등이 주된 내용이다.

| 추진 성과 |

1) 매장문화재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부담 경감 추진

소규모 매장문화재 발굴비용 지원확대에 따라 2019년 수혜건수는 2018년 대비 15.6%증가해 국민의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 2018년 연 320여건, 121억원 지원 → 2019년 연 370여건, 146억원 지원 예정

또한 보존유적 토지 매입은 문화재와 관련한 제약이 많은 고도지역에서 우선 실시해

2019년 20여건을 매입할 예정이다. 사업시행이 중단된 토지를 국가가 최초로 매입하여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게 되어 국민의 재산권 부담을 크게 경감할 것으로 기대된다.

2)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관리 고도화

매장문화재의 신속성,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유존지역 개선 추진 결과 국민은 사업시행 예정지에 대해 더 빠르게 더 정확한 유존지역 정보를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지자체 자료 반영(가평 읍내리·대곡리 유적)] [성곽 유존지역 범위 재설정(양양읍성)]



특히 유존지역 현행화로 일부지역은 유존지역에서 제외되어 오류로 인한 불합리한 제약을 해소할 수 있었고, 유존지역임에도 설정되지 않았던 지역에 대해서는 매장문화재를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 향후 계획 |

매장문화재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매장문화재 제도로의 개선을 위한 문화재청의 노력은 이제 첫걸음을 떼었다.

먼저 조사비용 지원확대와 관련해서는 정밀조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장문화재의 분포를 확인하는 성격이 강한 지표조사와 표본, 시굴조사까지 국가가 책임진다는 의지를 가지고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의 지원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국비지원 서비스의 품질 향상에도 힘써 발굴사업 현장인력 확충 및 접수방법 개선 등으로 2018년 현재 평균 50.6일인 대기일수를 30일 미만으로 대폭 단축할 예정이다.

[매장문화재 조사지원 확대 계획]

구분	'19년	'20년	'21년~
지표조사	3만㎡ 이하	30만㎡ 이하	모든 지표조사
발굴조사	대지면적 제한	대지면적 제한	모든 시굴조사 (정밀조사는 대지면적 제한)

보존조치 유적과 관련해서는 사업미시행 토지를 계속 매입하는 한편, 현재는 보존조치 유적 지정사유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제공이 없는 문제점을 개선하여 2019년부터는 지정사유에 대한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고 보존 범위 기준을 마련하여 국민의 제도 수용도와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등 제도의 투명성 향상을 위하여 노력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장기 발굴이나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발굴현장 공개를 의무화하고 매장문화재 활용 교육 프로그램의 품질을 제고하여 일반인과 학생이 매장문화재에 쉽게 접근하여 살아 있는 역사교육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로써 매장문화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여 국민이 매장문화재로 인해 재산권을 제약받는 객체가 아니라 매장문화재 보호의 주체로 활동할 수 있는 선순환 체계를 만들고자 한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매장문화재 보호라는 공익과 국민의 재산권 행사라는 사익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는 합리적인 제도로의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할 예정이다.

자가치료용 마약류 수입 제한 규제 개선

| 추진 배경 |

자가치료를 위한 의료용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은 본인이 직접 휴대하여 입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국내 수입이 허용되지 않아 국내에 적절한 대체치료 수단이 없는 환자가 해외에서 허가된 의약품을 치료제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직접 출국해야 하는 등 현실적 한계가 존재하였다.

또한 마약류가 아닌 의약품의 경우 수입요건 확인 면제대상 물품 추천제도에 따라 한국 희귀·필수의약품센터 등에서 수입하여 자가치료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마약류는 동 제도에 적용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마약류를 자가치료용으로 수입하여 희귀·난치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가 해외에서 허가된 마약류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 제도 개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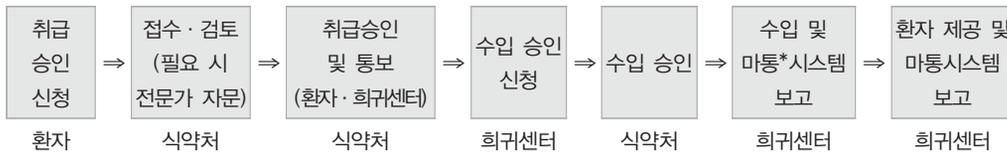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6호에 따라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도 식약처의 승인을 받은 경우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서 승인을 받아 취급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동 조항에 취급승인 대상을 추가할 경우 환자도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다.

| 추진 내용 |

희귀·난치질환자의 자가치료용 마약·향정 수입절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6의2의 개정을 통해 마련되었으며 '18.10.31.부터 시행하고 있다. 환자가 식약처로부터 취급승인을 받은 후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 신청하면 센터에서 해당 의약품을 수입하여 환자에게 줄 수 있다.

취급승인 신청을 위해 환자는 마약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제2호의2에 따라 ▲신청서(별지3호서식), ▲진단서(의약품명, 1회 투약량, 1일 투여횟수, 총 투약일수, 용법 등 명시), ▲진료기록, ▲국내 대체치료수단이 없다는 의학적 소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하고, 취급승인서를 받은 후 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 수입신청을 해야 한다.

[자가치료용 마약류 취급승인 및 수입 절차]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18.5.18.시행): 마약류취급자 또는 취급승인자의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의 전체 취급 상황(수출입·제조·판매 등)을 보고·관리하는 시스템

| 향후 전망 |

자가치료용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수입 제도의 도입으로 소수의 희귀·난치질환자들이 국내에서 허가되지 않은 마약류 의약품을 신속히 투약·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환자의 치료기회가 확대될 수 있다.

제 4 장

조직내부 혁신과 청렴문화 확산

중소벤처기업부 행정혁신

| 추진 배경 |

중소벤처기업부는 수직적 계층 조직을 수평적 학습조직으로 전환하여 최고의 서비스기관으로 거듭나고자 정책, 조직, 업무, 인사의 4가지 영역에서 강도 높은 행정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행정혁신의 방향성]

구 분	기 준	개 편	목표
제안	상명하복식 구조 (Top-down)	상향식 제안 활성화 (Bottom-up)	상시 혁신 하는 벤처형 조직
학습	지시사항 대응	창의적인 열정 조직	
협업	혼자 일하는 폐쇄형 인재	협업하는 개방형 인재	
데이터	점증주의 행정	과학행정, 성과주의 제로베이스 행정	

| 추진 내용 |

1) 데이터 기반 행정혁신

우리 부 전체적인 데이터 축적과 관리 역량을 강화하여 서비스기관화, 일관지원체계를 앞당기고 수요자 중심의 행정으로 변화하기 위함이다. 데이터 기반 정책 혁신의 4대 추진 방향은 다음과 같다. ① 평균 통계 중심의 정책 데이터 접근 방식을 넘어 정책대상 분포에 따른 현황과 수준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실시한다. ② 공급자 중심 행정에서 벗어나 정책

수요자인 중소기업을 다각도로 분석하고자 정책 대상 관련 정보 수집 확충 및 신규 지표를 생산·개발한다. ③ 철저한 정책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정책 개선, 신규정책 수립, 기존사업 평가 등에 피드백이 되는 행정체계를 구축한다. ④ 과학 행정으로 학습조직을 강화하여 내부 직원들의 데이터 분석 및 활용 역량을 강화한다.

2) 상향식 소통 강화

상향식 소통 강화를 위한 조직 혁신의 대표 사례는 「혁신제안제도(아무말대잔치) 운영(총리 업무혁신 우수사례, 2018년 정부업무보고)이다. 전 직원이 중기부 내부 게시판에 익명으로 혁신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제안하는 방식이다.

3) 수평적 문제해결조직을 위한 업무 혁신

수평적 문제해결조직을 위한 업무 혁신은 집단적 의사결정, 스크럼마스터가 대표적 사례이다. ‘집단적 의사결정’은 모든 간부가 참여하여 논의하고 스크럼 방식으로 월스톱 의사결정을 함으로써 정책결정의 칸막이를 없애고, 정보 공유 활성화 및 집단지성의 활용을 극대화한다. ‘스크럼마스터(SCRUM MASTER)’는 민간의 팀 프로젝트 추진 방식인 스크럼 제도를 제도·인프라 구축·개선, 종합대책 수립·실행 등 업무에 적용하여 시간과 인력을 절감하고, 업무 성과를 제고 하고 있다.

4) 정책공유회·인사드래프트 도입

마지막으로 인사혁신 분야에서는 수요자 기반의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을 위해 정책공유회(Job Posting), 인사드래프트를 도입하였다. 정책공유회는 주요 직위에 보직 희망자를 공모하여 최적의 직원을 임명하기 위해 시행중인 제도이다.

| 추진 성과 |

1) 점증주의 방식 → 성과주의 행정

데이터 기반 행정 추진을 통해 기존 점증주의 방식에서 제로베이스(Zero-Based)·성과주의 행정으로의 변화를 도모하고 있다. 데이터를 통한 과학적 분석을 통해 기존 사업의 지속 여부 등을 결정한다. 구체적 사례로는 ‘전통시장 통합지수’ 개발을 통해 기존의 설문조사 방식을 시계열 생산이 가능한 정량지표로 변경한 것과 전통시장 활성화 효과 조사시 휴대폰 신호·와이파이 등 빅데이터를 활용한 유동인구 조사로 지표 생산 방식을 변경한 것이 대표적이다.

2) 상향식 소통 강화

‘아무말대잔치’ 시행 6개월 여만에 550건의 혁신 제안이 이루어지는 등 중소벤처기업부 다수 구성원의 공론의 장으로 정착되고 있다. 익명으로 운영되어,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직원들의 제안을 소관부서에서 검토·시행하고 있다.

[‘아무말대잔치’ 현황('18.12.20. 기준)]

	제안수	조회수	댓글수	‘좋아요’ 수
총계	735	640,857	5,073	15,920

3) 스크럼마스터·정책책임관 운영

중소벤처기업부는 제도·인프라 개선, 특정규제 해소 등 프로젝트성 협업 업무(40개)의 핵심 담당자를 ‘스크럼마스터’로 지정하였다. 또한 제도·인프라 관리, 소통채널 운영 등 주기적 점검이 필요한 업무(45개)의 담당자를 ‘정책 책임관’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4) 수요자 기반의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운영

정책공유회를 도입하여 기존의 연공서열식 인사를 타파하고 관리자급의 주요 직위에 희망자를 공모하여 공개검증을 실시하고 있다.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총 16회의 정책공유회를 개최하였고 46개 간부급 직위를 충원하였다. 또한 인사 드래프트 시스템을 통하여, 사용자 위주의 관행적 인사 방식에서 직원수요와 부서 희망을 매칭하는 수요 기반의 인사 운영을 추진하고 있다. 2018년 4월 정기 인사시 219개 직위에 대한 드래프트 방식을 최초 도입한 바 있다.

| 향후 계획 |

상기의 행정혁신 추진을 통하여, 중소벤처기업부는 제안이 넘치는 조직·상시 학습하는 조직, 협업이 일상화된 조직, 데이터 기반의 과학 행정 조직으로의 변화를 추진 중이다. 궁극적으로는 내부 프로세스 혁신을 통하여 국민의 수요에 즉각 대응하는 벤처형 조직으로 거듭나려 하고 있다.

민간분야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협약 체결

| 추진 배경 |

그동안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는 핵심주역으로서 어려운 여건에서도 경제 활성화와 신규일자리 창출,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 앞장서왔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국가발전 기여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는 OECD회원국 중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으며, 중소기업 지원사업 수행과정에서 갑질, 채용비리, 금품수수, 청탁, 성희롱 등의 위험요소가 존재하여 국민들로부터 부패 취약분야로 인식되는 등 중소기업 분야의 청렴 문화 확산이 필요하다. 또한, 2018년 4월 18일 제2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문재인정부의 청렴사회는 공식사회 뿐 아니라 민간영역으로 확산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와 같은, 국내·외 상황에서 중소기업 분야의 청렴 선진화를 위해서는 반부패 활동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에 공감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중소기업 분야의 깨끗하고 투명한 청렴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중기부 산하기관, 중소기업 직능단체 등 민간단체와 함께 ‘중소기업분야 청렴실천 협약’을 지난 9월 28일 체결하였다.

| 협약 개요 |

1) 목적

중소기업분야 청렴실천 협약은 중소기업 지원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단체들과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깨끗하고 투명한 중소기업 지원환경을 조성하여 국민과 사회로부터 도덕적으로 신뢰받고 더 나아가 중소기업 성장을 목적으로 한다.

2) 협약 대상

이 협약의 대상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나뉘며, “공공부문”이라 함은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속 산하기관을 말하고, “민간부문”이라 함은 공공기관 이외의 중소기업 직능단체를 말한다.

3) 역할

협약 기관 공동으로 중소기업계가 힘을 합쳐 부패방지 체제 개선, 청렴도 제고, 직원 윤리 강화, 청렴교육 실시 등 한차원 높은 청렴활동 전개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청렴 문화를 확산한다.

| 추진 경과 |

1) ‘중소기업 분야 청렴실천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중소기업 분야 청렴 협약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및 산하기관과 직능단체의 반부패 담당자 대상으로 “청렴실천 실무협의회” 구성하고 지난 2018년 6월 4일에 회의를 개최하였다. 실무협의회를 통해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 33개 기관과 중소기업 직능단체 5곳이 협약에 참여하기로 하였다.

[협약 참여기관]

- 산하기관(33개) :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진흥공단, 중소기업중앙회,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진흥원,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주)중소기업유통센터, (재)중소기업연구원, 한국벤처투자(주), (주)SBC인증원, (사)한국창업보육협회,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사)한국산학연합회, 공영홈쇼핑,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 직능단체(5개)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벤처기업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 실무협의회 개최 사진



2) ‘중소기업 분야 청렴실천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중소기업 분야 청렴협약을 기관중심으로 청렴활동을 실천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분야 청렴협약 실천협의회’를 구성(18.7)하였다. 협의회는 중기부 감사관, 단체의 상임부단체장을 위원으로 위촉하였고, 협약의 세부적인 발전방안 마련과 협약이행의 점검·확산 등 협약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고 분기별로 정례회의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3) ‘중소기업 분야 청렴실천 협약식’ 개최

지난 2018년 9월 28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협약 당사자인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산하기관 33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등 직능단체 5개 기관 등 39개 기관이 모여 “중소기업분야 청렴실천 협약식”을 개최하였다. 협약식에서는 참여기관별로 협약 이후 세부 추진 계획을 마련하고 분기별로 협약실천 현황을 점검하기로 하였다.

※ 협약식 개최 및 협약서 사진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중소기업 분야 청렴실천 협약서

전 문

그동안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는 핵심 주역으로서 어떠한 여건에서도 경제 활성화와 신규일자리 창출, 사회 공헌 활동에 적극 앞장서왔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국가발전 기여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부패인식 지수는 OECD회원국 중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으며, 중소기업 지원사업 수행과정에서 갑질, 채용비리, 금품수수, 청탁, 성희롱 등의 위법요소가 존재하여 국민들로부터 부패위약분야로 인식되는 등 중소기업 분야의 청렴 문화 확산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국내·외 상황에서 중소기업 분야의 청렴 선진화를 위해 서는 반부패 활동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에 공감하고, 국민으로부터

제1조(목적) 중소기업분야 청렴실천 협약은 중소기업 지원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단체들과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깨끗하고 투명한 중소기업 지원환경을 조성하여 국민과 사회로부터 도덕적으로 신뢰 받고 더 나아가 중소기업 성장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공공부문"이라 함은 중소기업부(이하 중기부) 및 소속 산하 기관 등을 말한다.
2. "민간부문"이라 함은 공공기관 이외의 중소기업 직능단체를 말한다.
3. "협약체결당사자"라 함은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을 대표하여 협약을 체결하는 대표자를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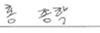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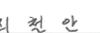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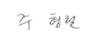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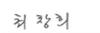
제3조(적용범위) 협약체결당사자는 협약을 제2조에 규정된 기관, 단체 등에 적용하도록 각 부문별 후속 합의를 추진한다.

제4조(협약체결 당사자의 책무) 협약체결당사자는 본 협약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고 각 단체에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2장 공공부문

제5조(공공부문의 역할) 공공부문 및 중소기업 지원분야의 청렴문화 확산을 위하여 조속적인 협약은 체결하여 국민과 사회로부터 신뢰를 받고

〈 공공부문 서명부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중앙회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진흥원 	대중소기업동아일협력재단 
(사)중소기업유통센터 	(재)중소기업연구원 	한국벤처투자(주) 
(사)SBC인증원 	(사)한국창업보육협회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사)한국산학연협회 	공영홍소평 	창조경제혁신센터 협의회 

〈 직능단체 서명부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벤처기업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협약 결과

1) 공동 이행 안건 실행

“중소기업 분야 청렴 실천 협의회”를 통해 청렴 이행 안건을 도출하고 기관별로 세부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공공부문에서는 중소기업 지원분야의 청렴문화 확산을 위하여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각 기관 및 단체의 갑질, 채용비리, 금품수수, 청탁, 성희롱 등을 예방하는 반부패 노력과 함께

청렴활동 제고를 위하여 각 기관 및 단체의 사업과 활동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다하기로 하였다.

부패방지 체제 개선을 위하여 모든 업무수행 과정에서 부패유발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부패현상 발생 즉시 개선할 수 있는 상시적 부패방지 추진 시스템을 운영하고,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도록 하고 업무처리과정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또한 내부 공익신고 등 부패 신고 제도를 활성화하고 부패신고를 한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관련 단체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제재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갑질, 채용비리, 성희롱 등 우월적 지위·권한을 남용을 방지하도록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청렴도 제고를 위해서 공공부문은 금품 및 접대 안 받기, 청탁 안 하고 안받기, 경조사 검소하게 보내기 등을 실천함으로써 사회전반의 청렴도 제고에 노력하고 직원의 윤리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직무 회피 또는 제척 등 부패 발생 가능성을 예방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시책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민간부문의 중소기업 관련 단체의 장은 단체를 대표하여 금품제공, 정경유착, 불투명한 단체 경영, 잘못된 회계 관행 등이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시장의 건전성과 국가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를 인식하고, 단체들이 청렴한 윤리경영과 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노력을 기울이도록 적극 유도하도록 하였다.

또한 민간부문은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여건을 조성하고, 자발적인 윤리경영을 실천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하기로 하였다. 첫째, 부당하게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하거나 받는 행위, 위법부당한 정치적 기부행위, 이해충돌 행위 등 부패를 예방하기 위한 윤리강령의 제정과 체계적인 교육을 강화한다. 둘째, 윤리경영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윤리강령 실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노력한다. 셋째, 갑질, 채용비리, 성희롱 등 민간 영역에서도 보호·지원하도록 노력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분야 청렴실천 협약’의 실천 및 이행점검을 위하여 우수 공로자에 대한 포상 수여 등 인센티브를 부여를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다.

2) 국민권익위 청렴사회협약 우수 사례 등록

국민권익위에서는 청렴문화를 민간영역으로 확산하기 위하여 청렴사회협약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자체 및 민간단체에서 적극적인 청렴협약을 추진하도록 “청렴사회협약 업무매뉴얼”을 만들었다.

업무매뉴얼에 청렴사회협약 우수사례로 중소기업부가 추진한 중소기업 분야 청렴 실천협약을 우수사례로 등록하여 타 기관이 활용하도록 하였다.

※ 청렴사회협약 업무매뉴얼 사진



| 향후 계획 |

중소기업 분야 청렴실천 협약 참여기관별로 협약 이후 세부 추진 계획을 마련하고 협약 실천을 위한 청렴실천협의회를 정기적으로 실시 및 협약 실천 현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기로 하였다. 또한 중소기업부는 산하기관의 청렴협약 실천활동을 산하기관장 성과계약에 신규 반영하도록 하였고, 성과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연말 중소기업부 장관상 2점을 수여할 계획이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교육부 행동강령 개정

| 추진 배경 |

우리 사회에서 공무원이 수행하는 역할과 그 영향력은 어느 영역보다도 크고 중요한 것으로 국민들에게 인식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일반 국민들은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의사결정, 그리고 행동에 대하여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

기관 차원의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 노력에도 구성원의 무관심, 교육계 비위 사건 등으로 기관 청렴도는 여전히 하위권에서 머물고 있다. 최근에는 사학비리 제보 관련 정보를 직무관련자에게 유출하였다는 의혹 등도 언론에 제기된 바 있었다. 이로 인해 교육정책 전반에 대한 대국민 신뢰는 물론 소속 직원의 사기 저하를 초래하였다.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교육계의 비위 행위는 개인적 일탈 행위로 볼 수만은 없다. 청렴의 무 위반 등 부패 행위는 개인적 문제라기보다는 조직이 가진 내·외부 환경에 대한 문제라는 인식 등 시스템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교육정책 전반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 분위기를 쇠신하고 대국민 신뢰를 확보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자체 행동강령을 촘촘하게 정비하고 소속직원들이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하였다.

| 추진 내용 |

[그간의 경과]

- ▶ 재발 방지를 위한 관련 지침 등 보완지시(부총리, '18.4.28.)
- ▶ 보안 및 공직윤리 강화 방안 논의(차관주재 일일전략회의, '18.4.30.)
- ▶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 마련 및 부내 의견수렴(~'18.6.30.)
 - * 부서별 청렴담당관 회의(5.16.), 주무사무관 토론회(5.17.), 부내 의견수렴(6.7.~6.30.)
- ▶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 공포·시행('18.10.5.)
- ▶ 부서별 청렴담당관 대상 교육 실시('18.10.5.)
- ▶ 전직원 대상 행동강령 및 공직윤리 관련 자체교육 실시('18.10.25. ~ '18.10.30.)

1) 정보 등 유출 방지 및 제보자 보호

인사·감사·민원 관련 정보, 발표 전 정책자료를 직무수행 이외의 목적으로 유출 금지 대상으로 규정하고, 담당공무원에게 정보등을 요구해서도 아니됨을 명시하였다. 또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패행위를 제보·신고자 및 고충민원 신청인에 대한 개인정보 등 보호 의무조항을 신설하였다.

[신설 조문 내용]

제9조의2(직무수행 목적 외 정보등 제공 및 요구 금지)

- ① 공무원은 **직무수행 이외의 목적으로 인사·감사·민원 관련 정보 및 공표 전 정책 자료**(이하 “정보등”이라 한다)를 누구에게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책수립을 위한 의견수렴의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공무원은 **직무수행 이외의 목적으로 담당공무원에게 정보등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의3(신고자 등 보호 의무)

공무원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78조에 따라 **부패행위 신고자 및 고충민원 신청인 등에 대한 보호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이해관계자와의 접촉 제한

진행 중인 민원, 감사, 인·허가 및 평가 관련 이해관계자와의 접촉은 근무시간 중 사무실(출장지 포함)에서만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외 장소에서 이해관계자를 만나려는 경우 사전 신고를 의무화하여 업무 수행의 투명성을 강조하였다.

현장밀착형 행정 추진 저해 및 공무 수행 위축 우려 등에 대한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업무수행 관련 자료수집 등의 경우는 접촉 제한·신고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제18조의2(이해관계자와의 접촉 제한)

- 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해관계자"이라 한다)를 상대로 면담·조사·평가 등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 근무시간에 사무실(출장지 포함)에서 하여야 한다.
 1. 자신이 처리 중인 민원의 신청인 또는 소청심사청구 당사자 및 대리인(법인의 경우 법인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
 2. 자신이 조사·감사 중인 사항 관련 기관·단체 관계자
 3. 자신이 인·허가, 심사·평가, 계약·재정지원 중인 대상 기관·단체 관계자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사무실(출장지 포함) 이외의 장소에서 이해관계자와 면담·조사·평가 등을 수행하려는 경우 별지 제3의9호 서식에 따라 소속부서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 ③ 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가 곤란한 경우 접촉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④ 소속부서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자·접촉일시 및 장소·이해관계자의 인적사항 등을 별지 제3의10호 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⑤ 공무원은 직무수행 이외의 목적으로 이해관계자를 접촉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공무원이 업무수행 관련 자료수집이나 의견수렴 목적으로 이해관계자를 접촉(전화, 문자, 이메일 포함)하는 경우
 2. 공무원이 이해관계자의 전화, 문자, 이메일에 대하여 통상적인 절차 안내 등으로 민원 상담을 하는 경우
 3. 공무원이 자기계발 목적으로 학위과정, 학술모임 등에서 이해관계자와 접촉(전화, 문자, 이메일 포함)하는 경우
 4. 공무원이 부조의 목적으로 참석한 경조사 등(이해관계자의 경조사는 제외)에서 이해관계자를 만나는 경우
 5. 그 밖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이해관계자와의 접촉(전화, 문자, 이메일 포함)인 경우

3) 행동강령 교육 확대 및 위반에 대한 조치 기준 확립

공직 기강 확립과 청렴의식 제고를 위해 전직원 대상 연2회 이상 공직윤리 및 행동강령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부 공무원은 연1회 이상 교육 참석 또는 연 3시간 이상의 청렴 관련 연수를 받도록 하였다. 또한, 개정 규정에 대한 실천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해 종전 조치 기준에 반영하였다.

제24조(교육)

- ① 교육부장관은 공무원에 대하여 이 영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2회 이상 그에 따른 교육을 하여야 한다.
- ②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교육에 매년 1회 이상 참석하여야 한다. 다만, 청렴 관련 교육을 3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추진 성과 및 의의 |

1) 교육부 공무원의 바람직한 행동의 방향과 원칙의 제시

유치원, 초·중등, 대학 등 교육분야 전반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의 업무 특성에 따른 비위 행위 발생 원인과 근절 방안을 다양한 시각에서 고민할 수 있었다. 물론 개인 사생활의 침해 등 지나친 규제라는 우려도 있었지만 직무를 수행하면서 ‘투명한 업무 수행으로 어떠한 의혹도 없도록 해야한다’라는 조직 내부적인 자성의 목소리도 있었다. 교육부 공무원으로서 가져야 하는 바람직한 행동의 방향과 원칙을 제시한 자체 행동강령 개정을 위해 전구성원과 함께 숙고(deliberation)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2) 부패발생 가능성의 사전 예방 및 신뢰성 제고

이미 발생한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에 대한 사후적 대처라고 지적도 있지만,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를 유인하는 요인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규제함으로써 부패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해관계자와의 투명한 접촉, 비리 제보자의 보호 의무 등 교육부 공무원들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와 활동의 기준을 공개적으로 선언한 행동강령의 제정 자체만으로도 윤리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긍정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3) 공직윤리 확립을 위한 자체 교육 확대

조직내 부패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원상태로 복구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공직윤리 및 청렴교육 이수율 의무 조항으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향후, 전구성원이 고민하여 만든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에 대한 업무편람을 제작·보급하고 이에 대한 자체 교육을 확대·실시할 예정이다. 보다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투명하고 깨끗한 교육부의 모습을 기대해 본다.

현장근무 직원의 감사 제안을 통한 찾아가는 청렴감사

• 주요 내용

- 익명 부조리 신고센터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직원들로부터 직원 처우와 직접 관련된 감사 제안을 받아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

• 효과, 성과

- 전통적인 일방향의 감사가 아닌 전 직원의 적극적인 감사 동참을 유도하여 감사업무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여 부패행위를 방지, 직원 불만사항 해소

| 추진 배경 |

법무부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조직 내의 비리와 부정행위에 대하여 내부직원 및 이해관계자의 적극적인 신고를 위해 익명 부조리 신고센터(Help-Line)를 통한 비위행위 제보를 받고 있으며, 검찰관 청렴서신, 청렴교육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익명 부조리 신고센터를 홍보하고 있으나, 접수건수의 약 40%가 비리 및 부정행위 등에 대한 공익신고가 아닌 단순 민원이며, 약 24%는 법무부(보호관찰·교정·출입)와 검찰·법원을 혼동하여 신고한 내용으로 익명 부조리 신고센터의 활용 실적이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익명 부조리 신고센터 등 부패신고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익명 부조리 신고센터(Help-Line), 내부 업무망(법무샘)의 자유게시판, 토론마당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직원들로부터 부패행위 및 비위행위, 갑질행위, 직원 처우와 직접 관련된 사항 등에 대한 감사 제안을 받아 현장 점검을 실시하는 「현장근무 직원의 감사 제안을 통한 찾아가는 청렴감사」를 기획하였다.

| 추진 방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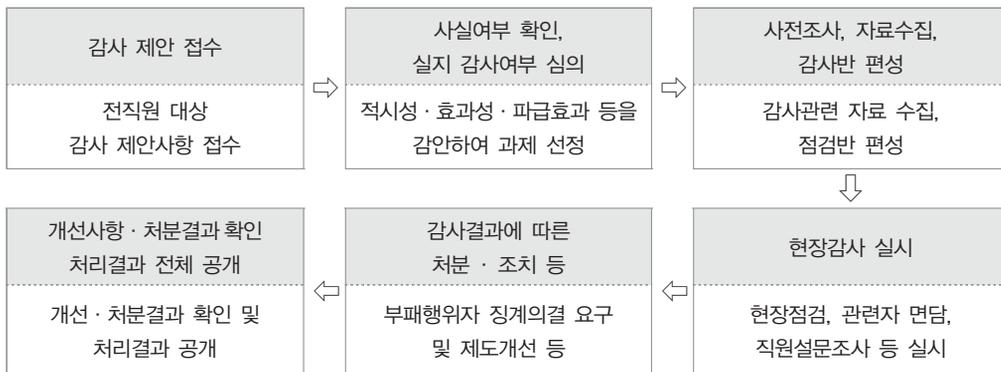
「현장근무 직원의 감사 제안을 통한 찾아가는 청렴감사」는 전통적인 일방향의 감사에서 벗어나 전 직원의 적극적인 감사 참여를 유도하여 감사업무에 대한 인식 전환·소통과 공감을 이끌어내고자 하였다.

또한, 형식적인 감사를 지양하고, 직원들의 의문과 불만을 해소하는 업무·생활 밀착형 감사, 직원 처우와 직접 관련된 사항, 지속적·반복적인 불만 사항에 대하여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자 하였다.

| 추진 경과 |

내부 업무망(법무샘)의 부당처우 신고센터 익명 게시판과 법무부 홈페이지에 설치되어 있는 익명 부조리 신고센터(Help-Line)를 통한 비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 그리고 법무샘 토론마당과 자유게시판 등록 내용을 집중 모니터링하여 직원 처우와 직접 관련된 감사 과제를 발굴하였다. 이에 적시성·효과성·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감사 과제를 선정, '18년 총 4차례 현장감사를 실시하였다.

[감사 추진 체계]



(1차) ○○의 날 기념품과 관련된 법무샘 토론마당의 불만 토론 글 및 직원 제보를 바탕으로 ○○의 날 기념품 입찰-제작 업무에 대한 현장 감사를 실시하였다. 현장 감사 실시 결과, 기념품 입찰 방식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본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하고 입찰 담당기관 지정 조치, 제보 직원에게 결과를 송부하였다.

(2차) ○○교도소 직원이 계약과 관련된 비리가 의심된다는 익명 신고사항을 접수하여, 사실관계 등을 파악 후 시설 공사 관련 현장 감사를 실시하였다. 당사자의 동의하에 개인

통장 거래내역·업무 서류 등을 점검한 결과, 개인 비리 내역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업무 절차상 하자 등을 발견하여 담당자에게 주의 조치하였고, 동 감사 결과를 제보자에게 통지하였다.

(3차) ○○교도소 기관장이 물품을 횡령했다는 비리 의심 신고사항을 접수하여 현장 감사를 실시하였다. 현장 감사 결과, 수용자 도서 과다 반입 등의 문제를 확인하여 수용자 도서 관리 방식 개선 등을 권고하고 감사 결과를 제보자에게 통지하였다.

(4차) ○○소년원의 직원이 학생식당을 부적정하게 이용하고 있다는 익명 신고를 접수하여 청렴시민감사관(4명)이 참여한 현장 감사를 실시하였다. 현장 감사 실시 결과, 일부 직원들이 학생 식당을 이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담당자 면담, 청렴시민감사관 논의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본부 주무부서에 이에 대한 제도개선을 권고하였다. 이에 본부 주무부서에서는 전체 소년보호기관 전수조사 후 부적정 이용 금지 조치, 타 식당 이용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 추진 성과 |

○○의 날 기념품 제작에 대한 현장 감사에 따른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본부 주관의 최저가 입찰 방식에서 소속기관 자율 선택 방식으로 변경하여 직원 만족도가 향상되었다. 또한, ○○교도소 현장감사 결과 수용자 도서 과다 반입 등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점검 지시·수용자 도서관리 방식을 개선하는 등 제도개선·주의조치 하여 부패 취약분야 개선 및 직원 불만 사항 해소에 기여하였다.

붙임 1. 감사 제안 양식(예시)

<p>접수번호</p>	<p>“ 공 란 ”</p>
<p>건 명 (제목, 건명, 제안 주제 등)</p>	<p>(예시) □ 00소 000과장 홍길동의 비위내용 신고</p>
<p>제안 사유 (문제점, 비위 내용 등)</p>	<p>(예시) □ 00소 000과장 홍길동은 ‘17년 0월 0일 경 ‘0000 제작 건 등’ 각종 홍보물 제작 시 미자격 사업체와 수의계약을 할 것을 부당하게 지시하고, 경쟁입찰로 실시해야 하는 사업을 여러 개로 분할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편법을 저지름 □ 홍길동은 해당 업체의 직원에게 상습적으로 향응을 수수하고 있으며, 지난 00월 00일에도 A업체 B에게 C에서 향응을 수수함 □ 또 홍길동은 0월 0일 회식 중 부하직원 000씨를 성희롱했으며, 상습적으로 부하직원에게 욕설과 모욕을 하며 퇴사를 종용하는 등 갑질을 하고 있음 - (실제 발언)</p>
<p>착안사항</p>	<p>(예시) □ 홍길동 과장이 주도한 000계약건 서류와 00000제작건 입찰 서류를 점검해 주기 바람 □ 김00, 이00 등에 대한 폭언, 모욕, 성희롱 내용을 조사해 주기 바람</p>

감사 제안 분야

- 물품 구입 · 제작 관련 계약 위반 사례
- 상급자의 갑질 · 모욕
- 업무시간 외 사적 업무 지시 실태
- 위법 · 부당한 업무지시 실태
- 업추비 · 수용비 · 특근매식비 등 예산 집행 적정성
- 관사 · 비상대기 숙소 등의 부적절한 운영 실태
- 공용차량 등 공용물의 사적 사용 실태
- 타이어, 차량용품 등의 적정한 관리 여부
- 특정인에 대한 특혜 제공 여부
- 인사 업무 관련 부조리
- 직원 복무 · 공직기강 해이 사례
- 피복, 기념품 등 구입의 적정성
- 그 외 직원 · 민원인의 불편, 불만을 초래하는 관행 · 제도 등

* 단순 지적이 아닌 업무개선 · 부패방지를 위한 과제 우선 발굴 예정

부패행위자 청렴교육 의무이수제 도입

• 주요 내용

- 금품수수, 공금횡령 등 부패행위로 징계를 받은 공직자를 대상으로 반부패·청렴교육을 의무 이수하도록 함(징계자 발생 시 해당기관에 대상자 통보, 교육 이수 후 결과 보고)
- 청렴연수원, 법무연수원 등 전문 교육훈련기관에 개설된 반부패·청렴과정 이수 의무화

• 효과, 성과

- 부패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과 청렴의 가치를 인식시킴으로써 부패사건 발생을 근본적으로 예방

| 추진 배경 |

공직자의 청렴성 제고를 위해 각종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부패행위자 처벌 또한 강화하고 있으나 부패사건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징계처분자의 경우 재범 사례도 다수 존재하고 있다.

이에 부패행위자에게 징계 처분 뿐만 아니라 의무적 청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 부패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청렴의 가치를 재인식시킴으로써 부패사건 발생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고자 부패행위로 인한 징계자 대상 「청렴교육 의무이수제」를 도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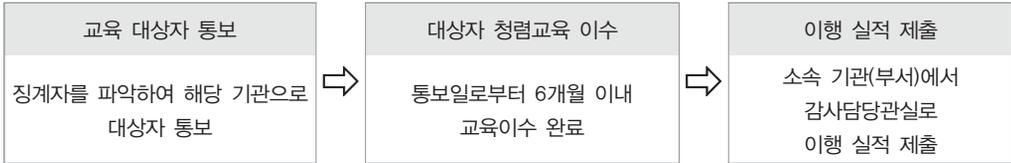
[법무부 반복 부패행위자('09~'14)]

- 교위 손00 : '09. 3. 정직 1월(향응수수), '09. 7. 감봉3월(금품수수)
- 교위 김00 : '13. 9. 감봉(수용동 내 휴대폰 반입), '14. 12. 해임(수용자와 사적이익 도모)
- 교위 빈00 : '14. 7. 정직1월(금품수수), '15. 1. 해임(금품수수)
- 직업교사 배00 : '12. 4. 감봉 1월(향응수수), '18. 5. 정직 2월(직원들에게 폭언, 사적요구)
- 출입6급 조00 : '10.12. 견책(금품수수), '13.10. 정직3월(금품수수), '14.5.2. 해임(금품수수)

| 추진 체계 |

감사담당관실(청렴팀)에서 부패행위 징계자를 파악하여 해당기관에 의무교육 이수 지시 공문을 발송하고, 대상 기관에서는 청렴교육 파견 계획을 수립한 후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사담당관실로 송부한다.

[추진 체계]



| 추진 경과 |

제도 추진 내용을 전 기관에 전파하여 부패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반부패 청렴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였고, 법무부가 실시한 찾아가는 청렴교육(13회), 고위직 청렴토론회(10회), 청렴워크숍 개최 시 관련 내용 교육을 실시하였다.

'18. 10. 31. 현재, 공금횡령으로 인한 감봉 처분자 1명에 대해 교육 실시를 지시하였고, '19. 1분기 중 교육을 이수 할 예정이다.

| 향후 계획 |

추후 의무교육 이수대상자가 청렴교육 대상에 우선 선정 될 수 있도록 청렴연수원·법무연수원 등 관련 교육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고, 법무부가 주관하는 찾아가는 청렴교육, 고위직 청렴토론회 등 개최 시, 「청렴교육 의무이수제」 시행을 적극 홍보 할 예정이다. 또한, 부패행위로 인한 징계자가 소속된 기관에 대하여는 기관 청렴마일리지* 점수를 감점하는 등 부패행위자에 대한 불이익을 강화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공고히 할 예정이다.

* 법무부에서 본부 및 소속기관의 청렴활동을 평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 청렴 문화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제도

** 파면·해임 7점, 강등·정직 5점 등

| 향후 전망 |

공직자의 청렴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처벌 강화뿐만 아니라 청렴교육을 통한 의식개혁이 필수적이다. 「청렴교육 의무이수제」를 통해 부패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청렴의 가치를 인식시킴으로써 부패사건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찾아가는 맞춤형 청렴교육 실시

• 주요 내용

- 전문교육기관 집합교육 참석이 어려운 소속기관 현장근무자, 대민접점이 많은 민원업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감사담당관이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청렴교육'을 실시하여 법무부 청렴문화 확산에 기여

• 효과, 성과

- 사례 중심의 청렴 교육으로 현장 직원들의 청렴의식 고취, 청렴 공감대 형성
- 청렴교육 이수자 증가, 출장·강사 섭외 등으로 인한 예산 절감, 직원 불편 감소

| 추진 배경 |

법무부 청렴워크숍 설문조사 및 고위직 권역별 청렴토론회 등을 통한 청렴업무 담당자 애로사항 청취 결과, 지방 소재·예산 부족 등으로 인한 강사 섭외의 어려움으로 본부에서 청렴교육을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많았다.

이에 수도권에 비해 우수강사 섭외가 어렵고, 현업 등으로 인해 집합교육 참석이 어려운 소속기관 직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기관 실정에 맞는 맞춤형 청렴 교육을 위해 일선 기관이 신청하면 본부 감사담당관이 직접 방문하여 교육하는 '찾아가는 맞춤형 청렴교육'을 기획하였다.

※ 법무부 청렴워크숍

- 지방 소재, 예산 부족 등의 문제로 강사 섭외가 어려우니 본부 차원에서 청렴 교육 강사를 섭외해줬으면 좋겠습니다.(부산소년원 이00외 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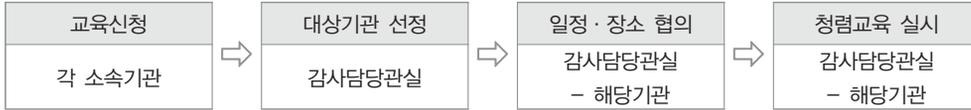
※ 고위직 권역별 청렴토론회

- 소속기관 직원들도 양질의 교육을 들을 수 있도록 본부 차원의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교도소장 홍00 외 다수)

| 추진 체계 |

교육 실시 전후로 각 소속기관으로부터 교육 신청을 받아, 감사담당관실에서 대상기관을 선정하고, 해당기관과 일정 및 장소 등을 협의하여 청렴교육을 실시하였다.

[찾아가는 교육 추진 체계]



| 추진 경과 |

'18. 8. 3. ~ '18. 8. 24. 총 33개 기관의 신청을 받아, 가급적 많은 직원이 참석 할 수 있는 기관, 벽지(僻地) 소재 기관, 현업근무자가 많은 기관을 우선 선정하였고, 그 외 교육 가능 일자, 2018년 자체 교육 실시 실적, 감사담당관 업무 일정 등을 고려하여 최종 총 15개 기관을 선정하여 법무부 감사담당관이 직접 방문, 사례 중심의 반부패·청렴교육을 실시, 청렴 업무 추진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건의사항을 수렴하였다.

[찾아가는 청렴교육 실시 일정]

연번	기 관	교육일자	교육시간
1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2018.09.03.(월)	16:30~
2	부산소년원	2018.09.04.(화)	09:20~
3	서울소년분류심사원	2018.09.07.(금)	09:20~
4	순천교도소	2018.09.13.(목)	17:00~
5	진주교도소	2018.09.14.(금)	09:00~
6	서울출입국·외국인청	2018.10.05.(금)	09:30~
7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		
8	서울보호관찰소		
9	서울보호관찰심사위원회		
10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2018.10.11.(목)	09:30~
11	법무연수원(분류심사관 교육과정)	2018.10.11.(목)	16:45~
12	대전교도소	2018.10.16.(화)	17:00~
13	공주교도소	2018.10.17.(수)	13:30~
14	상주교도소	2018.10.25.(목)	17:00~
15	대구소년원	2018.10.26.(금)	09:00~
16	법무연수원(직원 대상)	2018.11.06.(화)	10:00~

[찾아가는 청렴교육 실시 현장]



2018. 9. 4. 부산소년원 직원 및 부산권역 분류심사관 대상 찾아가는 청렴교육 실시



2018. 9. 14. 진주교도소 직원 대상 찾아가는 청렴교육 실시



2018. 11. 6. 법무연수원(진천) 직원 대상 찾아가는 청렴교육 실시

추진 성과

소년분류심사관, 출입국관리기관 민원업무 담당자, 수용자 관리 교도관 등 특정업무 분야 담당자(16개 기관 1,000여 명)를 대상으로 사례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청렴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였다.

또한, 청렴교육을 이수한 간부가 전달 교육하는 방식을 병행하여 청렴교육 이수자 증가, 출장·강사 섭외 등으로 인한 예산 절감, 원거리 교육 참석으로 인한 직원 불편 감소 등의 효과가 있었다. 교육 시 설문조사·면담·토론을 실시하여 현장 직원들과의 소통을 도모하고, 청렴문화 확산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붙임 1. 찾아가는 청렴교육 관련 보도자료

<p>세계일보 '손 깨끗하고 마음 청결한' 법무부 직원들</p> <p>김태훈 기자 tsk@sk.com, 김민서 기자</p> <p>"법무부 공무원들은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합니다."</p> <p>법무부 소속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청렴 교육'을 실시해 눈길을 끈다. 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며, 국민에게 봉사하는 법무가족이 주축이다.</p> <p>4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4일 시작에 오는 31일6일까지 실시하는 청렴 교육은 전업에 종사하거나 지방 소재 기관에 근무해 본부에 비해 교육 기회가 적고, 강사 섭외도 어려운 직원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다. 또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앙청렴기관 대상 청렴도 측정에서 2016년 4등급, 지난해에는 3등급에 각각 그친 법무부의 청렴도 향상을 목표로 한다.</p>	<p>순천교도소, '찾아가는 맞춤형 청렴교육'</p> <p>일확신문 2018. 09.16. 18:22</p> <p>순천교도소는 지난 13일 본관형 법무부 감사담당관(부이사관)을 초청해 직원들을 상대로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찾아가는 맞춤형 청렴교육'을 진행했다.(사진)</p> <p>이날 교육에서 본 감사담당관은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며, 국민에게 봉사하는 법무가족'의 주제로 강연했으며, 현행도 향상방안 및 2017년도 주요 청렴사제를 소개했다. 본 감사담당관은 또 직원들에게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청렴한 법무부 직원이 되라"고 당부했다.</p> <p>이에 최국진 순천교도소장은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한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했다.</p> <p>한편 순천교도소는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맞춤형 청렴교육 실시, 청렴마인드 제고 및 자기관리를 위한 봉사활동 등을 단계적 직원들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p>
<p>법률신문 뉴스</p> <p>뉴스 환경규제이산 오미나인 법률정보 한국법조인대결 피디스톡 LawTop</p> <p>법무부, 전국 소속기관 '찾아가는 맞춤형 청렴 교육'</p> <p>최태훈 기자 tsk@lawtimes.co.kr 일제 2018. 10.05 오전 9:30:48</p> <p>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지난달 4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부산청소년법정연선, 법무연수원 등 전국 16개 소속기관 소속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p> <p>이번 교육을 현장에 종사하거나 지방 소재 기관에 근무해 본부에 비해 교육 기회가 적고, 강사 섭외도 어려운 소속기관 직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법무부의 청렴도를 향상시</p>	<p>대한민국 정책브리핑</p> <p>미세먼지 제거 공기청정기 올바른 사용법?</p> <p>[감사담당관실] 법무부 소속기관 대상 '찾아가는 청렴교육' 실시</p> <p>법무부 - 2018.10.04</p> <p>법무부 소속기관 대상 '찾아가는 청렴교육' 실시</p> <p>- 2018.9.4.-11.6. 법무부 소속기관 직원 1000명 청렴 교육 -</p> <p>□ 법무부(감사담당관실)는 2018년 9월 4일부터 11월 6일까지 소속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p> <p>□ '찾아가는 맞춤형 청렴교육'은 현행도 향상방안, 지방 소재 기관에 근무해 본부에 비해 교육 기회가 적고, 강사 섭외도 어려운 소속기관 직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법무부의 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계획된 것이다.</p> <p>〈정부청소〉</p>

www.moj.go.kr

보다 청렴한 법무부를 위해 감사담당관이 찾아갑니다.



법무부

예산도 부족하고,
취기관 실정을 잘 아는,
우수한 강사를 구하기도 힘이 드는데
본부 차원의 지원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6월 고위직 청렴 토론회 전의사상

감사 업무가 너무 어렵습니다.
예산도 부족하고 강사들이 지방까지
아무도 안오려고 하는데
대체적마련이 필요합니다.

7월 청렴취급요 전의사상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제 소속기관의
교육 신청을 받아
감사담당관이
찾아갑니다.

3천여 기관 이상

- 교육신청
- 대상기관 선정
- 일정 장소 협의
- 청렴교육 실시



2018. 8. 3. ~ 8. 24.까지
신청을 받아 총 33개 기관이 신청해주었고,
이들 16개 기관 약 1,000명들 대상으로
2018. 9. 4일부터 11. 6까지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청렴교육 직원 여러분과 함께, 보다 청렴한 법무부를 만들어 갑니다.

직원 여러분들께 한발 더 다가가는
'찾아가는 맞춤형 청렴 교육'을 통해 청렴문화가
더욱 확산되고, 보다 신뢰받는 청렴한
법무부가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법무부

교육 기관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 부산소년원 / 서울소년분류심사원 / 순천교도소 / 진주교도소
서울출입국 / 외국인청 / 서울남부출입국 / 외국인사무소 / 서울보호관찰소 / 서울보호관찰심의위원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 법무연수원(분류심사관 대상) / 대전교도소 / 광주교도소 / 상주교도소
대구소년원 / 법무연수원(직원 대상)

법무부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청렴한 고용노동행정 실현

| 추진 배경 |

1) 그간의 평가

그간 고용노동부는 청렴한 고용노동행정 실현을 위해 매년 국민권익위의 부패방지시책(이하 '시책') 평가 계획에 따라 자체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이행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책 추진의 효과는 청렴도 향상으로 실현되지 않고 국민권익위의 청렴도 측정 결과는 하위 등급에 정체되어 있는 실정이다.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 「청렴도 측정 및 부패방지시책」 평가결과]

구분	'15년	'16년	'17년	비고
청렴도 측정 평가	4등급	3등급	4등급	('18년 2등급)
부패방지시책 평가	3등급	4등급	3등급	

* 평가기관 : 국민권익위

2) 2018년도 추진방향

이에, 시책 추진의 효과가 청렴도 향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전 직원과 국민 모두가 참여하여 실천하는 청렴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①모두가 함께 하는 청렴생태계 조성, ②제도개선을 통한 부패예방 기능 강화, ③행동하는 청렴문화 조성 등 3대 추진전략에 맞추어 시책을 추진하였다.

추진 경과 및 성과

1) 모두가 함께 하는 청렴생태계 조성

부패방지시책은 내부 직원이 공감하고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예년과 달리 고위직부터 최일선의 소속기관 실무 직원에 이르기까지 전 직원의 공감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였다.

우선, 매주 고위직이 참석하는 장·차관 주재 「정책점검회의」를 통해 시책 이행상황을 점검·관리하여 고위직의 책임성과 시책 추진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본부 감사담당관이 주재하는 「본부8개 청·대표지청 행동강령책임관 협의회」를 구성·운영(매분기 1회 개최)하여 비위사례를 전파하고 소속기관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시책 추진에 반영하였다.

협의회를 통해 행동강령책임관들은 소속 직원들이 비위행위는 자신과는 무관한 일로 인식하고, 청렴교육에는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교육자료 등 청렴과 관련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실정을 토로하였다.

이에, 금년 8월부터 격월단위로 ①최근 복무·인사 관련 제·개정 법령 정보, ②청탁금지법 및 행동강령 Q&A, ③역사속 청렴이야기 등 직원들이 보다 쉽게 반부패·청렴 관련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웹진 형태의 「청렴신바람」을 발간·배포하게 되었다.

[「청렴신바람」 제3호('18.12.22. 발간)]



또한, 2011년부터 소속 직원들의 청렴활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청렴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해 왔으나 칭찬 마일리지나 사회봉사활동 마일리지와 같이 제대로 정착·확산되지 않아, 이를 개선하기 위해 「청렴마일리지 등록 코너」를 신설하여 실시간으로 자신의 마일

리지 수준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 직원에 대한 포상도 확대하는 등 기존 청렴마일리지 제도를 대폭 확대·개편하여 금년 11월부터 시행 중이다.

[「청렴마일리지」 제도 개편 주요 내용]

현행	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방식) 소속 기관 담당자가 엑셀로 개인마일리지 실적 관리(본인 마일리지 확인 곤란) ▪ (적용기관) 지방청·지청, 지방노동위원회만 적용 ▪ (포상) 우수 직원 연회, 10명 포상(각 1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방식) 다우리에 '청렴마일리지' 등록 코너를 신설, 실시간 마일리지 확인 가능 ▪ (적용기관) 본부 및 전 소속기관으로 적용 확대 ▪ (포상) ①우수직원 매월 1회, 5명 포상(각 10만원) ② 우수기관 연 1회, 3개소 포상(기관규모에 따라 최대 100만원 지급) 신설

한편, 국민과 함께 하는 부패방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처음으로 「고용노동부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시민단체, 변호사, 노무사, 회계사, 학계 등 외부 전문가 8명을 「청렴시민감사관」으로 위촉하여 국민의 시각에서 우리 부의 부패취약 분야에 대한 감시, 평가, 조사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금년 11월 16일 고용노동부 장관과 산하 공공기관장들은 「청렴행정 실천 결의문」을 채택하여 금품수수, 성비위, 채용비리, 계약비리, 갑질 등 각종 비위로부터 청렴한 고용노동행정을 실천해 나가기로 결의하였다.

<p>고용노동부-산하공공기관 「청렴행정 실천 결의문」 채택(' 18.11.16)</p> 	<p>언론보도</p> 		
<p>「청렴행정 실천 결의문」</p>			
<p style="text-align: center;">청렴행정 실천 결의문</p> <p>우리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과 노동존중사회를 추진함에 있어 부정부패가 큰 걸림돌이 되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금품수수, 성 비위, 채용비리, 계약비리, 갑질 등 부정부패를 척결하여 청렴한 고용노동행정 구현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나, 불합리한 제도과 규정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절차공시입력, 공직자 행동강령을 준수하도록 청렴교육을 강화하는 등 부정부패 예방을 위해 노력한다. · 하나, 청렴행위에 대한 내·외부 신고 제도를 활성화하고, 취약분야에 대한 상시 감찰을 실시하는 등 부정부패에 대한 감시와 적발 기능을 강화한다. · 하나, 부정부패가 적발될 경우 엄격한 징계기준을 적용하고, 이를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는 삼급사도 엄하게 처벌하는 등 부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한다. · 하나, 이상의 예방과 적발, 제재에 이르는 다양한 실천 활동을 점검·평가하고, 집권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청렴행정 실천 결의문」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p style="text-align: center;">2018년 11월 16일</p> <table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 <p>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p> <p>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김두용</p> <p>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조용관</p> <p>학교법인 한국통리관 이사장 이국영</p> <p>노사법정재만 사무총장 이경호</p> <p>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 김안원</p> </td> <td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 <p>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신경우</p> <p>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김홍만</p> <p>한국고용정보원 원장 이오복</p> <p>한국기술교육대학교 총장 김기호</p> <p>전철노동조합대회 이사장 권영준</p> <p>한국감정도 이사장 노경린</p> </td> </tr> </table>	<p>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p> <p>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김두용</p> <p>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조용관</p> <p>학교법인 한국통리관 이사장 이국영</p> <p>노사법정재만 사무총장 이경호</p> <p>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 김안원</p>	<p>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신경우</p> <p>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김홍만</p> <p>한국고용정보원 원장 이오복</p> <p>한국기술교육대학교 총장 김기호</p> <p>전철노동조합대회 이사장 권영준</p> <p>한국감정도 이사장 노경린</p>
<p>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p> <p>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김두용</p> <p>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조용관</p> <p>학교법인 한국통리관 이사장 이국영</p> <p>노사법정재만 사무총장 이경호</p> <p>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 김안원</p>	<p>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신경우</p> <p>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김홍만</p> <p>한국고용정보원 원장 이오복</p> <p>한국기술교육대학교 총장 김기호</p> <p>전철노동조합대회 이사장 권영준</p> <p>한국감정도 이사장 노경린</p>		

그리고, 산하 공공기관 11개소 중 국민권익위로부터 부패방지시책 평가를 받지 않는 6개 기관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자체 평가를 통해 부패 사각지대 관리 및 취약분야 자율 개선을 유도하고 평가 결과는 산하기관 경영평가에도 반영할 계획이다(19.2월).

이 뿐만 아니라, 금년부터는 국민권익위로부터 청렴도 측정 평가를 받지 않는 산하 공공기관 4개소에 대해서도 고용노동부 자체 청렴도 측정 평가도 함께 실시하여 기관별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진단이 가능하도록 하였다(18.11월 설문조사, 19.1월 결과발표).

2) 제도개선을 통한 부패예방 기능 강화

매년 국민권익위에서 실시하는 청렴도 측정 평가 결과 내부적으로는 인사·예산분야, 외부적으로는 근로감독 분야 등에서 청렴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어, ①근로감독 분야 부조리 개선, ②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③투명한 인사운영을 위한 인사청탁 방지 등 3가지를 부패예방을 위한 금년도 제도개선 과제로 추진하였다.

「근로감독 분야 부조리 개선」 과제는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과제번호 22-1)'에도 포함된 과제로서 근로감독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조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①전산시스템 정보를 활용해 공정하게 감독대상 사업장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②감독을 실시한 이후에는 현장에서 노사 대표를 상대로 감독결과에 대해 강평을 실시토록 하였고, ③반복·상습 체불 사업장에 대한 불시 감독을 실시토록 하는 등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근로감독 실시를 위해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였다.

그리고, 전문성을 갖춘 근로감독관 양성을 위해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험과목에 노동법이 포함된 '고용노동직류' 공무원을 신규 채용(7급 125명, 9급 625명)하였고, 신규 근로감독관에 대하여는 교육기간을 기존 6주에서 12주로 확대 실시하였다.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과제는 보조금 규모 100억원 이상 14개 사업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여 부정수급 적발 사업장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회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며, 각 보조사업별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부정수급 유형을 분석하여 이에 대응하는 근절방안을 마련 시행하였다.

그 중 '실업자훈련' 사업의 경우에는 훈련생의 출결 부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비콘⁴⁾ 출결관리시스템을 도입하였으며, '사회적기업육성' 사업의 경우 부정수급이 확인될 경우 부정 수급액에 관계없이 즉시 형사고발 조치를 취하여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을

4) 비콘(Beacon): 위치기반 무선송출기로 비콘 신호 내에 훈련생 스마트폰이 들어오면, 해당 스마트폰을 인지하여 Message 등을 전달하는 기술

갖도록 하였으며, ‘중장년층취업지원’ 사업의 경우 사업 약정서에 부정수급 적발 시 최대 5배를 환수 처분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 규정’을 개정(18.1월)하여 보조금시스템을 통한 업무관리 기준과 부정수급자 명단공표심의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고, 업무 매뉴얼인 ‘국고보조사업 길라잡이’를 제작하여 업무담당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투명한 인사운영을 위한 인사청탁 방지」 과제는 ①인사청탁 행위를 구체화하여 금지하고, ②공식적인 인사고충 상담·처리는 활성화 하고, ③전보, 승진 등의 기간에 ‘인사청탁 금지 강조기간’을 운영토록 하는 내용을 ‘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에 반영(18.12월 개정)하여 인사청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였다.

한편,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과제번호 45-1)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참여와 협력에 기반한 안전 분야 부패방지’ 과제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도 참여기관으로서 「이동식 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안전무시 관행 근절」 과제를 추가로 선정하여 추진하였다.

이동식크레인, 고소작업대 작업의 경우 건설현장 뿐만 아니라 주택가 등에서도 흔히 볼 수 있으나 불법탑승 설비 부착, 안전난간 미설치 등 안전을 무시한 관행이 만연하여 중대재해⁵⁾가 빈발하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 금년 8월 고용노동부와 경찰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교통공단이 합동으로 광주권역, 대전·세종권역에서 이동식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작업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현지계도 하였으며, 고소작업대 제조업체 4곳을 불시 점검하여 1곳은 제품심사 부적합 차량 79대에 대해 개선명령 조치하였다.

이 과제는 금년 10월 30일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출범식을 가진 「범정부 안전분야 반부패협의회」에서 내년도에 관계부처 합동단속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발제 및 토론을 가졌으며 협의회에 참여한 기관들은 합동단속의 필요성에 모두 공감하였다.

3) 행동하는 청렴문화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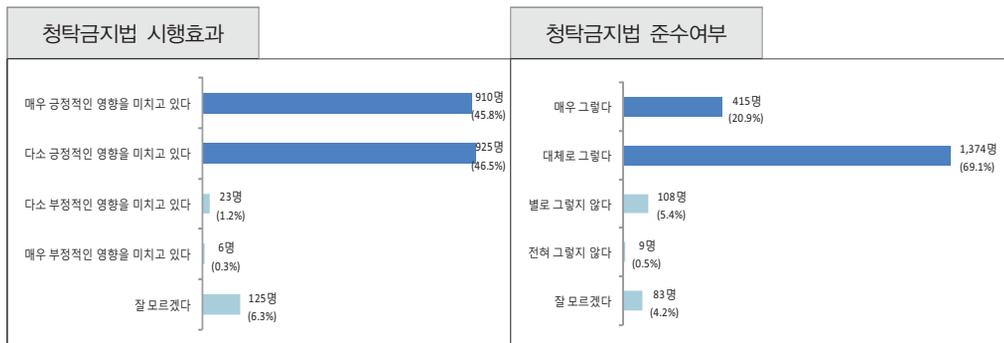
금년도 고용노동부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공직사회에서 체감하는 변화 내용에 대해 설문조사⁶⁾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청탁금지법 시행이 우리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응답이 전체 응답자(1,989명) 중 92.3%(1,835명)를 차지하였고, 청탁금지법이 우리사회에서 잘 지켜지고 있

5) 최근 7년간 이동식크레인 44건(사망 49명), 고소작업대 63건(사망 72명)의 중대재해 발생

6) ▲설문조사 기간: '18.7.16~7.27(2주간), ▲응답현황: 전체 대상자 9,735명 중 1,989명 응답(응답률 20.4%)

는지에 대해서도 ‘그렇다’는 응답이 90.0%(1,789명)를 차지하여 청탁금지법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도입한 개정 ‘공무원 행동강령’의 내용을 ‘고용노동부 공무원 행동강령’에도 반영하여 금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 감사관은 직접 본부 소속 고위공무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9월부터 11월중 전국 8개 권역을 다니며 소속기관의 기관장과 부서장들을 대상으로 ‘감사관이 찾아가는 청렴교육’을 실시하여 고위직과 중간관리자의 청렴의식 제고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그 밖에도 공익·부패신고 활성화를 위해 우리 부 기관지인 ‘월간 내일’을 통해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홍보하고, 대표 홈페이지에 ‘청렴정책공개’ 메뉴를 신설하여 각종 반부패·청렴 관련 자료를 게시하고, 청탁금지법 상담 및 조치사항도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향후 계획 |

금년도에 추진한 다양한 청렴행정 실천 노력들로 인해 고용노동부는 국민권익위원회의 ‘18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평가 결과 종합청렴도 「2등급」 기관으로 도약하였고, 앞으로도 고용노동부는 내부 구성원과 산하 공공기관, 나아가 국민이 공감하고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한 고용노동행정 실현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특히, 금년에 처음 실시한 ‘청탁금지법 설문조사’는 매년 실시하여 전년도 조사 결과와 비교 분석하여 시책 추진에 반영해 나가고, 청렴시민감사관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여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등 금년부터 새롭게 도입한 다양한 시책들을 보다 구체화 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그 효과가 우리 부의 청렴도 향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마련

| 추진 배경 |

법률 제·개정 절차의 장기화로 인해 4차 산업혁명 등 기술적, 경제적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는 법령이 제때 마련되지 못함으로써 성장 동력이 위축되고 있다. 또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이 없는 세부사항까지 법률에 규정하여 법률이 복잡해지고, 행정이 경직되는 법률 과잉현상이 나타나고, 공무원이 사후감사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법령을 소극적으로 해석·적용함으로써 신기술·신산업 발전 등을 가로막는 요소로 작용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법령이 국가혁신의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이 되기 위해서는 적극행정 법제 패러다임의 재설계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법치행정의 기반 아래 국내·외적 환경 변화와 국민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하는 것은 행정부의 선택이 아닌 의무이다. 이에 따라 법제처는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법제 기준을 마련하고 적극적 법령 해석을 적용하도록 하는 등 적극행정을 지원하고 있다.

| 제도 개요 |

'적극행정 법제'란 적극행정을 위하여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법제 기준을 마련하고, 적극적 법령해석의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다.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의 목적은 공무원이 적극행정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바탕으로 자신의 업무에서 법령을 해석하거나 입안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실용지침을 제공하는 것이다.

- ① 적극적 법령해석의 기준 및 사례, ② 신산업 활동에 대한 자율 보장 방법, ③ 하위법령

으로도 규정 가능한 분야 예시를 제시하여 일선 공무원이 소관 법령업무 처리 시 가이드라인을 활용하여 적극행정을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특히 신기술 등 새로운 분야에서 기존 법령을 탄력적으로 해석·적용하여 해당분야가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법제처는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정부 유권해석, 법령입안지원 및 법령정비를 통해 각 부처 법제 업무를 지원하며, 각 부처의 적극행정 법제를 위하여 법령해석부터 법령입안까지 개별적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적극행정 법제 실천 흐름도]



| 추진 경과 |

1) 적극적 법령해석

적극적 법령해석이란 입법 취지상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규제를 확대해석 하는 행태를 지양하고 기존 법령에서 예상되지 않았던 분야에서는 명시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사항 외에는 가급적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규제는 문언대로 엄격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헌법적 가치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반드시 규제가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해석하도록 하며 신기술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변화를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석하도록 하였다. 한편 국민의 편익 증진 관련 규정은 법령의 적용 범위를 해석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넓게 해석하고,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규정은 해당 법령의 적용을 통하여 최대한 안전보장이 가능하도록 해석하며 사회적 약자를 최대한 배려하는 방향으로 해석하도록 하였다. 또한 실제적 요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절차의 경우 지나친 엄격해석을 금지하고 행정편의적 해석을 지양하도록 하였다.

[적극적 법령해석 사례]

규제의 불필요한 확대해석 금지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공장용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면 **사업계획 승인 취소사유**에 해당하지만, 그 공장용지에 설립된 “**공장용도의 건축물**”을 임대한 경우는 **취소사유가 아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7조제1항제3호 관련)

신기술 발전 등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

전자서명 관련 **신기술이 발전**하면서 다양한 방식의 전자서명이 사용되는 등 **기술적 환경이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법령에 규정된 “**전자서명법**, **에 따른 전자서명**”은 “**전자서명법**, **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뿐만 아니라 다른 전자서명도 포함**”
 (「의료법」 제23조 등 관련)

국민의 편익 증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은 국유 토지를 ‘임대’ 받은 입주기업체가 ‘**임대받은 토지**’ 위에 공장 등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국유 토지의 매각대금을 분할납부 방법으로 “**매입한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 등 관련)

공정사회 구현 및 사회적 약자 배려

장애인 등이 정원 외로 입학할 수 있는 근거는 있으나, **전문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수여받을 수 있는 학위심화 과정에 정원 외로 입학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정원 외로 입학할 수 있는 것으로 봄**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등 관련)

절차 간소화를 통한 신속행정 구현

“**조합원의 동의를 받은 정산서**”라고만 규정하고 있는 경우,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택조합 총회의 **의결정족수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주택조합의 해산인가를 받을 수 있음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등 관련)

행정편의적 해석 지양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이 취소되어 **택시운전자격증명을 제출할 수 없게 된 경우**, 운전자격 등록대장의 사본 등 양도자의 **택시운전자격증명이 반납 및 폐기되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양도할 수 있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5조제5항제1호나목 등 관련)

2) 신산업 자율 보장

신산업 자율 보장이란 법령상 규제 적용 대상인지 불분명 하거나 행정기관에 규제 결정의 재량이 있는 경우, 행정기관이 신산업에 대한 개입을 자제함으로써 민간의 자율과 창의, 혁신을 촉진하고 급격한 환경변화에 행정의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 차원의 선도 신산업에 대한 현행 규정의 적용 여부가 불명확하고, 선도 신산업의 육성이 필요한 경우 해당 부처 또는 부처합동으로 현행 규정에 따른 규제를 일정 기간 적용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입장을 훈령 또는 고시 등의 형태로 표명하도록 하였다.

또한 개별 행정기관별 '비조치의견서' 통지 제도를 도입하여 개별 행정기관은 선도 신산업을 규율하는 법령이 있는지 불명확한 경우 원칙적으로 신산업을 수행하려는 자에게 해당 신산업을 규제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비조치의견을 통지하도록 하였고, '사전컨설팅 감사제도' 및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 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였다.

3) 하위법령 마련

포상금, 보조금, 시스템 구축, 관계기관 협조, 자문위원회, 행정지도 또는 권고, 행정상·재정상 필요조치, 수수료, 시범사업의 실시, 우수 사례의 보급·확산 등 국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와 무관하거나, 개별 법률에 근거가 불필요한 경우 등은 하위법령으로 규정하도록 하여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이 없는 세부사항까지 법률에 근거를 두려는 법률 과잉현상을 보완하였다.

| 향후 계획 |

법제처는 유권해석, 법령인안지원 및 법령정비를 통해 각 부처 법제업무를 지원하고 법령해석부터 법령입안까지의 개별적 맞춤형 컨설팅, 비조치의견서 도입을 위한 훈령 제정 시 입안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법제교육을 통해 공무원 교육을 실시하고, 법제심사와 법령해석을 통해 적극행정 법제의 정착 및 우수사례 확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러한 적극행정을 통해 법령이 국가혁신의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이 되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주어진 권한과 책임을 다하여 공익을 증진하고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봉사하는 행정이 실현될 것으로 기대된다.

복무규정 강화 및 국민참여 제도개선

| 추진 배경 |

국세청은 국세청 소속 공무원(이하 ‘국세공무원’이라 한다.)이 공사생활에서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과 윤리·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2003년 5월 19일 「국세청 공무원 행동강령」(이하 ‘행동강령’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행동강령을 비롯한 각종 복무규정은 그 규율을 받는 대상자의 행태 유형 변화 등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달라진 사회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인 개선과 보완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행동강령의 경우에도 2003년 5월 제정 이후 2018년까지 총 15차례에 걸쳐 개정된 바 있으며, 사회환경의 변화를 실질적으로 반영한 합리적인 개선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복무규정 개정을 포함한 각종 제도개선이 실질적인 효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개선 방향을 설정함에 있어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제도에 영향을 받는 유관단체와의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국민신문고, 민원상담, Clean신고센터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제도개선 방향 설정에 반영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시민감사관」 제도를 본격 운영하는 한편, 한국세무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납세자와 일반 국민의 목소리를 세정환경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제도 개요 |

1) 국세청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

국세청은 국민권익위의 「공무원 행동강령」 등을 반영한 「국세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2003년부터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제정 이후 2018년 4월 17일 개정까지 총 15차례에 걸친 개정을 통해 제정 이후의 사회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왔다. 특히, 2018년 4월 개정에서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갑질행위 근절을 위해 ‘민간부문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 조항과 ‘직무관련자 등에 대한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퇴직자 사적접촉 신고’ 의무화 규정을 신설하는 등 국민의 시각에서 실질적인 복무행태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2) 국민 참여형 제도개선 추진

제도개선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국민의 시각을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국세청은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967년 각 세무관서에 행정안내실을 신설하고 민원서비스를 체계화하기 시작했으며, 현재에는 국세상담센터 및 각 세무관서의 민원봉사실 운영, 국세청 홈페이지의 고객의 소리 · Clean신고센터 · 감사관 핫라인 등을 통해 납세자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있다. 세정개혁에 있어서도 국민의 시각을 반영한 실질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 왔다. 2000년 이후의 국민 참여형 제도개선 추진 사례를 살펴보면, 2003년에는 공정한 과세, 투명한 세정운영을 통한 국민의 신뢰확보를 위해 ‘세정혁신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경제 · 시민사회 · 학계 · 조세단체 소속 28명을 외부위원으로 위촉한 바 있으며, 2005년에 구성된 ‘열린세정추진협의회’에는 25개 납세자 단체의 대표가 참여하였고, 이를 2006년에 개편한 ‘따뜻한 세정추진협의회’에서도 납세자 단체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운영 방식을 이어갔다. 2009년 8월에는 사회 각계의 전문가 10인이 참여하는 ‘국세행정위원회’를 출범하여 2013년 10월까지 총 12차례의 회의를 통해 국세행정 운영 전반에 걸쳐 실질적인 자문기능을 수행하였다. 2013년 10월에는 ‘국세행정위원회’를 ‘국세행정개혁위원회’로 확대해 새롭게 발족하였으며, 국민권익위가 권장하는 ‘청렴시민감사관’의 역할도 함께 수행하고 있다. 2017년 11월에는 ‘국세행정개혁위원회’를 개편하여 3개 분과체제로 재편하고 14명의 외부위원 등으로 구성된 본위원회와 17명의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각 분과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한편, 2018년 9월에는 ‘국세행정개혁위원회’와 별도로 감사 · 감찰업무 분야에 특화된 자문기구로서 ‘시민감사관’ 회의를 출범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앞으로 ‘시민감사관’ 회의와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국민 시각을 반영한 국세행정 개선방안 모색에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추진 내용 |

1) 국세청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을 통한 복무규정 강화

2018년 4월 17일 행동강령을 개정하여 직무관련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차단 장치를 보강하고, 갑질행위 근절을 위한 기본적인 규정 등을 신설하였다. 특히, 2013년 4월부터 세무

조사 분야에서 시행하고 있던 「사적관계 신고제」를 단순 신고·민원 등 분야를 제외한 국세 행정의 모든 분야로 확대 적용하도록 행동강령에 반영하였다. 이러한 사적관계 신고제도는 2018년 4월 17일 시행된 국민권익위의 「공무원 행동강령」에도 반영되어 국세청에서 먼저 실시하고 있던 제도가 다른 정부기관으로 확대 적용되는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행동강령 개정을 통해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함께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 유흥주점 이용 등의 사적접촉에 대해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는 「사적접촉 신고제」를 도입하였으며, 국세공무원이 납세자 등에게 특정 세무대리인을 추천하거나 소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명문화하였다. 또한, 고위공직자나 인사담당자 등이 소속기관에 본인의 가족을 채용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국세공무원이 민간부문에 대해 부정청탁을 하거나 직무관련자 등의 노동력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조항을 신설하였다.

[행동강령 개정 주요 내용]

- (사적접촉 신고제 도입) 퇴직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함께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 유흥주점 이용 행위를 하는 경우 사전 신고 의무화
- (알선·청탁 금지 명문화) 직무관련자 등에 대한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을 금지하고, 특정 세무대리인 등을 추천하거나 소개하는 행위 전면 금지
- (사적관계 신고제 확대) 세무조사 분야에 적용하던 사적관계 신고제도를 증명 발급, 접수, 송달, 단순 사실관계 확인 등 단순 신고·민원 업무를 제외한 전 분야로 확대 적용
- (갑질행위 금지) 민간부문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 및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 공무원의 노동력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금지
-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고위공직자나 인사담당자 등이 소속기관에 본인의 가족을 채용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금지
- (직무관련 이해관계 신고 강화) 공무원 자신, 배우자 등이 직무관련자와 금전차용, 부동산 거래, 물품·용역·공사 계약체결 시 신고 의무화

2) 국민 참여형 제도개선 추진

국세청은 각종 제도개선을 추진함에 있어 국민의 시각에서 실질적인 개선방안 도출하기 위해 유관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등 국민 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8년 2월 국세청은 한국세무사회와 「청렴세정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발굴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주요 정책 추진사항에 대한 홍보도 상호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청탁금지법 등 청렴 관련 법규정의 철저한 준수와 부조리 발생 차단을 위한 정보공유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를 통해 「사적관계 신고제」와 「사적접촉

신고제」 등 세무대리인이 알아야 할 청렴제도에 대한 홍보·안내를 강화하고 있으며, 신규 세무대리인 등에 대한 청렴교육도 지원할 예정이다.

2018년 9월에는 교수·세무사·회계사·시민단체 인사 등 일반 국민을 국세청 시민감사관으로 위촉하고 제1차 시민감사관 회의를 개최하였다. 시민감사관 회의는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제도개선 논의를 보완하고 감사·감찰업무 분야에 특화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하면서 국민의 관점에서 세정집행을 점검하고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개선이 지속되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시민감사관 제도는 국세행정 전반의 업무실패 점검 등을 통해 부당한 업무처리 등 부조리 행위에 대한 적발을 강화하고, 부조리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보강 방안을 모색하는 역할을 중점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 향후 계획 |

앞으로 국세청은 유관기관과의 협력과 시민감사관 제도를 통해 국민 시각에서의 제도개선 사항 발굴 노력을 계속할 예정이며, 사회환경 변화를 적시에 반영하기 위한 행동강령 등 복무규정도 지속적으로 개정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2018년 12월로 예정된 국무조정실과 국민권익위의 '공공분야 갑질 근절대책' 후속조치가 시달되면 자체 복무환경 특성을 반영한 행동강령 개정 등의 기관별 조치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부정부패 신고 활성화를 위한 자체 신고체계 개편

| 추진 배경 |

금품수수나 이른바 ‘갑질’로 불리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지시나 행위, 및 성폭력 등 우리사회의 부조리는 개인과 사회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함은 물론 건전한 사회 형성을 방해하는 요소이다.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에게 재산의 손실, 기회의 박탈, 자존감의 상실 등 감당하기 어려운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고통을 받게 하고, 상호 존중, 공정한 경쟁과 정의의 가치를 파괴하여 사회의 성장을 방해하며 조직 내에서는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여 상생, 동반 성장과 통합을 저해하여 공직사회를 떠나 전 사회적으로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폐습이다.

부정부패행위의 근절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문화나 인식의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 문화나 인식의 변화는 오랜 기간의 교육 등 변화 노력 없이는 쉽게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적발을 통한 일벌백계의 엄중한 처분이 병행되고 있으며, 우리 법 또한 국가공무원법, 형법 등 각종 법률을 통하여 공무원에게 청렴의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자에 대하여 엄중하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부정부패행위는 행위의 은밀성, 보복의 우려나 조직적 은폐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선제적 대응이나 적발에 근본적으로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그 한계를 극복하는데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피해자나 양심 있는 내부 주변인의 문제의식과 신고로 대표되는 행동이다.

관세청은 관세청과 세관 주변종사자들이 신분 노출이나 보복의 우려 등 신고행위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고 또 피해자 등에게 신뢰받는 실효성 있는 신고체계 구축을 위하여 그동안의 행정 중심적인 자체 신고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였다.

| 제도 개요 |

관세청은 관세행정 업무처리과정에서 관세공무원 또는 세관주변종사자의 부정부패행위에 대해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의 접수와 처리를 위하여 본청 및 5개의 본부세관에 부정부패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신고의 접수는 전화·팩스, 인터넷, 인트라넷의 접수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실무적으로는 방문, 우편, 내부메일 등의 신고 접수 채널도 운영하여 어떠한 방법으로도 신고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다.

또한, 부패방지권의위법에서는 기명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관세청은 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전화신고나 인트라넷을 통한 내부 신고의 경우는 익명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신고행위의 익명성을 보장하고 신고자의 신분 노출 우려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인터넷 신고채널은 국민신문고 시스템과 연계하여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운영하고 있는데, 별도의 실명 인증 절차가 필요하여 비실명 신고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였다. 내부 직원의 신고 편의를 위해서 자체 인트라넷인 지식경영포털시스템에 부정부패신고센터(기명신고)와 생생소리통(익명신고)이 운영되고 있기도 하다.

| 추진 내용 |

1) 전화신고채널의 통합과 설비 개선

관세청의 부정부패신고센터는 본청 및 본부세관 감사부서에 설치되어 부패신고의 접수를 담당하고 있는데, 각각 다른 전화번호를 사용하고 전화번호에 대한 홍보 또한 부족하여 일반 국민은 물론 주변종사자에게 잘 알려지지 못했으며, 업무용 전화를 겸하고 있어 신고 접수를 담당하는 공무원도 부패신고 전화 여부를 미리 알지 못해 적극적인 응대에 한계가 있었다. 신고내용 조차 부정부패행위에 대한 신고보다는 불친절 등 일반 민원성 전화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현실이었다.

이런 문제점의 해결을 위해 관세청은 밀수신고 전화번호인 '(전국공통) 125' 전화를 부패신고 접수에도 활용하도록 개편하여 전국 어디서든 관세행정 관련 부정부패행위를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125전화번호는 1996년 3월 전국세관 밀수신고전화를 125로 개편한 이래 관세사, 보세화물 관련업자, 선사·항공사 임직원 등 세관 관련 주변종사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전화번호이다.

또한, 관세청은 신고 내용에 대한 정확한 전달과 무고에 대한 대응을 위해 통화 녹음 기능이 있는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부패신고 전용 전화기를 설치하였으며, 부정부패신고

센터 담당자를 사무분장에 반영하여 신고자 보호·보상 등 신고에 대한 책임성을 명확히 하였다. 부정부패행위에 대한 신고는 당연히 필요한 것이나 부패신고를 핑계로 한 무고로부터 소속 공무원을 보호하는 것 또한 당연시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부정부패신고센터 125 통합 세부운영]

125번		
10(밀수신고)	20(고객지원)	30(부정부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032) ▶ 서울(02,031,033,041,042,045,044,9) ▶ 부산(051,055) ▶ 대구(053,052,054) ▶ 광주(062,061,063) ▶ 제주(064) ▶ 지역번호 모름(9_서울연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TA(1) ▶ 해외직구(2) ▶ 우편물·여행자·이사자(3) ▶ 품목분류·HS(4) ▶ 수입통관·평가·감면(5) ▶ 수출통관(6) ▶ 관세환급(7) ▶ 보세화물관리(8) ▶ 조사·외환, 기타(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032) ▶ 서울(02,031,033,041,042,045,044) ▶ 부산(051,055) ▶ 대구(053,052,054) ▶ 광주·제주(062,061,063,064) ▶ 관세청, 지역번호 모름(9)
본부세관 밀수신고센터 연결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연결	관세청·본부세관 부정부패신고센터 연결

2) 자체 인터넷 신고 채널 신규 구축 등

관세청은 고유의 자체적인 인터넷 신고 채널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홈페이지에 국민권익위의 국민신문고 시스템을 연계하여 부정부패신고를 포함한 법령이나 업무에 대한 건의, 민원 등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기명신고만 가능한 국민신문고 시스템은 익명성을 보장받길 원하는 신고인이 접근하기에는 쉽지가 않은 신고환경일 수밖에 없었다. 또한 관세청훈령으로 보장하고 있는 신고자(제보자)에 대한 보호·보상제도 또한 홍보가 전혀 없는 것은 신고를 주저하는 원인 중 하나로 판단하였다.

관세청은 익명·기명신고가 모두 가능한 자체적인 인터넷 신고채널을 구축하고 신고 내용에 대한 접수와 처리 과정도 전산화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전산화할 것을 결정하고 2018년 말까지 모두 완료할 예정이다.

자체 신고 및 보호·보상제도에 대해서도 홈페이지 전용 화면을 통해 누구든지 내용을 보고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일반민원에 대한 업무처리 절차 명확화

일반민원은 125(고객지원) 및 각 세관 민원담당자가 접수·처리하고 있으나 불친절 민원이 부정부패신고센터로 제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불친절 민원은 규정이나 절차, 사실관계를 떠나 ‘나만 검사한다’ 또는 ‘짜려봤다’와 같은 세관직원의 태도 개선 요구 등으로서 부패행위와는 그다지 연관이 없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관세청은 불친절 민원에 대해, 그 내용이 직원의 행동강령 위반 등 명백한 비위사실에 해당하거나 민원이 부득이 감찰조사 등을 요구하지 않는 한, 부정부패신고센터에 접수하더라도 해당 민원 부서로 이첩하도록 하여 일반민원과 동일하게 125(고객지원)이나 각 세관 민원담당자가 우선 처리하도록 운영절차를 통일하였다.

반대로, 해당 민원부서 또한 민원부서의 처리과정에서 직원의 비위사실 등이 확인된 경우 등 감찰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감찰부서로 이첩하여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추진 결과 |

1) 양심 있는 주변인의 적극적인 신고 기대

최근의 관세청과 관련된 일정 금액 이상의 규모 있는 부패사건은 이른바 ‘외부적발’로 통칭되는 검찰이나 경찰 등의 다른 사건에 대한 수사 과정이나 언론의 보도를 통해 드러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해당 부패행위가 매우 은밀하여 당사자나 밀접한 관련자(주변인)가 아닌 이상 그것을 인지하기가 어렵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번 신고체계 개편 중 익명 신고 채널의 확대는 신고자의 신고 노출 우려를 완전히 제거함으로써 음성화된 고질적 부패행위에 대해 적어도 ‘양심 있는 주변인’이라면 아무런 보복의 우려 없이 신고하는 길을 열어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관세청 부패신고제도에 대한 신뢰 확산

모든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체적인 부패신고 및 신고자 보호·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일반 국민은 공무원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기관으로 경찰, 검찰, 감사원, 국민권익위 등을 우선 생각할 것으로 본다. 또는 그러한 제도의 운영을 알고 있더라도 소속기관에 대한 신고는 유효성이 떨어질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번 개편은 관세청의 부패신고 제도 전체에 대한 홈페이지 공개, 주변종사자에게 널리 알려진 125전화로 전화신고채널 통합, 익명신고도 가능한 인터넷 신고채널 구축 등 신고 활성화 노력을 보여주어 관세청의 부패척결 의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공고히 할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3) 공무원의 사기 저하 방지 및 직무의 공정성 확보

관세청의 휴대품통관 담당 공무원에 대한 민원은 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여행자들의 불편·불친절 민원이 대부분이다. 일부 여행자의 경우 아무런 이유 없이 불친절 행위를 했으며 부정부패신고센터에 신고하고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기도 하다. 이런 민원이 부정부패사건으로 처리될 경우 해당 공무원뿐만 아니라 주변 동료직원까지 조사를 받는 등 내부 구성원의 사기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이번 개편을 통해 관세청은 불친절 등 일반 민원과 부정부패신고의 구분 및 처리부서를 명확히 하여, 해당 민원을 받더라도 그 내용이 부패행위나 행동강령 위반 등의 내용이 아닌 이상 민원부서에서 우선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조사로 인해 구성원 개인 및 조직의 사기 저하를 방지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향후 전망 |

관세청은 그동안 거의 100%에 달하는 업무의 전산화를 통해 부패가 발생할 수 없는 업무 환경을 조성해 오고 있으며, 소속 직원 및 이해관계자에 대한 꾸준한 반부패·청렴교육과 각종 청렴교육프로그램을 통하여 직원의 의식과 조직의 문화를 바꾸는데 노력해 왔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자체 시행한 각종 조사에 따르면,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청렴'에 대한 가치 인식 수준은 이미 공무원 사이에 일반화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의 부패 일탈 행위는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오랜 유착관계에 의한 고질적 비위행위 또한 음성화하여 지속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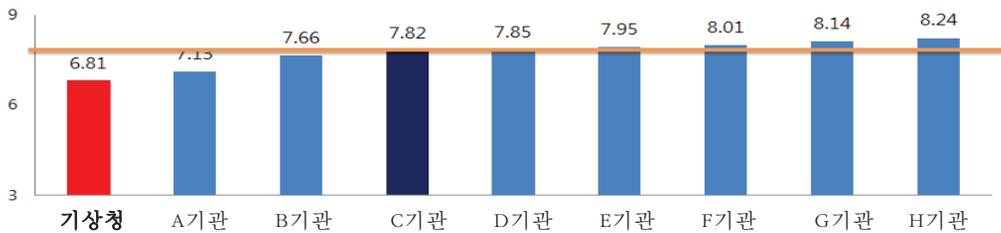
관세청은 부패신고 활성화를 위한 이번 개편이 내부직원의 고발과 외부 이해관계자 및 그 주변인의 신고로 이어져 관세행정 주변의 잔존 부조리가 완전히 없어지기를 기대한다. 더불어 이러한 변화로 인해 우리사회 전체에서 청렴과 공정의 가치가 확산되기를 기대해 본다.

조직 내 부당지시 근절 대책 추진

추진 배경

국민권익위에서 실시하는 청렴도 평가 결과 기상청 직원들이 평가하는 내부 청렴도는 최근 3년간(14~16) 최하등급인 5등급으로 조사되었다. 내부청렴도가 낮은 주요 요인으로 조직내 '부당지시'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다른 중앙행정기관과 비교하더라도 상당히 낮은 실정이었다. 이에, 기상청에서는 부당지시가 부패·비위로 이어질 수 있어 조직내 부당지시 근절을 위한 대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2016년 국민권익위 청렴도 평가 '기관별 부당지시 평가 결과']



추진 경과

[조직내 부당지시 근절 추진 경위]



1) 조직내 부당지시 사례 조사를 위한 직원 심층 인터뷰 실시

부당지시 근절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조직내 부당지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이에, 6급이하 직원 119명을 대상으로 2017.5.10.부터 2017.5.22.까지 각 소속기관을 방문하여 최근 2년간 경험했거나 보고 들었던 부당지시 사례를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여 조사하였다. 이와 더불어, 전직원을 대상으로 2017.6.7.부터 2017.6.14.까지 익명으로 부당지시 사례를 발굴하였다.

2) 부당지시 근절 대책 마련을 위한 직원 워크숍 실시

심층 인터뷰와 익명 조사시 발굴된 부당지시 사례를 바탕으로 부당지시 근절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2017.6.22.부터 2017.6.23.까지 청렴업무를 담당하는 청렴추진 전담요원 30명이 참여한 워크숍을 개최하여 부당지시 근절 대책 방안 마련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 제출과 대안에 대한 토의를 실시하였다.

3) 부당지시 근절 대책 수립 및 근절대책 전파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조사된 부당지시 사례와 워크숍을 통해 제안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사적인 업무지시 등 부당지시 사례와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였으며, 그룹웨어 팝업창 게시, 부당지시 대응 매뉴얼 리플릿 배포 등 부당지시 근절 대책을 2017.9월 수립하였다.

| 추진 내용 |

1) 부당지시 사례 팝업창 게시 및 부당지시 인식 확산

부당지시 사례에 대해 직원들이 이해하고 경각심을 일으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부당지시 사례를 팝업창에 게시하였다. 매일 업무 시작시 그룹웨어에 접속할 때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가지의 주제로 부당지시 사례를 팝업창으로 게시하여 전직원이 부당지시 사례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부당지시 근절 추진을 기상청의 행복한 청렴 문화 만들기 캠페인과 연계함으로써 보다 많은 직원들이 호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부당지시 사례 팝업창 게시 내용(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가지 주제로 게시)]

월	화	수	목	금
<p>행복한 청렴 문화 만들기</p> <p>직원들이 부당하다고 느끼는 사례들을 안내해드리니 행복한 조직문화를 위한 다음 사례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p> <p>I. 사적인 업무지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업무시간에 사적인 상담 과외활동 계획 및 예약 지시 / 친인척 관용 통행 복소프, 명품호텔 객실 구입 회사 내 일일, 사적차, 핸드폰 등 사용 요구 관련 업무에 개인차로 직원 차가용을 먼저 타라는 행위 대형택시 노후관리 지시 및 불법 지시 부여 사내에 인하여 개인 물품 구매 요구 휴식 공간에서 요구 차내 개인적인 일을 처리하게 부여 허위발행 통행 요구 	<p>행복한 청렴 문화 만들기</p> <p>직원들이 부당하다고 느끼는 사례들을 안내해드리니 행복한 조직문화를 위한 다음 사례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p> <p>II. 일방적 업무지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적절한 역할과 인계할 무사하고 본인 사명을 강조하는 행위 본인의 주장을 마시 친인척 것처럼 고집하는 행위 상사의 생각과 강요하고 반론을 허용하지 않는 분위기 조성 업무시간 내의 공휴일 및 소휴일 상급자의 일방적 강요 담당자의 역할 변경하지 않고 업무자 분하는 태도 관행 성과 및 실적 시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업무자 분하는 행위 문맥에 대한 책임은 오해하지 않고 행하는 관행일 요구 책임자, 담당자 업무지시 본인 책임으로 생략하고 업무지시 	<p>행복한 청렴 문화 만들기</p> <p>직원들이 부당하다고 느끼는 사례들을 안내해드리니 행복한 조직문화를 위한 다음 사례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p> <p>III. 업무에 지시하는 업무지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업무에 지시하고 있는 부당하고 불합치 가능한 요구하는 행위 직원 고충에 구명도 지시 않고 공판을 지시하고 업무 지시 부당 업무에 지시 구체적 업무지시 능력 보충하는 지시 <p>IV. 업무분장외의 업무지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무, 사적 업무 지시 부사 담당업무 지시, 모욕적 역할 지시 업무 지시 개인 업무지시 부여하는 상사 지시 업무지시 <p>V. 불합리한 업무지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직무와 관련 없는 업무 지시 부여하고 지시하는 상사 업무 지시 업무지시 부여하는 지시 업무 지시 부여하고 지시하는 상사 업무 지시 업무지시 부여하는 지시 업무 지시 부여하고 지시하는 상사 업무 지시 	<p>행복한 청렴 문화 만들기</p> <p>직원들이 부당하다고 느끼는 사례들을 안내해드리니 행복한 조직문화를 위한 다음 사례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p> <p>VI. 비업무시간 업무지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업무시간 외 업무지시 부여 하는 행위 <p>가. 기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침을 부여 남기지 않고 업무지시 부여하는 행위 과외활동 통행 금지시키는 행위 차내 개인적인 일을 처리하는 행위 업무 시간 외 업무지시 부여하는 행위 휴식 공간에서 업무지시 부여하는 행위 	

2) 행복한 청렴문화 만들기 리플릿 제작·배부

또한, 부당지시 사례에 대한 실천지침, 기관장의 청렴메아리, 그리고 개인별로 청렴 수준을 전달할 수 있는 청렴자가진단표 등을 수록한 부당지시 사례 및 대응 지침 리플릿 1,700부를 제작하여 정규직뿐만 아니라 비정규직에게도 배부하여 부당지시의 부당함을 인식하고 부당지시 근절을 위한 실천 지침을 준수하도록 하였다.

[행복한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부당지시 사례 및 대응 지침' 리플릿]



추진 결과

1) 직원들의 '부당지시'에 대한 인식 개선

부당지시 사례 팝업창 게시와 부당지시 근절 실천 지침 리플릿 배부를 통해 간부공무원과 부하 직원간의 부당지시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인지하게 되었으며 간부공무원이 부하 직원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바람직한 행동지침을 제공하였다. 아울러, 부하 직원들은 부당지시에 대해 적극적으로 이익을 제기하는 문화를 조성하였으며, 향후에 간부공무원이 되었을 때 주의해야 할 행동지침을 사전에 학습하는 기회가 되었다.

['부당지시 근절 대책' 시행 후 게시판에 게재된 직원들 의견]

게시일자	내 용
'17.9.6	<p>읽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네요. 아. 아직도 이런 지시를 하는 상사가 있구나. 아. 이것도 부당지시인데, 나는 아무생각 없이 따르고 있었구나. 아. 이런 상사가 되면 안 되겠다. 좋은 문서 같아요^^</p>
'17.9.7	<p>저도 그 문서 보면서 글쓴이랑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한편, 항상 우수사례, 좋은 것만 알려주는 문서가 대부분 이었는데.. 이걸 안 좋아요~이렇게 하지마세요~라고 일깨워주는 부당지시 사례 공문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공문을 보고 느끼는 만큼, 상급자들도 이렇게 느껴주셨으면 좋겠어요~</p> <p>아, 나는 부당지시를 하는 상사였구나.. 아, 내가 직원들에게 아무 생각없이 시켰던 게 부당지시였구나.. 아. 앞으로는 이러면 안 되겠다. 라고, 말이에요~^^ 이런 변화가 계속되면 조금씩 바뀔 거라고 기대해봅니다~^^</p>
'17.9.8	<p>부당지시는 모든 계급간에서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장과 과장사이, 과장과 사무관사이, 6급과 7급사이, 8급과 9급사이 등등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허위보고하는 행위와 상급자의 정당한 지시를 하급자가 이행을 게을리 하는 것도 부당한 행위겠지요. 따라서 기상가족 모두가 본인은 부당한 지시를 하지 않았나 되돌아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p>

| 향후 계획 |

기상청 감사담당관실에서는 부당지시 근절 대책을 통해 부당지시의 부당함에 대해 전 직원의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조직내 부당지시를 근절하는 데 큰 기여를 하였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를 통해 부당지시를 근절하여 청렴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청렴 집중 강조의 달 운영 (청렴이 June 선물의 달)

| 추진 배경 |

국무조정실은 ‘부정부패 척결’ 선도기관으로서의 위상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권익위 주관 「청렴도 측정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중하위권 수준(3·4등급)에 머무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17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보고서에서 “국무조정실 반부패 시책 추진 내용의 창의성이 낮고 구성원 참여도가 저조하다는 평가와 함께 구성원 전체의 참여수준을 확산시킬 수 있는 과제 발굴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국무조정실 직원의 인식조사 결과(18.5.8~17), 일방적인 홍보 및 강의위주 교육방식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5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에 2018년에는 조직 구성원의 참여도를 높이는 다양한 청렴 홍보·교육 활동에 주력하였다.

| 추진 내용 |

그간의 교육·홍보가 간헐적이고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직원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는 점에 착안하여 2018년에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직원들의 관심 제고에 중점을 두어 청렴 시책을 추진하였다. 이를 위해 2018년 6월 한 달을 ‘청렴이 June 선물의 달’로 명명하고, 반부패·청렴 집중 교육·홍보기간으로 설정하여 청렴 홍보전시실 운영, 청렴 릴레이 교육, 청렴 인식 OX 퀴즈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집중 시행하였다.

1) 청렴 홍보전시실 운영

6월 한 달 간 국무조정실에 청렴 홍보전시실을 마련하여 운영(18.6.4~29)하였다.

청렴 홍보전시실은 국무조정실에서 추진 중인 청렴 시책들은 물론 2017년도 11개 청렴 우수 기관(법제처, 부산광역시, 대구교육청 등)들의 청렴 시책 모범사례, 10여 개 기관(교육부, 관세청, 광주광역시 등)이 자체 제작한 50여 종의 청렴 홍보물품 등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청렴 시책 공유의 장이었다.

청렴 홍보전시실 운영 결과,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직원 518명과 중앙·지방행정 기관·교육청 등 37개 기관 78명의 청렴업무 관련자가 청렴 홍보전시실을 방문·관람하였으며, 국무조정실의 청렴 추진 상황, 타 기관의 청렴 모범·우수사례, 청렴 홍보물품들의 아이디어들을 공유함으로써 직원들이 청렴 평가 체계와 청렴시책 등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또한 기관 간 교류 확대를 통해 전 기관에 청렴 문화를 확산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청렴 홍보전시실 전경 및 방문자 안내



2) 청렴 릴레이 교육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은 직원들의 교육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청렴 콘텐츠를 개발하여 한달간 청렴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하였다. 먼저 국민권익위 청렴연수원의

협조로 판소리·상황극 등 ‘청렴’을 문화 공연과 접목한 콘서트의 형식의 교육을 실시(6.12) 하였다. 공연을 통한 교육에 직원들은 크게 호응하였으며 특히, 실제 청렴연수원에서 근무하는 공직자가 직접 무대에서 연기하여 감동이 배가되었다. 둘째, 영화를 소재로 한 교육인 ‘영화로 배우는 청렴이야기’ 교육을 실시(6.29)하였다. 청렴 관련 영화 시청 후 공직자의 소명의식과 청렴에 대해 강사와 토론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으로 국장급 이상 고위직을 대상으로 고위공직자의 청렴 리더십 교육을 실시(6.20)하여 각종 리더십 이론과 사례를 배우는 값진 시간을 가졌다.



이와 같이 6월의 집중적인 교육과 다양한 참여형 교육방식 도입을 통해 전년 대비 청렴교육 참여율이 크게 증가하는 등 직원들의 청렴 인식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었다.



3) 청렴 인식 온라인 퀴즈 평가 실시

소속 직원들이 청탁금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 청렴 관련 법령들의 주요 내용과 적용사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사례 중심의 O·X퀴즈를 실시하였다. 6월 한 달 간 총 4회(40문제)에 걸쳐 실시한 O·X퀴즈에 직원 830명이 참여하였고 평균 85점 이상인 우수 직원(51명)에게는 상품권 증정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직원들의 높은 관심과 호응을 이끌어냈다.

불필요한 행정낭비 방지를 위한 업무 프로세스 혁신

| 추진 배경 |

방송시장 매출 감소 등 콘텐츠 제작기반이 약화되고, 한편으로 빅데이터·IoT 등 인터넷 신산업의 등장, 불법음란정보·가짜뉴스 같은 인터넷 역기능의 대두 등 방송통신환경이 급격히 변화되고 있어, 이러한 환경변화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방통위가 국민에게 사랑과 신뢰를 받는 조직으로 일신하고 보다 책임감 있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변모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개혁의 구경꾼’이 아니라 ‘개혁을 이끄는 주체’로서 나서는 능동적인 기관혁신과 ‘넓은 관행의 혁파’, 일하는 방식 혁신을 통한 효율적인 정책 추진체계 마련 및 행정서비스 혁신을 통해 방통위의 비전인 “국민이 중심 되는 방송통신”을 실현하는 방통위 자체의 조직적 혁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추진 내용 |

1) 상향식·자율적 업무 프로세스 개선

방통위는 상향식·자율적 과제발굴을 위해 ①업무 프로세스와 ②조직문화 혁신 2개분야로 각각 별도 TF를 구성·운영하고, 6급이하 직원부터 국과장까지 다양한 구성원들의 자유로운 토론과 면담, 설문조사를 통해 개선의견을 수렴하고 사무처장 주재 국장급 회의를 거쳐 혁신과제를 발굴하였다.

특히, 상향식·자율적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위해 ① 아이디어를 내는 ‘주니어보드 그룹’

과 ② 실행력 담보를 위한 ‘총괄그룹’(과장, 총괄사무관)으로 구성된 「업무 프로세스 혁신 TF」를 구성(18.2월~)하여 혁신과제 발굴 및 추진하였는데, ‘주니어보드’는 5·6급 이하 직원 중 경력·신규 및 전입직원(10명)들로 회의를 개최하여 일하는 방식 혁신 아이디어를 도출하였고, ‘총괄그룹’은 아이디어의 실행가능성을 높이고 직원들의 동참을 이끌어 내기 위한 실행그룹 형태로 운영하였다.

또한, 업무 프로세스 혁신과 별개로 조직문화 혁신을 위한 ‘조직문화 혁신 TF’를 구성(18.3월)하고, 전 직원 대상 설문조사 및 직급별 심층면담 실시 등을 통해 혁신과제 발굴 및 추진하기도 하였다.

2) 불필요한 일 버리기를 통한 업무간소화

방통위는 범정부 일하는 방식 혁신의 일환으로 1부서 1건 불필요한 일 버리기 등 불필요한 일 버리기를 통한 업무간소화를 추진하였다. 특히, 방통위 혁신방안(정부혁신 실행계획, 일하는 방식 혁신 추진과제 등) 중에서 업무간소화와 관련된 4개사항을 선별하여 ‘불필요한 일 버리기 실천지침’을 만들어 배포하고 설문조사 및 안내방송을 하는 등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방통위 불필요한 일 버리기 4대과제]

과 제	내 용
① 반복·불필요한 자료 요구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당들만 보는 G드라이브에 국별 수합내용을 공유하여 1차로 해당자료를 활용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실국에 자료 요청
② 국회 준비 및 대기 간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쟁점보고는 신규·핵심사안만 보고 • 법안국회 전체회의 쟁점보고는 요약본으로 보고 • 과별 1명만 국회현장 대기(국총괄 제외), 사전질의 없는 과팀장 미참석
③ 불필요한 자료 간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서장 조건 스크랩 출력, 불필요한 제본 최소화 • 캐비닛에 자료 보관하지 않기
④ 보고 및 자료수합 방식 간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장 보고는 과팀장이 보고(원칙) • 말씀자료 1장, 보고서 1장(원칙) • 온나라 메모보고를 활용해 보고 및 자료수합 간소화

이와 별도로, 부서별 ‘1부서 1건’ 불필요한 일 버리기 추진을 통해 우수사례를 선별하여 포상하고, 제출된 불필요한 일 버리기 우수사례는 게시판 및 메일, 공문을 통해 직원들에게 전파하였다.

[1부서 1건 불필요한 일 버리기 우수사례]

불필요한 일	버리기 내용
연가신청시 사유설명	개인사정에 따라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신청할 수 있도록 별도 연가사유 설명없이 연가신청토록 조치
불필요하게 긴 회의시간	불필요한 회의나 회의시간이 지나치게 길어지지 않도록 회의시간을 30분 이내로 제한
퇴근인사	눈치보지 않고 정시퇴근할 수 있도록 별도 퇴근인사 없이 퇴근토록 조치
국회 현장대기	국회 질의서 답변을 위한 대기 시 유선 상으로 대기하도록 조치
찾은 대면 보고	내부메일 또는 온나라 메모장을 활용하여 업무보고

3) ICT를 활용한 업무프로세스 개선

방통위는 ‘일하는 방식 혁신 과제’의 일환으로 ‘ICT활용 업무 프로세스 개선’ 관련 5개과제를 설정(3월)하고 개선을 추진하였다.

일하는 방식 개선과제	추진 내용
1. G드라이브 사용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G드라이브에 자료를 보관하고, 부서 직원 간 자료 공유를 통해 업무 효율성 향상 도모 G드라이브 인수인계 기능 활용
2. 업무환경개선-성능저하 PC 개선을 위한 SSD 구매 및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체PC 구매기준에 SSD를 반영하여 업무환경 개선
3. 위원회 회의 중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원회 회의를 영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중계 실시
4. 안건 작성 방식 효율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자회의시스템으로 회의를 운영하고 인쇄물은 비상용으로 최소한의 인쇄본만 준비
5. 스마트워크센터 활용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사관등 스마트워크가 필요한 직원부터 스마트워크센터 활용 확대

또한, 범정부 ‘일하는 방식 혁신’ 중점과제 선정(5월)에 따라 방통위 중점과제 추진방안을 수립(6월)하고, ‘언제 어디서나 SMART WORK’와 ‘G드라이브 자료저장’ 캠페인을 추진하였다.

‘영상회의 활성화’를 위해 영상회의 활용 대상회의를 지정하고, 내부 평가에 영상회의 활용실적 반영하였으며, ‘모바일 업무시스템 활용’을 위해 직원들이 모바일 전자결재 및 모바일 메일을 활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온나라’ 및 ‘모바일 공직자통합메일’을 설치토록 유도하였다. ‘GVPN 사용’ 활성화를 위해 정부원격근무서비스(GVPN)을 결재권자(과·팀장급 이상) 및 외부 상시근무자(ex. 방송시장조사과)가 우선하여 활용하고 출장 등을 대비하여 직원들

이 미리 이용자로 등록토록 유도하였으며, ‘G드라이브 자료저장’ 활성화를 위해 G드라이브를 통한 인수인계를 의무화하고 G드라이브에 업무자료를 저장토록 유도하여 업무자료의 분실방지 및 직원간 자료공유 활성화를 추진하였다. 이러한 중점과제 추진을 위해서 위한 배너를 업무포털에 배치하고, 5층 중앙복도에 중점과제 프린팅 벽면 조성 및 배너 설치, 게시판·공문 등을 통한 모바일 업무시스템 및 G드라이브 사용 매뉴얼 배포 및 활용 홍보 등 캠페인을 아울러 실시하였다.

Ⅰ 추진 성과 Ⅰ

방통위가 정부혁신 실행계획, 일하는 방식 혁신 개선과제 등을 통해 낡은 관행과 선례를 깨는 창의행정 환경을 조성하고, 업무 간소화 및 업무프로세스를 개선함으로써 G드라이브 이용 활성화, 보고체계 및 자료 간소화, 정책성과평가 강화, 국회대응 간소화, 민원업무 개선, 모바일 업무시스템 이용 활성화 등 대폭적인 업무프로세스 개선이 이루어져 전반적인 업무효율성이 증대되었다.

[업무프로세스 혁신 운영 성과사례]

- (G드라이브 이용 활성화) G드라이브 사용률 90%(’18.10월 현재), 전자적 인수인계 의무화
- (체계적인 전보원칙) 선호부서와 비선호부서간 순환근무 실시, 출신별 보직 및 전보 등 차별 근절
- (성별 차별 금지) 타업무 차출시 남녀차별 금지 등
- (정책성과평가 강화) 국·과장 성과평가시 엄정한 성과평가를 통해 승진, 전보 등 신상필별 추진
- (보고체계 변경) 과장위주 보고체계 확립
- (반복·불필요한 자료요구 제한) G드라이브 업무공유함을 활용하여 반복, 불필요한 자료요구 억제
- (국회대기 간소화) 과팀별 1명씩만 국회 참석토록 변경
- (국회쟁점보고 간소화) 서면쟁점보고로 부담 최소화, 법안국회의 경우 전체회의의 쟁점보고는 요약본으로 보고
- (업무택시 변경) 자유로운 콜배차가 가능토록 개선
- (자료 간소화) 조건 스크랩 출력 제한, 제본 최소화, 캐비닛에 자료 보관하지 않도록 개선
- (보고 및 자료수합 간소화) 말씀자료 1장, 보고서 1장 작성, 온나라 메모보고 활용 활성화 추진
- (민원업무 개선) 민원전화 응대는 1차적으로 민원실 상담사로 일원화
- (갑질방지) 갑질피해·업무저해행위 온라인 창구 개설·운영중
- (소통공간) 청사 5층에 혁신소통공간 조성
- (회의시간 줄이기) 모든회의는 1시간내 완료토록 개선, 회의실 예약시스템 승인제 전환
- (모바일 업무시스템) 모바일 온나라 사용률 33.2%, GVPN 이용자 67.6%, 바로톡 사용률 100% (’18.10월 기준)

| 향후 계획 |

방송통신위원회는 자체 혁신자문단 구성 및 자문을 통하여 그간의 업무프로세스 혁신 작업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민간에서의 혁신사례를 자문받는 등 그간의 미비점에 대한 보완 및 추가적인 개선을 진행함으로써 내년도 정부혁신 실행계획 수립 등에 이를 반영하는 등 보다 효율적인 업무추진체계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나아가“국민이 중심 되는 방송통신”이 될 수 있도록 보다 책임감 있고 효율적인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정책 및 서비스 전반을 혁신해 나갈 예정이다.

사례금 없는 외부강의 (재능기부)

추진 배경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의료제품(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기관으로 해당 사무별 영업자나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켜야할 의무를 갖고 있다. 영업자 교육기관 등에서 우리 처 직원들의 전문성을 활용한 강의 요청 등 수요는 많으나 국회, 언론 등에서 공무원의 외부강의로 수수를 합법적인 뇌물로 오인하는 경향이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외부강의로 인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한국재능기부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현재까지 청렴대책의 일환으로 외부강의등 재능기부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외부강의등 재능기부 활동이란 강의요청 기관으로부터 강의를 받아 직접 기부하거나 강의요청 기관이 강의를 재능기부협회에 보내는 것이 아닌 식품의약품안전처 직원이 강의요청 기관으로부터 일체의 사례금을 받지 않고 강의·평가 등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재능기부 절차]

구분	재능기부 절차	비고
강의요청기관	외부강의등 요청 ↓	• 강의요청 공문 필수
강의자	강의·평가 등 실시 ↓	• 재능기부 확인서 지참
강의자	재능기부 금액·시간 확인 ↓	• 요청기관 으로부터 확인서명
강의자	강의요청 공문 및 확인서 제출 ↓	• 감사담당관실로 사본 제출
감사담당관	(사)한국재능기부협회에 기부내역 송부 ↓	• 주기적 취합·송부
(사)한국재능기부협회	기부영수증 발급	• 개인·부서 평가 반영 등

| 추진 내용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직원들의 외부강의등 재능기부 지원(기부영수증 발급 등)을 위해서 (사)한국재능기부협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15.7.9.)하였고 본부 및 소속기관 944명의 직원들이 식품·의약품 및 연구분야 등에서 전문지식을 무료로 강의하겠다는 재능기부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2018년 1월에는 4급 이상(5급 부서장 등 포함) 직원 대상으로 재능기부 활동을 확대하여 간부급 직원 182명이 '재능기부 동참 서약서'를 제출하는 등 강의 사례금을 받지 않는 기부문화 및 청렴한 문화 조성에 참여하고 있다.

강의, 심사, 토론 및 평가 분야 등에서 사례금을 받지 않는 재능기부 실적은 ▲ 2015년(7~12월) 26백만 원, ▲ 2016년 52백만 원, ▲ 2017년 67백만 원 ▲ 2018년(10월 기준) 55백만 원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상대적으로 직원들이 외부강의등을 행하고 받는 사례금액은 ▲ 2015년(7~12월) 64백만 원, ▲ 2016년 148백만 원, ▲ 2017년 138백만 원 ▲ 2018년(10월 기준) 35백만 원으로 재능기부 도입이후 매년 감소하고 있는 실정으로 직원들이 외부강의등을 행하고 사례금을 받지 않는다는 청렴실천을 통한 공직자 의식개혁 등 청렴문화 정착에 앞장서고 있다.

[재능기부 추진 실적]

(단위: 백만원)

연도	재능기부금액	외부강의 사례금액	비고
2015. 7 ~ 12월	26	64	
2016년	52	148	
2017년	67	138	
2018. 1 ~ 10월	55	35	

| 향후 계획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례금을 받지 않는 외부강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재능기부를 활성화하여 직원들의 전문지식을 사회에 환원하고 기부문화 정착에 기여하는 등 청렴한 공직 가치 정립 및 조직 문화 조성을 위한 활동을 꾸준히 발굴·개선해 나갈 것이다.

또한, 외부강의 등의 대가를 사회 소외계층(독거노인, 어린이 등)에 직접 전달·기부하는 형식 등의 활동을 검토하는 등 재능기부 운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인허가 심사업무 부패방지를 위한 심사관 교육실시

| 추진 배경 |

의료제품 허가·심사 업무는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며, 관련 법규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부패방지를 위한 높은 청렴성이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내부적으로 각종 다양한 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나, 교육 대상이 주로 정규직에 제한되어 있어 계약직인 심사관 교육 이수율은 저조한 편이다.

특히 각 부서별로 외부 전문가를 초청하는 등 청렴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나, 현안에 따른 산발적 운영으로 참여율이 저조하고, 부패취약 분야인 인허가 심사 업무의 특수성(전문성 및 청렴성)을 고려하여 심사관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

| 추진 내용 |

신규 및 경력직 심사관 대상으로 심사분야별로 품질 및 안전성·유효성(임상, 약리, 독성, 통계, 약동학) 심사자 전문 교육, 공직가치 함양 등 청렴 소통 교육을 실시하였다.

* 의료제품분야 심사관 신규자 교육 연 3회, 의약품분야 심사관 직무교육 연 3회, 의료기기분야 심사관 직무 교육 연 2회, 의료제품분야 심사관 소통역량 향상교육 연 1회, 행복채움 힐링타임교육 연 1회 등 총 10회 실시

교육과정 수료, 수료 후 역량평가 등 심사관 개인별 이력관리를 시행하고 심사관 교육평가 이력을 심사 업무난이도 업무량 등 분장에 활용하고, 교육 훈련 이수자에 한해 다음연도 '우수 심사관', '심사관 승급' 대상자로 선정할 계획이다.

| 추진 성과 |

2018년도 의약품분야 심사관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훈련 강화 및 개인이력 관리를 하였으며, 의료제품분야 심사관 신규자 청렴교육 3회(90명), 의약품 직무교육 2회(71명), 의료기기 기본 직무교육 1회(20명), 의료제품분야 심사관 소통역량 향상교육 1회(88명), 행복채움 힐링타임 교육 1회(20명) 실시하여 총 289명이 수료하였다.

| 향후 전망 |

의료제품 분야 전 심사관이 참여토록 하여 기관 전체의 청렴이미지를 제고하고, 정부의 확고한 반부패 실천의지를 표현하여 청렴문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또한 의료제품 분야 대민업무 담당 심사관들에 대한 청렴인식 제고로 소속감을 고취하고, 청렴 공직풍토 조성 및 청렴 의식을 확산시켜 내부 청렴도 개선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허가 업무관련자에 대한 사전 예방 중심의 부패대응체계를 확립하고, 청렴 교육 등을 통한 부패 취약분야 부패유발 요인을 제거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특별사법경찰 출범

| 추진 배경 |

특별사법경찰이란 특수한 행정분야로 업무상 전문성이 요구되어 일반사경의 효율적인 수사가 곤란한 업무에 대하여 행정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수사활동을 하도록 제도화 한 것으로 원자력 특별사법경찰 운영은 원자력 및 방사선 안전보호, 국민의 생명보호와 안전보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제도 개요 |

원자력안전위원회 특별사법경찰은 정부부처 50번째로 권한을 부여받았으며, 타부처 특사경은 업무 일부부만 취급하지만 원자력특사경은 위원회 전체업무를 취급범위로 하고 있다. 원자력안전법, 방호방재법, 생활방사선법(원안위 소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법무부 소관),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규칙(법무부 소관), 형사소송법(법무부 소관), 원자력 특사경 직무규칙(원안위 소관)을 적용받으며, 현재 26명의 특사경을 지명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추진 경과 |

1) 중점 추진사항

'17.7.11. 특사경 출범 이후 원안위는 법무연수원 직무교육 실시, 조사실, 장비(차량 등) 확보 등 시스템 구축에 노력하였고, 특사경 활동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전담부서 신설 및 인력증원을 추진중이며, '18.6월 경력경쟁채용(1명, 검찰 수사관) 이후 고강도의 수사를 진행 중이다.

2) 단속·수사 실적

원자력안전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17.6월) 이후, 원자력안전법상 건설현장의 발주자 일일작업량 허위 보고 업체 5개소, 모나자이트 무허가이용업체 1개소에 대하여 수사를 완료하여 검찰에 송치하여 해당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이 확정되었으며, 추가로 발주자 일일작업량 미보고 업체 30개소를 내사 중에 있으며,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상 생활방사선 원료물질 취급자 미등록 업체 2개소를 수사 중이다.

※ 제도 도입 후 수사환경 조성('18.1월) 이후부터 본격적인 수사 활동 진행

※ 내사중인 사건은 혐의사실이 확인되면 검찰 송치예정

3) 자체평가

'17.7.11. 특사경 출범 이후 원안위에서는 조사실, 수사장비(수갑, 차량, 방사선계측기, 핵중분석기 등) 확보, 직무규칙 제정 등 제도운영 기반을 마련하였고 30명의 원자력경찰관*을 지명하고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특별사법경찰관 법무연수원 전문교육을 실시하였다.

* 전담인력이 확보되지 않아 감사·원전·방사선·생방·폐기물 등 규제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중 총 26명(본부 17명, 지역사무소 9명)을 지명하고 규제업무와 겸직토록 함

| 향후 계획 |

'17.7.11. 특사경 출범 이후 전담조직(가칭 '안전조사과')을 신설하여 독립적으로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아직까지 전담조직이 마련되지 않아 대부분의 특사경이 본업과 겸직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실적이 미비한 상황으로 전담부서 신설, 인력증원 및 아직 반영되지 않은 수사활동비* 등 예산 확보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 금융위(월 210천원/인), 행안부(월 150천원/인) 지급

반부패 · 권익행정 혁신추진단 구성 · 운영

| 추진 배경 |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적 차원의 반부패 개혁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반부패 · 권익행정 혁신 추진단”을 출범시켰다.(’17.10.13~12.15)

투명하고 깨끗한 대한민국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을 실현하기 위해 그 동안 추진해 온 반부패 · 권익보호 정책에 대한 성찰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이 시급하다고 인식하고, ‘혁신 추진단’을 중심으로 한 종합적 조직혁신을 추진하였다

이는 국민권익위 출범 후 부패인식지수(CPI)가 정체되고 반부패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매우 낮은 현실을 반성하고, 반부패 개혁의 국정과제를 비롯한 위원회의 핵심정책의 추진체계와 이를 뒷받침 할 조직 구조와 역량 등에 있어서 전반적인 혁신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 추진 내용 |

국민이 주도하는 혁신방향에 따라, 민간 대표(정용덕, 서울대 명예교수)를 단장으로 운영되는 혁신추진단은, 반부패 정책과 권익행정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가 높은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반부패 · 권익자문단’과 지역 · 성별 등을 고려하여 다양하게 위촉된 ‘국민참여단’을 참여시켜,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을 추진하였다.

이를 위해 4대 혁신 분야별(핵심정책/국가청렴이미지 개선/민관협력/조직혁신) TF를 구성하고, 격주로 개최되는 분과별 회의와 매월 개최되는 전체회의를 통해 세부과제를 논의하였다.

[분과별 주요 논의 과제]

분과	주요 논의 과제
핵심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대 분야 24개 중점추진과제 추진방향 점검·보완 - 권익위 소관 국정과제 및 자체 중점 추진과제
민관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회 정책 전 과정에 국민참여 방안 마련 ■ 반부패 민관 거버넌스 구축
국가 청렴이미지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패인식지수 향상을 위한 홍보 방안 ■ 부패인식지수 평가기관의 인식 변화 전략
조직혁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부패 총괄기구 기능 수행을 위한 조직 재설계 ■ 위원회 인력 혁신 및 역량 강화 방안 ■ 조직 문화 및 업무 프로세스 개선 방안

특히,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조직진단 전담팀을 운영하여 객관적인 시각에서 위원회 정책방향 및 반부패 정책 전담기구로서의 인력과 조직운영 등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여 1월 31일 국회에 제출하였다.

- 경찰청 : 「경미범죄심사위원회」 확대 운영으로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 방지265
- 경찰청 : 수사민원 상담센터의 본격적인 시행으로 민원만족도 향상269
- 경찰청 : 풍속업소 단속업무의 국민신뢰 제고208
- 고용노동부 :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청렴한 고용노동행정 실현314
- 고용노동부 : 산재 신청의 걸림돌로 작용하던 불합리한 사업주 날인제 폐지214
- 공정거래위원회 : 국민신뢰 제고를 위한 조직쇄신방안 시행70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공SW사업 발주제도 혁신257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연구자 중심의 'R&D 프로세스 혁신'252
- 관세청 : 국민 눈높이에서 관세행정 혁신방향 설계104
- 관세청 : 부정부패 신고 활성화를 위한 자체 신고체계 개편329
- 관세청 : 해외직구 반품할 때 관세환급, 포기하지 마세요~272
- 교육부 :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교육부 행동강령 개정297
- 교육부 : 교원 명예퇴직수당 환수제도 개선249
- 국가보훈처 : 보훈단체 수익사업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193
- 국가보훈처 : 생계 곤란 국가유공자 채무부담 완화276
- 국무조정실 : 청렴 집중 강조의 달 운영(청렴이 June 선물의 달)338
- 국무조정실 조세심판원 : 청구인과의 사적접촉 방지를 위한 비상임심판관 운영체계 개선
.....126
- 국민권익위원회 : 반부패·권익행정 혁신추진단 구성·운영353
- 국방부 : 군의문사 진상규명과 문제해결을 위한 제도개선133
- 국방부 : 투명성·청렴성 제고를 위한 개방형 국방운영80
- 국방부 : 대국민 육군 인사행정서비스 모바일 어플 더 캠프(The Camp) 개발261
- 국세청 : 복무규정 강화 및 국민참여 제도개선325
- 국세청 : 역외탈세로 인한 국부유출 방지157
- 국토교통부 : 건설공사 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전격 도입218
- 국토교통부 : 도로 인프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파트너십 구축222
- 기상청 : 기상장비 도입의 투명성·공정성 제고197
- 기상청 : 조직 내 부당지시 근절 대책 추진334
- 농림축산식품부 : 먹거리 불안 해소를 위한 친환경 인증제도 개선147
- 농림축산식품부 : 축산물 유통증명 서류 일원화로 국민편익 향상242
- 농촌진흥청 : 농촌진흥청 소관 위원회의 심의·심사 등 투명성 제고122
- 문화재청 : 매장문화재로 인한 국민불편 개선 추진279
- 문화재청 : 문화재 행정 부패 취약분야 집중관리201
-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분야 공정성 확립129

- 문화체육관광부 : 체육분야 공정성 확립149
- 방송통신위원회 : 방송통신 조사·심결 업무의 공정성·투명성 강화204
- 방송통신위원회 : 불필요한 행정낭비 방지를 위한 업무 프로세스 혁신342
- 방위사업청 : 국외위조부품 도입 방지를 위한 국외업체 검증 강화181
- 방위사업청 : 군수품무역대리업 중개수수료 신고제190
- 방위사업청 : 방위사업 원가부정행위 '징벌적 가산금 2배'로 강화187
- 방위사업청 : 방위사업 혁신TF 운영(방위사업 혁신종합 계획 수립)109
- 방위사업청 : 청렴서약 위반 시 입찰참가 제한 확대184
- 법무부 : 다룰 것만 다루는 합리적 상소문화 구현141
- 법무부 : 법무부 탈검찰화로 법무행정 전문성 및 지속성 강화76
- 법무부 : 부패행위자 청렴교육 의무이수제 도입306
- 법무부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226
- 법무부 : 찾아가는 맞춤형 청렴교육 실시309
- 법무부 :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방문예약 신청경로 개선229
- 법무부 : 현장근무 직원의 감사 제안을 통한 찾아가는 청렴감사301
- 법제처 : 불합리한 차별법령 정비143
- 법제처 :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마련320
- 병무청 : 병적 별도관리제도 도입을 통한 공정한 병역문화 조성171
- 병무청 : 부패예방 병무감사시스템 구축·운영176
- 보건복지부 : 조직문화 및 제도개선 위원회 구성 및 운영85
- 식품의약품안전처 : 사례금 없는 외부강의(재능기부)347
- 식품의약품안전처 : 의약품 재평가 심사기준 합리화161
- 식품의약품안전처 : 인허가 심사업무 부패방지를 위한 심사관 교육실시349
- 식품의약품안전처 : 자가치료용 마약류 수입 제한 규제 개선285
- 여성가족부 : 민간 보조사업자 청렴이행서약서 제도144
- 여성가족부 : 새일센터 온라인 서비스 플랫폼 구축113
- 외교부 :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여권 발급232
- 원자력안전위원회 : 원자력안전위원회 특별사법경찰 출범351
- 조달청 : 임금유용 차단을 위한 노무비 대금지급시스템 개선168
- 조달청 : 제안서 평가시스템 수요기관 개방100
- 중소기업벤처기업부 : 민간분야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협약 체결291
- 중소기업벤처기업부 : 중소기업벤처기업부 행정혁신288
- 특허청 : 중소기업 기술탈취 등 부정경쟁행위 근절165
- 특허청 : 지식재산권 출원환경 국민디자인단 운영117
- 해양수산부 : 불공정한 어선거래문화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개선236
- 해양수산부 : 여객선 국민안전감독관 제도 운영95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 국가기록관리체계 혁신 추진89

본 백서는 각 기관의 자율적 사례를 취합한 것이며, PDF 파일로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에 게시되어 있습니다.